2024.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보고(부처별 Ⅴ)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보 건 복 지 위 원 회

❖ 보건복지부 ····· 3

Ⅰ. 개 관 ····· 3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6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10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1

Ⅱ. 사업별 검토 ····· 13

【일반회계】 ····· 13

<세 출> ····· 13

1. 생계급여 사업: 면밀한 수급자 규모 추계 필요 등 ····· 13
2. 의료급여 사업: 저조한 실집행의 원인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등 ···· 19
3.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신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검토 등 ····· 26
4. 기초연금급여 사업: 부부 동시수급자 비율을 고려한 예산 감액 조정 필요 31
5.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R&D)(신규): 실질적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환류 절차 강화 필요 ····· 35

6. 보건의료데이터 통합활용 기술개발(R&D)(신규): ISP 수립 후 중개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수행 필요 등 ····· 38
7.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42
8. 충북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업 집행관리 필요 ····· 45
9.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실집행현황을 고려한 감액 조정 필요 ····· 47
10.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상담 횟수 보장을 위한 지원 기준 변경 등 사업운영 방식 변경 검토 필요 ····· 51
11. 지역필수의사 근무 지원 사업(신규):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 필요 ····· 54
12.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수련수당 지급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완 필요 ····· 57
13.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사업(신규): 공제(보험)료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 마련 필요 ····· 61
14. WPRO 전략사업 추진(ODA) 사업: 해외경상이전경비에서 국제부담금으로 비목 변경 필요 ····· 6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67

<세 입> ····· 67

15. 전년도세계잉여금(총괄):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적정 수준 편성 검토 필요 ·· 67

【국민건강증진기금】 ····· 71

<지 출> ····· 71

16.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 총액계상 형태의 예산편성 지양 필요 ····· 71
1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지자체에 대한 면밀한 지원 계획 수립 필요 ····· 75

【국민연금기금】 ····· 78

<지 출> ····· 78

18. 국민연금 급여지급: 급여 추계 정확성 제고를 통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필요 ····· 78

❖ 식품의약품안전처 ····· 84

Ⅰ. 개 관 ····· 84

1. 예산안 개요 ····· 84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87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90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91

Ⅱ. 사업별 검토 ····· 92

【일반회계】 ····· 92

<세 출> ····· 92

1. 식문화 개선지원 사업(신규): 전·폐업 이행계획서 수리결과를 반영한 사업비 편성 검토 필요 ····· 92
2. HACCP제도 활성화 사업: HACCP인증 수수료의 법적근거 마련 등 재정운용 체계의 변경 필요성 등 ····· 97
3.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사업: 저소득계층 의약품구입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등 ····· 103
4.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 교육이수생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 108

5. 신속간편 검사기술 개발 사업(R&D)(신규): 회계연도 불일치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 114
6.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R&D)(신규): 중복 소지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 관리 철저 필요 ····· 116
7. CODEX 활동지원 사업(신규): CODEX 사무국 설치 계획의 적절성 검토 필요 ·· 121

❖ 질병관리청 ·····124

Ⅰ. 개 관 ····· 124

1. 예산안 개요 ····· 124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27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29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30

Ⅱ. 사업별 검토 ····· 131

【일반회계】 ·····131

<세 입> ····· 131

1.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실적을 고려한 세입 계상 필요 ··· 131

<세 출> ····· 134

2.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 사업(ODA):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취지를 고려한 부담금 편성 필요 ····· 134
3. 해외연구거점센터 구축(R&D) 사업: 시험연구비 비목의 목적에 부합하는 편성·집행 필요 ····· 137
4.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재단법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에 대한 명확한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필요 ····· 142

5. 의료현장 감염대응 역량 고도화 기술개발(R&D) 사업(신규): 전문기관과 사업단 역할의 명확한 구분 운영 필요 ····· 144

【국립마산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147

<세 입> ····· 147

6.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전년도세계잉여금: 수납실적 등을 고려한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14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 환경부 ····· 153

Ⅰ. 개 관 ····· 153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5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56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159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60

Ⅱ. 사업별 검토 ····· 161

【일반회계】 ····· 161

<세 입> ····· 161

1. 기타재산이자수입: 과거 기타재산수입 수납현황을 고려한 세입예산안 증액 필요 ····· 161

<세 출> ····· 164

2.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사업: 다양한 관계자 의견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 필요 ····· 164
3. 국가하천정비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관리 철저 및 예산조정 최소화 필요 ····· 168

【환경개선특별회계】 ····· 172

<세 출> ····· 172

4.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사업: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등 ····· 172
5.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운영 사업: 사업 지연을 고려한 운영비 예산안 감액 필요 ····· 178
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사업: 융자취급수수료 수취 후 자체수입 계상 방식의 부적정 ····· 181
7.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 사업: 2025년 내 준공 가능성을 고려한 공사비 조정 여부 검토 필요 ····· 186
8. 사육곰 보호시설 자산취득 사업: 시설공사 완료 후 자산취득 추진 필요 ·· 190
9.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감액 조정 필요 ····· 193
10.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과다계상된 이차보전금 감액 필요 ····· 197
11.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고려한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 202
12.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 20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 213

<세 출> ····· 213

13. 전기차 보급 사업: 전기승용차 예산 조정 필요 ····· 213
14. 수소차 보급 사업: 집행실적 및 미교부액 등을 고려한 감액 조정 필요 · 218

15.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 스마트 제어 충전기(舊 화재예방 완속충전기)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22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27

<세 입> ····· 227

16. 환경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신규 반영 필요 227

<세 출> ····· 230

17. 대심도 하수저류 시설: 집행가능한 공사비만 계상할 필요 ····· 230

❖ 기상청 ····· 233

Ⅰ. 개 관 ····· 233

1. 예산안 개요 ····· 23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35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236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 237

Ⅱ. 사업별 검토 ····· 238

【일반회계】 ····· 238

<세 출> ····· 238

1.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R&D) 사업: 시험연구비 부적정 집행 및 과다한 이·전용액, 불용액을 고려한 조정 필요 ····· 238

2.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 개선 사업: 저조한 이용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243

3.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인건비 미집행잔액 반납 및 불용 최소화 노력 필요 ····· 247

4.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R&D) 사업: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인건비의 효율적 집행 필요 ····· 250
5.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사업: 시험연구비 부적정 집행분 감액 필요 ··· 25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259**

<세 출> ····· **259**

6.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 관리 필요 ····· 259

❖ 고용노동부 ····· 262

Ⅰ. 개 관 ····· **262**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62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65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268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70

Ⅱ. 사업별 검토 ····· **271**

【총 괄】 ····· **271**

1.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271

【일반회계】 ····· **288**

<세 출> ····· **288**

2.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신규) 사업: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후 점진적 사업확대 필요 ····· 288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급실적을 고려한 계속 지원분 감액 조정 필요 ··· 291

4.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개선방안 마련 등 ·· 294
5.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사업: 후속 상담 연계 강화 필요 ····· 300
6.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유사사업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한 사업 물량 조정 검토 필요 ····· 303
7.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 직업훈련 후 취업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308
8.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사업: 응시료 감면 규모의 조정 검토 필요 ···· 312
9.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사업수행방식에 부합하는 비목 설정 필요 ··· 316
10. 노동약자참여·소통활성화 지원 사업(신규): 기존 고용서비스 인프라 활용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319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계정)】 ·····323

<지 출> ····· 323

11. 난임치료휴가급여 사업: 제도 시행 전 난임치료와 관련된 치료 및 시술 범위 명확화 필요 ····· 323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계정)】 ·····327

<지 출> ····· 327

1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의 목표 달성 노력 필요 ··· 327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332

<지 출> ····· 332

13.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 예방 기술지도 사업: 사업 물량 증가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3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35

<지 출> ····· 335

14.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필요 ····· 335

【임금채권보장기금】 ····· 338

<지 출> ····· 338

15. 체불청산지원 융자 사업: 사업주 융자 제도 활성화 필요 ····· 338

【근로복지진흥기금】 ····· 343

<지 출> ····· 343

16.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 실업대책사업계정 내 여유자금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343

17.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347

국 토 교 통 위 원 회

❖ 국토교통부 ····· 353

Ⅰ. 개 관 ····· 353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35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356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363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65

Ⅱ. 사업별 검토 ····· 366

【총 괄】 ····· 366

1.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 1,800억원 부실자산 재발 방지방안 마련 필요 ·· 366
2. 국토교통 R&D : '미흡' 평가 과제에 대한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372

【일반회계】 ····· 375

<세 출> ····· 375

3. 해외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 사업성과와 연계하여 예산 지원 필요 ·· 375
4.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정보화) 사업: 전자계약 체결건수 산출 근거 명확화 필요 ····· 377
5. 철도기본계획수립 사업: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일정을 고려한 예산 편성 검토 필요 ····· 381
6. 승강장 안전시설 개량 사업: 긴급개량 방식 등을 통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등 ····· 384
7.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신규): 수요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 ····· 388
8. 소속기관 직원 숙소임차 사업: LH공공임대주택의 공가 등을 활용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 필요 ····· 390
9.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사업 간 유사성에 대한 검토 필요 ··· 393
10.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지방비 확보 여부에 따른 국비 지원 검토 필요 · 397

【교통시설특별회계】 ····· 400

<세 출> ····· 400

11.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가입자 수 감소추세를 고려하여 산출근거 조정 필요 등 ····· 400
12. 광역교통정책연구 사업: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용역의 실효성 검토 필요 ··· 405
13.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GTX와의 경합노선 조정 등을 통해 예산 지원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408

14.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 사업: 교통보조수당 지급액의 적정성 검토 필요 ····· 411
15.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사업: 노후차량(폐차) 판매수익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조정 필요 ····· 413
16. 과적단속 운영: 특정감사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사업관리 철저 필요 ····· 416
17. GTX-A 선개통 운영비 사업: 서울시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418
18.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자부담 확대 필요 ····· 422
19. 공항소음대책 사업: 항공수요 회복추이를 고려한 소음부담금 추계치 반영 필요 ····· 424
20.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착공시기 지연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철저 필요 4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29

<세 출> ····· 429

21. 도시재생사업: 노후저층주거지정비 사업(뉴빌리지)과 지역특화재생 사업의 내실있는 사업 추진 필요 ····· 429

【주택도시기금】 ····· 433

<지 출> ····· 433

22. 다가구매입임대 사업: 신축매입인 LH든든전세사업 물량의 과도한 확대 통제 필요 ····· 433
23. 민간임대(융자) 사업: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에 대한 지원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437
24. 통합공공임대출자: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와 배치되는 증액 편성 부적정 ····· 441

25.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 사업: 고소득자의 대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 443
26. 주택정비사업(융자):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을 참조하여 지원단가 및 지원대상에 대한 검토 필요 ····· 44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51

Ⅰ. 개 관 ····· 451

1. 예산안 개요 ····· 451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453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454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55

Ⅱ. 사업별 검토 ····· 45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56

<세 출> ····· 456

1. 종합사업관리 사업: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의 필요성 검토 필요 ····· 456
2. 과학문화센터 건립 사업: 과다 편성된 실시설계비 조정 필요 ····· 459
3.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 사업기간 지연을 고려한 공사비 등 감액 필요 ····· 462
4. 대외유치·협력기능 지원 사업(신규): 기존 기본경비와 사업목적을 구분하여 집행 필요 ····· 465
5.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사업: 2024년 예산안 부대의견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 비율 적정성 검토 필요 ····· 468

❖ 새만금개발청 ·····471

Ⅰ. 개 관 ····· 471

1. 예산안 개요 ····· 471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473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474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75

Ⅱ. 사업별 검토 ····· 476

【일반회계】 ·····476

<세 출> ····· 476

1. 새만금 웰컴스페이스 조성 사업(신규): 기존 새만금 투자전시관 및 홍보관과의 차별화 필요 ····· 476
2.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사업: 자체 수입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479
3.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새만금 기본계획'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타당성조사' 간 상충 우려 ····· 482

여 성 가 족 위 원 회

❖ 여성가족부 ·····487

Ⅰ. 개 관 ····· 487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487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490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492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93

Ⅱ. 사업별 검토 ····· 494

【일반회계】 ····· 494

<세 출> ····· 494

1.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신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관련 준비 철저 필요 등 ····· 494
2. 돌봄수당 사업: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방안 강구 필요 ····· 499
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2024년 월별 지원실적 및 청소년부모 가구수 추이 등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502
4.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추가 지연 방지를 위해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50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509

<세 출> ····· 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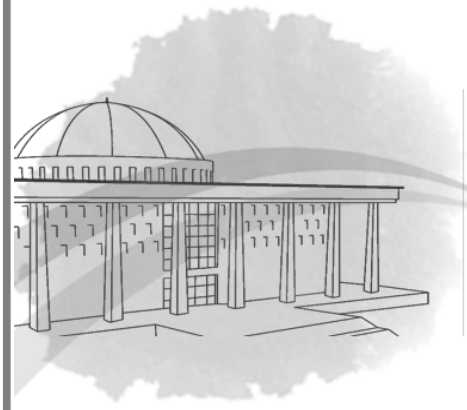
5. 새일여성인턴 사업: 고용유지율 제고 노력 필요 ····· 509

【양성평등기금】 ····· 513

<지 출> ····· 513

6. 아동양육비 사업: 부정수급 환수결정분에 대한 징수율 제고 필요 ····· 513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수입은 100조 7,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 3,840억원(9.1%) 증가함. 예산은 1조 3,957억원으로 전년 대비 3,381억원(32.0%) 증가하고, 기금은 99조 3,621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 459억원(8.8%) 증가함.[1)]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0,576	13,957	3,381	32.0
기 금	913,163	993,621	80,459	8.8
총수입	923,738	1,007,578	83,840	9.1

문의 : 민승환 예산결산조사관 genmin80@assembly.go.kr (02-6788-569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를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은 125조 6,5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2,786억원(2.7%) 증가함. 예산은 72조 5,28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511억원(△2.2%) 감소하고, 기금은 53조 1,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9,295억원(10.2%) 증가함.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741,794	725,283	△16,511	△2.2
기 금	481,986	531,281	49,295	10.2
총지출	1,223,779	1,256,565	32,786	2.7

주) 2024년도 본예산 총지출 금액은 보육업무 교육부 이관이 완료(2024.6.27.)된 예산 4조 7,727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나. 예산안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총 4개의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4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1조 5,54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83억원(28.9%) 증가함.

[2025년도 보건복지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9,440	12,798	3,358	35.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	8	△0.2	△2.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70	732	62	9.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943	2,007	64	3.3
합 계	12,061	15,544	3,483	28.9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72조 9,8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043억원(△2.2%) 감소함.

[2025년도 보건복지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726,288	711,651	△14,637	△2.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703	16,234	△1,469	△8.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943	2,007	64	3.3
합 계	745,935	729,892	△16,043	△2.2

주1) 총계 기준
2) 2024년도 본예산 총지출 금액은 보육업무 교육부 이관이 완료(2024.6.27.)된 예산 4조 7,727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3개 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82조 7,553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7,896억원(6.3%) 증가함.

[2025년도 보건복지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국민건강증진기금	45,581	45,581	45,405	△176	△0.4
응급의료기금	6,617	6,617	6,401	△216	△3.3
국민연금기금	1,667,459	1,667,459	1,775,747	108,288	6.5
합 계	1,719,657	1,719,657	1,827,553	107,896	6.3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보건복지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28개(1,062억 1,9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전문의)가 장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충분한 수입과 정주여건 등을 지원하여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료 역량·신뢰를 강화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3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분야 부담 완화 및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50억원 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R&D)’ 사업은 지역 국립의과대학병원 내 연구장비와 연구지원자원 등 연구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11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이태원 사고 피해자 의료지원	628
2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운영	625
3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지원단 운영	285
4	원격 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구축	2,500
5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1,352
6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5,025
7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1,301
8	긴급치료병상 운영보조	1,591
9	바이오헬스 아카데미	2,000
10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정보화)	1,565
11	발달장애디지털치료제개발(R&D)	7,900
12	첨단의료산업 선도 기반 실증지원 사업(R&D)	7,125
13	소아질환 극복 연구개발사업(R&D)	5,250
14	저출산 극복 기술개발사업(R&D)	5,55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15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개발(R&D)	4,050
16	다기관-멀티모달 연합학습 기반 의료 인공지능 기술 시범 모델 개발(R&D)	6,750
17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개발(R&D)	5,700
18	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 비임상시험 플랫폼 산업 고도화 사업(R&D)	2,850
19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R&D)	7,947
20	치매전주기 데이터수집 및 빅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사업(R&D)	2,625
21	NGS패널데이터기반암정밀의료기술개발(R&D)	6,900
22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R&D)	11,000
23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R&D)	4,500
24	지역의료혁신 연구개발사업(R&D)	1,800
25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지원(R&D)	4,500
26	의료현장감염대응역량고도화기술개발(R&D)	1,000
27	유전자, RNA 및 후성유전체 편집기술 기반의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업(R&D)	2,250
28	보건의료데이터 통합활용 기술개발(R&D)	1,650
총지출		106,219

한편,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 등 총 58개임.[3)]

그 중 ‘생계급여’ 사업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및 제도개선 등이 반영된 8조 4,899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소득지원을 위한 일자리 110만 개가 반영된 2조 1,846억 8,900만원이 편성됨.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수당 등 필수과목 의료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3,922억 4,200만원을 편성되었고,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니어의사 채용, 교육 지원 등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에 42억 4,300만원이 편성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2025년도 보건복지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생계급여	7,541,072	8,489,981	948,909	12.6
2	자활사업	749,864	820,578	70,714	9.4
3	장애인활동지원	2,284,604	2,532,343	247,739	10.8
4	장애아동가족지원	194,047	232,654	38,607	19.9
5	발달장애인 지원	357,738	402,962	45,224	12.6
6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965	1,547	582	60.3
7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669,549	690,308	20,759	3.1
8	장애인일자리지원	222,695	234,510	11,815	5.3
9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정보화)	163	370	207	127.0
10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39,947	51,912	11,965	30.0
11	국제협력관리	1,754	3,900	2,146	122.3
12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2,862	6,620	3,758	131.3
13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	2,092	3,570	1,478	70.7
14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126,733	153,189	26,456	20.9
15	기초연금지급	20,201,456	21,864,577	1,663,121	8.2
16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497,648	2,523,049	25,401	1.0
1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026,370	2,184,689	158,319	7.8
18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구축및 운영(정보화)	2,313	7,224	4,911	212.3
19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1,038	4,243	3,205	308.8
20	암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R&D)	47,605	64,220	16,615	34.9
21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운영 지원	9,480	16,691	7,211	76.1
22	연구중심병원육성(R&D)	60,475	81,825	21,350	35.3
23	글로벌의사과학자양성(R&D)	41,250	76,800	35,550	86.2
24	병원기반인간바이크로바이옴연구개발(R&D)	3,945	5,200	1,255	31.8
25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6,000	8,000	2,000	33.3
26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R&D)	9,935	15,010	5,075	51.1
27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R&D)	3,070	7,612	4,542	147.9
28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사업(R&D)	1,746	2,545	799	45.8
29	RNA바이러스 감염병(Disease X)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R&D)	3,768	7,250	3,482	92.4
30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17,052	33,397	16,345	95.9
31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1,552	2,517	965	62.2
32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 사업(R&D)	3,248	4,400	1,152	35.5
33	보건위기 대응 신속 비임상시험	3,000	4,000	1,000	33.3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실증개발 사업(R&D)				
34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R&D)	3,720	4,960	1,240	33.3
35	유전자전달체국내개발가속화사업(R&D)	5,050	10,100	5,050	100.0
36	응급실 특화 AI기반 임상지원시스템 개발(R&D)	3,600	4,800	1,200	33.3
37	연합학습기반신약개발가속화프로젝트(K-MELLODDY)(R&D)	2,275	4,400	2,125	93.4
38	장애인 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R&D)	5,700	8,725	3,025	53.1
39	임상현장수요연계형중개연구(R&D)	3,750	8,081	4,331	115.5
40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49,500	70,080	20,580	41.6
41	장애인구강진료센터	6,669	9,229	2,560	38.4
42	마약·자살등정신건강관련사회문제대응기술연구(R&D)	3,000	4,000	1,000	33.3
43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29,143	392,242	363,099	1245.9
44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구축	13,192	57,787	44,595	338
45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3,001	5,016	2,015	67.1
46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10,263,617	10,621,136	357,519	3.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7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자율)	213,666	241,483	27,817	13
48	노인요양시설 확충	21,711	28,649	6,938	3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9	공주병원 전산운영경비(자본)	16	36	20	125
[국민건강증진기금]					
50	국가암관리	69,484	83,570	14,086	20.3
51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플랫폼 기술개발사업(R&D)	557	743	186	33.4
52	만성질환 예방관리 연구	814	3,652	2,838	348.6
53	건강보험가입자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1,902,181	1,988,166	85,985	4.5
54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2,494	7,299	4,805	192.7
[국민연금기금]					
55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437,771	448,790	11,019	2.5
56	국민연금급여지급	43,372,936	48,413,256	5,040,320	11.6
57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6,278	11,966	5,688	90.6
58	국민연금 조사연구	2,227	3,061	834	37.4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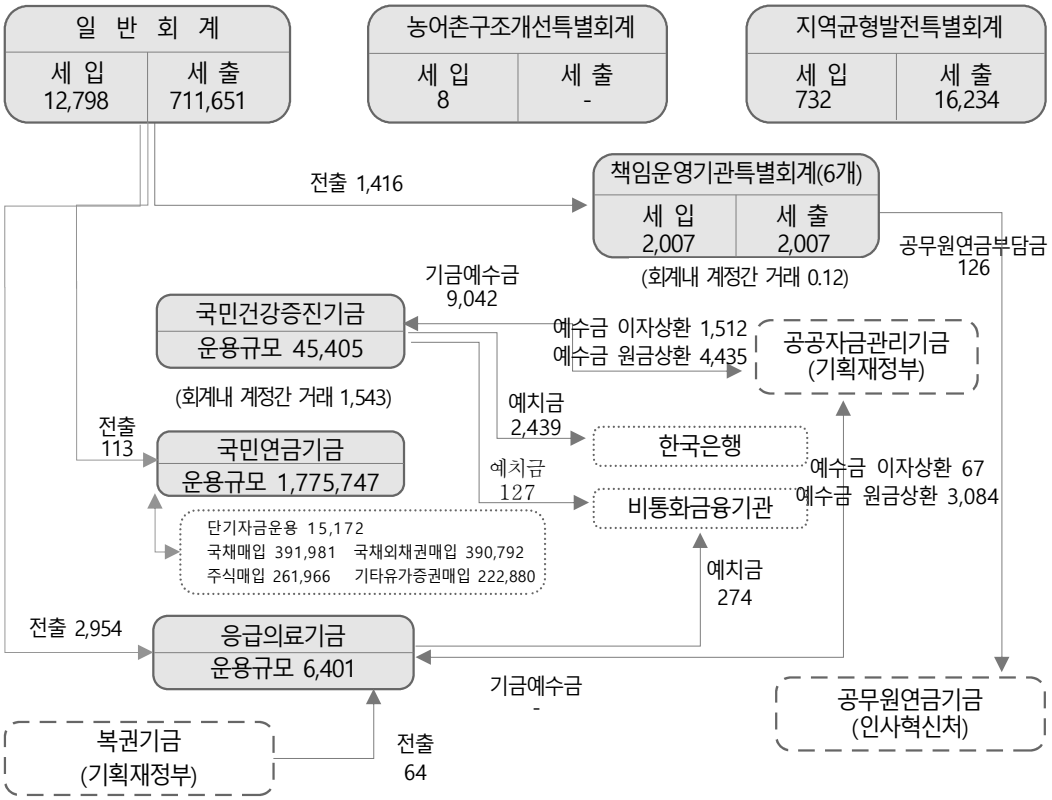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응급의료기금・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1,416억원, 국민연금기금으로 113억원, 응급의료기금으로 2,954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9,042억원을 예수하고, 4,435억원의 원금을 상환하였으며, 응급의료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3,084억원의 원금을 상환함.

[보건복지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총계기준)]

(단위:억원)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전체 사업 예산안 중 의무지출 사업의 비중이 높은데, 전체 486개 세부사업 중 23개 사업이 의무지출 사업이나 금액으로는 111조 3,512억원으로 총지출 125조 6,565억원의 88.6%를 차지하는 등 의무지출 비중이 높음.

또한, 의료현안과 관련한 ① 의료인력 국가지원, ② 지역의료 확충, ③ 필수의료 기능 강화, ④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지원에 대하여 국가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을 통해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려 하고 있는데, 생계급여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다 정책적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둘째,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저조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제 수요에 맞춰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실적 부진에 대한 분석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새로 신설되는 자활성공지원금은 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금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기초연금급여 사업은 최근 부부 동시수급자 비율이 점차 상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은 2025년도 계속과제 중 10개 프로젝트의 경우 과제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증함으로써 필수지역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필수의료분야 의료인에 대한 공제료(보험료) 지원은 현재 임의가입 제도하에서 특정인에 대한 지원을 국가재정으로 집행하는 것이므로「의료분쟁조정법」등 관련 법령에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생계급여 사업: 면밀한 수급자 규모 추계 필요 등

가. 개 요

‘생계급여’ 사업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평균 보조율 83.61%)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489억 900만원(12.6%) 증액된 8조 4,899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생계급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생계급여	7,541,072	8,489,981	948,909	12.6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하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하였음.[5)]

생계급여의 증액은 ① 2025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2024년 572만 9,913원 대비 36만 7,860원(6.4%)을 증가시킨 것과 ②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는 자동차재산의 일반재산 환산율(4.17%)의 반영, ③ 부양의무자 기준을

4) 일반회계 - 생계급여(1131-300)(복지정책관)

5) 1인 가구 기준: 2024년 71만 3,102원 → 2025년 76만 5,444원(7.34%) 인상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에서 ‘연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의 상향, ④ 노인 근로소득공제 확대(75세 이상→65세 이상) 등에 기인함.

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급가구 127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총 8조 1,622억 7,000만원, 시설수급자 9만 7,000명을 대상으로 총 3,341억 4,100만원의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편성하였음.

그 외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98억 4,000만원,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재정절감액 △555억 8,90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공제 157억 4,100만원, 사업비 3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상(또는 내용)	평균 지원단가	총 재정소요
일반수급자	127.1만 가구	월 640,137원	8,162,270
시설수급자	9.7만명	월 340,061원	334,141
제도개선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 완화	-	5,865
	노인 근로소득공제 확대	-	17,062
	자동차 재산환산기준 완화	-	6,913
근로소득 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공제	-	15,741
재정절감액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동시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액 감소	-	△55,589
기초생활보장관리	-	-	3,578
2025년도 생계급여 사업 예산안			8,489,981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첫째, 생계급여 예산 산출의 근거가 되는 차년도 대상가구 인원은 최근 실적 및 제도개선에 따른 신규 대상 가구를 기초로 산출되고 있으나 매년 실제 수급가구와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지급 단가 역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생계급여 수급자의 각 연도별 예산 편성 수급자 수와 실수급자수를 비교해보면, 지속적으로 실제 수급자 가구 수가 예산상 편성 가구 수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3년간 예산상 편성 가구 수와 실제 수급 가구 수 비교]

(단위: 가구, 명)

연도	일반수급가구			시설수급자		
	예산상 편성가구(A)	실수급 가구(B)	차이(B-A)	예산상 편성가구(A)	실수급자 수(B)	차이(B-A)
2021년	852,440	1,081,655	229,215	89,420	90,820	1,400
2022년	897,988	1,157,750	259,762	88,261	92,230	3,969
2023년	1,092,471	1,200,418	107,947	89,448	96,019	6,571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재구성

한편, 수급가구 수 외 생계급여 예산 편성 요소 중 하나인 가구별 평균 지급액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가구수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부정확한 예측으로 실제 지급액이 예산편성 상 지급액보다 적게 발생하고 있음.

[2021~2023년 예산안 산출근거 상 가구규모별 평균지원단가 및 실지급액]

(단위: 백만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1년	편성상 평균 지원 단가	최대 급여액(A)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소득 인정액(B)	173,009	316,383	390,638	505,362	650,578	808,205	819,948
		평균 지급액 (A-B)	375,340	610,041	804,547	957,525	1,076,634	1,180,376	1,429,211
	실지급액 실적치		363,350	602,057	842,767	998,759	1,123,992	1,273,834	1,560,225

(단위: 백만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2년	편성상 평균 지원 단가	최대 급여액(A)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소득 인정액(B)	177,796	310,985	342,149	440,165	566,214	689,212	812,445
		평균 지급액 (A-B)	405,648	667,041	916,261	1,096,159	1,241,141	1,382,889	1,521,733
	실지급액 실적치		385,713	627,614	887,711	1,056,075	1,192,800	1,361,356	1,652,844
2023년	편성상 평균 지원 단가	최대 급여액(A)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소득 인정액(B)	184,999	324,367	352,418	464,128	603,220	714,747	830,291
		평균 지급액 (A-B)	438,368	712,479	978,027	1,156,161	1,295,986	1,453,647	1,601,964
	실지급액 실적치		411,782	662,470	937,355	1,110,040	1,259,300	1,427,921	1,727,795

주) 본예산 편성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예산에 편성된 수급 대상 수보다 실제 수급 대상 수가 많음에도 편성상 단가보다 실지급액의 단가가 낮아 결산상 불용 또는 이·전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수급대상 수가 130만 가구에 육박하고 매년 큰 규모로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 수급자수와 실지급액에 대한 추계 오류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최근 4년간 생계급여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4,606,172	4,653,562	4,652,252	4,652,252	-	4,652,252	4,565,537	-	84,881	98.1
2022	5,261,080	5,261,080	5,383,780	5,383,780	-	5,383,780	5,346,733	-	37,047	101.6
2023	6,012,456	6,012,456	6,012,456	6,012,456	-	6,012,456	5,906,193	-	106,263	98.2
2024. 7월기준	7,539,428	7,539,428	5,500,016	5,500,016	-	5,500,016	취합중	-	-	-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의무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급가구 및 지급 단가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하려 하고 있는데, 생계급여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다 정책적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가구에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임.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수준인 6.42%(4인 가구 기준) 인상함에 따라 수급자는 179만명으로 전년 대비 7만 1,000명이 늘어났으며, 생계급여의 월간 급여액은 11만 8,000원이 증가한 195만 1,000원으로 늘어났음.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동시에 급여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이 향상됨과 빈곤층 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최빈층인 수급권자의 보장성을 높이고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생계급여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부조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돕는 것 외에도 이들이 탈수급·탈빈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음.[6]

그러나, 지속적인 생계급여 기준 상향으로 생계급여의 평균적인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수급 가구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로 인해 노동시장 공급 유인을 감소시키거나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남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7]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7) 국회예산정책처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수급자 중 21%가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요되는 재정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국비 비중이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으나, 지방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생계급여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지방재정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최근 4년간 생계급여 재원 투입 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비 (보조율)	지방비	국비 (보조율)	지방비	국비 (보조율)	지방비	국비 (보조율)	지방비
5,298,828		5,654,702		6,328,738		7,238,690	
4,336,031	962,797	4,653,562	1,000,140	5,261,080	1,067,658	6,012,456	1,226,234
81.83%		82.31%		83.13%		83.06%	

자료: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국회예산정책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확대를 통한 수급자의 삶의 질의 개선, 생계급여 수급권의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수급자의 근로유인 저해, 국가 및 지방재정 부담 증가 등 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이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0년 이상 장기 수급자이며, 5년 이상 중장기 수급자가 약 3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의료급여 사업: 저조한 실집행의 원인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의료급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95억 1,200만원(△2.8%)이 감액된 8조 6,882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5년도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및 건강생활유지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의료급여	8,937,713	8,688,201	△249,512	△2.8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4,952	7,364	2,412	48.7
건강생활유지비	46,342	92,684	46,342	100.0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힘든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9)]를 대상으로 기관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중 조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기본진료비 기관부담금 8조 770억 6,100만원, 2종 수급권자에 대한 기본진료비 기관부담금 6,628억 2,700만원 등 총 국비지원 소요액 8조 6,860억 6,700만원을 지자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업운영비 1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8) 일반회계 - 의료급여(1132-302)(복지정책관)

9)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1·2종 수급자로 구분됨.
-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등 타법적용자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2025년도 의료급여 사업 내 지자체경상보조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대상(또는 내용)	2024년 본예산 (A)	2025년 예산안 (B)	증감액 (B-A)
지자체경상보조	기관부담금	8,809,151	8,517,731	△291,420
	기본진료비	9,051,852	9,115,618	63,766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227,439	122,942	△104,497
	의료급여 정액수가 개선	-	37,777	37,777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비	4,952	7,364	2,412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절감액	△475,092	△765,970	△290,878
	본인부담금 지원비	54,648	98,303	43,655
	본인부담보상·상한제	7,637	4,933	△2,704
	건강생활유지비	46,342	92,684	46,342
	임신출산 관련 본인부담금	669	686	17
	기타지원비	57,432	55,759	△1,673
	장애인보조기기	18,510	17,856	△654
	요양비	38,922	37,903	△1,019
	위탁수수료	14,254	14,254	-
	신고포상금	20	20	-
민간위탁사업비		1,117	1,092	△25
사업운영비		1,091	1,042	△49
합 계		8,937,713	8,688,201	△249,512

자료: 보건복지부

내역사업인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신의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억 1,200만원(48.7%)이 증액된 73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면제자 제외)가 외래 진료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1만 2,000원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63억 4,200만원(100.0%)이 증액된 926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첫째, 의료급여 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매칭액으로 조성된 의료급여기금으로 운용되는 보조사업임에도 의료급여기금의 국고보조금이 정산되지 않고 잔액이 의료급여기금에 적립되고 있으므로 2024년도 잉여금의 발생가능성, 누적적립금 및 의료급여기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의료급여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시·도에 예산을 교부하면 시·도에서 시·도/시·군·구의 매칭액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고, 이후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 등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의료급여는 시·도가 단순히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매칭액을 한꺼번에 건보공단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과 지자체 매칭액으로 의료급여기금을 조성한 후 건보공단에 이를 예탁·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종료 후 지원된 보조금은 반환되지 않고 계속 의료급여기금에 적립되고 있음.[10)]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의료급여기금 누적 적립금 7,503억원(국비, 2023년 말 기준) 중 2,766억원을 재정절감액에 포함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료급여기금에 적립된 누적적립금의 규모를 감안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주문한 국회의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임.[11)]

[2023년 말 기준 의료급여기금 누적 결산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적립액	2023년도 적립액	2023년도 말 누적 결산 잉여금
누적 결산잉여금	193,220	137,728	750,321

자료: 보건복지부

10)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202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9.)

그러나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매칭액으로 조성된 의료급여기금으로 운영되는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정산되지 않고 그 잔액이 의료급여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급여기금의 누적 적립금을 과도하게 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연도별 의료급여기금의 지자체 실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금액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12)]

[2021~2023년 의료급여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내역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잔액 (잉여금)
2020	7,002,121	6,898,930	103,191
2021	7,648,691	7,332,509	316,182
2022	7,882,254	7,689,033	193,221
2023	8,360,015	8,222,287	137,728

주) 자치단체경상보조에 해당하는 예산현액
자료: 보건복지부

최근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급여기금의 누적 적립금을 과도하게 운용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임.

아울러 정부가 2024년 세수부족을 세출 불용을 통해 대응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금 누적 적립금의 2024년도 집행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2024년도 잉여금의 발생가능성, 의료급여기금에 적립된 누적적립금 규모 및 의료급여기금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적정 예산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13)]

12)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실집행잔액은 차년도 시·도별 결산('25.3월) 이후 확인 가능하며, 진료비 집행액은 수급자 수 및 이용량 변화, 수가 변동 등으로 사전적으로 예측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13)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기금 잔액('23년말) 7,503억원(국비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 감소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의료 수요, 고령화 등으로 계획 대비 진료비 지출이 많아 미지급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대비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일정 수준(약 1개월분 진료비)의 적립금은 필요하다는 입장임.

둘째,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에 전년 대비 2배(6천원→1만 2,000원)가 증가하였는 바, 이는 정률제 도입으로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이용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14]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2007년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되던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할 예정임.

이는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는 문제의식 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보임.[15]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의 정률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본인부담체계 변화]

구	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2)]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1)]	1,000원 → 4%	1,500원 → 6%	2,000원 → 8%	500원 → 2%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 4%	15%	15%	2%

주 1) 진료비 25,000원 이하는 현행 부담수준(1~2천원) 유지

2) 진료비 25,000원 이하는 500원 부담 유지, 상한선 5,000원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할 수 있고, 과

14)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000원씩 지원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음.

15) (1인당 진료비) 건강보험대비 3.3배(연 735만원 vs 건보 219만원)
(외래일수) 건강보험 대비 1.8배(월 36일 vs 건보 20일)

다 의료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진료비에 비례하는 본인부담금 체계는 필연적으로 수급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바, 동 체계 개편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존재하고 있음.[16)]

한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2025년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 시행을 전제로 수급자 부담 완화 방안인 건강생활유지비 상향 지급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도 예산안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인상(6,000원→12,000원)하여 편성하였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수급자는 외래이용 상위 9%인 10만 1,500명으로 이 가운데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 면제자를 제외할 경우 7만 3,684명의 수급자가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생활유지비가 본인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인 점을 고려할 때, 정률제 개편에 대응하여 건강생활유지비를 인상하는 것은 과다 의료이용 수급권자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킬 수 있어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통한 과다 의료이용 억제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17)]

따라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상향 지급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셋째,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저조한 상황에서 사업대상 지역의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제 수요에 맞춰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실적 부진에 대한 분석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지자체의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수요와 실제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16) “의료급여 정액제→정률제 개편하면 중증질환자 비용 크게 증가”(연합뉴스, 2024.10.2.) 등

17)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률제 개편에 따른 건강생활유지비 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정책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가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강생활유지비의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확대 대비 수요조사에서 229개의 시·군·구 중 222개의 시·군·구에서 수요를 제출하여 예산 편성상 지자체의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이나, 2024년도 신규 사업지역 156개의 시·군·구 중 148개의 시·군·구에서만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한 수요를 제출하지 않은 지자체가 존재하고 있고, 수요를 신청하였더라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자체가 있는 상황에서 2025년 예산안은 전체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이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저조함에도 2024년도에 전국 229개의 시·군·구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였으며,[18] 이에 따라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1~현재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실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1]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2021년	1,531	1,531	1,531	1,531	-	1,531	853	-	-	55.7
2022년	2,588	2,588	2,588	2,588	-	2,588	1,487	-	-	57.5
2023년	3,589	3,589	3,589	3,859	-	3,859	1,765	-	-	49.2
2024년 7월말[2]	4,952	4,952	4,952	4,952	-	4,952	1,212	-	-	24.5
2025년(안)	7,364	7,364	-	-	-	-	-	-	-	-

주 1) 전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적립
2) 현재 지자체별 사업추진 중으로 2024.7월말 실집행액 변동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사업 집행 부진에 대한 분석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집행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예산 증액은 연례적인 집행실적 저조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예산의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실적 부진에 대한 분석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19]

18) 예산 편성상 대상 지역 변화: 13개(2019년) → 38개(2021년) → 80개(2023년) → 229개(2024년)

19)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장기입원자 방문상담이 불가하여 사업추진에 한계가 존재하였으며, 초기 시범사업 설계 과정에서 목표인원이 과다 추계된 측면이 있어 실집행이 저조하다고 설명함. 다만, 사업

3.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신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검토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가 민간 취업으로 탈수급(생계・의료급여) 후 6개월 지속시 50만원, 추가 6개월 지속시 100만원을 지급(1년간 최대 150만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3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0]

[2025년도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자활사업	749,864	820,578	70,714	9.4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	3,390	3,390	순증

자활성공지원금은 민간 취업으로 탈수급(생계・의료급여) 6개월 지속시 50만원, 추가 6개월 지속시 100만원(1년간 최대 1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탈수급 후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신규 도입되었음.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자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자활성공률(탈수급 및 민간 취・창업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어 탈수급 촉진 및 수급 재진입 방지를 위해 경제적 유인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동 지원금을 도입하려는 것임.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가 민간에 취업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대상자를 입・퇴원 반복환자까지 확대('24.7.)하였고, 시・군・구 당 목표 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는 등 실집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실시중이라고 설명함.

20) 일반회계 - 자활사업(1137-300)(복지정책관)

[2025년도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 예산안]

ㅇ 자활성공지원금(7,500명, 2,798백만원) · 5,625명*×75%**×0.5백만원×83.61% + 1,875명***×66%****×1백만원×83.61% * 7,500명(1년 누적 탈수급자수의 최근 3년 평균 등 고려)×9/12 ** 탈수급 6개월 지속율 *** 7,500명(1년 누적 탈수급자수의 최근 3년 평균 등 고려)×3/12 **** 탈수급 12개월 지속율 ㅇ 시스템 구축 등(592백만원) * 행복e음 기능개선: 지원금 신청, 지급요건 확인, 지급 및 관리 등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첫째, 신설되는 자활성공지원금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한 제도인 취업성공수당 등과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지원금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자활성공지원금의 지급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서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서는 자활급여를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지원되는 금품,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21]

그런데 자활성공지원금은 '탈수급자'의 취업상태를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려는 것으로, 그 대상을 ‘탈수급자’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에 근거한 자활급여의 유형으로 보기에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특히,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인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취업촉진법」에서는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또는 수당의 경우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해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지원금 현황]

구분	근거	수당 종류
취업성공수당	「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 제17조	- 구직촉진수당 - 취업성공수당
취업촉진수당	「고용보험법」 제37조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법제처)

따라서,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법에 탈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 및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자활성공지원금의 지급 대상 선정 방법을 재검토하고 보다 세부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2025년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복e음 시스템 개선작업을 2025년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 및 시스템 구축 계획]

ㅇ 시행령 개정 : 부처안 마련(~’24.12)→관계부처협의・입법예고・규제・법제심사(’25.1분기)→공포 ㅇ 시스템 구축 : 2025년도 예산 확정 후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확정 및 용역 발주(사회보장정보원) → 계약체결 → 시스템 개발 및 지급 개시(~2025.10)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제반사항이 마련된 후 이로부터 12개월 전인 2024년 10월을 기산점으로 설정하여 6개월 또는 12개월 탈수급 지속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반사항 마련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탈수급 지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준비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유동적일 수 있어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고,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신뢰성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음.[22)]

예를 들어 시행령 개정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지연될 경우 탈수급 12개월 지속 대상자 수가 줄어들어 이들에게 편성된 지원금이 불용될 가능성이 있음.[23)] 반대로 시행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이 보다 이른 시점에 마무리 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산정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추지 않는다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음.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중인 취업성공수당을 참조하여 지원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취업성공수당 제도와는 달리 지원대상과 지급금액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보다 세부적인 지급요건, 인정기준 등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보임.

22)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에만 수당을 지급함.

23) 탈수급 기산점이 1개월 늦춰지는 경우 12개월 지속자 지원금 수령 가능 시점이 같이 늦춰지게 되므로 1개월 분의 불용이 발생함.

[취업성공수당과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요건 등 비교]

	취업성공수당	자활성공지원금
지급대상	ㅇⅠ유형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ㅇⅡ유형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 조건부 수급자 중 탈수급자
지급요건 및 지급액	ㅇ지급요건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ㅇ지급액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지급	- (지급액) 탈수급 후 민간 취업 상태 6개월 지속시 50만원 지급, 추가 6개월 지속시 100만원 지급(1년간 최대 150만원 지급)
수당 지급 인정 기준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60개월) 중 ②민간시장 취·창업으로 ③6개월 이상, ④탈수급(생계급여) 지속한 조건부 수급자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재구성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탈수급 기산점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세부적인 지급 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금 지급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4. 기초연금급여 사업: 부부 동시수급자 비율을 고려한 예산 감액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기초연금급여’**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 6,622억 9,500만원(8.2%) 증액된 21조 8,41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24)]

[2025년도 기초연금급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기초연금 지급	20,201,456	21,864,577	1,663,121	8.2
기초연금급여	20,178,925	21,841,220	1,662,295	8.2

이와 같은 증액은 통계청의 「2022~2027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2024년 7,006,000명에서 2025년 7,360,000명으로 354,000명(5.1%) 증가하였고, 물가상승률 2.6%를 적용하고, 재정열악 지자체에 대한 추가지원금 63억 200만원(16.0%) 증액 등이 반영된 것임.

24) 일반회계 - 기초연금 지급(2131-300)(연금정책관)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기초연금 급여 : 21,841,220백만원
가. 수급자 수 : 7,360천명(2022-207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나. 기준연금액 : 343,510원(물가상승률 2.6%)
다. 평균 국고보조율 : 83.51%(신규 통계치 산출)
라. 수급비율(전액:감액) : 90:10
마. 집행계수 : 96.9%
바. 재정열악지자체 추가지원금 : 45,689백만원(11개소)
○ 제도운영비 : 23,347백만원
가. 공단위탁(21,920백만원)
· 인건비 : 18,884백만원(+550백만원, 인건비 3.0% 처우개선)
· 기타 운영비(사업비 등) : 3,036백만원(+410백만원, 안내 대상증가에 따른 우편 단가 반영, 지사 사무실 및 출장차량 임자료 등)
나. 경상경비 등 : 1,427백만원
·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부 삭감(△144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최근 부부 동시수급자 비율이 점차 상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5년도 기초연금 급여 예산의 편성 규모를 부부 동시수급자 비율을 반영하여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기초연금 급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43,510원이 지급될 예정임. 이 중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함.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급여 관련 예산안 편성시 단독수급자 비율 60%, 부부 동시수급자 비율 40%를 적용하여 소요액을 추산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 기초연금급여 사업 산출 산식]

[수급자×(전액수급비율(%)×기준연금액+감액수급비율(%)×감액평균수급액)]×[0.6(단독,부부1인)+0.4(부부2인)×0.8(부부감액)]×평균국고보조율×집행률×12개월 +재정열악 지자체 추가지원금(국고100%)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2023년 12월 기준 부부 동시수급자의 비율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 43.6%(약 283만 5,116명)으로, 2018년 41.6%, 2019년 41.9%, 2020년 42.4%, 2021년 42.9%, 2022년 43.2%로(연말기준) 매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임.

[2018~2023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적용 수급자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급자 수 합계(A)	5,125,731	5,345,728	5,659,751	5,973,059	6,238,798	6,508,574
부부감액 적용 수급자 수(B)	2,129,842	2,237,511	2,400,460	2,564,894	2,694,394	2,835,116
B/A	41.6	41.9	42.4	42.9	43.2	43.6

주) 각 연도 12월말 기준, 소급 지급 반영
자료: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에 따르더라도 부부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2025년도 예산안의 부부 동시수급자 비율 40%는 다소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함에 따른 예산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25)]

참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최근 5년간 약 137만명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련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5) 예를 들면, 수급자 비율 중 단독 수급자의 비율을 0.01%p 하향, 부부동시수급자 비율을 0.01%p 상향하여 소요액을 추정하는 경우 정부안보다 469억원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보임.

[2021~2024년 현재 기초연금 지급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1	14,961,336	14,961,336	14,961,336	14,961,336	-	14,961,336	14,874,535	-	86,801	99.4
2022	16,111,899	16,287,372	16,273,753	16,273,753	-	16,273,753	16,168,689	-	105,064	99.3
2023	18,528,300	18,528,300	18,528,300	18,528,300	-	18,528,300	18,078,086	-	110,214	97.6
2024. 7월기준	20,199,885	20,199,885	14,205,449	14,205,449	-	14,205,449	취합중	-	취합중	취합중

자료: 보건복지부

5.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R&D)(신규): 실질적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환류 절차 강화 필요

가. 개 요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R&D)’ 은 의료 인공지능 산업 특화 영역별 학·석·박사 인재양성을 지원(학위과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6)]

[2025년도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R&D)	-	4,500	4,500	순증

이 사업의 학위과정 유형을 살펴보면,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또는 인증제 프로그램 운영(학부), 의료인공지능학 세부전공교실 운영(대학원), 특화영역별 인재양성에 필요한 프로젝트 기반 실습 지원(프로젝트 실습병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은 ‘기초이론 → 특화 영역별 심화이론 → 산업계 연계 실습프로젝트(PBL)’ 의 순서로 운영될 예정임.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출연사업)
- 연구개발 연구활동비 등(360-05) : 4,500백만원
가. 특화융합인재 양성(4,500백만원)
· (다/상) 6개 과제 × 1,000백만원 × 9/12개월 = 4,500백만원
* 5년간('25~'29) 의료인공지능 특화분야 학·석·박사 약 1,000명 목표

자료: 보건복지부

26) 일반회계 - 의료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R&D)(3031-592)(첨단의료지원관)

나. 검토의견

이 사업은 한시사업이던 교육부의 ‘의료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를 확대하여 새로이 추진하는 것인바, 기존 한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미비한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부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등 환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교육부는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시범사업(보건복지부와 협업 사업, 전액 교육부 부담)을 통해 5개 대학을 선정하여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2월까지가 사업기간으로, 2025년 초 최종평가 등 점검을 거쳐 시범사업의 결과가 나올 예정임.

신규사업인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은 교육부의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산업계 연계 실습프로젝트 등을 도입하는 등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한편, 교육과정 운영 사업단을 6개 대학으로 늘리는 등 사업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의료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사업 비교]

구분	교육부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 (교육부, ’22.3월~’25.2월)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 (보건복지부, ’25.4월~’29년)
개요	의대 ↔ 공대(AI, 데이터 등) 상호간 지식 습득을 통해 협업이 가능한 인재 양성 * 융합인재 양성 생태계 기반 조성에 중점	병원 및 산업 등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의료(약학, 치대 등 보건의료 포함)와 공대간 협업 가능한 의료인공지능 핵심분야 인재양성 * 영역별 특화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
지원 기관 수	5개 사업단	6개 사업단
지원 예산	사업단별 연간 9.2억원	사업단별 연간 10억원
지원 기간	총 3년	총 5년 * 학위과정 운영 및 인재 배출에 소요되는 기간 고려
양성 목표수	3년간 총 300명 양성 목표	5년간 총 1,000명 양성 목표
학부과정	자율 기획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또는 인증제 과정 운영
대학원과정	의료인공지능학 전공	의료인공지능학, 의약인공지능학 전공 등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기존 인재양성 사업의 연차별 평가, 성과교류회, 만족도 조사,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각 사업단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부의 시범사업의 경우 한시사업으로 그 특성상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운영되었음을 고려하면, 이 사업 추진시 한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의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등 환류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사업의 성과분석과 중장기계획 수립 등 충분한 환류 방안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임.

한편, 이 사업은 의료 인공지능 분야 대학 및 대학원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목적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관련 업계 진출 및 취업 지속 여부 등과 연계된 성과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교육부 소관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경우 인재 양성 목표 대비 실적이 높은 편으로 일정 부분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보임.

[교육부 소관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 인재양성 수]

연도	목표 수	실적 수	달성율(C=B/A)(%)
2022년	100명	106명	106%
2023년	100명	243명	243%
2024년	100명	183명 (상반기 기준)	183%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과 외에도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수한 의료인공지능 융합인재의 산업계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의 인적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는 만큼 실질적 성과로 볼 수 있는 의료 인공지능 분야 진출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실제 의료 인공지능 분야가 아닌 다른 영역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임.[27)]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인재양성 사업 졸업자의 진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기존 인재 양성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 및 이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 도출 등 보다 세부적인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간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27)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한 졸업자의 진로에 대한 별도의 확인은 어려운 것으로 보임.

6. 보건의료데이터 통합활용 기술개발(R&D)(신규): ISP 수립 후 중개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수행 필요 등

가. 개 요

‘보건의료데이터 통합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은 개별 의료·공공기관에 산재된 데이터를 연계하여 한 곳에서 탐색·신청·활용할 수 있는 중개플랫폼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6억 5,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음.[28)]

[2025년도 보건의료데이터 통합활용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보건의료데이터 통합활용 기술개발(R&D)	-	1,650	1,650	순증

[보건의료데이터 통합활용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연구개발 연구활동비 등(360-05) : 1,650백만원

가. 중개 플랫폼 기반 구축(1,500백만원)

· (다/상) 1개 과제 x 2,000백만원 x 9/12개월 = 1,500백만원

나. 2차활용 대응 ELSI 정책연구(150백만원)

· (다/상) 1개 과제 x 200백만원 x 9/12개월 = 150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첫째, 신규로 추진하는 중개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이후 플랫폼 구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내용은 임상·공공·R&D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 활용할 수 있는

28) 일반회계 - 보건의료데이터 통합활용 기술개발(R&D)(3031-595)(첨단의료지원관)

중개플랫폼 개발·구축 및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등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구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ISP 수립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

이러한 원칙은 R&D사업(비정보화 유형) 내에 포함된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이 사업 또한 원칙적으로 IS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25년 ISP 예산 3억 5,000만원을 편성하면서, 이와 함께 협의체 운영 등 3가지의 기반구축 예산도 편성하였음.

[2025년 중개 플랫폼 기반 구축과제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편성액
플랫폼	시스템 구축 ISP 수립	· 보건의료데이터 중개 플랫폼 구축 ISP	350
기반 구축 (기술 개발)	협의체 운영	· 데이터 보유기관(의료·공공기관), 정부 부처(과기부, 질병청 등) 협력체계 구축하여 세부 운영방안 마련 및 협업 추진	300
	메타데이터 변환 기술개발	· 기관 내 임상데이터를 메타데이터로 자동 변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배포(영상,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 등)	200
	연구자 편의 개선을 위한 생성형 AI 개발	· 기관별 데이터 추천, 심의 제출자료 안내, 연구계획서 작성 지원 등 생성형 AI 개발하여 연구자에게 제공	500
기타	간접비	· 직접비의 17% 이내로 산정	150
계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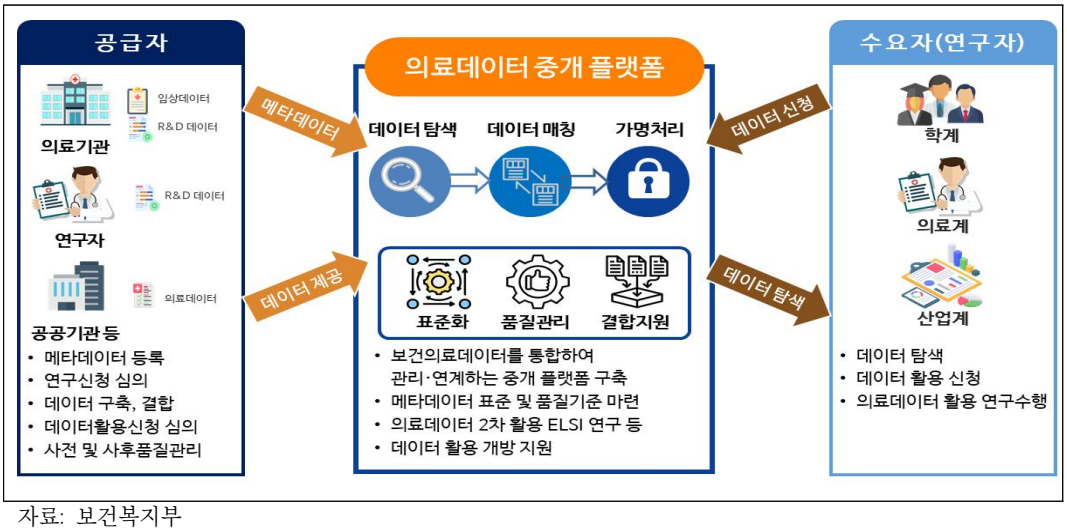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중개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편성된 ISP 외 기반구축 과제는 보건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과 의료기관, 공공기관 사전 협의를 위한 내용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ISP의 검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ISP와는 별도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른 세부과제의 경우 모두 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ISP가 수립되기 전에는 필요 데이터의 형태, 표준화, 품질관리 및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되기 어려워 플랫폼의 기술개발 방향이나 사용대상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ISP 수립을 통해 필요 데이터가 사전에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29)]

29) 예를 들면, ‘협의체 운영’ 과제의 경우 데이터 보유기관 간 어떤 데이터를 상호 공유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플랫폼에서 중개될 데이터가 ISP를 통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의료데이터 중개 플랫폼 구축(안)]



자료: 보건복지부

이 외에도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에서는 각 중앙관서는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안 요구에 앞서 ISP 최종산출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선행하고,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가 제출한 ISP 최종산출물을 기반으로 해당 사업 추진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즉, ISP의 궁극적인 목적은 ISP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인데, ISP 수립 결과에 따라 플랫폼 구축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사업 범위 변동으로 소요 예산 역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 사업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중개플랫폼의 구축·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하는 해당 과제들 수행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ISP 수립을 제외한 다른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ISP와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ISP를 수립하여 방향을 결정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가명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기업 등 민간영역의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또한, '메타데이터 변환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에도 플랫폼에 사용될 데이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변환방법을 사전에 결정하기 어렵고, ISP를 통해 플랫폼 구축의 방향과 주요 기능이 결정되어야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변환할 최적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공공기관(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일원화된 공공 플랫폼으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마련할 계획으로, 이는 개인정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노출 등 개인정보 침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임.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는데,[30] 동법 제28조의2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또는 공익적 기록보존' 등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31]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경우 각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또는 공익적 기록보존' 등 법률이 정한 제한된 목적에 한정해 가명정보를 처리하여 활용할 목적이라는 입장임.

다만, 보건의료데이터는 공공의 영역뿐만 아니라 보험사 등 민간영역에서 활용 니즈가 매우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이 사업으로 의료기관 내부의 데이터를 외부 연구자가 활용하는 경우 민간영역의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0)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1)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7.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가. 개 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은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R&D 추진을 통해 팬데믹, 초고령사회 진입,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205억 8,000만원(41.6%)이 증액된 700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32)]

[2025년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49,500	70,080	20,580	41.6

보건복지부는 총 사업비 1조 1,628억원(국비 9,918억원, 민간 1,170억원)을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투입하여 ① 5대 임무 중심 혁신적 R&D를 추진하고, ②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조성 과제를 추진하고자 함.

이 중 5대 임무는 ① 보건안보 확립, ② 미정복질환 극복, ③ 바이오헬스 혁신, ④ 복지·돌봄 개선, ⑤ 필수의료 확충임.

32) 일반회계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3031-557)(보건산업정책국)

※ 미국의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의료고등연구계획국)는 美 바이든 정부에서 스텔스 기술, 인터넷, 소형 위치정보시스템, mRNA 치료제와 같이 획기적 연구 성과를 달성한 국방부의 방위고등연구계획원(DARPA)을 벤치마킹하여 도전적으로 바이오 헬스 분야 연구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한 특별 기구임. 국민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암·감염병·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해 통상적 방법이 아닌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3월 국립보건원(NIH) 산하에 신설하였음.

[5대 임무별 중점 추진 과제]

임무 영역	목표 (예시)		과제(안)
	5년 이내	10년 이내	
❶보건안보 확립	100일내 백신 개발·생산	원인불명 감염병 5분내 신속 차단	개발·생산 플랫폼, 바이러스유전자 직접 억제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❷미정복질환 극복	10대 암 정확도 90% 조기 검진	암 발생률 50% 감소	맞춤형 암 예방 백신, 신경회로 표적 통증경감기술 개발
❸바이오헬스 혁신	거대 AI 활용 맞춤 의료	고가 의약품 가격 1/100	보건의료 초거대 AI 구축, 고가신약 생산기술 개발
❹복지·돌봄 개선	Aging in Place 실현	건강수명 73세 → 75세	IoT・로봇 기반 돌봄환경 조성, 근감소증 치료
❺필수의료 확충	디지털 기반 필수의료 고도화	지역 의료이용 95% 이상	응급, 소아, 분만, 수술, 외상 분야 디지털 융복합 기술 활용 혁신기술 개발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70,080백만원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임무중심 R&D) 1개 x 60,000백만원 x 12/12개월

* (신규) 10개 x 4,000백만원 x 6/12개월 = 20,000백만원 / (계속) 10개 x 4,000백만원 x 12/12개월 = 40,000백만원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기반 조성) 1개 x 10,080백만원 x 12/12개월

* (국제협력) 1개 x 150백만원 x 12/12개월 = 150백만원 / (조직운영) 1개 x 9,930백만원 x 12/12개월 = 9,930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2025년도 계속과제 중 10개 프로젝트의 경우 과제협약 체결 지연으로 2024년도 연구비의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 사업은 2024년 예산 편성시 품목지정형 연구과제로 총 10개의 프로젝트 수행을 계획하고, 신규과제임을 고려하여 6개월분의 과제비를 편성하였으나 현재 3개 과제 외 나머지 연구과제 협약 체결이 11월 예정인 상황임에도 2025년도 예산안에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3개의 프로젝트는 5대 임무 중 ① 보건안보, ②복지・돌봄 임무 분야에서 ▲백신

초장기 비축 기술 개발, ▲백신 탈집중화 생산시스템 구축, ▲근감소증 멀티모달(Multi-modal) 치료 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과제이며, 9월에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음.

7개의 프로젝트는 나머지 3개 임무분야인 ③ 미정복질환 극복, ④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⑤ 필수의료 혁신 분야로서, 현재 도전적 문제 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하는 PM을 8월에 선정하고 연구 기획 및 연구과제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연구기관 선정 등을 거쳐 11월에 연구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2024년 연구과제 협약 현황]

구분	2024년 편성 내역	협약 체결 내역(8월 말 기준)
지정공모형 (Top-down)	-	-
품목지정형 (Bottom-up)	10개 프로젝트 (국비 기준 200억원)	3개 프로젝트 체결('24.9월, 국비 기준 60억원) 7개 프로젝트 체결 예정('24.11월 예정, 국비 기준 140억원)
자유공모형 (Bottom-up)	-	-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경우 혁신·도전형 R&D사업으로 지정('24.3월)되었으며, 이 경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회계연도 일치 원칙에 대한 예외 적용을 명시하고 있고,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전체 과제 단가·수행기간 내에서 유연하게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과제라도 12개월분의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통상의 R&D 사업은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 운영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를 행정부 내부규정인 지침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아울러 이 분야 10개 프로젝트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2024년도 과제비의 이월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충북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업 집행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충북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은 글로벌 클린 화장품 시장 선재적 대응을 위한 원료, 생산, 포장의 전주기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및 기업지원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1억 8,000만원(△70.2%)이 감액된 5억원이 편성되었음.[33)]

[2025년도 충북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14,724	15,565	841	5.7
충북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1,680	500	△1,180	△70.2

이 사업은 지자체자본보조금(330-03)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 확대 및 위기극복을 위한 경쟁력 있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36억원(국비 70억원, 도비 28억원, 시비 28억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1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2025년도 충북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예산안(국비)]

ㅇ 충북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기반 구축 : 500백만원 * 2차년도 사업 계획에 따른 장비도입을 위한 사업비

[충북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국고 보조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안)	2026	계
장비비	1,680	500	4,820	7,000

자료: 보건복지부

33) 일반회계 -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3039-303)(보건산업정책국)

나. 검토의견

보건복지부는 클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 및 안정적인 기술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클린뷰티 시장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 구축사업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지상 2층(충북 오송, 부지면적 13,061㎡, 연면적 1,652㎡)의 시설로 2024년 실시설계, 2024.11월~2025.12월 까지 착공 및 준공을 거쳐 2026년 12월까지 장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2024년 현재 장비비로 16억 8,000만원을 기교부하였으며, 공사 2차년도인 2025년도 예산안에도 장비비를 보조하기 위한 예산 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추진 계획(2024.10월 기준)]

○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 실시설계 용역 : '24.5.~'24.10. ○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 착공 및 준공 : '24.11.~'25.12. *지상 2층(부지면적 13,061㎡, 연면적 1,652㎡) ○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 장비구축 : '24.6.~'26.12. *장비구축 109종(생화학 시험, 이화학분석 시험, 용기평가 시험 등)

자료: 보건복지부

이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2024.10.16.)된 상황으로 2024년 11월에 입찰 공고를 실시한 후 2025년 12월에서야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입찰공고(통상 40일), 낙찰자와의 협상 및 계약체결 등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준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이 사업이 현재 국내에는 클린화장품 인증기준이 별도로 없는 상황[34]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증기준 마련,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클린뷰티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하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34) 유럽 기준에서 요구하는 생분해성, 친환경 용기, ESG 경영 등의 기준 부재

9.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실집행현황을 고려한 감액 조정 필요

가. 개 요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은 노후화된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입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억 4,000만원(△16.9%) 감액된 105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35)]

[2025년도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12,685	10,545	△2,140	△16.9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994	4,006	2,012	100.9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7,391	5,038	△2,353	△31.8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3,300	1,500	△1,800	△54.5

35) 일반회계 -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3345-300)(정신건강정책관)

[2025년도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4,006백만원
- 증축: 908㎡*2,711,000원*5개소*50%*50%=3,077백만원
- 개보수/ 장비보강 등: 367㎡*698,000원*7개소*50%= 896백만원
- 계수조정: 33백만원
○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 5,038백만원
- 신축
* 서울: 834㎡x2,711,000원x1개소x30%x50%=339백만원, 지방: 834㎡x2,711,000원x3개소x30%x70%=1,424백만원
- 증축
* 서울: 417㎡x2,711,000원x2개소x50%x50%=565백만원, 지방: 417㎡x2,711,000원x4개소x50%x70%=1,583백만원
- 개보수/장비보강 등
* 서울: 208㎡x698,000원x6개소x50%=436백만원, 지방: 208㎡x698,000원x7개소x70%=711백만원
- 계수조정: △20백만원
○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1,500백만원
-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등 환경개선 지원 : 1,500백만원(30개소 × 100백만원 × 50%(국고보조율))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은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실집행현황을 고려한 적정 예산으로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노후화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신축,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 보강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36)]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시행주체 단위에서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실집행률이 61.3%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37)]

36) 국비보조율 50%(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서울),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70%(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최근 5년간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9	10,535	10,535	9,305	9,305	2,449	11,754	6,822	4,718	214	58.0
2020	10,535	10,535	11,642	11,642	4,718	16,360	8,582	7,559	223	52.4
2021	13,125	13,125	13,779	13,779	7,559	21,338	17,808	3,230	300	83.4
2022	11,489	11,489	11,454	11,454	3,230	14,684	7,213	7,352	118	49.1
2023	8,154	8,154	7,713	7,713	7,213	14,926	8,017	4,602	2,283	53.7
2024. 7월기준	12,685	12,685	9,179	9,179	4,602	13,781	2,453	-	-	19.3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사 원자재 값 상승 등에 따른 설계 내역 변경으로 공기 지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집행 개선을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및 집행 독려, 신축 등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 2개년 이상 보조금 분할 지급, 공사비 단가 현실화('22년 1,923천원/㎡ → '23년 2,582천원/㎡)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연례적인 대규모 이월 및 실집행 부진 문제는 지방비 매칭이 늦어지거나 설계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1년 이내 완공이 어려울 수 있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업 대상에 대하여 예산 편성시 개소당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일괄 편성함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모든 보조사업은 연차별 지원규모를 사전에 확정한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은 소규모 시설사업이라도 조사·설계 및 보상·공사 등의 주요단계를 나누어 당해연도 집행에 필요한 소요만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동 지침에서는 모든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소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업은 실집행부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임.

---

37)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서 이 사업의 지속적인 실집행 저조로 인한 과다 이월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이 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따라서 사업별로 연차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실집행현황을 고려한 예산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38]

38) 예를 들면, 개소별 전체 사업비 예산 편성 방식을 1차년도 설계비, 2차년도 공사비 등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10.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상담 횟수 보장을 위한 지원 기준 변경 등 사업운영 방식 변경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OECD 자살률 1위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상황에서 전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통한 정신질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1억 5,600만원(60.0%)이 증액된 457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39]

[2025년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7,249	50,830	3,581	7.6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28,589	45,745	17,156	60.0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1:1 대면)를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2026년 이후 일반 국민까지 확대할 예정임.[40]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45,745백만원 * 16만명 × 7.5만원 × 8회 × 국고보조율(67%) × 국가부담률(85%) × 집행계수 0.85

자료: 보건복지부

39) 일반회계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3345-332)(정신건강정책관)

40) (’24년) 8만명 → (’25년) 16만명 → (’26년) 26만명 → (’27년) 50만명

나. 검토의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대상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시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관련 서비스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지원 기준을 기간에서 횟수로 변경하는 등 사업운영 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이 사업의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 이 바우처를 한번 생성한 다음 120일이 지나면 바우처가 소멸되는 구조임.[41)]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경우 조속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가 수시로 생성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심리상담은 주 1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8회기를 기준으로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나 예상치 못한 변수를 고려하여 2배인 4개월로 바우처 사용기한을 정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은 단기간에 걸친 일회성 상담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많은 상담 기회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4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대상자 기준]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기간에 제한을 두는 운영방식으로 인해 상담 횟수가 제한되어 사용 불가능한 상담 횟수만큼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있음.

41) 예를 들면, 2025년 1월 서비스 신청 및 바우처를 발급한 후 3회 사용하였으나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서비스 지원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의뢰서를 다시 발급받아 재신청하더라도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음.

42)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심리상담 전문가의 의견은 심리상담사가 내담자의 상태변화를 잘 체크하고, 상담 방향과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주 1회가 적절하며, 예컨대 같은 5회기라도 5개월보다는 5주의 기간 동안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임.

따라서, 현행과 같이 바우처 사용기간에 구속되는 운영 방식은 사업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고, 편성된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사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 모니터링 결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등 예산상 편성된 상담 횟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11. 지역필수의사 근무 지원 사업(신규):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지역필수의사 근무 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전문의)가 장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충분한 수입과 정주여건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지역의료 역량·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11억 5,2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음.[43)]

[2025년도 지역필수의사 근무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	1,352	1,352	순증
지역필수의사 근무 지원	-	1,152	1,152	순증

이 사업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지역에서 장기근무하기로 (정부)·지자체와 계약한 필수의료분야 의사에게 지역수당을 월 400만원씩 지급하려는 것으로, 2025년에 4개의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지역필수의사 근무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96명 × 4백만원 × 6개월 × 50%(국고보조율) = 1,152백만원 주) 96명: 4개 시도, 시도별 3개 지역의료기관의 8개 필수진료과별 1명 지원 기준 필수진료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자료: 보건복지부

43) 일반회계 -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4333-354)(필수의료지원관)

나. 검토의견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증함으로써 필수지역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지역필수의사 근무 지원 사업은 전문의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의 하나로서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의해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수당 지급, 정주요건 등 지원이라는 유인책을 제공하려는 것임.[44)]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문의의 지역 정주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는데 자율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더하여 지자체 경상보조 및 공모방식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45)]

그러나 현재 고액 연봉에도 의사 채용이 어려운 지역의료의 현실과 최근 의정갈등으로 인해 전문의의 참여가 근본적으로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근무수당 지급이 전문의의 지역 필수의료기관 참여실적 제고에 효과가 있을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예컨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유사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공중보건장학제도[46)]가 시행되고 있으나 신청인원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를 참고하면, 단순 현금성 지원은 전문의의 지역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유인이 되기 어려워 극히 제한적인 효과를 낼 우려가 있음.

---

44) 주거 및 정착지원 등은 지자체 부담

45)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 추진할 예정으로 설명하고 있음.

46)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의대생・의전원생・간호대생 등에게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면허(복무 조건부) 취득 후 최소 2~5년간 도서・벽오지 등 의료 취약지역이나 감염병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등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생 등 선발 현황]

(단위: 명)

구분	의대생			간호대생		
	예산 편성 인원*	신청인원 (계속+신규 신청)	신규 선발 인원	예산 편성 인원*	신청인원 (계속+신규 신청)	신규 선발 인원
2019년	20	11	8	-	-	-
2020년	20	12	6	-	-	-
2021년	20	12	3	20	127	31
2022년	20	10	2	40	172	39
2023년	20	10	2	70	194	29
전체	100	55	21	130	493	99

주) 예산 편성 인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 수요 반영하여 선발
자료: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상호계약에 따라 필수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기반 사업의 경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 또는 종료될 수 있고, 지원자가 적을 경우 장·단기적 측면에서 취약지역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유사한 사례로 교육부의 공공임상교수제[47]의 경우 목표 배정 인원이 2년 사이에 약 80% 감축되는 등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배정인원에 비해 모자란 채용 인원 때문이었음.

[최근 3년간 공공임상교수제 배정 및 채용 현황]

(단위: 명)

연도	배정인원	채용인원	과부족
2022년	150	23	127
2023년	150	28	122
2024.8월	50	32	18

자료: 보건복지부

그럼에도 이 사업의 경우 지방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제한 및 건강 수준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증함으로써 필수지역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7)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로 채용돼 지방의료원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순환근무하며 필수의료 등을 담당하는 의사를 말하며, 계약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재임용이 가능하고, 구체적 직무범위와 근무기간, 순환근무방식 등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상호 협의해 결정함.

12.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수련수당 지급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완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적정 전문의 수급이 어려운 의료분야 전공의 등의 수련에 대한 수련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45억 3,000만원(1,247.8%)이 증액된 589억원이 편성되었음.[48)]

[2025년도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29,143	392,242	363,099	1245.9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4,370	58,900	54,530	1,247.8

보건복지부가 2025년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을 전공의의 경우 8개 필수과목[49)]으로 확대(220명→4,600명), 전임의는 소아 및 분만 분야 전공의로 확대(140명→300명)함에 따라 이 사업에는 전공의 수당 552억원, 전임의 수당 36억원 및 사업운영비 1억원이 편성되었음.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민간경상보조(320-01) : 58,900백만원

가. 전공의 수당 : 8과목 필수분야 전공의 4,600명 × 1백만원 × 12개월 × 100% = 55,200백만원

나. 전임의 수당 : 소아·분만 분야 전임의 300명 × 1백만원 × 12개월 × 100% = 3,600백만원

다. 사업운영비 : 행정인력 등 사업 운영지원, 연구용역 등 100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48) 일반회계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4331-300)(보건의료정책관)

49) 소아청소년과・내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수련보조수당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3년 국·공립대 흉부외과 등 이른바 기피 10개 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나, 응급의학을 제외한 다른 기피과목은 수련보조수당 지급에도 전공의 확보 효과가 미미하고 수급 불균형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2016년 3월 완전 폐지)되었음.

응급의학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의 경우에도 다른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2018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시작하여 2022년 완전 폐지되었음.

나. 검토의견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기피과목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대상을 확대 지급할 계획인데, 과거 지급되었던 국·공립대 수련보조수당이 낮은 효과성으로 인해 폐지된 점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필수의료 분야는 하혈 임신부의 병원 진료거부, 소아 환자의 구급차 사망 사건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 및 인프라 부족으로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50]

특히 정부가 수련보조수당의 대상을 기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서 8대 분야 전공의로 확대하려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전공의 확보가 어려운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고, 특히 2024년 하반기의 경우 의정갈등으로 인해 모든 분야의 전공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50) 「[사설] 내년 전문의 배출 576명도 안 돼...갈수록 위태로운 필수의료」(동아일보, 2024.10.15.)

[최근 4년간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 전공의 확보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1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총계	4,828 (4,304)	89.1	4,957 (4,491)	90.6	4,972 (4,563)	91.8	4,987 (4,504)	90.3	5,228 (39)	0.75
인턴	3,213 (3,000)	93.4	3,262 (3,160)	96.9	3,255 (3,187)	97.9	3,258 (3,069)	94.2	2,525 (15)	0.59
레지던트계	1,615 (1,304)	80.7	1,695 (1,331)	78.5	1,717 (1,376)	80.1	1,729 (1,435)	83.0	2,703 (24)	0.89
내과	609 (565)	92.8	676 (650)	96.2	635 (626)	98.6	651 (649)	99.7	735 (9)	1.2
소아 청소년과	212 (78)	36.8	207 (57)	27.5	208 (53)	25.5	207 (64)	30.9	553 (1)	0.2
신경과	89 (86)	96.6	94 (94)	100.0	99 (98)	99.0	111 (107)	96.4	136 (4)	2.9
외과	202 (162)	80.2	205 (137)	66.8	220 (149)	67.7	206 (179)	86.9	317 (4)	1.3
흉부외과	66 (27)	40.9	66 (23)	34.8	72 (40)	55.6	63 (30)	47.6	133 (-)	0.0
신경외과	97 (96)	99.0	101 (100)	99.0	106 (105)	99.1	108 (108)	100.0	161 (3)	1.9
산부인과	160 (125)	78.1	167 (115)	68.9	187 (145)	77.5	183 (130)	71.0	367 (2)	0.5
응급의학과	180 (165)	91.7	179 (155)	86.6	190 (160)	84.2	200 (168)	84.0	301 (1)	0.3

주1) 레지던트는 1년차에 한함

2) 의료계 집단행동 영향으로 예년보다 2024년 하반기 결원분 모집이 많았으나, 26개 전공과목 레지던트 확보율은 평균 1.1%임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정부는 2024년 소아의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재개한데 이어, 2025년도부터는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내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이른바 8개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해 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확대 지원할 예정임.

수련보조수당의 지급은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기피과목 전공의 등이 정부의 필수의료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유인책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51]

다만, 과거 국·공립 수련병원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이 예전에 정부 스스로 사업성과가 낮다고 평가하며 그 지급을 중단한 바가 있으므로, 그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정부는 이른바 8개 필수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비용을 보조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필수의료에 대해 통일된 개념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가 생명 또는 건강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전공과목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임.

51)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 의료이용 체계 정상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필수의료 지원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필수의료정책과 함께 수련수당 지원을 병행하여 필수의료분야의 인력 지원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임.

13.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사업(신규): 공제(보험)료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 마련 필요

가. 개 요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분야 부담 완화 및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한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50억 2,5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음.[52)]

[2025년도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	5,025	5,025	순증

‘의료배상공제’란「의료분쟁조정법」제45조제3항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한 보험성 상품임.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공제회는 회원들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운영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등 민간보험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음.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5,025백만원
- 병원급 필수의료분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30%): 3,537백만원
- 분만 수행 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30%): 863백만원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지원(30%): 625백만원
  * (필수의료전공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자료: 보건복지부

52) 일반회계 -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4337-301)(보건의료정책관)

나. 검토의견

필수의료분야 의료인에 대한 공제(보험)료 지원은 현재 임의가입 제도하에서 특정인에 대한 지원을 국가재정으로 집행하는 것이므로 「의료분쟁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당초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인(전문의·전공의)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책임보험(공제료)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가칭 ‘의료기관안전공제회’를 설립하고자 하였음.

당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책임보험·공제료 사업수행비를 의료기관안전공제회에 지급하고, 공제회는 의료기관(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필수의료분야 의료인에 대한 보험·공제료를 지원하는 내용이었음.[53]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표성 등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전제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단일의 공제회를 설립하도록 의료계와 논의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제료(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임.[54]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등에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공제 및 보험가입률이 낮고, 그로 인해 배상여력이 확보되지 않는 의료기관이 3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55]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건수 및 납입액]

구분		2021	2022	2023
의원급	가입건수(비율)	10,226(30.1%)	11,102(31.7%)	11,900(33.3%)
	납입액(천원)	17,684,086	19,831,544	22,235,654
병원급	가입건수(비율)	563(31.9%)	590(33.3%)	619(34.8%)
	납입액(천원)	10,146,823	10,347,510	10,537,537

자료: 보건복지부

53) 이는 「형사처벌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임.

54)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공제회가 회원들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운영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등 민간 보험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공제가입 대상자들의 단체가 주체가 되어 공제회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설명임.

55)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간보험사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경우, 2022년 가입건수는 13,167건으로 약 33%에 달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56] 지난 5년간 평균 조정신청금액이 1억 1,358만원에 달하는 등 의료분쟁 시 의료기관의 배상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험료의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들의 배상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주요 진료과목별 평균 조정 신청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내과	584	118	115	125	104	209
외과	87	96	95	87	115	96
정형외과	60	69	87	379	62	132
신경외과	121	126	147	192	119	141
심장혈관 흉부외과	128	146	229	129	111	149
산부인과	76	107	85	71	119	92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311) 입법영향분석」(2024.7.23.)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초 보건복지부는 가칭 '의료기관안전공제회'를 설립하고, 동 공제회를 통해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관련 법 개정 지연으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현행법 내에서 공제조합 규정을 활용하여 필수보험 공제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에 관한 사항을 의무가 아니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특정인에 대해 국가재정으로 공제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정책보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더욱이 공제회는 정부가 아닌 의료인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공제(보험) 사업을 위한 운영비 등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57]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공제료(보험료) 지원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5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311)」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4.7.23.)

57) 실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복지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제조합 운영 등과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음.

참고로, 이와 유사한 사례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및 「전통시장특별법」 등에서는 정부가 공제료 또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유사 정책보험·공제제도 현황]

구분	전통시장 화재공제	수산정책 보험	풍수해 보험	가축 재해보험
가입 대상	전통시장 내 점포 (소상공인)	어업인	일반인, 소상공인	농업인
보상 내용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 전액보상	①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사망 등의 재해 및 어선 사고로 발생한 손해 ②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 피해 ③ 어업인 질병보상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과 침수 보상 (최대 5,000만원)	풍해, 수해, 질병, 화재 손해에 대해 시가의 60~100%보상
지원 내용	총 보험료의 60% (지자체)	총 보험료의 50~70% (국가+지자체)	총 보험료의 최대 92% (국가+지자체)	총 보험료의 50~70% (국가+지자체)
총괄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근거 법령	「전통시장특별법」 제24조의2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풍수해보험법」 제7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운영 주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민간보험사(수협)	민간보험사 (DB손보, 삼성화재 등 5개사)	민간보험사 (농협, KB손보, DB손보 등 5개사)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5.) 참고 재작성

14. WPRO 전략사업 추진(ODA) 사업: 해외경상이전경비에서 국제부담금으로 비목 변경 필요

가. 개 요

‘WPRO 전략사업 추진(ODA)’ 사업은 서태평양지역 내 보건의료 취약국가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가 실시하는 만성질환, 건강증진, 보건시스템 강화와 관련한 사업분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같은 18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58)]

[2025년도 WPRO 전략사업 추진(ODA)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WPRO 전업 추진(ODA)	1,884	1,884	-	-

[WPRO 전략사업 추진(ODA)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사업분담금 지원: 1,884백만원
- WHO의 6개 주요 범주(Category) 중 만성질환과 건강증진, 보건시스템 강화 등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보건복지부 관련 전략사업 지원 : 1,884백만원
* ①감염성질환, ②만성질환, ③생애주기 건강증진, ④보건시스템, ⑤ 준비,감시,대응, ⑥기능 강화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WPRO 사업분담금의 경우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가 납부하는 경비인 점을 고려하여 국제부담금 비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현재 WPRO 사업분담금은 예산상 해외경상이전(340-01) 비목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음.

58) 일반회계 - WPRO 전략사업 추진(ODA)(7035-308)(국제협력관)

[WPRO 전략사업 추진(ODA) 사업 개요]

구분	WPRO 전략사업추진(ODA)
지원근거	보건복지부-WPRO ‘협력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19. 10. 갱신)
예산상 비목	해외경상이전(340-01)
2025년도 예산액	1,884백만원
사업내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시스템 강화, 서태평양지역 자살예방 강화 등 보건복지부 관련 11개 사업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해외경상이전(340-01) 비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에 해당함.

반면,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외국정부, 외국기관 등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부담금, 분담금, 회비 및 부대경비”는 국제부담금(340-02)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사업은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와 WPRO간 체결된 ‘협력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하여 지급되고 있고,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가 납부하는 경비임.

이를 고려하면, 이 사업 예산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59]상 국제기구 분담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WPRO 부담금이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담금의 성격에 부합하는 점과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고려하여 예산 비목을 국제부담금(340-02)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60]

59)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기구 분담금”이란 정부가 국제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비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60)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에서도 WPRO에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두 기관 모두 국제부담금(340-02)로 편성·집행하고 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 입>

15. 전년도세계잉여금(총괄):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적정 수준 편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전년도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로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중「국가재정법」제90조제8항에 의한 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세입 이입액을 의미함.

보건복지부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은 자체세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반영하고 있음.[61]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춘천병원	손익계정	1,292	2,078	786	60.8
	자본계정	100	86	△14	△14.0
나주병원	손익계정	1,450	1,929	479	33.0
	자본계정	123	39	△84	△68.3
부곡병원	손익계정	1,630	1,819	189	11.6
	자본계정	294	269	△25	△8.5
공주병원	손익계정	3,204	1,170	△2,034	△63.5
	자본계정	156	55	△101	△64.7
국립정신건강센터	손익계정	1,167	3,751	2,584	221.4
	자본계정	-	76	76	순증
국립재활원	손익계정	1,783	1,737	△46	△2.6
	자본계정	199	4,118	3,919	1,969.3

6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전년도세계잉여금(89-893)(국립정신건강센터)

나. 검토의견

보건복지부 소관 대부분의 책임운영기관에서 전년도세계잉여금을 과소계상하여 예산 대비 초과수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년도세계잉여금의 적정 수준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년도세계잉여금 세입 과목(89-893)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의 다음 연도 세입 이입액을 편성하는 비목으로,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전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세입수납액과 세출액 간의 결산상 잉여금을 예상하여 다음 연도 세입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보건복지부 소관 대부분의 책임운영기관에서 전년도세계잉여금을 과소계상하여 연례적으로 편성 예산 대비 초과수납이 발생하고 있음.

[2022~2023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연도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율 (B/A)
			본예산	추경(A)				
국립 재활원	2022	손익계정	4,256	4,256	4,256	4,793	4,793	112.6
		자본계정	487	487	487	777	777	159.5
	2023	손익계정	2,091	2,091	2,091	2,799	2,799	133.8
		자본계정	250	250	250	1,342	1,342	536.8
국립 정신 건강 센터	2022	손익계정	7,146	7,146	7,146	13,121	13,121	183.6
		자본계정	4	4	4	11	11	275.0
	2023	손익계정	7,093	7,093	7,093	11,414	11,414	160.9
		자본계정	11	11	11	19	19	172.7
국립 공주 병원	2022	손익계정	441	441	441	3,093	3,093	701.4
		자본계정	28	28	28	156	156	557.1
	2023	손익계정	2,644	2,644	2,644	6,070	6,070	229.6
		자본계정	156	156	156	188	188	120.5
국립 나주 병원	2022	손익계정	606	606	606	2,005	2,005	330.9
		자본계정	47	47	47	152	152	324.3
	2023	손익계정	864	864	864	3,224	3,224	373.2
		자본계정	123	123	123	125	125	101.6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연도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율 (B/A)
			본예산	추경(A)				
국립 부곡 병원	2022	손익계정	876	876	876	3,129	3,129	357.2
		자본계정	51	51	51	232	232	454.9
	2023	손익계정	2,132	2,132	2,132	4,162	4,162	195.2
		자본계정	181	181	181	475	475	262.4
국립 춘천 병원	2022	손익계정	604	604	604	4,076	4,076	674.9
		자본계정	22	22	22	45	45	203.4
	2023	손익계정	2,743	2,743	2,743	5,338	5,338	194.6
		자본계정	45	45	45	145	145	322.9

자료: 보건복지부

한편, 책임운영기관들의 전년도세계잉여금 세입 산출 산식을 살펴보면, 세계잉여금의 구성 요소별 산출액을 합한 금액을 계상하고 있으나 각 요소별 예산 편성액과 결산액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2024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산출내역]

세계잉여금 구성
세계잉여금 = 총세입-총세출-세출이월액 = 초과세입+세출불용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3년 순잉여금 + 당해년도 이입금 + 초과수입 전망액 + 지출불용 전망액 * '23년 순잉여금 = '22년 결산 세계잉여금 - '23년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액

특히, '초과수입'의 경우 소극적으로 전망함에 따라 과도하게 과소추계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전년도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액과 결산액 간 괴리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2~2023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산출 요인별 편성·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기관명	순잉여금		초과수입		지출불용	
		편성	결산	편성	결산	편성	결산
2022	국립재활원	2,279	2,279	175	860	2,289	2,431
	국립정신건강센터	5,216	5,216	△754	5,665	2,688	2,251
	국립공주병원	1,299	1,299	△1,967	△264	1,137	2,221
	국립나주병원	531	531	△694	△129	816	1,755
	국립부곡병원	2,433	2,433	△1,186	△32	700	2,259
	국립춘천병원	2,476	2,476	△2,275	△192	425	1,837
2023	국립재활원	826	826	△27	1,019	2,210	2,296
	국립정신건강센터	5,780	5,780	△155	2,237	1,479	3,416
	국립공주병원	2,780	2,780	△692	1,378	712	2,124
	국립나주병원	1,504	1,504	△2,027	△423	1,510	2,268
	국립부곡병원	2,324	2,324	△1,200	△1,785	800	1,648
	국립춘천병원	3,495	3,495	△1,346	25	639	1,963

주) 편성: 해당연도 예산안 편성시 산출 내역 상 금액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대부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나 지난 수납실적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62)]

특히,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과소계상은 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 사업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여유재원으로 축적될 수 있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63)] 전년도세계잉여금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역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2)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2~2023년의 경우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예상치 못한 손실보상금 수입으로 다소 과소편성되었으나, 현재 국립병원은 전문의 결원 지속으로 사업 수입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어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임.

6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서는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예산액 대비 과다징수는 수입을 적게 계상하고 지출을 크게 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태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국민건강증진기금】

<지 출>

16.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 총액계상 형태의 예산편성 지양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사례관리 제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허브 기관으로 역할 정립, 치매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64억 7,000만원(△9.8%)이 감액된 1,505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64)]

[2025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치매관리체계구축	191,989	191,989	178,235	△13,754	△7.2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67,047	167,047	150,577	△16,470	△9.8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서울 50%, 지방 80%)으로 현재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접촉한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맞춤 프로그램 이용 안내를 실시하고 있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150,577백만원
- (인건비) 3,895명 × 평균 인건비 약 40.7백만원 × 평균보조율 약 76% = 120,436백만원
- (사업비) 256개소 × 154.9백만원 × 평균보조율 약 76% = 30,141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64) 국민건강증진기금 - 치매관리체계구축(2234-300)(노인정책관)

나. 검토의견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일반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세부내역 없이 총액계상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사업은 전국 256개소의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임.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문제 관련 상담 후 관련 정보 제공, 치매조기검진 안내 또는 치매 확진자 등록·관리 후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각종 치매지원서비스 지원 및 자원 연계
○ (조기검진 및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 대상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진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진 및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인지강화교실 운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 대상, '두근두근 뇌운동' 등 인지훈련 프로그램 제공
○ (쉼터 프로그램 운영)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대상 ① 전문적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돌봄 제공, ② 치매환자가 쉼터를 방문함으로써 사회적 접촉 및 교류, ③ 낮시간 동안 경증치매환자를 보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보호자 프로그램) 가족카페 등 자조모임, 가족교실 제공, 미술, 운동, 원예, 나들이 등 가족대상 힐링 프로그램 제공
○ (치매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 치매예방교실 등 운영하여 치매예방 관련 교육 및 인지훈련프로그램 등 실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시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한도로 지원
○ (조호물품 제공) 인지강화/인지재활 용품, 미끄럼방지 용품(매트 및 양말, 테이프) 등

자료: 보건복지부

「국가재정법」 제37조에서는 국가 예산은 그 사업목적과 내용에 따라 세부내용을 정하여 편성하되, 예외적으로 사전에 그 세부내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총액계상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65]

총액계상이 가능한 사업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센터에 대한 보조금지원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으로 편성할 수 없음.[66]

그러나 이 사업은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하고 있긴 하나, 예산 편성시 일괄적으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고, 통합 편성된 총액범위에서 세부내역을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및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예산 편성 시 각 지역별·센터별 사업 규모나 실적 수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액계상사업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에도 지역별·센터별 필요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아울러 「보조금법」 제4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중앙정부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지자체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을 검토하고 적정한 보조금 규모의 판단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업과 같은 예산편성 방식은 동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단일 내역사업으로 일괄 편성하고 이·전용 절차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센터별 사업량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할 수 있음.

또한, 센터별 사업량 및 성과분석을 어렵게 하여 성과중심 예산을 지향하는 「국가

65) 총액계상사업이란 주로 사업시행지가 각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거나,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사업 등 세부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곤란한 사업을 의미하며 예산수요자가 집행단계에서 수요를 정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66)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2조(총액계상사업)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로보수 사업
2.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3.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4.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 수리부속지원 사업
6.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의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재정법」 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보건복지부는 각 지역별·센터별 지원 수요 및 실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교부함으로써 이 사업이 총액 형태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1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지자체에 대한 면밀한 지원 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900만원(△3.5%)이 감액된 5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67)]

[2025년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증감	
	당초 (A)	수정	계획안 (B)	(B-A)	(B-A)/A
모자보건사업	24,450	24,450	27,643	3,193	13.1
난임부부 지원	3,576	3,576	4,430	854	23.9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550	550	531	△19	△3.5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 등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68)] 비용 회당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67) 국민건강증진기금 - 모자보건사업(2535-302)(인구아동정책관)

68)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이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미리 냉동해 둔 난자를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시술을 의미함.

[2025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531백만원 - (산출) 530명 x 1백만원 x 2회 x 50%(보조율) ・ (인원) '22년 난자냉동 인원 8,015명, 3년('20~'22년) 연평균증감률 35.3% * 추계: '23년 10,844명 → '24년 14,672명 → '25년 17,700명 ・ (이용률) 냉동난자 실 이용률 3~8% (싱가포르 8%, 그 외 해외 3~5%) ・ (실 지원인원) (당해연도 냉동난자 누적인원 - 전년도 지원 누적인원) x 이용률(3%) * 추계 : '24년 500명 → '25년 531명 → '26년 806명 → '27년 1,090명 ・ (지원액)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시, 1회당 300만원 내외(본인 부담액 90~150만원)으로, 냉동난자 사용 지원의 경우 배란촉진 및 난자채취 비용이 없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와의 역차별 등을 고려하여 1회당 100만원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통한 수혜인원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지원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전국 사업(17개 광역, 228개 기초)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 예산 집행절차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시・도별로 예산을 배정한 후 광역시・도에서는 시・군・구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개요]

○ (목적) 가임력 보존 목적 냉동 난자 사용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사업주체 및 지원조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경상보조(보조율 50%) ○ (대상) 난임 진단(1년 기간 필요) 전이라도 냉동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내용)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 (지원금액 및 횟수) 회당 1백만원 지원, 부부당 2회까지 * '25년 난자냉동 인원 추정(17,700명) x 이용률(3%) x 1백만원 × 2회 × 50%(보조율)

자료: 보건복지부

이 사업의 2025년도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수혜 대상이 약 530명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사업 대상 지자체의 수가 228개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지역에 수혜인원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어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원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사업 시행 이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지자체별 실적]

(단위: 건, 원)

시도	시술건수	지원금액	시도	시술건수	지원금액
총계	43	15,173,090	경기	15	4,956,700
서울	14	5,163,160	강원	-	-
부산	1	343,000	충북	1	415,030
대구	1	377,000	충남	1	377,000
인천	3	930,000	전북	-	-
광주	1	450,000	전남	-	-
대전	-	-	경북	2	754,000
울산	1	377,000	경남	2	686,800
세종	1	343,400	제주	-	-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9월 중에 시·도별로 임시통보하였고, 향후 광역시·도별 지원 현황 및 예산 집행 실적 등을 확인한 후 필요시 광역시·도별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며, 시·도에서 시·군·구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접수할 계획인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 사업은 2024년 4월 전국 시행 후 현재까지 지원금 지원 인원이 86명에 불과한데 이 사업을 통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 홍보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민연금기금】

<지 출>

18. 국민연금 급여지급: 급여 추계 정확성 제고를 통한 기금운용 계획 변경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5조 403억 2,000만원(11.6%)이 증액된 48조 4,132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69)]

[2025년도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당초 (A)	수정		(B-A)	(B-A)/A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	43,372,936	43,372,936	48,413,256	5,040,320	11.6
노령연금지급금	37,694,236	37,694,236	42,758,400	5,064,164	13.4
장애연금지급금	506,000	506,000	538,560	32,560	6.4
유족연금지급금	3,774,500	3,774,500	3,668,808	△105,692	△2.8
반환일시금 등 지급금	1,398,200	1,398,200	1,447,488	49,288	3.5

내역사업인 **‘노령연금지급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63세 도달 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5조 641억 6,400만원(13.4%) 증액된 42조 7,58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수급자가 598만명에서 655만명으로 57만명 증가, 월평균 급여액이 54만 4,000원으로 1만 9,000원 증가한데 따른 것임.

내역사업인 **‘장애연금지급금’**은 가입자(였던 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 발생 시 장애등급(1~4급)에 따른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월 평균 급여액이 52만

69)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 급여지급(7631-401)(연금정책관)

8,000원으로 2만 7,000원(5.4%) 증액됨에 따라,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25억 6,000만원(6.4%) 증액된 5,38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내역사업인 **‘유족연금지급금’**은 수급권자(노령·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056억 9,200만원(△2.8%)이 감액된 3조 6,688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수급자가 106만 9,000명으로 전년대비 5만 9,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월평균 급여액이 31만 2,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2만 6,000원이 감소된데 따른 것임.

내역사업인 **‘반환일시금 등 지급금’**은 가입자(였던 자)가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반환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사망일시금)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평균급여액이 562만 7,000원에서 646만 2,000원으로 83만 5,000원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92억 8,800만원(3.5%) 증액된 1조 4,474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민연금 급여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노령연금 : 42,758,400백만원
· 6,550천명(수급자) × 544천원(월평균급여액) × 12개월 = 42,758,400백만원
○ 장애연금 : 538,560백만원
· 장애연금 : 81,618명(수급자) × 479천원(월평균급여액) × 12개월 = 469,200백만원
· 장애일시금 : 3,396명(수급자) × 20,424,028원(평균급여액) = 69,360백만원
○ 유족연금 : 3,668,808백만원
· 1,069천명(수급자) × 286천원(월평균급여액) × 12개월 = 3,668,808백만원
○ 반환일시금 : 1,447,488백만원
· 반환일시금 : 205,534명(수급자) × 6,572,090원(평균급여액) = 1,350,788백만원
· 사망일시금 : 18,466명(수급자) × 5,236,651원(평균급여액) = 96,700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의 경우 사전 예측 미흡으로 인해 당초 예상하지 않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최근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소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기금의 최근 3년간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전체 기금운용규모 대비 0.02%인 292억 9,100만원으로 다소 적은 규모였으나, 2022년도에는 2.0%인 3조 5,522억 7,300만원, 2023년도에는 전체 기금운용규모 대비 1.5%인 2조 8,739억 1,700만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였음.

[연도별(2019~2023년)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기금운용규모(A)[1]	변경 내역			변경률 (B/A)
		변경 증액	변경 감액	총 변경액(B)	
2019	145,417,602	28,845	△28,845	28,845	0.02
2020	164,073,364	12,553	△12,553	12,553	0.008
2021	191,246,715	29,291	△29,291	29,291	0.02
2022	175,235,042	3,552,273	△3,552,273	3,552,273	2.0
2023	190,638,590	2,873,917	△2,873,917	2,873,917	1.5

주) 결산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전체적으로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국회 제출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 변경률의 경우 국민연금기금 변경률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2022년도 계획액 대비 11.5%인 3조 5,188억 3,100만원, 2023년도 계획액 대비 7.9%인 2조 8,571억 8,100만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였음.

[연도별(2019~2023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급여지급 사업 운용규모(A)	변경 내역			변경률 (B/A)
		변경 증액	변경 감액	총 변경액(B)	
2019	23,019,300	-	-	-	-
2020	26,603,440	-	△1,529	△1,529	0.01
2021	29,172,591	-	-	-	-
2022	30,608,472	3,518,831	-	3,518,831	11.5
2023	36,228,728	2,857,181	-	2,857,181	7.9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 계획안의 경우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7조 1,442억 800만원(19.7%) 증액된 43조 3,72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도 계획안으로 2024년 대비 5조 403억 2,000만원(11.6%) 증액된 48조 4,132억 5,6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임.

다만, 2024년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74.5%(32조 3,184억원 집행)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최근 4년간(2020~2023)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20	26,603,440	26,601,911	-	26,601,911	25,654,071	96.4	96.4	-	947,840
2021	29,172,591	29,172,591	-	29,172,591	29,136,791	99.9	99.9	-	35,800
2022	30,608,472	34,127,303	-	34,127,303	34,020,076	99.7	99.7	-	107,227
2023	36,228,728	39,085,909	-	39,085,909	39,040,227	99.9	99.9	-	45,682
2024[1)]	43,372,936	43,372,936	-	43,372,936	32,318,386	74.5	74.5	-	-

주1) 2024년 9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한편,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 계획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정부(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하는 예산소요가 실제 결산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 차원의 계획안 자체의 추계가 미흡한 편임.

이는 기초자료(수급자 수, 물가 상승률 및 평균 소득 월액 등)에 대한 면밀한 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의 부처안 대비 정부안의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현액[1)]	**26,601,911**	**29,172,591**	**34,127,303**	**39,085,909**	**43,372,936**
공단안	26,290,500	28,321,100	33,230,300	37,897,600	45,116,500
부처안	27,003,440	29,511,643	31,078,333	36,228,728	43,372,936
정부안	27,003,440	29,511,643	30,908,472	36,228,728	43,372,936

주1) 각 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변경된 예산
자료: 보건복지부

기금운용계획 변경은「국가재정법」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고 있듯

이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와 같은 한정적인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70]

따라서 사전 예측 미흡으로 인한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사전 예측을 통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바, 향후 보건복지부는 예산 소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에서는 2025년 수급자의 경우 792만 7,714명, 급여액 소요는 51조 9,5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71]

70)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71) 2024년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에 따르면, 2024년 수급자의 경우 732만 4,341명, 급여액 소요로 45조 1,165억원을 추계하였으나, 2024년도 계획액은 이에 못 미치는 43조 3,729억원을 편성하였음.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 따른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단위: 백만원)

구분			총계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애일시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2022 전망 ('21~'25)	2024	수급자	6,993,478	5,659,618	1,032,188	87,650	3,173	198,865	11,984
		급여액	402,946	352,206	33,904	4,713	459	11,076	588
	2025	수급자	7,427,329	6,033,175	1,088,361	90,151	3,193	200,654	11,795
		급여액	446.570	392,254	36,837	4,940	465	11,476	598
2023 전망 ('22~'26)	2024	수급자	7,094,683	5,759,762	1,024,119	84,758	3,186	211,027	11,831
		급여액	424,035	371,354	35,254	4,592	485	11,757	593
	2025	수급자	7,544,341	6,146,953	1,080,381	87,535	3,212	214,581	11,679
		급여액	471,180	414,469	38,382	4,872	489	12,355	613
2024 전망 ('23~'27)	2024	수급자	7,324,341	5,981,988	1,009,756	80,981	3,133	232,900	15,583
		급여액	451,165	394,378	37,745	4,465	595	13,227	755
	2025	수급자	7,899,378	6,499,472	1,060,496	84,217	3,162	236,769	15,262
		급여액	515,756	454,801	40,863	4,830	604	13,884	774
2025 전망 ('24~'28)	2024	수급자	7,357,515	6,004,756	1,053,058	77,834	3,315	200,318	18,234
		급여액	451,980	394,501	38,555	4,304	666	13,054	900
	2025	수급자	7,927,714	6,549,726	1,068,586	81,618	3,396	205,922	18,466
		급여액	519,564	457,747	41,928	4,692	697	13,533	967

자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수입은 428억원으로, 전년 대비 53억원(14.0%) 증가함.[1)]

[202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376	428	53	14.0
총수입	376	428	53	14.0

202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지출은 7,489억원으로 전년 대비 307억원(4.3%) 증가함

문의 : 민승환 예산결산조사관 genmin80@assembly.go.kr (02-6788-569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를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7,182	7,489	307	4.3
총지출	7,182	7,489	307	4.3

나. 예산안

202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28억원으로 전년 대비 53억원(14.0%) 증가함.

[202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76	427	51	13.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0.2	0.2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1.6	1.6	순증
합 계	376	428	53	14.0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489억원으로 전년 대비 307억원(4.3%) 증가함.

[202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7,144	7,451	307	4.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8	38	-	-
합 계	7,182	7,489	307	4.3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5개(84억 3,6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화장품 글로벌 규제대응 안전성평가 기술개발(R&D)’ 사업은 화장품 글로벌 안전규제에 대응 가능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8억원이 편성되었음.

‘백신 품질관리 동물대체 평가기술 기반 구축(R&D)’ 사업은 품목 허가된 보툴리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의 출하승인에 필요한 품질관리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8억 3,800원이 편성되었음.

‘한미 차세대 항암제 평가 기술개발 국제 공동연구(R&D)’ 사업은 한미(韓美)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합성 펩타이드, mRNA 등을 이용한 개인맞춤형 항암백신의 면역독성 등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8억원이 편성되었음.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R&D)’ 사업은 세포·유전자치료제, 첨단·디지털 의료기기, 공중보건 위기대응 백신 등 국가 차원의 제품화 지원이 필요한 바이오헬스 의료제품 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제품화 규제대응 전략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에 따라 제품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제품화 지원을 위한 규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새로운 제품군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2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202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화장품 글로벌 규제대응 안전성평가 기술개발(R&D)	1,800
2	백신 품질관리 동물대체 평가기술 기반 구축(R&D)	1,838
3	한미 차세대 항암제 평가 기술개발 국제 공동연구(R&D)	1,800
4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R&D)	750
5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	2,248
총지출		8,436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사업, ‘컴퓨터모델링 기반 의료기기 평가체계 구축(R&D)’사업, ‘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 사업 등 총 12개임.[3)]

[202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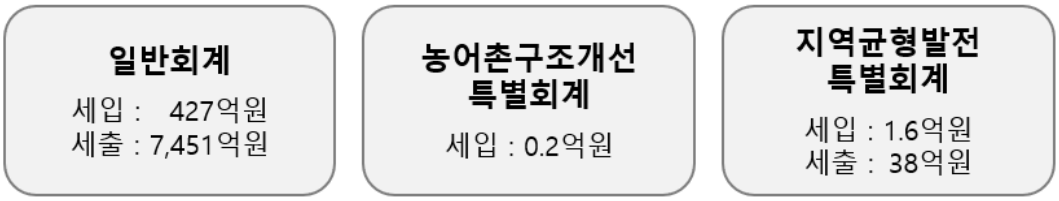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수입식품 안전관리	5,617	8,023	2,406	42.8
2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1,358	2,133	775	57.1
3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3,330	4,541	1,211	36.4
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13,658	21,095	7,437	54.5
5	컴퓨터모델링 기반 의료기기 평가체계 구축(R&D)	3,742	6,642	2,900	77.5
6	신기술 적용식품(푸드테크) 안전기술 지원(R&D)	1,614	2,452	838	51.9
7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R&D)	7,500	10,000	2,500	33.3
8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R&D)	2,655	3,540	885	33.3
9	혁신 의료제품 규제과학 기술개발 및 규제지원(R&D)	3,000	4,750	1,750	58.3
10	식품관리운영	1,438	2,285	847	58.9
11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430	584	154	35.8
12	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	21,896	28,567	6,671	30.5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특히 ISP 수립 결과에 따라 의약품 안전정보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첨가물분과 한·중 공동 개최와 APEC 정상회의 식음료 안전대책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202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수행중인 HACCP 인증 업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자체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수수료를 세입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재정운용의 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둘째,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신규 편성된 ‘정부부처 요청 의약품 안정공급 선도자금’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회전자금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신속간편검사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신규과제임에도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취지에 부합하게 회계연도 불일치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식문화 개선지원 사업(신규): 전·폐업 이행계획서 수리결과를 반영한 사업비 편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은 개식용 관련 업계의 전업 지원을 위한 메뉴판, 간판 교체 등 비용 지원 및 원활한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한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6억 1,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

[2025년도 식문화 개선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3,312	3,983	671	20.3
식문화 개선지원	-	618	618	순증

이 사업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라 함)의 제정 및 공포('24.2.6.)에 따라 2025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임.

「개식용종식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을 규정하고

1) 일반회계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1031-300)(식품안전정책국)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사육농장주, 개식용도축업자,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의 폐업·전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2)]

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식용 종식 이행 과정에서 전업이 불가피한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의 전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7년 2월까지 메뉴·취급 식육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 등 최대 250만원(국고: 50%, 지자체: 50%)을 지원할 예정임.

[2025년 식문화 개선지원 사업 세부내역]

ㅇ 일반용역비(210-14) : 100,000천원
가. 식품업체 등 교육 지원(100,000천원)
· 전업 업소 안전관리 컨설팅 : 100,000천원
ㅇ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518,000천원
가. 유통상인 및 음식점 전업 지원(518,000천원)
· 간판, 메뉴판, 광고물 등 교체 : 414개소×2,500천원×5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검토의견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전업 지원 대상 규모(414개소)의 경우 명확한 수요조사를 거쳐 산출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예산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의 메뉴·취급 식육 종류 변경 시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2025~2026년 동안 매년 414개소(각 10%), 2027년에 3,312개소(80%)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2)「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년 간판·메뉴판 교체 등 전업 지원 내역]

○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을 통한 전업 시 간판, 메뉴판 교체 등 1개소당 최대 250만원 범위 내 지원 * 2025년 지원 상세내용 -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 200만원(가로 4m×세로 1m) × 414개소* - 메뉴판, 창문 이용 광고물** 교체: 50만원 × 414개소 * 연차별 지원대상: ('25) 414개소, ('26) 414개소, ('27) 3,312개소 **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또는 표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식용종식법」은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유통 등을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유통업자 및 음식점은 유예기간인 2027년 2월 내에 전업을 완료해야 함.

정부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개식용종식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면서 유통업·음식점의 경우 다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도축업자 보다 메뉴 및 취급 축종 변경 등을 통한 전업 난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겸업 비율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전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음.[3)4)]

지원대상 규모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도 부처 예산안 작성 당시 전·폐업 비율을 가취합한 결과 2025년 10%, 2026년 10%, 2027년 80%의 업체가 전·폐업을 희망할 것으로 확인되어 최소한의 비율인 10%(414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유통·식품접객업 이행계획서 수리결과('24.9.) 2024년~2025년 식문화 개선지원(전업) 대상 업체수는 272개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취합한 414개소 대비 142개소(34.3%)가 적음.[5)]

---

3) 사육업·도축업은 전 · 폐업 난도가 비교적 높고, 겸업 비율이 낮으며, 일정 규모 전문시설 조성 필요 등 감안하여 폐업지원 중심 접근

4)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유통업의 경우 총 1,788개소로 모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타 축산물 등 병행 취급 비중이 90.9%에 달하고 있고, 전업 희망 비율이 7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음식점의 경우 총 2,352개소인데 모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개고기 외 다른 메뉴를 함께 취급하는 겸업 비중이 91.8%로 상당히 높고, 전업 희망 비율이 80.9%에 달할 정도로 전업에 대한 현장 부담감이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음.

5) 특히, 이행계획서상 2024~2025년 전업 희망 272개소 중 207개소는 2024년에 전업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2025년 전업희망 업소는 65개에 불과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도 예산에 전업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2025년도에 일괄 지원한다는 계획임.

[개식용 유통·식품접객업 전·폐업 이행계획 접수 결과(2024년 9월 기준)]

(단위: 개소)

업종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미정
식품접객업		전업	106	39	175	1,581	1
		폐업	39	20	63	328	-
		계	145	59	238	1,909	1
유통상인	건강원	전업	94	24	82	1,043	1
		폐업	5	10	18	48	2
		계	99	34	100	1,091	3
	개고기	전업	6	2	25	127	1
		폐업	12	4	51	182	1
		계	18	6	76	309	2
	생축	전업	1	-	1	13	-
		폐업	2	1	9	23	-
		계	3	1	10	36	-
합계		**전업**	**207**	**65**	**283**	**2,764**	**3**
		폐업	58	35	141	581	3
		계	265	100	424	3,345	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가 전·폐업 이행계획을 2025년 2월까지 수정할 수 있고, 조속한 개식용 종식을 위해 전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므로 최소한의 비율인 10%(414개소)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행계획서가 2025년 2월까지 수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폐업희망자가 전업희망자로 변경되거나, 2026~2027년 전업희망자가 전업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전업희망자가 폐업 희망으로 변경하거나 2024~2025년 전업희망자가 전업시점을 더 늦출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측면도 있으므로,[6] 현재 이행계획서 결과만을 바탕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2024~2025년 폐업희망자가 전부 전업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365개소에 불과해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예산 편성상 전업 지원 대상 업소 수는 실제 업자에 대해 서면으로 실시한 수요조사가 아니라 부처의 예산안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이행계획을 가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점을 고려하면,

6)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다수 업계는 유예기간(~2027.2.)까지 운영 지속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낮은 전업 난도로 인해 오히려 정부의 개식용종식 정책의 추진 상황을 관망한 후 전업 여부를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정확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정 예산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HACCP제도 활성화 사업: HACCP인증 수수료의 법적근거 마련 등 재정운용 체계의 변경 필요성 등

가. 개 요

‘HACCP제도 활성화’ 사업은 HACCP 인증지원 및 확대, 기존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HACCP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안전한 식품의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5,200만원(△3.9%) 감소한 62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7)]

[2025년도 HACCP제도 활성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HACCP제도 활성화	6,520	6,268	△252	△3.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023년 20,860건의 HACCP 인증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44억 3,9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고, 징수된 수수료는 자체수입으로 활용하여 HACCP 인증업무 및 관련 비용에 42억 9,800만원을 사용하였음.

[HACCP인증 업무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인증건수	수수료 수입	지출
2021년	17,628	3,942,945	3,942,945
2022년	18,355	3,695,429	3,695,429
2023년	20,860	4,439,000	4,297,946

주) 인증건수: 인증심사 및 연장심사, 인증변경 등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7) 일반회계 - HACCP제도 활성화(1032-300)(식품안전정책국)

나. 검토의견

첫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 인증 업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직접 자체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재정운용 체계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HACCP 인증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근거법'이라 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인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근거법 상 HACCP 인증 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총리령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HACCP인증 수수료 현황]

구분	대상 업종	인증심사	연장심사	변경 인증심사
식품	모든 업종 (식품유형별 또는 업소별 부과)	200천원	200천원	100천원
축산물	업소 규모별 부과	330 ~ 900천원	320 ~ 870천원	100천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함)은 납부된 수수료를 「국가계약법」 제2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개산계약한 후 해당 위·수탁업무에 활용한 뒤 남은 잔액에 대해 반납하고 있음.

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인증원의 운영재원을 정부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있고,[8] 근거법에서 수수료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17조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국고로 납입하게 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8)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운영 재원) 인증원은 정부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국가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수입은 국가에,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수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한 단체에 수수료를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9)]

예를 들어 ‘어선수수료’의 경우 「어선법」 제39조제4항에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을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하도록 명문 규정을 둠으로써 수입의 직접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수수료를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귀속되도록 규정한 입법례]

「어선법」
제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재측정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1. ~ 15. (생 략)
②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자료: 「법제기준과 실제」(국회 법제실, 2024)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HACCP 수수료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인증원장에게 HACCP 인증 수수료에 대한 징수 권한만이 부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징수 권한과는 별개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 수입까지 인증원에 귀속시킨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증원과 「국가계약법」 제23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 상 사업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자체수입을 사용 후 남은 잔액에 대해 반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10)]

9)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및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10)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3조(자체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인증원”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는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개산계약은 계약금액 결정방식에 따른 계약의 한 유형인데, 이는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할 경우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인바, 이를 HACCP 수입금의 직접 사용에 대한 근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따라서 HACCP 인증 수수료의 경우 인증 업무 등의 필요 경비에 직접 충당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입으로 편성하는 방안 등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재정운용 체계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르면,[11] 기본적으로 연 1회 이상 HACCP 인증 업체의 HACCP 준수 여부를 서류검토 및 자체평가를 통해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평가를 통해

---

② “인증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자체수입금은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제2조에 따른 위·수탁업무 수행에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정산 및 반납) ① “인증원”은 위탁사업비 및 자체수입금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총액 기준의 정산서를 작성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70일까지 “식약처”에 위탁사업비 잔액, 자체수입금 잔액,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기한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식약처”와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인증원”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위탁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하고, 위탁사업비 잔액과 수입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1)「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5조(조사 · 평가의 범위와 주기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6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 여부를 별표4에 따라 연 1회 이상(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날이 속한 해당연도는 정기 조사 ·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해당 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 ·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제외할 수 있다)의 방법으로 정기 조사 · 평가할 수 있으며, 조사 · 평가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주요안전조항 검증 등에 필요한 경우 수거 및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선행요건 중 회수프로그램 관리를 운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조사 · 평가 대상업소(농장은 제외한다)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불시에 조사 ·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HACCP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부적합한 경우 재평가를 통해 개선여부를 추적·관리하여야 함.

2023년 기준 HACCP 인증 업체수는 19,793개소로 최근 10년간 242.7%가 증가하였고,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HACCP 의무화로 인증업체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최근 10년간 HACCP 인증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전체	5,760	6,870	8,020	9,258	10,427	11,549	13,994	16,743	18,606	19,739
식품	3,029	3,734	4,358	5,031	5,762	6,566	7,685	9,251	10,356	10,741
축산물	2,731	3,136	3,662	4,227	4,665	4,983	6,309	7,492	8,250	8,99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산업 구조상 매출액 1억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60%를 차지하는 등 영세 소규모 업체가 많아 서류제출시 단순 오류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증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 위반, 부적합 업체 등 현장평가 대상 업체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HACCP 인증업체 법령 위반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식품	인증업체 수	6,566	7,685	9,251	10,356	10,741
	위반 업체 수	305	459	486	585	614
	위반 건수	376	574	596	735	783
	위반율	4.6%	6.0%	5.3%	5.6%	5.7%
축산물	인증업체 수	4,983	6,309	7,492	8,250	8,998
	위반 업체 수	131	82	94	121	186
	위반 건수	135	86	111	139	229
	위반율	2.6%	1.3%	1.3%	1.5%	2.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와 같이 HACCP인증 및 관리 관련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HACCP 담당자 29명이 현장점검과 자체평가 서류검토를 병행하고 있으나 관리대상 HACCP 업체 수의 비약적인 증가로 현재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적정한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어 평가 인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12)]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자가 실시한 자체평가를 담당자가 검증하여 관리 미흡업체 등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검토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HACCP 제도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인 점을 고려할 때,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는 제도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력 충원 등 제도개선을 통한 내실있는 사후관리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식품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의원이 HACCP 사후관리 인력부족으로 인한 법 위반업체 증가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인증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음.

3.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사업: 저소득계층 의약품구입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사업은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비축, 위탁제조 등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저소득계층의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1,100만원(36.4%) 증액된 45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음.[13)]

[2025년도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3,330	4,541	1,211	36.4
저소득계층 의약품구입비 지원	90	90	-	-
정부부처 요청 의약품 안정공급 선도자금	-	1,043	1,043	순증

식품의약품안전처는「약사법」제92조제2항에 따라 희귀・필수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기본운영비, 사업비를 전액 보조하고 있음.

내역사업인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자가치료용의약품[14)]을 구입한 환자 중 저소득계층 환자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약품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신청자 30명에 대한 평균 지원금액 300만원을 적용하여 총 9,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음.[15)]

---

13) 일반회계 -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2032-301)(의약품안전국)

14) 국내 비유통의약품으로서 환자 본인의 치료를 위해 센터에 수입・공급을 신청한 의약품을 의미하며, 수입 시 소요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15) 2022년부터는 장애인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정부부처 요청 의약품 안정공급 선도자금’**은 정부부처 요청으로 구입하는 의약품의 경우 물품구매 계약에 따른 사업으로 의약품구입비 활용과는 구분하여 사업 추진 및 회계 처리가 필요함에 따라 10억 4,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5년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인건비 : 1,902,000천원
· 정규직 인건비 : 30명 × 70,761천원 × 89.6% = 1,902,000천원
○ 기본운영비 : 924,000천원
· 사무실임차료(504,000천원)
· 기타 기본운영비(420,000천원)
○ 의약품 유통관리 시스템 선진화 : 450,000천원
· 3,422원 × 131,611건('23. 연환산 수행건수 137,460건의 96% 수준)
○ **저소득계층 의약품구입비 지원 : 90,000천원**
· **30명 x 3,000천원 =90,000천원**
○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및 관리 : 40,000천원
○ 현장의약품 수급모니터링 : 92,000천원
○ **정부부처 요청 의약품 안정공급 선도자금 : 1,043,000천원**
· **2,600백만원 × 회전율(69 ÷ 344일) × 월 2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검토의견

첫째, 저소득층의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은「약사법」제9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을 위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약사법」제92조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 공급 및 비축, 위탁제조·판매, 안정공급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된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16)]

16)「약사법」
제92조(센터의 사업)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2.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의 공급 및 비축 사업.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센터에 조제실을 설치하고, 센터 직원 중 약사를 지정하여 사업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저소득계층 의약품구입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희귀·필수의약품의 비축과 공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별도의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무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특히, 「약사법」 제91조제1항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목적에 대해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음.[17)]

이를 고려하면, 국민 중 특정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까지 이 센터의 담당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됨.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희귀·필수의약품 구입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의 보다 명확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신규사업인 정부부처 요청 의약품 안정공급 선도자금의 경우 보조금으로 지원된 비용을 회전자금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한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정부부처 요청 의약품의 구매·공급을 위해 의약품구입비 예산을 사용하여 왔으나, 정부부처 요청으로 구입하는 의약품은 물품구매 계약에 따른 사업이므로 의약품구입비 활용과는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위한 선도자금 10억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의2. 제3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을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3.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 · 개발 지원 및 안전사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된 사업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7) 「약사법」
제91조(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①다음 각 호의 의약품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조제 및 투약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1. 희귀의약품
2. 국가필수의약품
3. 그 밖에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

[2025년 정부부처 요청 의약품 안정공급 선도자금 세부내역]

○ 2,600백만원 × (69일 ÷ 344일) × 2회 = 1,043백만원 * 2,600백만원 : 최근 2개년 평균 정부부처 의약품 공급액(8,596백만원) 중 잔금(30%) - 69일 : 계약 후 잔금의 회수까지 소요되는 시일 - 344일 : 연중 실 사업수행 기간 - 69일 ÷ 344일 : 자본보조로 센터가 평균 회전자금으로 운영하는 비율 - 2회 : 최근 2년간의 공급 중 주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22. 3~7월, '23. 4~9월의 월평균 2회 공급을 예산 산출에 반영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부처 요청 의약품의 공급 절차를 보면, 정부부처의 의약품 구매요청에 따라 70%의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급 받고, 나머지 30%의 잔금은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을 투입하여 의약품을 구입·공급한 다음 이를 다시 부처에 요청하여 회수하는 절차로 구성됨.

[정부부처 요청 의약품 공급 절차]

의약품 구매요청(부처) → 사업비 선금신청(70%, 센터) → 의약품 구입(선금 70%, 의약품구입비 예산 30% 투입) → 잔금신청(30%) → 의약품구입비(30%) 예산 회수 ※ 계약후 잔금의 회수까지 평균 69일 소요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와 같은 자금 운용은 한번 지원한 예산의 수입 및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회전 운용 방식으로, 회수되는 자금의 반납 없이 의약품을 구입·공급한 후 회수한 대금을 재투자하는 운용 형태임.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국고로 납입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전자금을 통한 집행방식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특히, 현행 기획재정부의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에서는 회전자금을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기업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 외에 별도로 보유할 수 있는 운영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세입·세출 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18)]

18) 「정부기업예산법」

다만, 이 사업의 경우 그 목적이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희귀 의약품의 구입을 대행함으로써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지므로,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세입 · 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국고금관리법」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 교육이수생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은 의료기기 규제과학(Regulatory Affairs, RA) 교육, 자격인증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같은 9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19)]

[2025년도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	7,388	6,998	△390	△5.3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932	932	-	-

[2025년도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 예산안]

ㅇ 민간위탁사업비(320-02) : 932,000천원
가. 규제교육(구직자/재직자) : 626,000천원
· 교육운영비(700명(중기 200명, 단기 500명)) : 609,000천원
* 임차료(201백만원) 및 강사료(195백만원) : 396,000천원
* 교재 개발비(117백만원) 및 인쇄비(87백만원) : 204,000천원
* 홍보비 : 9,000천원
· 기타운영비(공공요금 및 출장여비 등) : 17,000천원
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146,000천원
· 참여수당(교육생 대상, 200명) : 48,000천원
* 산출근거 : 10천원/일 × 200명 × 24일 = 48,000천원
· 멘토지원비(멘토 자문비, 50명) : 25,000천원
* 산출근거 : 500천원 × 50명 × 1회 = 25,000천원
· 협약기업지원비(기업방문 실습, 50명) : 15,000천원
* 산출근거 : 150천원 × 50명 × 2일 = 15,000천원
· 채용박람회(의료기기人의 날) 개최 : 50,000천원
· 기타운영비(일반수용비 및 출장여비) : 8,000천원

19) 일반회계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3032-300)(의료기기안전국)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임상, 허가·심사, 생산, 특허, 시판 후 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료기기 규제과학(Regulatory Affairs, RA)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과정 및 인증시험을 수행하고 있음.

규제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수료자의 경우 다수가 관련 업계 종사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재직자의 경우에도 관련 학위를 취득 또는 취득할 예정인 관련 업계 취업 준비자 등임.

[최근 5년간 규제전문가 교육인원 직종별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현재
교육 수료인원	664	941	701	722	411
직종별 현황	664	941	701	722	411
관련 업계 종사자	470	738	516	577	291
비재직자	194	203	185	145	12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검토의견

첫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의료기기 규제전문가 교육 이수자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제도설계를 할 필요가 있음.

2019~2023년(5년)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실시한 비재직자(미취업자) 교육 수료인원 930명(취업자 포함 3,673명) 중 취업 연계 사례는 331명이며, 이 중 실제 취업 인원은 283명으로 교육 수료 인원 대비 취업실적은 35.6%로 다소 저조한 상황임.[20]

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6개월 이내 취업률은 4년 평균 60.5%로 직업훈련 전체 평균인 57.5%보다 높은 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2019~2023년 RA 교육수료 인원 및 취업연계 실적]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교육수료 인원	목표	600	600	700	700	700	700
	실적 (전체)	645	664	941	701	722	411
	비재직자	203	194	203	185	145	120
취업연계건수		57	71	81	60	62	22
취업실적		31	66	71	54	61	3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취업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현장실습, 진로 상담서비스, 채용박람회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취업실적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현황]

ㅇ 협약기업(오스템 올소(주) 등 80여개 기업)을 통한 현장실습 및 멘토 지원 강화 ・ 일하기 좋은 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등을 모집하여, 교육생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처 확보 ・ '24년 채용 예정 기업 대상으로 교육-취업 연계 강화 ㅇ 미취업자 취업 및 진로 상담서비스 제공 ・ 직업상담사를 상시 배치하여 중기과정 미취업자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 상담 실시(본인 요청시) ㅇ 의료기기 전문 채용박람회 개최(연 1회, 일자리 사업 참여독려를 위한 관련 대학 등 찾아가는 설명회 4회) ㅇ 의료기기 산업 분야 취업 희망자와 기업의 일자리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의 인재 채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층 취업 촉진 유도 ㅇ 의료기기 분야 채용정보 제공(상시) ・ 정보원 교육・자격 홈페이지 내 '채용정보' 게시판 운영 ・ 중기과정 교육생 대상 커뮤니티(밴드) '채용정보' 안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사업은 양질의 의료기기 규제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교육수료자들의 취업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국가 재정 투입의 효과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한편,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산업은 생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170여개(4.0%)에 불과하고, 생산액 10억원 미만의 영세 기업이 3,375여개(79.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다수의 영세 기업이 경쟁하는 구조를 가진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면밀한 취업지원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임.

[의료기기 산업 현황('24.5. 기준)]

(단위: 개소, 억원)

금액	2023년	
	업체수	생산금액
100억 이상	170	86,255
50억~100억 미만	144	10,065
10억~50억 미만	534	12,621
1억~10억 미만	997	3,915
1억 미만	2,378	291
합계	4,223	113,14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따라서 현재 의료기기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한 제도설계 등을 통해 취업실적 제고 등 국가 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의료기기 규제전문가 양성 교육 사업은 중기과정 교육생에 대해 별도의 교육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취업 등에 필요한 자격 취득은 일정부분 개인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할 사항으로 보이므로 중기과정 교육생에게도 일정한 교육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과정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기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단기과정에 대해서만 일정액의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교육비 현황]

구분	2020	2021	2022~2024. 현재
교육비	(중기) 무료 (단기) 120~150천원	(중기) 무료 (단기) 150천원	(중기) 무료 (단기) 50~150천원

주) 교육과정은 재직자 대상 '단기과정'과 미취업자 대상 '중기과정'으로 구성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기과정 교육생이 미취업자인 점을 고려하여 1일 1만원의 중식비 및 교통비(교육기간 24일, 총 24만원)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과정을 통해 신뢰성 있는 RA 인재를 배출하고 이들의 취업 연계로 수출 촉진 및 업계 인력 확보 어려움의 극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교육비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과 같이 중기과정의 경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들이 별도 수입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생 부담 감소를 위해 교육비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특정 업계에 필요한 인력 양성은 업계 또는 개인이 1차적인 책임을 지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특별히 관련 경력이 없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교육과정 수료시 의료기기 RA전문가 2급 국가공인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데, 교육과정 수료 후 인증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관련 업계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21]

더욱이 교육시간이 24일(168시간)로 그리 길지 않은 점, 교육인원 대비 인증시험 합격률이 낮은 현실에서 자부담 비용 설정 등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합격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교육생의 적정한 자부담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22]

---

21) <의료기기 RA 전문가 2급 응시자격>

1. 정보원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기 RA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2. 4년제 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졸업이 예정된 자
3.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전문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의료기기 RA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출처] 의료기기 RA 전문가 2급 자격증 시험정보(Ft. 업무, 직무)|작성자 ET

자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교육・자격 홈페이지

[최근 5년간 인증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현재
응시자[주)]	1,860	1,504	1,373	1,315	856
합격자	556	363	320	212	132
합격률	29.9	24.1	23.3	16.1	15.4

주1) 의료기기규제전문가 양성 교육인원 중 응시자 수
2) 인증시험은 '24년 1차(7월) 시험 결과이며, 2차 시험은 11월 예정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2)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기기 RA 전문가 양성 교육 수강료 부담 방안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부터 교육과정 중 단기과정에 대해서만 유료화를 실시하였음.

5. 신속간편 검사기술 개발 사업(R&D)(신규): 회계연도 불일치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신속간편 검사기술 개발’** 사업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포함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자연독소(곰팡이독소, 해양생물독소, 식품독소 등) 및 잔류물질 등 식품산업계 및 검사 현장에서 관리가 필요한 물질들을 신속·간편하게 검출할 수 있는 검출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3억 2,6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23)]

[2025년도 신속간편 검사기술 개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농축수산 안전관리(R&D)	13,011	15,017	2,006	15.4
신속간편 검사기술 개발	-	3,326	3,326	순증

나. 검토의견

신속간편 검사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신규과제임에도 2025년도 예산안에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취지에 부합하게 회계연도 불일치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축수산 안전관리(R&D) 사업 내 신속간편 검사기술 개발 내역사업에서 3개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12개월분의 예산이 각 과제별로 편성되었음.

23) 일반회계 - 농축수산 안전관리(R&D)(4031-310)(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5년도 신속간편 검사기술 개발 사업 예산안]

ㅇ 상용임금(110-03) : 112,646천원(3명 × 3,129,056원 x 12월= 112,646천원) ㅇ 고용부담금(320-09) : 17,991천원(3명 ×499,750원 x 12월= 17,991천원) ㅇ 복리후생비(210-12) : 1,500천원(3명 × 500,000원 = 1,500천원) ㅇ 시험연구비(210-13) : 152,863천원(1과제 × 153백만 x 12/12= 152,863천원) ㅇ 일반용역비(210-14) : 1,000천원(통번역 등 일반용역) ㅇ 일반연구비(260-01) : 3,040,000천원(2과제 × 1,520백만 x 12/12= 3,040,000천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연구사업의 경우 고유사업으로 사업에 필요한 기반 연구가 선행되어 있어 별도의 사업준비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안 편성 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제 협약체결 지연 등에 의한 회계연도 불일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러한 지침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업 편성 예산 중 일반연구비(260-01)의 경우 국가로부터의 기술, 평가,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 용역에 대한 비용이므로 용역업체선정 등 사전 준비에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R&D)(신규): 중복 소지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 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R&D)’는 세포・유전자치료제, 첨단・디지털 의료기기, 공중보건 위기대응 백신 등 국가 차원의 제품화 지원이 필요한 바이오헬스 의료제품 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제품화 규제대응 전략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7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4)]

[2025년도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R&D)	-	750	750	순증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R&D 규제정합성 검토 등 제품화 지원	-	187.5	187.5	순증
유전자치료제 딥테크 R&D 규제정합성 검토 등 제품화 지원	-	187.5	187.5	순증
첨단의료AI 헬스케어 토탈솔루션 R&D 규제정합성 검토 등 제품화 지원	-	187.5	187.5	순증
팬데믹 대비 mRNA백신 개발 R&D 규제정합성 검토 등 제품화 지원	-	187.5	187.5	순증

4개의 내역사업은 모두 각 분야별 R&D 제품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최신의 국내・외 관련 과학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규제대응 전략 개발 등 규제정합성 검토를 통하여 제품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4) 일반회계 -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 지원 사업(R&D)(4031-344)(규제과학혁신단)

나. 검토의견

첫째, 이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일반사업인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지원 강화’ 사업과 사업목적 및 내용 면에서 일부 중복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① 혁신제품 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규제정합성 검토 요청, ② 혁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제품화 지원 요청(제품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검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도 예산안에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R&D)’을 신규 편성하여 4개 분야의 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제품화 규제대응 전략 개발 등 규제정합성 검토를 통한 제품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25)]

그러나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과학혁신단)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에 근거하여 일반사업인 ‘식의약 규제과학혁신 지원 강화’ 세부사업 내 ‘규제정합성 검토 등 제품화 지원’ 내역사업을 통해 규제정합성 검토 등 제품화 지원 사업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음.

[2025년도 '규제정합성 검토 등 제품화 지원' 내역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혁신제품의 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당 제품의 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한 ‘규제정합성 검토’ 등 제품화 지원 요구 - 혁신제품의 개발지원을 위해, 민간 투자 여력이 낮은 연구·개발단계부터 정부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제품화 성공률은 저조 - 연구·개발 단계부터 맞춤형 규제지원을 통한 제품화 성공률 제고
※ 제품화를 위한 ‘규제정합성 검토’ 등 제품화 지원 - 의약품 등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품목만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허가’를 위해서는 여러 ‘규제’(안전성/품질 등에 대한 심사 등)를 거쳐야 함 - 연구·개발자(또는 사업 등)의 규제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저조한 제품화 성공률의 주요 원인 - 이에, ‘규제정합성 검토’*를 통한 제품화 맞춤형 지원(컨설팅 등 제공) * 검토 항목: 제품분류, 규제기준, (개발 제품)안전성·품질 등에 대한 규제요구 사항 등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5)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 최신의 관련 과학기술 동향, 산업계 제품 개발 방향성, 국내·외 관련(유사) 규제시스템 분석 등, ② 제품화(허가 등)를 위한 규제체계, 요건, 평가법 등 연구·개발자 대상 규제인식 제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③ 국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규제 샌드박스 등 미비 규제 극복 방안 수립, 해당 R&D 식약처 담당부서와의 규제 멘토링 수행, 규제(제도·정책·가이드라인 등) 정비 추진 등 맞춤형 제품화 규제대응 전략 개발임.

특히, 신설된 4개의 내역사업 모두 그 주된 목적과 추진 배경을 각 분야별 ‘규제정합성 검토를 통한 제품화 지원’에 두고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식의약 규제과학혁신 지원 강화’ 세부사업 중 ‘규제정합성 검토 등 제품화 지원’ 내역사업과 일부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보임.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과 규제정합성 검토 등 제품화 지원 사업 비교]

구분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	규제정합성 검토 등 제품화 지원 사업
대상	바이오헬스 다부처 협업 사업	바이오헬스 다부처 협업 사업 외
주요 목적	제품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최신의 국내·외 관련 과학기술 동향 파악, 규제대응 전략개발 등	연구·개발 단계부터 맞춤형 규제지원을 통한 제품화 성공률 제고
주요 내용	- 실태분석 ・최신 관련 과학기술 동향, 산업계 제품개발 방향성, 국내외 관련 유사 규제시스템 분석 - 규제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규제대응 전략 개발 ・국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규제 샌드박스 등 미비 규제 극복방안 안내 ・규제 멘토링 수행, 미정비 규제 정비 추진	- 규제정합성 검토를 통한 제품화 맞춤형 지원(컨설팅 등 제공) ・검토 항목: 제품분류, 규제기준, (개발 제품)안전성·품질 등에 대한 규제요구 사항 등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 재구성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및 목적과의 중복 소지에 대한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추진 계획 수립, 집행, 사업 관리 등에 있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4개의 내역사업은 그 분야가 모두 다름에도 연구개발 단계별로 소요되는 비용에 근거하여 예산 투입 계획이 산출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실제 소요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함.

신설된 4개의 내역사업은 각 분야의 최신 관련 과학기술 동향 파악, 규제대응 전략 개발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각 분야 R&D 제품화 성공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6년간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내역사업별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R&D	유전자치료제 딥테크 R&D	첨단의료AI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R&D	팬데믹 대비 mRNA백신 개발 R&D
사업내용	①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분야 R&D, ② 유전자치료제 딥테크 분야 R&D, ③ 첨단의료AI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분야 R&D, ④ 팬데믹 대비 mRNA백신 개발 분야 R&D 가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제품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최신의 국내·외 관련 과학기술 동향 파악, 규제대응 전략 개발 등			
실태분석 등	최신의 관련 과학기술 동향, 산업계 제품 개발 방향성, 국내·외 관련(유사) 규제시스템 분석 등			
규제교육	제품화(허가 등)를 위한 규제체계, 요건, 평가법 등 연구·개발자 대상 규제인식 제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규제대응 전략 개발	국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규제 샌드박스 등 미비 규제 극복 방안 수립, 해당 R&D 식약처 담당부서와의 규제 멘토링 수행, 규제(제도·정책·가이드라인 등) 정비 추진 등 맞춤형 제품화 규제대응 전략 개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사업과 같이 장기간 수행되는 연구사업의 과제별·연도별 예산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분야의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연구개발 진척에 따라 각 연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이 사업은 연도별 연구비가 각 R&D분야별로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 착수기간으로 예산을 적게 계상한 2025년을 제외하면, 이후 2026년~2030년에는 각 분야별 예산이 매년 균등하게 지원될 예정인데, 실제 연구개발 과정의 수요를 반영하여 과제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26)]

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이후 매년 범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규 협업 분야가 기획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이를 예측할 수 없고, 분야별로 사업의 수와 개발 제품의 수가 유사해 같은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내역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R&D	1,437.5	187.5	250	250	250	250	250
유전자치료제 딥테크 R&D	1,437.5	187.5	250	250	250	250	250
첨단의료AI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R&D	1,437.5	187.5	250	250	250	250	250
팬데믹 대비 mRNA백신 개발 R&D	1,437.5	187.5	250	250	250	250	25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따라서 신규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실제 소요를 반영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총연구비를 보다 명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27)]

27)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각 연구과제들의 세부 소요 산출내역을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7. CODEX 활동지원 사업(신규): CODEX 사무국 설치 계획의 적절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CODEX 활동지원’** 사업은 CODEX(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내 한국의 입지 강화 및 첨가물 관련 인적 네트워크 형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CCFA)의 2025년 공동개최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7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8)]

[2025년도 CODEX 활동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식품 관리운영	1,438	2,285	847	58.9
CODEX 활동지원	-	700	700	순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의 경우 CODEX 회원국이 최다 참가하는 분과로 우리나라 식품산업과 관련된 대응 과제가 많아 분과위원회를 국내 유치할 경우 주도적 의제 대응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2025년 국내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약 2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 회의는 중국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 의장국 선출시, 한국의 지지요청과 함께 ’21년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공동개최 및 공동의장을 제안(’19년)하였고, 제46차 CODEX 총회에서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공동 개최를 합의(’23.11)함에 따라 2025년 4월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임.

28) 일반회계 - 식품 관리운영(7036-301)(식품안전정책국)

[2025년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개최 계획(안)]

○ 회의일시: '25.4.7(월)~4.11(금), 5일간(사전회의: '25.4.5(토)~4.6(일))
○ 회의장소: 서울(잠정)
* '24년 중국(청두, 4월예정), '23년 홍콩, '20~'22년 비대면 개최
○ 참석인원: CODEX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 등 250여명 예상
* 최근 3개년 참석인원: '23년 193명, '19년 257명, '18년 295명(대면회의 가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검토의견

CODEX 사무국 수행업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 사무국의 설치 계획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예산은 총 7억원이며, 일반수용비 5,000만원, 임차료 2,000만원, 일반용역비 5억원 및 민간위탁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 CODEX 활동지원 사업 세부예산안]

○ 일반수용비(210-01)
- 자문료, 강의료 및 인쇄비 : 50백만원
○ 임차료(210-07)
- 자문회의 세미나등 개최 : 2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CODEX 분과회의 등 행사개최 : 500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CODEX 사무국 운영 : 130백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ODEX 사무국 운영비 1억 3,000만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별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 1억 300만원, 국내외 여비 1,700만원, 기타 수용비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CODEX 사무국 운영비 세부내역 및 고용인원 수행 주요업무]

ㅇ 인건비(103백만원) - 책임연구원(4백만원) * 위탁기관 기존 전문인력 활용(1명, 7% 참여) - 에디터(99백만원) * 행사 개최 및 후속조치 등(39.6백만원×3명×10개월) ㅇ 국내·외 여비(17백만원) - CODEX 의장 회의 참석(2명x5백만원), 국내여비(7백만원) 등 ㅇ 기타 수용비(10백만원) - 사무용품 구매 등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제관리 등 CODEX 분과회의 의장국 역할 수행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나 근무지(충북 오송) 여건 및 단기채용인 점을 감안할 때 채용시 애로사항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별도 사무국의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사무국에서 수행할 예정인 업무는 CODEX 식품첨가물분과 행사개최(용역업체 관리 포함) 및 운영지원, 의제 관리 및 공동 의장 역할 지원 등인데, 이러한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CODEX 사무국 업무(안)]

ㅇ CODEX 식품첨가물분과 행사 개최(용역업체 관리 포함) 및 운영지원 ㅇ CODEX 식품첨가물분과 의제 관리 등 공동의장 업무 및 역할 지원 ㅇ CODEX 분과회의별 의제 검토 및 관리(산업체, 타부처 등 의견수렴 포함) ㅇ CODEX 홈페이지 관리 등 기타 CODEX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ㅇ CODEX 전자작업반 운영 및 기타 협력에 관한 사항 * 식품안전정보원, 한국규제과학센터, 중앙대학교(공동의장 소속) 등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히,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행사 개최시 원칙적으로 주관부처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별도 사무국 설치 계획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질병관리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총수입은 6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7억원(△68.6%) 감소함.[1)]

[2025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2,125	668	△1,457	△68.6
총수입	2,125	668	△1,457	△68.6

문의 : 민승환 예산결산조사관 genmin80@assembly.go.kr (02-6788-569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총지출은 1조 2,69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05억원(△22.1%) 감소함. 예산은 4,92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7억원(△24.2%) 감소하고, 기금도 7,77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39억원(△20.8%) 감소함.

[2025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6,488	4,921	△1,567	△24.2
기 금주)	9,815	7,776	△2,039	△20.8
총지출	16,303	12,698	△3,605	△22.1

주) 기금관리주체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받아 사용하는 금액임

나. 예산안

2025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1억원(△59.9%) 감소함.

[2025년도 질병관리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033	586	△1,447	△71.2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471	417	△54	△11.4
합 계	2,504	1,003	△1,501	△59.9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17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57억원(△23.1%) 감소함.

[2025년도 질병관리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6,256	4,754	△1,503	△24.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71	417	△54	△11.4
합 계	6,727	5,171	△1,557	△23.1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질병관리청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3개(338억 2,0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R&D)’ 사업은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비)임상 시험을 지원하여 미래 팬데믹 위기에 대비하는 mRNA 백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90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우선순위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신속개발기술 구축 지원사업(R&D)’ 사업은 우선순위 병원체 백신 후보물질의 비임상 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4억원이 편성되었음.

마지막으로, ‘의료현장감염대응역량고도화기술개발(R&D)’ 사업은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의 방역 역량 향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4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질병관리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R&D)	29,033
2	우선순위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신속개발기술 구축 지원사업(R&D)	3,375
3	의료현장감염대응역량고도화기술개발(R&D)	1,412
총지출		33,82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질병관리청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생명과학기술안전망구축’ 사업,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사업 등 총 6개임.[3)]

[2025년도 질병관리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생명과학기술안전망구축	263	383	120	45.6
2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330	720	390	118.2
3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24,130	38,343	14,213	58.9
4	형질분석연구(R&D)	3,018	4,982	1,964	65.1
5	국립보건연구원 정보화 운영 및 유지관리(정보화)	427	619	192	45.0
6	질병관리 국제협력	439	829	390	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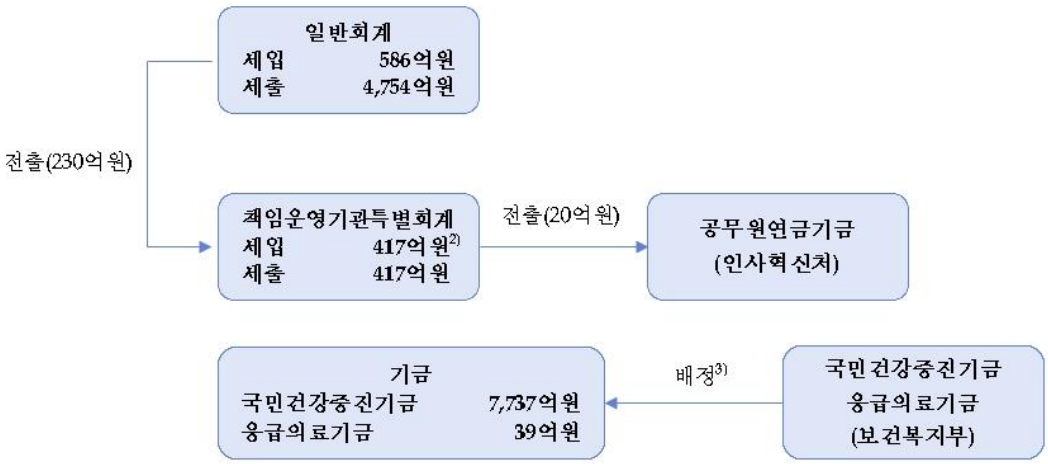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질병관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229억 7,000만원이 전출되었음. 또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9억 7,600만원이 전출되었음.

[질병관리청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주 1) 총계 기준
2) 자체수입(총수입) 8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30억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106억원으로 구성
3) 기금관리주체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받아 사용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예정('24.4분기)으로 정부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1,798억원을 순감 편성하였음.

재정투자의 기본 방향으로는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해 두창백신 외 탄저백신 비축 예산, 신종감염병 유행시 신속한 개인보호구 사용을 위한 보관·배송 비용 등을 신규 반영하였음.

또한 신종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mRNA 백신 플랫폼 확보 지원,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 개발 등 국가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R&D 및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 지원 등 미래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R&D에 투자를 강화하였음.

2025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최근 4년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과도하게 높으므로, 실제 수납실적과 추이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질병관리청은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해외연구거점센터 구축' 사업 내 공무원 국외훈련비 및 민간전문가 파견비는 R&D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실적을 고려한 세입 계상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반납액으로 구성되는 비목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51억원 2,600만원(△72.2%) 감액된 558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음.[1)]

‘기타재산이자수입’ 은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예치이자 수입 및 연구성과에서 창출된 기술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비목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1,100만원(82.2%) 증액된 9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2)]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200,975	55,894	△145,126	△72.2
기타재산이자수입	500	911	411	82.2

1)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2) 일반회계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운영지원과)

나. 검토의견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과도하게 높으므로 실제 수납실적과 추이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최근 4년간 예산액 대비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예산액(20억 200만원)이 수납액(174억 4,800만원)의 11.5%, 2022년 예산액(49억 2,000만원)이 수납액(1,531억 1,500만원)의 3.2%, 2023년 예산액(290억 200만원)이 수납액(5,095억 6,400만원)의 5.7%에 그칠 정도로 예산의 과소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

2024년의 경우 예산액 대비 수납실적을 고려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크게 증액되었으나,[3] 2025년 예산안에는 다시 1,451억 2,600만원이 감소(△72.2%)한 558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1~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2,002	2,002	2,002	34,479	17,448	50.6	17,032	-
2022	4,920	4,920	4,920	213,022	153,115	71.8	59,907	-
2023	29,002	29,002	29,002	698,457	509,564	72.9	188,893	-
2024.7월 말 기준	200,975	200,975	200,975	214,332	137,115	63.9	77,217	-
2025(안)	55,849	55,849	-	-	-	-	-	-

자료: 질병관리청

기타재산이자수입 또한 지난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약 9~12배가 발생하는 등 연례적인 세입예산안 과소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2025년도의 경우 2024년 대비 82.2%가 증가한 9억 1,100만원이 편성되는데 그침.

3) 당초 정부 제출안에는 2023년도 예산액과 같은 290억 2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음

[2021~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	-	-	-	-	-	-	-
2022	100	100	100	1,586	1,210	76.3	375	-
2023	500	500	500	5,639	4,568	81.0	1,071	-
2024.7월 말 기준	500	500	500	7,912	6,327	79.9	1,585	-
2025(안)	911	911	-	-	-	-	-	-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의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시 '해당연도 예상징수결정액'과 '전년도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세입 계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산출 내역]

○ 기타경상이전수입
(본청)
[('23년도 징수결정액) X 0.7%(2년전 징수결정액의 평균 미수납률)] + [('24년도 예상징수결정액)X 20%('24년도 예상미수납률)]
(국립보건연구원) 최근 2년 평균 수납액
○ 기타재산이전수입
(본청)
[('23년도 징수결정액) X 1%(2년전 징수결정액의 평균 미수납률)] + [('24년도 예상징수결정액)X 10%('24년도 예상미수납률)]
(국립보건연구원) 최근 2년 평균 수납액

자료: 질병관리청

또한, 정산 미완료로 현재까지 징수결정이 되지 않은 금액이 2025년도에 수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 세입예산안은 실제수납액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소계상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세입예산액을 실제 수납액보다 과소하게 계상하는 것은 세입·세출 간 괴리로 인해 국가재정 사업의 부실화 등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수납액 규모와 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한 후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세 출>

2.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 사업(ODA):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취지를 고려한 부담금 편성 필요

가. 개 요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ODA)’ 사업은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WHO 서태평양지역의 감염병 예방, 대응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사업 추진 관련 자발적 사업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같은 20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ODA)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 (ODA)	2,045	2,045	-	-

이 사업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5)])가 수행하는 신종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 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등의 기술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9년 12월 WPRO와 질병관리본부 간 MOU 체결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유효기간을 2024년까지로 하는 MOU가 갱신되어 진행되고 있음.

이 부담금은 질병관리청이 WHO(WPRO)에 지급하고 있는 자발적 기여금으로, 의무분담금과는 달리 지급되는 비용 안에서 국제기구가 예산의 사용내역을 조정하고 있으며, 8개 분야 12개의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일반회계 -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ODA)(6234-307)(기획조정관)

5)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presented by the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2024~2025년 부담금 전략사업]

(단위: USD)

분야	지원 사업 (12개)	2024~2025년
DDC (감염병관리)	바이러스성간염 지원	75,000
	VPD 실험실 역량강화	115,000
	폴리오 퇴치	35,000
	소외열대질환 통제	95,000
DHP (환경 및 인구)	만성질환 감시	95,000
DHS (보건시스템 및 서비스)	백신접근성 향상	95,000
	항생제내성	55,000
WHE (긴급대응 및 보건안보)	긴급대비대응 강화	295,000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대응 프로젝트	185,000
DPS (태평양섬국가 지원)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115,000
RDO (지역사무소 지원)	보건커뮤니케이션강화	45,000
CSU	‘KDCA Fellowship officer’ 프로그램	225,000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 지원비(13%) 및 유엔 부담금 (1%)	202,059
전체 예산		1,632,059

자료: 질병관리청

나. 검토의견

질병관리청과 WPRO간 체결한 MOU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재정적 기여에 관한 사항은 매년 질병관리청에서 책정한 예산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질병관리청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향후 MOU 갱신시 재정적 기여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질병관리청에서 최근 5년간 WPRO에 대한 부담금으로 편성한 예산액을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의 예산액 증감과 관련없이 매년 20억 4,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에도 매년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질병관리청 예산 및 WPRO지원 부담금]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본예산	378,868	5,209,294	2,305,614	603,772	452,382
부담금	2,045	2,045	2,045	2,045	2,045

주) 일반회계 기준
자료: 국회 제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Ⅱ-1」발췌

2019년 질병관리청(구 질병관리본부)과 WPRO간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재정적 기여에 관한 사항은 자발적 분담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책정하는 예산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MOU 중 대한민국의 재정적 기여에 관한 사항 발췌]

5. FINANCIAL CONTRIBUTION
1. The KCDC is committed to the provision of core funding to WHO/WPRO in a predictable but flexible manner. Therefore, subject to annual budget appropriations by the KCDC and contributed satisfactory performance by WHO/WPRO, the KCDC will provide an annual core contribution to WHO.WPRO for the period of the MOU in a timely manner.

자료: 질병관리청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이와 같은 포괄적인 규정에 의한 국제부담금은 이를 최소한으로 조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2025년도 예산안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예산 규모가 전년도 대비 1,513억 9,000만원(△25.1%)이 감액된 점을 고려하여 WPRO에 대한 부담금의 규모도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WPRO와 체결한 MOU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5년 상반기에 MOU의 갱신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MOU 갱신 과정에서 자발적 부담금인 점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갱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해외연구거점센터 구축(R&D) 사업: 시험연구비 비목의 목적에 부합하는 편성·집행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해외연구거점센터 구축(R&D)’**은 신병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연구거점센터 구축을 통한 자원·정보 확보 및 연구지원 등 국내외 기관간 허브역할 수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원(33.3%) 증액된 4억원이 편성되었음.[6)]

[2025년도 해외연구거점센터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감염병연구 국제협력 기반구축(R&D)	691	791	100	14.5
해외연구거점센터 구축	300	400	100	33.3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필리핀에 연구거점센터를 1개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으로 해외연구거점센터 국외훈련비 및 전문가 파견비로 시험연구비(210-13) 9,560만원, 현지인건비 및 국제 공동연구 활동비 등 해외경상이전비(340-01) 3억 4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6) 일반회계 - 감염병연구 국제협력 기반구축(R&D)(6632-311)(국립보건연구원)

[해외연구거점센터 구축 사업 예산안 편성 세부 내역]

ㅇ 시험연구비(210-13) : 95,600천원 - 해외연구거점센터 국외훈련비 및 전문가파견비 등(95,600천원) ㅇ 해외경상이전비(340-01) : 304,400천원 - 해외연구거점센터 현지인건비 등(12,000천원) - 신·변종 및 미해결감염병 극복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활동비(143,000천원) - 해외연구거점 운영을 위한 인력교류 및 자원교류 프로그램 운영비(40,000천원) -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18,200천원) - 해외거점운영 고정운영비(91,200천원)

자료: 질병관리청

나. 검토의견

‘해외연구거점센터 구축’ 사업 내 편성된 시험연구비로 공무원 국외훈련비 및 민간전문가 파견을 지원하는 것은 비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공무원 국외훈련을 R&D사업을 통해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질병관리청은 해외연구거점센터 구축 사업 내에 질병관리청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속 연구원에 대한 훈련수당 및 국외여비 등 2,783만원, 민간전문가 인건비·체재비 등 6,777만원, 총 9,560만원을 시험연구비(210-13)로 편성하고 있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청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센터 근무는 국외훈련 형태로, 민간전문가의 경우에는 파견(국외출장) 형태로 추진중에 있음.

[훈련비 및 인건비 산출근거]

대분류	소분류	항목	상세	계
해외 거점 센터 운영 훈련비 및 파견비	공무원[1] 국외훈련비	훈련수당[2]	8만원 x 3명 x 2개월	0.48백만원
		생활준비금[3]	65만원 x 3명 x 2개월	3.9백만원
		체제비[4]	3.21백만원 x 3명 x 2개월	19.25백만원
		보험료[5]	10만원 x 3명 x 2개월	0.6백만원
		항공료[6]	1.2백만원 x 3명	3.6백만원
	합계 (시험연구비)			27.83백만원
	민간 전문가[7] 파견비	인건비[8]	3.08백만원 x 3명 x 3개월	27.72백만원
		생활준비금	65만원 x 3명 x 3개월	5.85백만원
		체제비	3.3백만원 x 3명 x 3개월	29.7백만원
		보험료	10만원 x 3명 x 3개월	0.9백만원
		항공료	1.2백만원 x 2명	3.6백만원
	합계 (시험연구비)			67.77백만원
	공무원 및 전문가 파견비 및 인건비 합계			95.6백만원

주 1) 질병관리청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의미함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기준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2. 교육 및 연구 분야 - 가. 연구업무수당' 연구직 공무원 수당 80,000을 기준으로 산정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기준 국외훈련비 지급기준에 따라 생활준비금은 미합중국 통화 500달러로 규정, 이에 한화 기준(환율 1,300원 적용) 650,000원으로 산정
4)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기준 국외훈련비 지급기준에 따라 체제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5급/5등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따라 시급하며, 6개월 미만의 훈련인 경우 10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규정.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기준 베트남(하노이)는 나지역에 해당하여 2,517달러, 필리핀(마닐라)는 다지역에 해당하여 2,583달러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이에 평균값인 2,550달러에 대한 한화 기준(환율 1,300원 적용) 3,315,000원으로 산정
5) 실비 정산을 기준으로 함
6) 실비 정산을 기준으로 함
7) 해외연구거점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 민간 전문가의 감염병 분야 연구 인건비 포함. 다만, 민간 전문가는 인건비, 생활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액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산정함
8) 「20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기준 책임연구원 대상 월 3,496,704원(50%) 지급하도록 규정. 2개월 단기체류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약 44%로 책정
9) 베트남 공무원 기본급 1호봉은 421만 2,000동(179.5 달러, 한화 약 25만원)이며, 베트남 공무원의 중위소득은 1,880만 동(한화 약 104만원)임.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공무원은 기본급 1호봉 공무원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산정함. 다만, 고위급 공무원이 공동연구 수행할 경우, 현지인건비는 추가될 수 있음
자료: 질병관리청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시험연구비(210-13)는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고용부담금 등 10개의 경비를 통합한 비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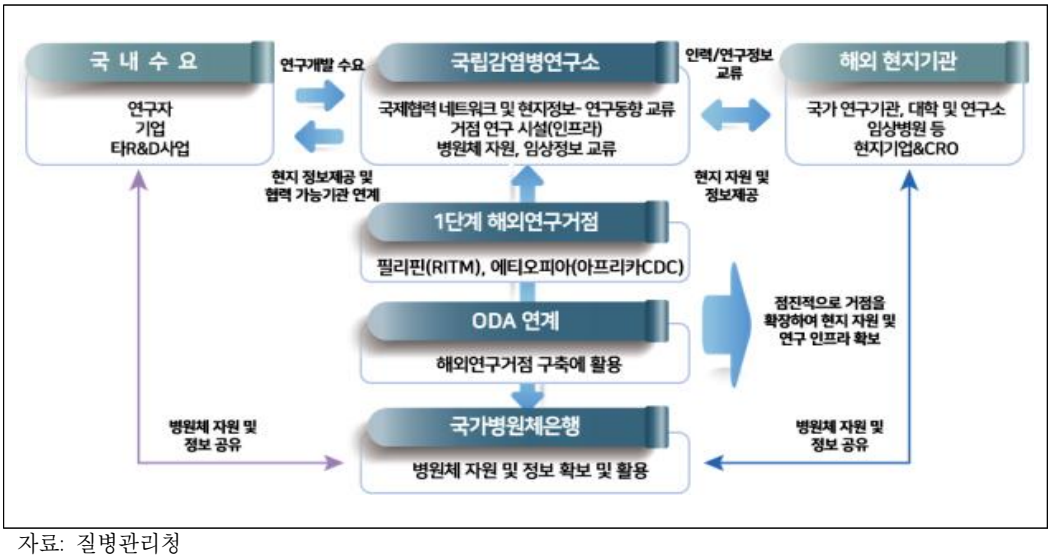
이는 동일 비목 내에서 비목간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게 하여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신축적으로 집행하게 함으로써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시험연구비 9,560만원 전액을 국외교육훈련 및 파견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지침의 취지와 시험연구비의 본질적인 목적이 시험연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편성 방식으로 보기 어려움.

특히,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국외훈련은 국외위탁교육훈련을 의미하는데,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R&D 사업을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시설 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면, 질병관리청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국외교육훈련을 R&D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각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보임.

[해외연구거점센터 구축 업무 흐름도]



자료: 질병관리청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해외연구거점센터 구축사업은 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속 연구원 및 민간전문가를 국외출장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국외교육훈련이 아니라 국외출장이 실질임을 의미하는 것인데,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상 생활준비금과 체재비는 국외훈련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성 경비이므로 국외출장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그 목적상 적절하지 않음.

뿐만 아니라, 시험연구비로 편성·지출할 수 있는 인건비는 연구보조인력 등 일용임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책임연구원급인 민간전문가 인건비를 시험연구비로 편성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임.

따라서 상술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사업의 예산 편성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재단법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에 대한 명확한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필요

가. 개 요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정부주도의 첨단 백신 생산 공정기술 기반 확보 등을 위해 ‘재단법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같은 22억원이 편성되었음.[7)]

[2025년도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2,200	2,200	-	-

나. 검토의견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전액 재단법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에 대한 민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편성이 가능함.

그러나 이 센터의 경우 업무 수행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1항[8)]에 두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는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급에 대한 사

7) 일반회계 -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6632-314)(국립보건연구원)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항만 명시하고 있어 보조금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특히, 이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경우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기관 지정이 필요하나 이 센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9)]

제21대국회에서는 동 센터에 대한 설립·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723, 김형동의원)이 발의(2023.9.26.)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10)]

당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선행 인프라로서 치료제 및 백신 후보물질의 개발을 위한 공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법인이 이미 설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11)]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124723)」 주요내용]

ㅇ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및 재정 지원 규정 신설
ㅇ 국가첨단백신센터 수행 사업 명시
- 감염병의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연구개발
- 감염병의 치료제·백신 비임상검체 분석 및 시험법 구축
- 감염병의 치료제·백신 향원 보존, 자원화, 분양 및 통합관리
- 감염병의 치료제·백신 연구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췌

따라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백신 개발을 통해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하려는 정부 정책의 안정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바람직해 보임.

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준용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9)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더욱 명시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동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는 입장임.

10) 제22대국회에서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6, 김형동의원안)이 발의(2024.8.14.)된 상황임.

11) 다만, 당시 검토보고서에서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업무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가 백신 검체 시험법 구축 등 중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업무가 차별성 있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역시 제시하였음.

5. 의료현장 감염대응 역량 고도화 기술개발(R&D) 사업(신규): 전문기관과 사업단 역할의 명확한 구분 운영 필요

가. 개 요

‘의료현장 감염대응 역량 고도화 기술개발(R&D)’ 은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등의 특성에 맞도록 차등적, 맞춤형 실증연구를 통해 감염 의료현장 최적화로 NEXT 팬데믹을 대비・대응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4억 1,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2)]

[2025년도 의료현장 감염대응 역량 고도화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의료현장 감염대응 역량 고도화 기술개발(R&D)	-	1,412	1,412	순증

‘의료현장 감염대응 역량 고도화 기술개발(R&D)’ 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는 사업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재단법인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사업단)을 전문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R&D사업 연구과제를 추진할 예정임.

이 재단법인은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연구개발(R&D)의 연계강화를 목표로 8개 부처[13)]가 협력・공동투자하여 2018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이 사업 내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수립, 협약, 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 전문운영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12) 일반회계 - 의료현장감염대응역량고도화기술개발(R&D)(6634-356)(기획조정관)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나. 검토의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에서는 전문기관의 업무 일부를 사업단이 대행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단의 업무 대행을 위한 위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전문기관과 사업단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안 편성 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세부내역을 보면,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의 방역 역량 향상 기술 개발’ 내역사업의 경우 신규 연구과제임을 고려하여 9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단 운영비’ 내역사업은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의료현장 감염대응 역량 고도화 기술개발(R&D) 사업 세부예산안]

○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의 방역 역량 향상 기술 개발: 1,290백만원 - (요구) 의료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해 1)실증연구 대상 확대, 2)의료현장 최적화 R&D, 3)제품화, 4)현장도입 R&D 추진 - (산출) 7개 과제 × 409.5백만원 × 9/12개월 × 0.6(투자비율) = 1,290백만원 ○ 사업단 운영비: 122백만원 - (요구) 1)과제 선정평가, 2)실증・인증 등 의료현장 적용(기술사업화)을 위한 사업단 운영 - (산출) 2개 과제 × 101.7백만원 × 12/12개월 × 0.6(투자비율) = 122백만원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이와 관련하여 연구과제의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고부터 선정평가, 협약에 이르는 과정과 과제 협약 전 의료현장 대상 실증・현장 도입(사업화)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를 사업단이 2025년 1월부터 수행하기 때문에 12개월 분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사업단 주요 업무범위]

○ 사업 운영관리 실무 - (총괄지원) 위원회 등 운영지원 - (행정지원) 과제협약, 협약변경, 해약, 정산 실무 - (대외협력) 유관 연구기관-기업 네트워크 구축(주요연구 포트폴리오 구축), 공동협력연구 지원 - (사업화지원) 규제 개선 및 연구개발물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계지원 ○ 현안·이슈 및 혁신기술 발굴 - (현안발굴) 수요조사 온라인플랫폼 운영, 국내외 감염병 이슈·현안 모니터링 - (혁신기술 발굴) 향후 감염병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혁신기술 조사, 해당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주요 연구주체 발굴, 해외와의 기술격차 비교 → 위원회 검토자료 작성 ○ 과제 기획·평가·관리 - (과제기획) RFP작성 - (과제관리·평가) 현장기관-연구자 매칭 및 협력범위 조율, 과제 마일스톤 및 달성도 관리, 중간/최종/추적평가 등 ○ 성과확산 실무 - 성과확산 통계자료 조사분석 -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등 성과확산 제반활동

자료:「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Ⅱ-1」

다만,「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가 연구개발사업의 조사·기획·평가 및 관리,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 등은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과제 공고, 접수, 평가는 사업단이 아닌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무로 보임.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고시인「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14]에 따라 사업단이 전문기관의 업무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구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그러나「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에서는 전문기관의 업무 일부를 사업단이 대행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단이 전문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를 고려할 때 전문기관과 사업단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 사업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4)「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연구개발사업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업무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국립마산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 입>

6.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전년도세계잉여금: 수납실적 등을 고려한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은 국립마산병원의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대한 세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9,800만원(△52.4%) 감액된 3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15)]

‘전년도세계잉여금’ 은 국립마산병원의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에서 발생되는 잉여금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00만원(0.56%) 증액된 12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16)]

[2025년도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및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안(손익계정)]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	760	362	△398	△52.4
전년도세계잉여금	1,250	1,257	7	0.56

나. 검토의견

국립마산병원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인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과 전년도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과소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세입예산의 과소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15) 국립마산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 -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69-691)(국립마산병원)

16) 국립마산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 - 전년도세계잉여금(89-893)(국립마산병원)

이 특별회계의 세입구조는 병원의 영업수입인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과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의 세외수입·일반회계 전입금 및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병원의 기본경비와 주요사업비 등에 지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2025년도 국립마산병원특별회계 손익계정의 세입안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감	증감율
〈특별회계-손익계정〉	15,131	15,163	32	0.2
-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4,692	4,227	△465	△9.9
- 토지대여료	55	75	20	36.4
- 건물대여료	15	15	-	-
- 기타재산수입	1	1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	-	-
- 면허료 및 수수료	-	-	-	-
- 기타잡수입	11	11	-	-
-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760	362	△398	△52.4
- 전년도세계잉여금	1,250	1,257	7	0.56
- 일반회계전입금	8,347	9,215	868	10.4

자료: 질병관리청

그런데 특별회계 세입 중 일부 항목의 경우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먼저,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은 최근 지속적인 예산 편성액 증가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차이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25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대폭 감소(△52.4%)된 3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최근 4년간 수납액 추이를 고려하여 세입예산 추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17]

17) 이와 관련하여 국립마산병원은 국가연구(R&D) 예산 삭감으로 2022년부터 수행한 모든 연구사업이 2024년 말로 종료되고, 2025년 이후 추가적인 연구사업이 전무한 상황으로,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구사업 예산이 2025년에는 전년도 대비 최소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국립마산병원특별회계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의 결산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본예산	추경(A)				
기타잡수입 (수입대체 경비)	2021	426	426	426	810	810	190.1
	2022	439	439	439	842	842	191.8
	2023	568	568	568	719	719	126.6
	2024.9말	760	760	760	453	453	59.6
	2025(안)	362	362	-	-	-	-

자료: 질병관리청

수입대체경비는 그 특성상 연도 중 세출소요가 증가하더라도 초과지출 승인이라는 방식으로 해당 세입으로 세출 소요를 직접 충당할 수 있고, 초과지출은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으므로 집행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 세입을 과소계상하려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음.[18)]

그러나 초과수입에 따른 직접지출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어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함.

아울러 수입대체경비의 과소계상은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예산 편성시 전년도 수입실적, 향후 여건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례적인 과소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규모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측면도 있음.

따라서, 초과지출 승인 규모가 최소화되도록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전년도세계잉여금’의 경우에는 다른 세입항목에 비해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초과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세입예산 편성액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18)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입액은 그 세출로 직접 집행되는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임.

[국립마산병원특별회계 전년도세계잉여금 결산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본예산	추경(A)				
전년도 세계 잉여금	2021	2,466	2,466	2,466	5,830	5,830	536.4
	2022	2,277	2,277	2,277	5,956	5,956	261.6
	2023	5,200	5,200	5,200	7,072	7,072	136.0
	2024	1,250	1,250	1,250	3,042	3,042	243.4
	2025(안)	1,257	1,257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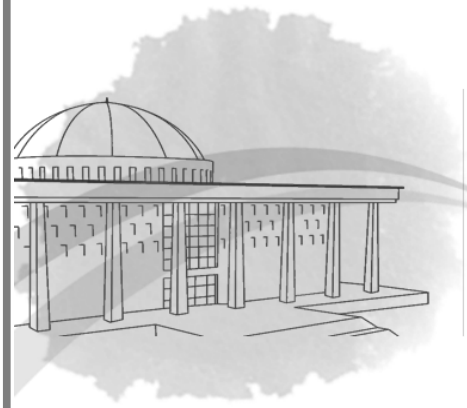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자료: 질병관리청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과소계상은 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 사업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여유재원으로 축적될 수 있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19] 세입예산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증액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20]

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서는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예산액 대비 과다징수는 수입을 적게 계상하고 지출을 크게 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태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20) 이에 대해 국립마산병원은 2021~2024년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초과수입 발생,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편성 누락, 인건비 등 세출예산 집행부진 등으로 전년도잉여금이 과소계상되었으나, 2025년도의 경우 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을 약 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입장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총수입은 2조 5,963억원으로, 전년 대비 702억원(△2.6%) 감소함. 예산은 1조 5,8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89억원(1.2%) 증가한 반면, 기금은 1조 129억원으로 전년 대비 891억원(△8.1%) 감소함.[1)]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5,645	15,834	189	1.2
기 금	11,020	10,129	△891	△8.1
총수입	26,665	25,963	△702	△2.6

문의 : 정지현 예산결산조사관 jihyunjung95@assembly.go.kr (02-6788-569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총지출은 13조 9,819억원으로 전년 대비 4,285억원(3.2%) 증가함. 예산은 13조 94억원으로 전년 대비 5,034억원(4.0%) 증가한 반면, 기금은 9,725억원으로 전년 대비 749억원(△7.2%) 감소함.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25,060	130,094	5,034	4.0
기 금	10,474	9,725	△749	△7.2
총지출	135,534	139,819	4,285	3.2

주) 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세출예산 8,443억원('25년) 미포함

나. 예산안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5개 회계(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조 6,3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79억원(5.1%) 증가함.

[2025년도 환경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39	649	510	366.9
환경개선특별회계	70,476	73,715	3,239	4.6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2,073	1,878	△195	△9.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7	127	110	647.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6	21	15	250.0
합 계	72,711	76,390	3,679	5.1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5개 회계(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1조 4,6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394억원(7.7%) 증가함.

[2025년도 환경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78,748	82,129	3,381	4.3
환경개선특별회계	70,476	73,715	3,239	4.6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30,670	32,007	1,337	4.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8,974	25,967	6,993	36.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380	824	444	116.8
합 계	199,248	214,642	15,394	7.7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환경부 소관 5개 기금(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조 2,2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8억원(△9.7%) 감소함

[2025년도 환경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한강수계관리기금	6,651	6,651	5,626	△1,025	△15.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794	2,794	2,376	△418	△15.0
금강수계관리기금	1,888	1,888	1,908	20	1.1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1,613	1,613	1,697	84	5.2
석면피해구제기금	602	602	623	21	3.5
합 계	13,548	13,548	12,230	△1,318	△9.7

주 1)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세출예산 8,443억원('25년) 미포함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환경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10개(267억 3,0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의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사업(R&D)’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에너지·친환경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대응 태양광 폐패널 이동형 재활용 실증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50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사업’은 도심지 지하공간의 지속적인 개발로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버려지는 지하수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환경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환경개선특별회계]		
1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	2,002
2	전국폐기물통계조사	450
3	환경피해조사 및 피해구제	2,110
4	대기환경무인기 one-stop 플랫폼(R&D)	4,000
5	물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기술개발(R&D)	3,500
6	디지털 담수화 플랜트 농축수 자원화기술개발사업(R&D)	3,700
7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사업(R&D)	5,000
8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R&D)	2,800
9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사업(R&D)	2,70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459
총지출		26,73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환경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하수관로 정비’, ‘무공해차 충전인프라구축’ 사업 등 총 38개임.[3)]

[2025년도 환경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R&D)	9,500	16,720	7,220	76.0
2	공업용수도 안정화	9,266	27,502	18,236	196.8
3	광역상수도 확충	24,204	49,262	25,058	103.5
4	광역상수도 안정화	42,485	58,634	16,149	38.0
5	국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 구축 및 운영(정보화)	3,416	5,820	2,404	70.4
6	수자원공사지원	310,000	340,000	30,000	9.7
7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	36,450	58,504	22,054	60.5
8	댐 안전성강화(Ⅱ단계) 사업	37,055	71,790	34,735	93.7
9	충주댐치수능력증대사업	16,118	30,192	14,074	87.3
10	하천편입토지보상	3,500	10,000	6,500	185.7
11	국가하천정비	662,717	679,400	16,683	2.5
[환경개선특별회계]					
1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59,440	116,661	57,221	96.3
13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51,404	178,693	127,289	247.6
14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22,852	49,011	26,159	114.5
15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운용	9,413	12,639	3,226	34.3
16	기후위기대응 홍수방어능력 혁신기술개발(R&D)	4,770	11,870	7,100	148.8
17	도시홍수시설의 계획, 운영, 유지관리 최적화 기술개발(R&D)	4,500	6,510	2,010	44.7
18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4,442	7,137	2,695	60.7
19	바젤분담협약금	197	346	149	75.6
20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60,023	235,190	75,167	47.0
21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R&D)	4,700	12,500	7,800	166.0
22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	30,000	60,000	30,000	100.0
23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	708	1,058	350	49.4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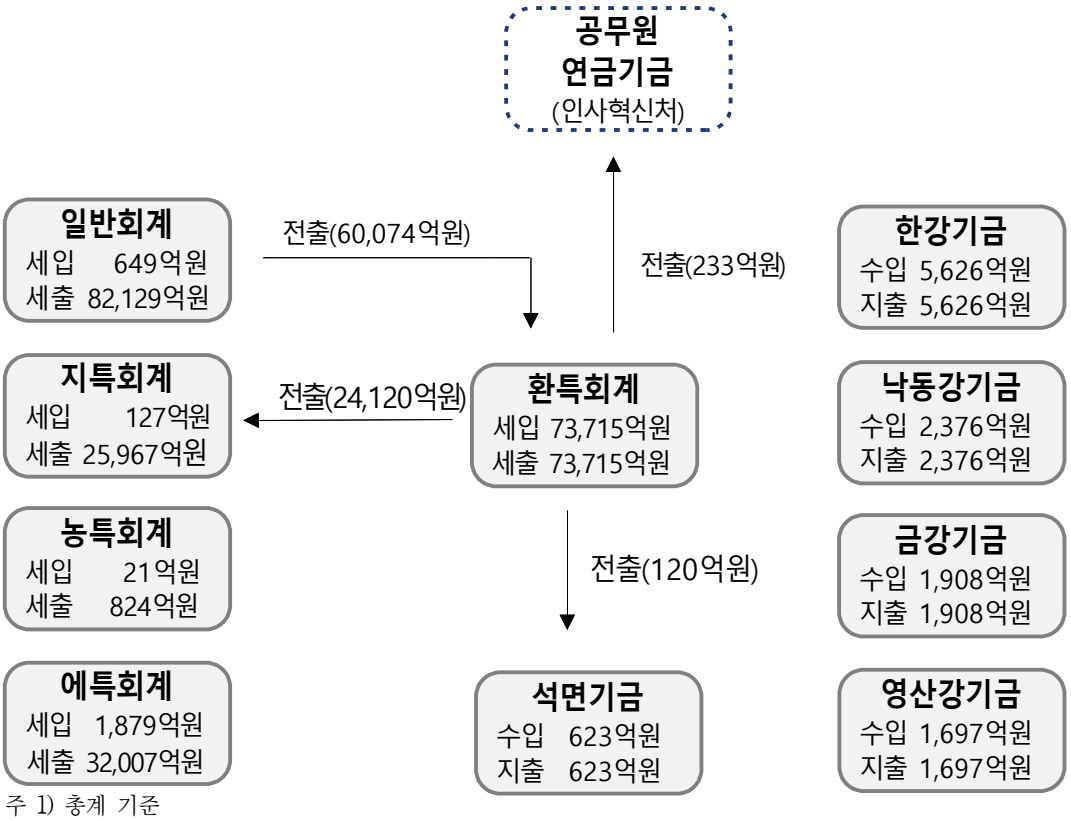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24	물·대기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주요기자재국산화기술개발사업(R&D)	1,296	6,267	4,971	383.6
25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지원	1,812	4,223	2,411	133.1
26	국제환경협력 분담금(ODA)	3,502	5,095	1,593	45.5
27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R&D)	16,105	21,018	4,913	30.5
28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R&D)	2,958	5,041	2,083	70.4
29	화학물질 안전관리 행정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313	522	209	66.8
30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16,589	33,140	16,551	99.8
31	생태계기반탄소흡수원조성·관리기술개발사업(R&D)	1,350	2,365	1,015	75.2
32	유전자원정보관리	517	695	178	34.4
33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R&D)	5,384	10,947	5,563	103.3
34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사업(R&D)	648	960	312	48.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5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734,441	928,423	193,982	26.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6	하수관로정비	1,281,593	1,626,418	344,825	26.9
37	하수관로정비(세종)	3,693	6,151	2,458	66.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8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34,455	79,566	45,111	130.9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6조 74억원 전출되었음. 또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2조 4,120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120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33억원이 전출되었음.

[환경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1) 총계 기준
2) 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세출예산 8,443억원('25년) 미포함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특징으로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강화,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산업 지원 확대로 탄소중립 이행 뒷받침,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서비스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관련 예산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환경부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은 2021년 이전까지 기타재산수입(54-545)에 수납되던 국고보조금 예치이자 등 수납현황을 고려하지 않아 과소계상되었으므로, 세입예산안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 사업은 2024년 9월말 기준 투자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민간투자금 확대 및 명시적인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사업은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융자사업을 수행하면서 민간융자금 잔액의 0.1%를 융자취급수수료로 수취하여 자체수입에 계상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수행을 위한 직접비를 산출하여 사업출연금 등 별도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넷째,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은 2024년 9월말 현재 10개소 중 7개소의 설계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잔여 공사비 전액인 441억 6,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전기차 보급' 사업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전기승용차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계획물량 및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수소차 보급' 사업은 수소차의 전 차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제작사의 생산물량보다도 환경부의 보급계획이 과다함을 고려하여 과다계상된 물량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재산이자수입: 과거 기타재산수입 수납현황을 고려한 세입 예산안 증액 필요

가. 개 요

‘기타재산이자수입’ 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자수입으로, 국고보조금・대행역무비 및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예치이자 등이 수납되는 세입 목임. 환경부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1,200만원(481.9%) 증액된 12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음.[1][2]

[2025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210	1,222	1,012	481.9

환경부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 편성 시 5년간 총 수납액의 평균을 고려하였는데, 이때, 기타재산이자수입이 2022년 신설된 세목이라는 점에서 2019~2021년 수납액을 0원으로 하여 최근 5개년 수납액의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세입예산안을 산출하였음.

---

1) 일반회계-기타재산이자수입(54-546)(기획조정실)

2) 2022년부터 기존 기타재산수입(54-545) 세목이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과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으로 분리됨. 환경부 소관 일반회계에는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이 없어, 사실상 기존 기타재산수입이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명칭 변경된 것임.

[기타재산이자수입 산출 근거]

○5년간 총수납액 61억 1,200만원* ÷ 5년 = 12억 2,200만원
* 61억 1,200만원 = 2022년 수납액 36억 3,100만원 + 2023년 수납액 24억 8,100만원
* 2019~2021년 수납액은 없음

자료: 환경부

나. 검토의견

환경부는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을 5년간 총 수납액 평균으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나, 이는 2021년 이전까지 기타재산수입(54-545)에 수납되던 국고보조금 예치이자 등 수납현황을 고려하지 않아 과소계상된 금액으로 보여지는바, 세입예산안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는 2019~2021년의 세입 수납액을 0원으로 가정하여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을 산출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 일반회계 세입에는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이 없어, 사실상 기존 기타재산수입 세목이 기타재산이자수입 세목으로 명칭 변경된 것임을 고려하면, 환경부는 5년 평균 수납액을 구할 때 2019~2021년 기타재산수입 수납액을 추가하여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어야 함.

2019년 5억 5,500만원·2020년 5억 1,400만원, 2021년 3억 6,700만원의 기타재산수입 수납액을 추가 고려하면, 2019~2023년 5개년 기타재산이자수입 평균 수납액은 15억 8,600만원임.

이 때, 2022년 물관리일원화 이후 하천 관련 보조사업이 모두 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련된 보조금 및 대행역무비 등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3)4)] 2022년 이후 수납액 증가 추세를 반영한 세입예산안 재계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산출한 2021년~2023년 3개년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액 평균은 22억 8,700만원임.

3) 하천 관련 보조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의 경우만 고려하더라도, 2022년 보조금 936억원, 2023년 보조금 1,053억원, 2024년 보조금 1,200억원, 2025년 1,186억원에 달함.

4) 2024년 7월말 기준 예산현액은 2억 1,000만원이었으나, 57억 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3억 4,300만원이 수납되어, 이미 2025년도 예산안 규모의 173.6%를 초과한 금액이 수납되었음.

[2019~2024년 환경부 기타재산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기타재산수입(54-545)	2019	210	210	-	210	555	555	264.3	100.0	-	-
	2020	210	210	-	210	533	514	244.8	96.4	19	-
	2021	210	210	-	210	2,177	367	174.8	16.9	1,810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2022	210	210	-	210	5,806	3,631	1,792.2	62.5	2,174	-
	2023	210	210	-	210	5,092	2,864	1,364.0	56.3	2,227	-
	2024	210	210	-	210	5,709	3,343	1,592.0	58.6	2,365	-
2019~2023년 5년 평균 수납액							1,586.2				
2021~2023년 3년 평균 수납액							2,287.3				

자료: 환경부

이를 고려할 때, 최소 3억 6,400만원에서 최대 10억 6,500만원의 세입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에 대한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 출>

2.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사업: 다양한 관계자 의견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 필요

가. 개 요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사업은 댐 건설을 위한 사전준비 절차 수행을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억 400만원(△52.4%)이 감액된 30억원이 편성되었음.[5)]

[2025년도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6,304	3,000	△3,304	△52.4

환경부는 최근 기후위기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 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물그릇을 넓히기 위한 댐 건설 추진을 추진하며,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사업에서 신규 댐 건설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이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에서 환경부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검토 중인 댐 중 건설이 시급한 댐에 대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63억 400만원을 반영한 바 있음.

2024년에 환경부는 ① 10개소에 대한 기본구상 예산 16억 6,000만원, ②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를 함께 실시하는 3개소에 대한 1차년도 사업비 4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법정민간대행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함.

2025년도 예산안 30억원은 2024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댐 3개소에 대한 2차년도 잔여 사업비임.

5) 일반회계-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5131-313)(수자원정책관)

[2025년도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산출근거]

2024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ㅇ 기본구상(10개소) - 10개소 × 166백만 = 1,660백만원 ㅇ 타당성조사(3개소) - 3개소× 2,548백만 × 60% = 4,644백만원	ㅇ 타당성조사(3개소) - 3개소* × 2,548백만** × 40% = 3,000백만원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 댐(3개소)의 잔여분(40%, 4.5개월) 반영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23.4)
63억 400만원	30억원

자료: 환경부

나. 검토의견

환경부는 2025년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사업에서 신규 댐 3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비 잔여분을 편성하고 있는데, 향후 환경부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타당성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 건설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는 2023년 5월부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홍수의 위험성·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평가하여 2024년도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사업을 통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댐 1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지역에 홍수방어 등을 위해 필요한 기후대응 댐 후보지 14개소를 2024년 7월 발표하였음.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개소 현황]

목적	권역	하천명	행정구역	총저수용량 (만㎥)	유형
다목적 (3)	한강	아미천*	경기 연천	4,500	신규
		수입천	강원 양구	10,000	
	금강	지천	충남 청양	5,900	
용수전용 (4)	한강	산기천*	강원 삼척	100	신규
		단양천	충북 단양	2,600	신규 (기존 댐 저수구역 내)
	낙동강	운문천	경북 청도	660	
	섬진강	동복천	전남 화순	3,100	

목적	권역	하천명	행정구역	총저수용량 (만㎥)	유형
홍수조절 (7)	낙동강	감천*	경북 김천	1,600	신규
		용두천*	경북 예천	160	
		고현천*	경남 거제	80	기존 댐 재개발
		가례천*	경남 의령	490	
		회야강*	울산 울주	2,200	
	섬진강	옥천*	전남 순천	230	
	영산강	병영천*	전남 강진	190	

자료: 환경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24년 10월 내에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개소 중 우선순위 10개소를 선정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2024년도 예산)를 수행할 예정임.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을 통해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고. 기후대응댐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5억톤으로, 이는 220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를 활용하여 극한 가뭄과 국가 전략산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기후대응 댐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타당성조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또한, 환경부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댐건설로 인한 상수원 규제 추가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며,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도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으로, 지역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함. 실제로, 환경부는 14개소 후보지 중 3개소를 제외하고는 최소 1회 이상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함.

[주민협의를 위한 설명회 개최 현황]

권역	행정구역	시행	댐	주민설명회
한강	경기 연천	국가	아미천댐	8.30(금)
	강원 양구		**수입천댐**	**(미개최)**
	충북 단양		**단양천댐**	**(미개최)**
	강원 삼척	지자체	산기천댐	8.27(화)
금강	충남 청양	국가	지천댐	8.27(월)
				9.9(월)
낙동강	경북 청도	국가	운문천댐	9.26(목)
	경북 김천	지자체	감천댐	9.13(금)
	경북 예천		용두천댐	8.21(목)

권역	행정구역	시행	댐	주민설명회
	경남 거제		고현천댐	9.25(수)
	경남 의령		가례천댐	9.10(화)
	울산 울주		회야강댐	9.10(화)
영산강 · 섬진강	전남 화순	국가	**동복천댐**	**(미개최)**
	전남 순천	지자체	옥천댐	9.3(화)
	전남 강진		병영천댐	9.4(수)

자료: 환경부

그러나 강원 양구 수입천, 충북 단양 단양천 등 일부 지역에서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환경단체들의 기후대응댐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반면,

경기 연천 아미천, 경남 거제 고현천 등 일부 지역은 연례적 수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기후대응댐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있음을 고려하여 환경부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25년까지 수행 완료될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 결과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격적인 댐 건설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국가하천정비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관리 철저 및 예산조정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73개(3,602km) 국가하천의 정비를 위하여 하천의 신설 · 증설 · 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하천공사[6]를 시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6억 8,300만원(2.5%) 증액된 6,794억원이 편성되었음.[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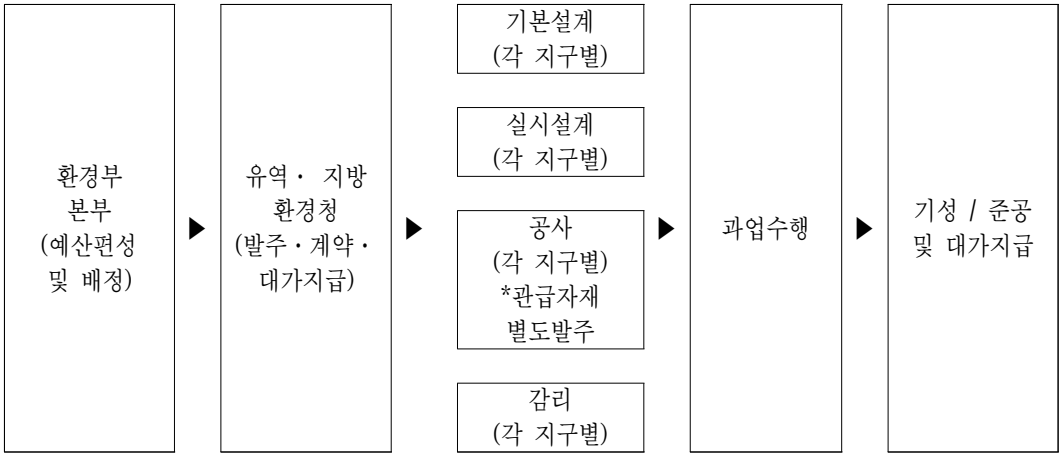
[2025년도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국가하천정비	662,717	679,400	16,683	2.5

이 사업은 환경부 본부에서 예산편성 및 배정을 실시하고, 6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실제 공사를 위한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 등 과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시행 절차]



주)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사업특성 등에 따라 복수의 지구를 묶어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음
자료 : 환경부

6)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 · 증설 · 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7) 일반회계-국가하천정비(5331-301)(수자원정책관)

2025년도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안은 6,794억원으로, ①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하천정비사업(실시설계 55개소, 공사 110개소) 수행을 위한 예산 4,501억원, ②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 정비(설계 8개소, 공사 8개소)를 위한 승격하천정비 예산 535억원, ③ 목감천 저류지 조성 및 제방정비를 위한 예산 600억원, ④ 굴포천과 서낙동강 하천공사 시행 이전 토지보상을 위한 20억원(각 10억원), ⑤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450억원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첫째, 2025년도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안이 편성된 하천 중 일부 개소는 2024년 9월 기준 시설비(건설보상비, 공사비) 집행액이 전혀 없음에도 2025년에 시설비 예산안이 편성되어 연쇄적인 이월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환경부는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예산안의 하천별 세부내역을 보면, 계속사업[8] 중 8개소는 2024년 9월말 현재 예산에 편성된 건설보상비·공사비가 전액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음.

[계속사업 중 2024년 예산 시설비 집행액이 없는데 2025년 예산안이 편성된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하천명	전체시설비			24년 시설비 본예산			25년 예산안			
		계	건설보상비	공사비	계	건설보상비	공사비	합계	건설보상비	공사비	기타
2021~2027	홍릉천	31,100	16,300	14,800	64	32	32	3,002	1,430	1,420	152
2022~2028	평강천	22,112	-	22,112	1,000	-	1,000	2,230	-	1,980	250
2023~2027	한강	36,392	-	36,392	100	-	100	3,350	-	2,970	380
2023~2026	남강	11,546	2,690	8,856	2,000	-	2,000	2,196	656	1,350	190
2023~2026	남강	25,879	8,030	17,849	3,400	-	3,400	4,352	2,802	1,360	190
2023~2026	서낙동강	19,111	1,534	17,577	1,000	-	1,000	1,463	103	1,210	150
2023~2026	남강	23,200	600	22,600	1,100	-	1,100	2,240	340	1,680	220
2023~2026	화포천	26,200	7,400	18,800	100	-	100	2,430	1,920	450	60

주 1) 시설비는 건설보상비(410-00목)과 공사비(420-03목)을 합한 금액임
2) 표에 제시된 하천의 경우, 2023년까지 시설비 기집행액이 전혀 없고, 2024년 시설비 집행액도 없음
3) 25년 예산안의 '기타'는 감리비·실시설계비 등을 의미함

자료: 환경부

8) 계속사업은 2024년 이전부터 환경부가 국가하천정비사업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의미함.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각 하천별 정비를 위한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와 하천 인접지역에 대한 토지보상이 수반되어, 다년도에 걸쳐 사업이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의 시설비 집행액이 전혀 없음에도 2025년에 공사비·보상비 등이 편성될 경우, 연쇄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토목공사의 경우 선보상 후착공의 원칙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이월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보다 축소하여 반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침의 취지를 고려할 때, 2024년 9월 기준 시설비 집행액이 전혀 없음에도 2025년 시설비가 편성된 하천의 경우 연쇄적 이월이 우려되므로 향후 환경부는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환경부는 예산안 국회 의결 이후 과다한 사업비 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안 편성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가능한 시설비의 편성을 통해 예산 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는 2024년 예산안 심의 당시 9개소의 하천정비사업을 2024년도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개소의 잔여사업비를 전액 계상하였음.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2025년에도 9개 하천의 건설보상비·공사비가 편성되어 있음.

[2024년 연도 중 사업비 조정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하천명	24년 시설비 본예산 (A)	24년 시설비 예산(9월기준)			2024년 연도 중 조정액 (C=B-A)	25년 예산안			
			계 (B)	건설 보상비	공사비		합계	건설 보상비	공사비	기타
2016-2024	고부천	33,617	24,500	-	24,500	△9,117	23,270	-	22,960	310
2018-2024	공릉천	3,666	4,003	17	3,986	337	4,807	17	3,950	840
2020-2024	황강 (합천)	4,693	7,252	252	7,000	2,559	4,570	-	4,030	540
2020-2024	황강 (거창)	4,693	7,000	-	7,000	2,307	6,435	105	6,020	310
2021-2024	평강천	4,172	1,800	-	1,800	△2,372	1,800	50	1,750	-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하천명	24년 시설비 본예산 (A)	24년 시설비 예산(9월기준)			2024년 연도 중 조정액 (C=B-A)	25년 예산안			
			계 (B)	건설 보상비	공사비		합계	건설 보상비	공사비	기타
2021~2024	수영강	8,790	2,400	-	2,400	△6,390	5,201	1,131	3,910	160
2021~2024	금호강	5,968	10,200	3,600	6,600	4,232	5,491	4,281	990	220
2021~2024	화포천	10,349	5,200	-	5,200	△5,149	2,910	-	2,870	40
2022~2024	금강	6,775	7,000	-	7,000	225	3,440	-	3,340	100

주 1) 시설비는 건설보상비(410-00목)과 공사비(420-03목)을 합한 금액임
2) 25년 예산안의 '기타'는 감리비·실시설계비 등을 의미함
자료: 환경부

이는 환경부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하천별 예산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임.

환경부의 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환경부는 각 하천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설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사업(고부천, 평강천, 수영강 등)의 시설비 예산을 조정하고 집행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의 시설비 예산을 증액 조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정은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사업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기 때문인 바,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 방식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환경부는 국가하천정비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가능한 시설비를 편성하여 집행과정에서의 예산 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 출>

4.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사업: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사업은 녹색산업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출자(2024~2028년, 연간 600억원)를 통해 총 4,000억원(정부 3,000억원, 민간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0억원(100.0%) 증액된 600억원이 편성되었음.[9)]

[2025년도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30,000	60,000	30,000	100.0

환경부는 2024년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출자하여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있음.[10)] 환경부는 이 펀드를 통해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해외 녹색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를 할 예정임.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 사업 개요]

구분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
펀드설정	- 모태펀드 : 3,001억원* (펀드 설정 완료 2024.09.12.)

9) 환경개선특별회계-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1531-318)(녹색전환정책관)

10) 당초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의 PIS펀드(Plant, Infra, Smart city펀드: 해외수주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2019년부터 출자를 시작한 펀드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서 관리 중임)의 2단계 조성이 2024년에 시행될 것임을 고려하여 PIS+E 계정을 신설하여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 PIS펀드 2단계 조성이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별도의 펀드로 KIND에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를 조성하여 출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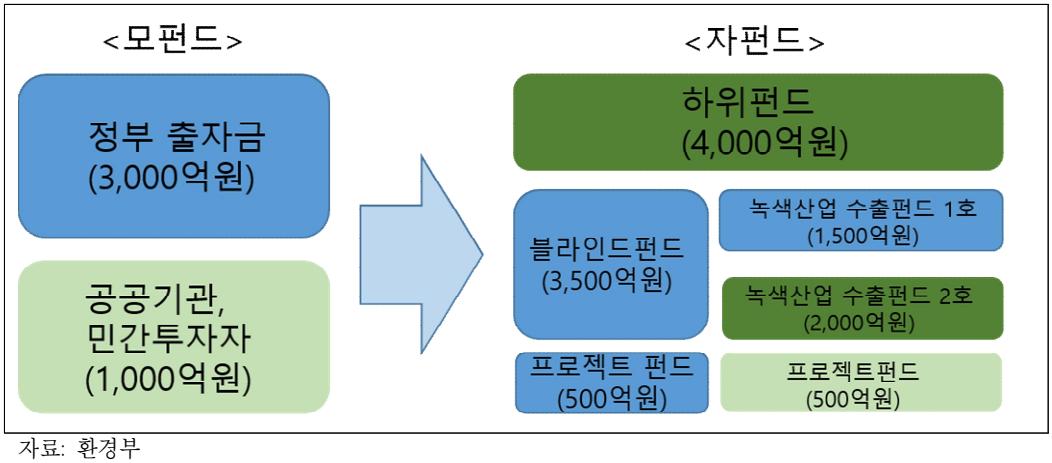
구분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
	- 하위펀드: 4,000억원(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펀드로 구성) * 하위 블라인드 1호 펀드는 최소 1,500억원으로 2024.9월 말 조성 예정이며,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블라인드펀드 및 프로젝트펀드 조성 목표
조성액	4,000억원(정부 3,000억원, 민간 1,000억원)
운용사	- 모태펀드 주간운용사: 한화자산운용(2024.7 선정 완료) - 하위블라인드 1호 펀드 운용사: 한화자산운용
투자대상분야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해외 녹색사업 프로젝트
투자 비율 (의무, 자율)	녹색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펀드이므로 의무투자 비율 80% 이상
사업별 한도	총 펀드약정금액 20~30% 이내 *향후 펀드 운용사와 협의하여 결정 예정

주) 모태펀드는 자본시장법 상 신탁형 펀드로 1인 수익자로 펀드 설정이 어려워, 자산운용사 외 1인이 투자하여 3,001억원으로 펀드 설정 완료 (KIND(정부예산) 3,000억원 및 한화투자증권 1억원으로 구성)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정부재정 3,000억원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투자자로부터 1,000억원, 총 4,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여, 블라인드펀드[11]와 프로젝트 펀드[12]를 조성하여 투자를 진행할 예정임.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구조]



자료: 환경부

11) 투자금을 미리 모집하고 그 이후에 투자 대상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방식

12) 투자대상을 특정한 후에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하는 방식

나. 검토의견

첫째,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2024년 9월말 기준 투자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환경부는 2024년 예산액 300억원 전액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출자하여, 부 차원의 집행률은 100.0%로 국회에 보고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9월 23일 기준 펀드의 투자실적이 전혀 없고, 하위펀드도 조성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대해 환경부는 펀드 조성 첫 해이므로 펀드 운용방안 마련 등 하위펀드 조성에 기간이 소요되어 투자실적은 없으나, 2024년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2024년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월별 추진내역]

- 2024.2월~4월: 펀드 조성방안 연구 - 2024.5월: 펀드 조성・운용방안 확정 - 2024.6월~7월: 운용사 공모・선정 - 2024.8.28.: 투자협약 체결(환경부-KIND-한국수자원공사-한화자산운용)

자료: 환경부

그러나, 출자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펀드 결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신규 출자를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아직 하위펀드가 결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고, 블라인드펀드의 경우에 하위펀드가 결성된 이후에야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 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2024년 펀드 출자액 300억원(국비)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600억원의 예산을 2025년도에 편성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도 펀드 출자사업의 경우 기출자예산의 집행실적(기존 출자예산을 통한 자펀드 결성 실적 및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 현황 등), 투자금의 회수 및 재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적정한 출자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2024년 9월말 기준 투자실적이 전혀 없음을 고려하여,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의 2025년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 사업은 정부출자금 외 민간투자자금과의 매칭 비율이 3:1로, 정부 출자금 비중이 타 펀드(PIS펀드) 대비 높으므로 정부출자금을 줄이고 민간투자자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예산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정부출자 3,000억원, 민간투자(공공기관 포함) 1,000억원으로 펀드 재원을 조성할 예정임.

[정부출자 및 민간투자 계획('24~'28)]

(단위: 억원)

구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4,000	400	800	1,200	1,200	400
정부 출자	3,000	300	600	900	900	300
민간 투자 (공공기관 포함)	1,000	100	200	300	300	100

환경부는 민간투자(총 1,000억)자금 매칭 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의 투자를 포함해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라면 대부분의 펀드 자금이 정부와 공공기관 예산으로 조달된다는 것을 의미함.

정부가 모태펀드에 예산을 출자하고, 모태펀드가 운용사를 선정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한 뒤 자펀드를 결성하여 자율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민간영역에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기능도 있으므로, 민간 분야에서의 출자를 장려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13)]

한편,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하위펀드 1호 조성시 1,6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인데, 이 중 민간투자금 예정액은 490억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 200억원·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50억, 한화자산운용 70억원, 한화생명 80억원의 민간투자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여전히 순수 민간투자금은 150억원으로 9.4%에 불과하므로, 향후 민간 분야 출자금 확대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투자 비중의 축소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3) 참고로, 국토교통부의 PIS펀드의 경우,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와 동일하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해당 펀드의 경우 공공(국가+공공기관)과 민간의 매칭 비율이 4:6임.

셋째, 환경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정책펀드 사업을 통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모펀드 조성 시 출자예산의 국고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모펀드의 존속기간도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적근거의 마련이 필요해 보임.

모펀드를 조성하는 사업 방식은 모펀드가 여러 하위펀드에 분산 투자하여 다양한 투자처를 발굴하고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모펀드에 출자한 예산은 관행적으로 모펀드가 청산된 후에야 국고로 회수되는데, 모펀드의 존속기간은 통상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출자예산이 회수될 수 있음.

또한 정부는 하위 펀드의 청산에 따른 회수금이 모펀드로 분배될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치지 않고 회수재원을 통해 재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의 집행상 자율성이 큰 사업구조일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모태펀드는「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14]에 결성근거를 두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도「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제8조[15]에서 결성근거 및 30년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

1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산업발전법」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15)「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②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그런데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펀드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환경부는 2024년에 이 사업을 신설하고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자 하면서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4[16]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지원근거에 불과하여 녹색산업 관련 펀드 조성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는 이 사업이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때부터 제기된 국회의 지적인데,[17] 이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여전히 펀드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으로 보임.[18]

따라서, 조속히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 사업의 모펀드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6)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설립 등) ④ 정부는 지원공사의 해외인프라 · 도시개발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4(자본금 등) ②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7) 이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정책펀드 사업을 통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②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이 2024년 6월 이후에 완료되고, 투자계약서 체결 및 하위펀드 운용사 선정·결성이 ’24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2024년 연내 펀드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출자금 예산 감액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정부안 600억원 중 300억원이 감액 되었음.

18)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23년 11월 정부입법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1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폐기되었고, 2024년 9월 27일 해당 내용을 포함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설명함.(의안번호 220441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6인))

5.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운영 사업: 사업 지연을 고려한 운영비 예산안 감액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운영’** 사업은 유아 전용 환경교육 체험학습장인 유아 기후환경교육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2,000만원(100.0%) 증액된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19)]

[2025년도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환경교육강화	1,644	1,932	288	17.5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설치 및 운영	1,204	1,324	120	10.0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운영	120	240	120	100.0

주) 2024년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이었고, 2025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이관됨

유아 기후환경교육관은 체험·놀이 중심 누리과정에 적합한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유아 전용 환경교육 체험학습장으로, 수준별·유형별 맞춤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유아 기후환경교육관에서는 만 3~5세 유아 대상으로 체험환경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유아교사 대상 연수 등을 실시하여 유아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환경부는 2010년부터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1개소(수도권)를 운영하여 환경교육 방문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3년 이후 충남권, 충북권 유아 기후환경교육관을 지정하여 유아 환경교육 운영 사업을 실시 중임. 환경부는 2024년 예산에서 지자체 자본보조사업(보조율 50%)으로 전북권(전주)·강원권(원주)에 교육관을 설치 중에 있음.

2025년도 이 사업 예산안은 총 2억 4,000만원으로, 충북권 교육관 민간위탁 운영비 1억 2,000만원, 2024년 설치 중인 전북권·강원권 교육관에 대한 운영비(인건비 포함) 각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20)]

19) 환경개선특별회계-환경교육강화(1535-309)(기후탄소정책실)

20) 6,000만원 = 1억 2,000만원×보조율 50%

나. 검토의견

환경부는 전북권·강원권 모두 2025년 1월부터 교육관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강원권 유아 기후환경교육관은 2025년 9월 이후에야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므로, 설치 이전 기간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지자체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운영비는 2024년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설치 사업이 완료된 이후 집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설치 사업의 실집행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24년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설치 사업의 실집행현황을 보면, 7월말 기준 환경부는 전북권에만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고, 강원권에는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예산액 10억원 중 1억 4,1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14.2%)된 상황임.

[2024년 7월말 기준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설치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	환경부		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전북권 (전주)	400	400	400	-	400	141	-	-	35.3
강원권 (원주)	600	-	-	-	-	-	-	-	-
계	1,000	400	400	-	400	141	-	-	14.2

자료: 환경부

개소별로 살펴보면, ① 먼저 2024년 7월말 기준, 전북권(전주) 교육관은 예산현액 4억원 중 1억 4,1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35.3%) 되었음. 전북권 교육관의 경우 2024년 10월 현재 자연생태관 내 리모델링 등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로, 2024년 10월 말 잔여 공사비 교부 등을 통해 2024년도 내에 전액 집행할 예정임.

환경부는 2024년 11월 이후 전북권(전주) 교육관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함. 이러한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전북권 교육관에 대한 운영비 12개월 분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임.

② 반면, 강원권(원주)의 경우, 환경부가 당초 경남권(창원)에 교육관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창원시의 부지 미확보 등으로 인한 사업 포기로 인해 2024년 6월 사업지가 재선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강원권(원주) 교육관은 2024년 10월~12월 교육관 설치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2025년 2월~6월까지 교육관으로 사용할 공간의 리모델링을 수행할 예정이며, 2025년 5월~8월 교육관 운영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고,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임.

[강원권(원주)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사업 추진계획]

- 2024년 9월 국비 6억원 교부 이후 용역 추진, 지방비 6억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 예정 - 2024년 10월~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예정 - 2025년 2월~6월: 공간리모델링(전기, 설비 포함) - 2025년 5월~8월: 장비 구축 및 홍보·교육프로그램 구성 → 2025년 하반기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운영 목표

자료: 환경부

이에 따라 2024년 10월 10일 현재까지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실질적으로 10월 내에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고,[21] 그 결과 당초 원주시에서 수립한 추진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바, 2025년 9월 이후에야 강원권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2025년 예산안은 2025년 1월부터 강원권 교육관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6,000만원(1억 2,000만원×보조율 50%)의 운영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사업 지연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의 운영비 예산은 감액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21) 2024년 10월 22일 현재 설계용역을 위한 공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사업: 융자취급수수료 수취 후 자체수입 계상 방식의 부적정

가. 개 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수지차보전 출연금을 편성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억 4,900만원(3.4%)이 증액된 584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22)]

[2025년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56,525	58,474	1,949	3.4

이 사업은 수지차보전지원 공공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하여 매년 지출총액(예상액)에서 자체수입(예상액)을 제외한 차액을 세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210억 6,800만원을 자체수입 예상액으로 추계하였음.

[2023~2025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체수입 예·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안	예산 산출 내역
	예산	결산	예산	결산 (6월말기준)		
자체수입 계	**12,323**	**10,677**	**22,068**	**13,638**	**21,068**	
ㅇ이월결산잉여금	5,475	5,475	4,262	1,964	4,262	전년동
- 전기이월금	2,254	2,254	3,137	839	4,262	
- 전전기이월금	3,221	3,221	1,125	1,125	-	
ㅇ사업수입	5,658	4,899	15,870	9,872	14,870	
- 환경기술평가 수수료	831	574	824	536	824	134건×6.15백만원
- 녹색인증 수수료	283	223	254	116	254	379건×0.67백만원

22) 환경개선특별회계-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1534-302)(녹색전환정책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안	예산 산출 내역
	예산	결산	예산	결산 (8월말기준)		
- 순환자원 품질인증 수수료	6	12	11	1	11	74건×0.15백만원
- 환경시험분석 수수료	363	249	342	171	342	2,870건×0.12백만원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수수료	29	-	-	-	-	수수료 폐지 (2023.5.19 관련 고시 개정)
- 환경정책융자금 운영	**1,740**	**1,547**	**1,740**	**837**	**1,740**	**기융자금(15,550억×0.1%) + 차년도 예상 융자금 (3,800억×0.1%×6/12개월)**
- 국유재산관리	32	30	30	15	30	895㎡×2,818원/㎡ x12개월×100%
-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	2,374	2,264	2,797	1,292	2,797	135개사×20.7백만원
- 환경표지인증 수수료	-	-	4,902	3,873	4,422	4,606건×0.96백만원
- 환경성적표지인증 수수료	-	-	1,961	1,600	1,761	926건×1.90백만원
- 그린카드 수수료	-	-	3,009	1,431	2,689	예상 매출액 10.34조원× 카드사 제공 기금율 0.026%
○사업외수입	1,190	303	1,936	1,802	1,936	전년동
- 잡수입	1,129	224	1,851	1,730	1,851	
- 이자수입	61	79	85	72	85	

이 중 환경정책융자금 운영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융자·이차보전 사업에서 수취하는 융자잔액의 0.1%를 수수료로 징수하여 자체수입에 계상한 것으로,[23] 2025년도 예산안 상 17억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2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친환경설비투자 등 정책융자사업의 융자업무위탁기관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환경부 고시) 제5조 별표에 따라 융자업무위탁기관으로서 융자 원금의 0.1%를 취급수수료로 지급받고 있음.

나. 검토의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융자사업을 수행하면서 민간융자금 잔액의 0.1%를 융자취급수수료로 수취하여 자체수입에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수행을 위한 직접비를 산출하여 사업출연금 등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융자지원 사업은 개별 부처의 사업관리지침 및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융자 잔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 등의 일정 비율을 융자취급수수료로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위탁기관인 공공기관이 수취하게 됨.[24)]

그런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위탁받아 수행하는 융자 및 이차보전 업무에 대하여, 위탁기관인 기술원이 융자원리금 상환액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로 수취하고, 남은 잔액을 융자원리금으로 국고로 수납하고 있어 법률상 근거 없이 세입을 자체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23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청정대기 전환 시설 융자, 친환경설비투자 사업 및 과거 정책융자로 지원했던 사업에 대하여 기존 실시한 융자잔액의 0.1%를 융자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직접 기관 자체세입(환경정책융자금 운영)에 충당하였음.

[2023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융자취급수수료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2023년 본예산	위탁기관 지급 비용			
			지급 비용명	산정 방식	실제 지원액 (2023년 기준)	위탁기관명
환경부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재정융자)	278,893	융자취급 수수료	∑ (일단위 융자잔액 × 0.1%)	666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이차보전)	8,893	융자취급 수수료 (이차보전)		374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이차보전)	2,400	융자취급 수수료 (이차보전)		9	

24) 각 부처는 기존 공공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지원 사업에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을 포함시켜 지원(기획재정부의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공단 등)하거나, 별도 사업비를 편성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사업관리 비용을 충당(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 통일부의 한국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2023년 본예산	위탁기관 지급 비용			
			지급 비용명	산정 방식	실제 지원액 (2023년 기준)	위탁기관명
	(이월)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재정융자)	-	융자취급 수수료		152	
	과거 융자사업* (재정융자)	-	융자취급 수수료		275	
	친환경설비투자 (기후대응기금)	100,000	융자취급 수수료		61	
계					1,537	

주 1) 과거 융자사업은 공자기금융자, 환경산업육성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중소도시지방상수도자금, 연안하수처리장설치자금 등을 포함한 現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를 제외한 환특회계 및 에특융자 사업의 융자잔액에서 수취된 위탁기관 지급 비용을 의미
2) 융자취소, 연체이자에 따른 잡수익 등 1,000만원 미포함
자료: 환경부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결산 기준 15억 3,700만원을 융자원리금 상환액에서 제외하고 국고로 반납하였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취한 수수료는 기술원의 자체수입 중 환경정책자금 운영으로 계상되어, 기술원 사업관리비, 인건비, 경상비, 예비비로 활용되고 있음.

[2024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수수료 사용계획]

구분	지출예산	세부내역
사업관리비	663	융자심사 및 현정점검 등 사업운영(200), 완료보고서 검토 및 회계정산(200), 시스템 유지보수(100), 홍보 및 성과확산(163)
인건비	613	융자 담당 7명 인건비(정규직 6명, 공무직 1명)
경상비	**454**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동 경비**
예비비	10	기관 총 예비비 중 정규직 6명에 대한 예비비
계	1,740	2024년 수수료 수입 목표 기준

주) 2023년 수수료 수입에 대응되는 지출내역을 제출받지 못하여 2024년 사용계획을 제시함
자료: 환경부

그러나 융자사업 내 편성된 융자금을 집행한 결과 발생한 이자수익은 전액 국고로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을 위탁관리하는 기관이 0.1%의 수수료를 융자사업의 수수료로 징수하여 자체수입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위탁수행하는 융자 사업을 통해 발생한 원리금 수익 중 일부를 동 기술원이 융자취급수수료로 징수하고 자체수입에 계상하는 현재의 방식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별도 사업비 편성을 통해 사업관리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 사업: 2025년 내 준공 가능성을 고려한 공사비 조정 여부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 사업은 곰 사육 종식(2026년 1월~) 및 동물원 이외 시설 야생동물 전시제한(2023년 12월~) 에 따른 야생동물 유기·방치 증가에 대비하여 보호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억 4,100만원(39.8%) 증액된 106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25)]

[2025년도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67,615	51,825	△15,790	△23.4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	7,640	10,681	3,041	39.8

곰 사육 농가의 불법 증식 및 열악한 사육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는 사육곰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사육곰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중성화 사업의 대상이 아니었던 ‘학술 연구·관람’ 용도의 사육곰에 대해서는 불법 증식 및 도축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지속되었음.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1년 8월부터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육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곰 사육 종식 논의를 착수하였고, 사육곰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곰 사육 종식을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협약 체결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육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였음.[26)]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 사업은 이러한 곰 사육 종식에 따른 야생동물 유기·방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에 보호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어 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임.

---

25) 환경개선특별회계-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1831-309)(자연보전국)

26) 2022년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24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19호, 2024.1.23., 일부개정](2025.1.24.시행) 개정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 사업 개요]

○ (사업기간/수행방법) 2022~2025년/환경부 직접 수행 ○ (사업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125 일대 ○ (총사업비) 241.5억원→267.23억원* * 설계비 12억원, 공사비 228억원, 보상비 6억 원, 감리비 20억원, 시설부대비 0.5억 원 ○ (사업규모) 사육곰 및 유기 야생동물 내실 및 방사장, 검역치료센터, 방문자시설 및 사무동 등 설치 ※ 대지면적 84,846㎡, 연면적 4,843.09㎡

자료: 환경부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267억 2,300만원으로, 연도별 예산 투입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설계비 등 8억 2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23년에는 1차년도 공사비 76억원이 편성되었음.

2024년에는 2차년도 공사비와 시설부대비 총 76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5년도 예산안에는 잔여사업비 106억 8,100만원(공사비 93억 2,600만원, 감리비 13억 4,3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 사업은 2025년 내 준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사비 일부에 대한 조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환경부는 당초 2023년 11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농지·산지 전용허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발주를 실시하고, 2023년 12월 착공을 실시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실시설계 완료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국유재산 관리전환 비용 추가 발생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지며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업 지연에 따라 환경부는 2024년 2월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2024년 7월에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 사업 건축공사를 공고하여, 2024년 9월에 이르러서야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음.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

○ 2022.4.~11. 사업 기본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용역 추진 ○ 2022.1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3.6.~8. 국유재산 관리전환 협의 ○ 2023.8.~2024.2.: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적정성검토 후 총사업비 협의 진행 ○ 2023.9.~2024.3.: 교통영향평가, 농지·산지전용허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진행 ○ 2024.9.: 공사계약 체결

자료: 환경부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3년 공사비 76억원을 전액 2024년으로 이월했으며, 2024년 10월말 기준 공사계약 체결에 따른 선금 지급으로 예산현액 152억 3,000만원 중 116억원을 집행(76.2%)하였음.

[2022~2024.9.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2	900	900	-	50	950	-	802	148	-
2023	7,600	7,600	802	-	8,402	802	7,590	10	9.5
2024.10.	7,640	7,640	7,590	-	15,230	11,600	-	-	76.2

자료: 환경부

이에 대해 환경부는 총사업비 조정 등 사전 절차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것은 인정하나,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 사업은 사육곰 등 야생동물 방사장이 주된 설치 시설이라고 설명하며 2025년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환경부가 대전지방조달청을 통해 공고한 입찰공고서에 따르면,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 사업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540일으로, 2026년 이후에 건축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

또한, 입찰공고서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종합공사로 방문자센터, 검역시설(치료시설 포함), 동물사(보호시설) 등 9동으로 구성되어 공정계획 및 시공 방법이 다양하고, 방사장 연계 등으로 인해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되고 있어, 환경부의 설명과 같이 단순 방사장 설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27)]

27) 이에 대해 환경부는 당초 통상적인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서에 540일(18개월)로 공사기간을 작성하였으나, 행정절차 최소화, 인력 추가 투입 등을 통해 건축공사 기간 단축 등을 하여 공사를 2025년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 사업 공사 입찰공고서]

○공 사 명 : 야생동물 보호시설(생츄어리) 조성사업 건축공사 ○수요기관 : 환경부 ○공사현장 : 충청남도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40일** ○종합심사 평가대상 업종 - 건축공사업 : 100.0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 입니다. ○본 공사는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방문자센터, 검역시설(치료시설 포함), 동물사(보호시설) 등 9동으로 구성되어 공정계획 및 시공 방법이 다양하고, 방사장 연계 등으로 인해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여 종합건설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의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신설공사' 입니다.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공사비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이월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보다 축소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침의 취지를 고려할 때 2024년 4분기 착공예정으로 공사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 사업 공사는 2025년 내 준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사비 일부에 대한 조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8. 사육곰 보호시설 자산취득 사업: 시설공사 완료 후 자산취득 추진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사육곰 보호시설 자산취득’** 사업은 곰 사육 종식에 따라 몰수되는 사육곰 및 유기·방치되는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기자재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8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28)]

[2025년도 사육곰 보호시설 자산취득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29,098	29,275	177	0.6
사육곰 보호시설 자산취득	-	843	843	순증

환경부는 곰 사육 종식에 따른 야생동물 유기·방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에 보호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29)]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건립이 완료되면 이 사업을 통해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동물의료기기, 검역장비, 사육관리장비 등을 구매할 예정임.

사육곰 보호시설 자산취득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8억 4,300만원으로, 동물의료기기 5억 3,900만원·검역장비 1억 5,400만원·사육관리장비 1억 5,000만원의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어있음.

28) 환경개선특별회계-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1831-304)(자연보전국)

29) 환경개선특별회계-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1831-309)(자연보전국)

나. 검토의견

환경부는 야생동식물 보호시설이 건립 완료되면 자산취득한 자산을 구비·활용할 계획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사육곰 보호시설 자산취득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야생동식물 보호시설의 2025년 내 준공이 어려울 수 있고, 일부 자산취득 대상 물품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 내 납품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건립 완료 후 2026년도 예산안에 이를 계상하여 구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환경부가 사육곰 보호시설 자산취득 사업을 통해 구매하려는 자산은 동물병원 의료기기, 검역장비, 동물운송장비, 먹이관리장비 총 4가지의 종류임.

[사육곰 보호시설 자산취득 목록]

구분	장비명	금액 (백만원)
동물병원 의료기기	혈액검사장비 (혈액, 혈구기계)	70
	영상검사장비 (초음파, 방사선 등)	245
	마취장비	102
	수술 및 멸균장비 (고압멸균기, 스크럽스테이션 등)	82
	집중치료 장비 (인퓨전 펌프 등)	7
	치과(덴탈유닛) 및 안압계 등	24
	약품 및 기타 장비 (요검사기계 등)	9
검역장비	원심분리기, PCR검사기, 배양기 등	103
	약품 냉동고 및 테이블	51
동물운송장비	동물 운송 케이지, 운송 지게차 등	120
먹이관리장비	먹이 냉동고	30

자료: 환경부

그런데 자산취득 이후 이를 보관·배치할 시설인 '야생동식물 보호시설'은 환경부의 입찰공고서에 따르면 착공일부터 540일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데, 2024년 9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을 고려하면 2025년 내 준공이 어려울 수 있음. 이를 고려하면 2025년도 예산안에서 자산취득을 미리 실시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 사업 공사 입찰공고서]

○공 사 명 : 야생동물 보호시설(생츄어리) 조성사업 건축공사 ○수요기관 : 환경부 ○공사현장 : 충청남도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40일** ○종합심사 평가대상 업종 - 건축공사업 : 100.0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 입니다. ○본 공사는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방문자센터, 검역시설(치료시설 포함), 동물사(보호시설) 등 9동으로 구성되어 공정계획 및 시공 방법이 다양하고, 방사장 연계 등으로 인해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여 종합건설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의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신설공사' 입니다.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25년 하반기 내에 건립을 완료할 예정이고 시설 개소 전 검역 등 입식 준비를 위한 의료기기 구비가 필요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그런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취득하려는 물품 중 일부는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납품 가능한 것으로 조회되어[30] 2025년도에 미리 자산취득을 실시할 시급성이 낮아 보임.[31]

이를 고려할 때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 사업이 2025년 하반기 준공될 확률이 낮고, 자산취득 대상 물품의 납품기한을 고려하면 2026년 신속한 자산취득을 통한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0) 주요 물품의 납품기한을 조회해보면, 집중치료장비 30일・냉동고 30일・기타 동물용 의진단용약 30일・약품장 30일 등이고,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조회되지 않는 동물용 안압계 등 장비의 경우 별도 의료기기 쇼핑몰이 존재하여 신속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31) 이에 대해 환경부는 30일 내외의 납품기간이 있는 물품도 다수 있다고 인정하나, 혈액검사장비 중 일부는 납품업체와 규격협의 및 행정절차 등을 포함할 경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임.

9.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감액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은 하수관로에 실시간 수량·악취를 감시·제어할 수 있는 ICT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도시침수와 악취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40억 7,200만원(337.5%)이 증액된 44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32)]

[2025년도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22,852	49,011	26,159	114.5
스마트 하수관로	10,096	44,168	34,072	337.5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자치단체 보조사업(보조율 70%)으로, 하수관로에 ICT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도시침수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도시침수 대응 5개소,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저감장치 자동 운영을 하려는 하수악취 관리 5개소로 구성됨.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 설명자료]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스마트 하 수 관 로	도시침수 대응	• 강우 시 하수 월류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ICT 측정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수량 모니터링, 강우유출 시뮬레이션, 하수도 시설 연계 운영 등 **도시침수 대응체계 구축**
	하수악취 관리	•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하수 악취 저감을 위해 ICT 측정 장비를 활용한 하수관로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악취 저감장치 자동 운영 등 **하수악취 관리체계 구축**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25년 사업 종료를 목표로, 10개소에 대한 잔여사업비 441억 6,800만원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음.

32) 환경개선특별회계-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1132-309)(물환경정책관)

나. 검토의견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은 2024년 9월말 현재 10개소 중 7개소의 설계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 예산안에 잔여 공사비 전액인 441억 6,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의 사업추진 이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2021년 실집행률 0%, 2022년 61.2%, 2023년 0.3% 이후 2024년 7월말 기준 실집행액이 없음.

[2021~2024.7.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2021	8,178	8,178	8,178	-	8,178	-	8,178	-	-
2022	20,000	3,550	3,550	8,178	11,728	7,128	4,550	50	61.2
2023	41,670	2,085	2,085	4,550	6,635	120	3,638	2,877	0.3
2024.7.	10,096	244	244	3,638	3,882	-	-	-	-

자료: 환경부

당초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은 2021년 중 하수관로에 ICT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설계를 마친 후, 즉시 공사에 착수하여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방비 확보, 설계용역 발주 이전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사업부지 선정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지연이 발생하여 10개소 지자체의 실집행률은 모두 0%였음.

2022년 상반기에 이르러서야 사업대상 10개소에 대한 설계용역 착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4년 9월말 기준, 포항시, 대구광역시 도시침수대응 2개소와 광주광역시 동구 악취관리 1개소는 설계완료 이후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이행 중이고, 나머지 7개소는 아직 설계진행 중임.

[스마트 하수관로사업 집행지연사유]

종류	지자체	지연 사유
도시침수 대응	광주광역시	- 전 배수구역 조사, 침수대응시설 설치 검토 지연 (2022.2.~2024.10.예정)
	인천광역시	- 정보화사업 관련 행정절차 이행, 침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검토 과정 지연 (2022.5.~2024.10.예정)
	대구광역시	- 전 배수구역 조사, 침수대응시설 설치 검토 및 측정 물량 검토 지연 (2022.6.~2024.9.완료)
	광양시	- 전 배수구역 조사, 측정 물량 검토 지연 (2022.3.~2024.10.예정)
	포항시	- 전 배수구역 조사, 사업규모 변경 검토 지연 (2022.4.~2024.9.완료)
하수 악취관리	대구광역시	- 전지역 악취현황 검토, 악취저감 공법 검토 지연 (2022.5.~2024.10.예정)
	광주 동구	- 전지역 악취현황 검토, 보안성 검토, 설계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 지연 (2022.1.~2024.9.완료)
	광주 남구	- 전지역 악취현황 검토, 공법선정 및 행정절차 지연 (2022.2.~2024.10.예정)
	군포시	- 전지역 악취현황 검토, 악취저감 공법 검토 지연 (2022.3.~2024.10.예정)
	포항시	- 전지역 악취현황 검토, 사업규모 변경 검토 지연 (2022.4.~2024.12.예정)

주)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는 2023년 12월까지 모든 개소 설계용역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2024년 9월말까지 대부분의 개소의 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자료: 환경부

이러한 집행현황을 고려할 때, 2025년 예산안에 잔여사업비를 모두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스마트 하수관로 구축이 완료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고, 연쇄적인 보조금의 이월·불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안의 감액 조정이 필요함.

특히, 이 사업은 국회의 2021회계연도·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사업집행 부진 문제가 지적되어, 관련 행정절차 적기 이행 노력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된 바 있음.

[2022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66)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지적사항	ㅇ 내역사업인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실집행이 저조함(실집행률 2021년 0%, 2022년 61.2%) - 당초 계획 대비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예상됨
시정요구사항(유형)	ㅇ 환경부는 ‘스마트하수관로 사업’ 대상지의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것(시정)**, 환경부는 당초 계획 대비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예상되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제도개선)
조치결과	**ㅇ 스마트하수관로 사업 2024년 예산은 집행 소요를 고려하여 전년보다 감액 편성하였음(2023년 416억원 → 2024년 96억원)** ㅇ 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하수관로 협의체 운영 추진(연중) ※ (운영실적) 2023.1.26, 2023.2.27, 2023.7.21~26(서면), 2023.11.22 (4회) ㅇ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31일

따라서,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의 집행소요를 감안한 공사비의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0.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과다계상된 이차보전금 감액 필요

가. 개 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은 청정대기, 자원순환, 물산업 등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온실가스 저감설비 등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4억원(1.0%) 증액된 3,333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33)]

[2025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329,928	333,328	3,400	1.0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는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융자, 녹색전환을 위한 오염방지시설자금 이차보전과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재정융자 총 4가지의 세부내역으로 구분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세부 구분]

구분	지원분야	지원방식	예산 (억원)	사업자당 지원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환경산업	시설설치자금	재정융자	1,200	100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분기 변동금리
	운전자금	재정융자	1,000	10억원	2년 거치 3년 상환 (5년 이내)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이차보전	99.28 (1,000억원 규모)	100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분기 고정금리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재정융자	1,000	100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분기 변동금리

주 1) 2024년부터 친환경설비투자(기금) 사업 폐지 후,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에 온실가스 감축분야 신설
2) 기존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사업이 폐지되며 이에 대한 이차보전금 24억원 별도로 있음
자료: 환경부

33) 환경개선특별회계-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1531-310)(녹색전환정책관)

2025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의 예산안은 3,333억 2,800만원으로, 이는 3,200억원의 재정융자(시설설치자금 1,200억원, 운전자금 1,000억원,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1,000억원)와 기존 민간차입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13억 6,000만원, 신규 민간차입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9억 6,800만원으로 구성됨.

[미래환경육성융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3,333억 2,800만원
- 재정융자 3,200억원(평균융자금 8억원×400개소)
- 기존 민간차입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13억 6,000만원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오염방지시설자금) 89억 6,000만원, 청정대기전환시설 24억원
- 신규 민간차입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9억 6,800만원
(1,372억원 × 2.87%(예상이차보전금리) × 6/12개월)

자료: 환경부

나. 검토의견

첫째, 환경부는 기존 민간차입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중 오염방지시설자금 분야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안을 편성하며 2024년 융자실집행액(2025년도의 대여잔액)을 목표치인 1,000억원으로 설정하여 이차보전금을 계상하고 있는데, 2024년 8월말 기준 실제 융자가 이루어진 금액이 약 310억원임을 고려하여 과다계상된 이차보전금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오염방지시설자금) 기존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8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2025년말 대여잔액을 추산한 후 해당 연도별 평균 이차보전금리(고정금리)를 곱하여 산출하였음.

[2025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오염방지시설자금) 이차보전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대여 금액	상환액	2024년 기준		2025년 추정치		이차보전금리
			대여잔액 (2024.1)	이차보전금 지출	대여잔액	이차보전금 지출	
2017	51,159	44,018	7,141	65	1,314	31	2.36
2018	61,715	43,489	18,226	177	7,462	80	1.07
2019	89,151	50,328	38,823	332	25,174	270	1.07

(단위: 백만원, %)

연도	대여 금액	상환액	2024년 기준		2025년 추정치		이차보전금리
			대여잔액 (2024.1)	이차보전금 지출	대여잔액	이차보전금 지출	
2020	85,005	27,188	57,817	598	40,986	644	1.57
2021	71,425	578	70,847	969	65,694	1,604	2.44
2022	80,142	735	79,407	1,212	79,407	2,275	2.88
2023	65,237	1,060	64,177	596	64,177	1,056	1.65
2024	**30,979 ('24.8기준)**	-	**100,000 ('24년 목표치)**	**53 ('24.8기준)**	**100,000**	**3,000**	**3.0**
합계	534,813	167,397	436,438	4,003	384,213	8,960	

자료: 환경부

그런데, 2024년 8월말 기준 융자 승인액이 720억원 상당이고, 실제 대여금액은 309억 7,9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2025년 이차보전금 추정시 2024년의 대여잔액을 1,000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과다계상으로 보임.[34)]

[2021~2024.8.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오염방지시설자금) 대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도	신청		승인		대출 집행		
	기업수 (설비수)	금액	기업수 (설비수)	금액	전년도 이월액 중 집행 (연계승인)	당해연도 승인건 중 집행	총계
2021	217	138,387	146	94,917	-	**73,449**	73,449
2022	175	170,647	119	91,604	18,179	**62,883**	81,062
2023	118	107,763	194	74,008	9,747	**39,079**	48,826
2024.8.	124	162,519	69	72,031	11,732	**30,979**	42,711
'21~'23 평균	**170**	**138,932**	**153**	**86,843**	**13,963**	**58,470**	**67,779**

자료: 환경부

34) 참고로, 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말 기준 대여금액은 440억 8,100만원이고, 이에 따른 2024년의 이차보전금 지출은 2억 2,700만원으로, 여전히 환경부의 2024년 대여잔액 목표치인 1,000억원에는 미달하고 있음.

둘째, 환경부는 신규 민간차입 융자금(오염방지시설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예산안을 편성하며 1,372억원의 민간대출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19억 6,800만원의 이차보전금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과거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오염방지시설자금)의 대출집행 현황을 보면 이는 과다계상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감액 조정이 필요함.

환경부는 신규 민간차입 융자금(오염방지시설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예산안 19억 6,800만원의 산출근거로 1,372억원의 민간대출이 발생할 때, 예상 이차보전금리를 2.87%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함.

[신규 승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산출 산식]

○ 신규 민간차입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9억 6,800만원 (1,372억원 × 2.87%(예상이차보전금리) × 6/12개월)

자료: 환경부

이차보전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예상 민간대출 규모는 최근연도 융자실적을 기준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인바, 환경부의 최근 3개년 융자 실적을 보면, 오염방지시설자금에 대한 대출 집행액 평균은 584억 7,000만원, 대출 승인액 평균은 868억 4,300만원에 불과하여, 환경부가 2025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1,372억원은 과다계상된 금액으로 보임.[35)]

[2021~2024.8.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오염방지시설자금) 대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도	신청		승인		대출 집행		
	기업수 (설비수)	금액	기업수 (설비수)	금액	전년도 이월액 중 집행 (연계승인)	당해연도 승인건 중 집행	총계
2021	217	138,387	146	94,917	-	**73,449**	73,449
2022	175	170,647	119	91,604	18,179	**62,883**	81,062
2023	118	107,763	194	74,008	9,747	**39,079**	48,826
2024.8.	124	162,519	69	72,031	11,732	**30,979**	42,711
'21~'23 평균	**170**	**138,932**	**153**	**86,843**	**13,963**	**58,470**	**67,779**

자료: 환경부

35)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24년 종료 사업인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사업의 대상인 시멘트 업종 SCR 등 설치 수요가 오염방지시설자금 대출로 흡수되어 민간대출액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전년 대비 증액된 민간대출 규모를 산정하였다는 입장임. 환경부는 2023년 대출승인액인 691억 8,500만원 상당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① 2024년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사업의 융자 승인액이 2024년 10월말 기준 300억원이고, 당해연도 대출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2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 ② 2023년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사업의 대출승인액 691억 8,500만원 중 414억 500만원만 당해연도 대출집행이 이루어져 당해연도(2023년)에 실제 지급된 이차보전금은 2억 4,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환경부의 설명은 타당성이 낮아 보임.

따라서, 이러한 이차보전금 과다계상을 감안하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오염방지시설자금)의 이차보전금 예산안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11.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고려한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산업단지·공업지역 등 공장밀집지역에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유출 등으로 사고유출수가 하천에 직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60억 2,900만원(245.2%)이 증액된 1,774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36)]

[2025년도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51,404	178,693	127,289	247.6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51,404	177,433	126,029	245.2

완충저류시설이란 산업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유출된 유해물질·폐수 등이 하천에 직접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임.

완충저류시설은 법정 의무 설치·운영 시설로,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37)]는 지방

36) 환경개선특별회계 -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1131-306)(물환경정책관)

37)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 · 관리)**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 · 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등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의무는 2002년 낙동강수계에 대하여 처음 부과되었으며, 2015년 법률 개정에 따라 모든 수계에 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음.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설치 비용을 국고보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율은 70%임.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계속사업 35개소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767억 3,300만원, 신규사업 4개소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2024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 (계속사업) 32개소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50,004백만원 - (신규사업) 3개소 완충저류시설 설치 설계비 1,400백만원	- (계속사업) 35개소 설치 사업비 176,733백만원 - (신규사업) 4개소 설계비 700백만원
514억 400만원	1,774억 3,300만원

나. 검토의견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실집행률 부진을 이유로 감축 판정을 받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대비 245.2% 증액된 예산안이 편성된 바, 사업의 실제 집행 상황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기획재정부는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실집행률이 부진함을 이유로 2025년도 예산안을 일정수준 감축 시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38)]

38)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p.2575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 실집행률(교부현액 대비 실집행액)을 보면, 2021년 68.1%, 2022년 61.6%이고, 2023년의 경우 실집행이 일부 개선되어 83.5%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21~2024.7.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1	66,685	66,685	56,781	56,781	24,238	81,019	55,165	23,984	1,107	68.1
2022	56,900	56,900	66,804	66,804	23,984	90,788	55,917	33,668	1,203	61.6
2023	51,104	51,104	51,104	51,104	33,668	84,772	70,793	13,811	168	83.5
2024.7.	51,404	51,404	22,731	22,731	13,811	36,542	20,954	-	-	57.3

자료: 환경부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실집행률이 제고되었음을 근거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예산을 전년 대비 245.2% 증액 편성하였음.[39)]

그러나 보조사업의 실집행은 단순한 보조사업자의 자금 집행뿐만 아니라, 실제 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자 했던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2024년 9월말 기준, 완충저류시설 의무설치 대상수 199개소 중 32개소만 준공되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공기관 등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계약금으로 하위 기관에게 재교부함에 따라,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실집행실적은 높게 나타나나, 실제 완충저류시설이 준공되지는 않았기 때문임.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는 한국환경공단에 보조사업을 위탁하여 지자체 단계에서는 100%의 보조사업 집행률을 달성하고 있으나, 실제 한국환경공단 단계에서 실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이 다수 있음.

39) 환경부는 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는 등 완충저류시설 적기 준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집행률이 제고되어 연도별 준공시기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하며 2025년도 예산안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설명임.

[한국환경공단 수탁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실집행부진의 사례]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2024년				
	전기 이월 ('22→ '23)	'23년 지자체 →공단 교부	전기 이월 ('23→ '24)	당기증가 ('24년 지자체→ 공단 교부)	당기 자금 (A)	2024.9. 예산 집행액 (B)	집행률 (B/A)
청주오창과학산단완충저류	9,894	17,848	10,069	3,097	13,166	4,317	32.8
충주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632	10,208	3,026	10,038	13,064	5,283	40.4
청주시 오송과학단지 완충저류설치	3,340	1,472	4,206	1,643	5,849	1,935	33.1
청주시 오창제2산단 완충저류설치	1,048	495	1,444	929	2,373	5	0.2
청주시 옥산산단 완충저류설치	1,827	828	2,515	961	3,476	-	-
김해대동첨단일반산단 완충저류설치	1,214	5,128	5,524	714	6,238	19	0.3
충주 중원 완충저류시설 설치	1,714	0	1,429	429	1,858	53	2.9
청주 일반산단 완충	11,920	1,715	4,777	4,894	9,671	5,405	55.9

자료: 환경부

구체적으로, 김해 대동첨단일반산단 완충저류설치 사업의 경우 2023년 지자체가 공단에 51억 2,800만원, 2024년에 7억 1,400만원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1차적인 집행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 2024년 공단에서 집행한 금액은 1,900만원에 불과하여, 실집행률은 0.3%에 불과함.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2025년 예산안에 과다하게 증액된 금액의 일부 조정을 통해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실제 집행(준공) 상황에 비례하여 예산안이 편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바,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이 사업의 예산안 조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매립, 소각, 음식물처리시설 등) 설치사업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751억 6,700만원(47.2%)이 증액된 2,345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40]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60,023	235,190	75,167	47.0
폐기물처리시설	159,349	234,516	75,167	47.2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통해 매립·소각·바이오가스화시설의 설치 및 매립지정비·친환경에너지타운 설치·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이 사업의 예산안은 모두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로, 지자체별 30~50%의 보조율로 매칭되고 있음.[41]

2025년도 예산안 2,345억 1,600만원은 계속사업 78개소, 신규사업 14개소에 대한 보조금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구분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매립시설	272억 8,500만원 (계속 13개소, 신규 5개소)	294억 1,700만원 (계속 15개소, 신규 2개소)
소각시설	903억 7,600만원 (계속 45개소, 신규 6개소)	1,501억 6,800만원 (계속 39개소, 신규 6개소)
매립지정비	78억 200만원 (계속 5개소, 신규 6개소)	267억 3,800만원 (계속 8개소, 신규 4개소)

40) 환경개선특별회계-폐기물처리시설 확충(1433-306)(자원순환국)

41) 국고보조율: 특별시 30%, 광역시 40%, 일반 시·군 30%, 광역시설 50%, 도서지역 50%

구분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바이오가스화시설	217억 3,100만원 (계속 10개소)	147억 8,100만원 (계속 6개소)
친환경에너지타운	77억 1,500만원 (계속 10개소, 신규 2개소)	108억 6,200만원 (계속 9개소, 신규 2개소)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16억 9,200만원 (계속 2개소)	25억 5,00만원 (계속 1개소)
음식물처리시설	22억 5,300만원 (계속 2개소)	-
매립가스 자원화	2억 8,500만원 (신규1개소)	-
폐기물처리시설 정밀기술지원	2억 1,00만원 (신규 1개소)	-
계	**1,593억 4,900만원 (계속 87개소, 신규 21개소)**	**2,345억 1,600만원 (계속 78개소, 신규 14개소)**

나. 검토의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3개년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의 실집행현황을 보면, 2021년 78.4%, 2022년 71.1%, 2023년 66.7%로 감소하는 추세임.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사유는 대부분 인허가 등 절차 지연, 각종 평가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1~2024.7.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1	124,789	124,789	107,565	107,565	37,040	144,605	113,327	28,278	3,000	78.4
2022주)	132,788	132,788	144,538	144,538	28,573	173,111	123,148	45,140	4,823	71.1
2023	163,903	163,903	163,903	163,903	45,139	209,042	139,408	59,710	9,923	66.7
2024.7.	159,349	159,349	122,687	122,687	66,358	188,312	97,018	-	-	51.5

주) 2022년의 경우, 추경 이외에 2021년의 이월액 119억원・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사업으로의 전용(감) 5억 5,0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이 1,456억 3,800만원임. 환경부는 이를 전액 지자체에 교부하였음

자료: 환경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은 ‘전년도 집행실적, 지자체 내 전년도 이월액, 사업추진단계, 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가 당해 연도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2025년에도 예산을 모두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환경부는 부진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실집행 부진사업을 감액하여 정부안에 반영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매립시설 뿐만 아니라 타 시설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임.[42)]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16개소의 경우, 2024년 8월말 기준 실집행액이 없음에도 총 307억 6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사업 중 2024년 8월말 기준 실집행액이 없는 지자체]

(단위: 백만원)

구분	지자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잔여 국고	정부안
			계	국고	지방비	민자 등		
소각	예산군	’20~’27	28,623	4,614	10,767	13,242	2,868	1,153
	합천군	’21~’26	25,492	7,648	17,844	-	4,984	1,047
	거창군	’23~’26	25,392	7,618	17,774	-	4,690	788
	보령시	’23~’25	18,911	4,728	4,728	9,455	2,870	2,870
	춘천시	’23~’27	70,697	11,962	51,250	7,485	9,716	1,352
	함안군	’23~’29	21,160	6,348	14,812	-	5,909	355
매립시설	전주시	’22~’27	86,303	43,151	43,152	-	40,188	10,610
친환경에너지타운	화천군	’20~’25	6,000	3,000	3,000	-	1,125	1,125
	부여군	’21~’25	6,000	3,000	3,000	-	400	400
	청양군	’21~’26	6,000	3,000	3,000	-	1,710	488

42) 이에 대해 환경부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수도권 2026년, 전국 2030년)에 따라 실집행이 부진하더라도 제도 시행을 위해 소각시설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여 정부안에 반영하였다는 입장임.

(단위: 백만원)

구분	지자체	사업 기간	총사업비				잔여 국고	정부안
			계	국고	지방비	민자 등		
	부안군	'22~'26	6,000	3,000	3,000	-	2,640	1,162
	상주시	'22~'26	6,000	3,000	3,000	-	2,660	2,660
	단양군	'23~'27	7,000	3,000	3,000	1,000	2,551	184
	무주군	'23~'26	6,000	3,000	3,000	-	2,379	1,047
유기성 바이오 가스화	남해군	'21~'26	14,930	7,679	7,251	-	5,300	2,915
바이오 가스 수소개질	전주시	'21~'25	7,000	3,500	3,500	-	2,550	2,550
2025년 예산안 편성액								30,706

주) 실집행액이 없는 소각시설 중 수도권을 제외하였음
자료: 환경부

특히, 2023년 환경부가 국고보조금을 교부한 내역을 보면, 환경부는 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환경부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소요를 명확히 계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3년 실집행부진사업의 보조금 교부횟수 및 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지자체	2023년 예산액 (A)	2023년 집행액 (B)	부진사유	보조금 교부 횟수(월)	실집행률 (B/A)
매립 시설	가평군	352	21	시공사의 인원, 장비투입 등 공사지연	1차 (11월)	6.0
	구미시	600	6	매립사면 숏크리트 파손에 따른 지하수 누수로 사면안정성검토 착수 및 사면보강 실시설계 절차 지연	1차 (6월)	1.0
	남해군	1,000	50	바이오가스화 설계용역 공동 진행으로 사업 공법선정 지연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설계용역 중지	2차 (5월, 11월)	5.0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지자체	2023년 예산액 (A)	2023년 집행액 (B)	부진사유	보조금 교부 횟수(월)	실집행률 (B/A)
	단양군	1,000	-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변경 승인(2단계 매립장 추가) 지연	2차 (5월, 6월)	-
	대구시	2,313	-	인허가(설계경제성검토, 건설기술심의) 절차 지연	2차 (6월, 11월)	0
	보령군	300	64	인허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절차 지연	1차 (6월)	21.3
	상주시	500	-	주변지역영향지역 지원 등에 대한 주민 협의 장기화 및 부지매입 등의 사유로 지연	1차 (11월)	-
	여수시	600	-	인허가(재원협의) 절차 지연	2차 (10월, 11월)	-
	영덕군	1,649	759	인허가(무연고 분묘 발견 관련) 절차 지연	2차 (5월, 6월)	46.0
	의성군	700	-	인허가(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1년 6개월)) 절차 지연	1차 (11월)	-
	창원시	2,793	-	주민 민원에 의한 공사 일시정지로 사업 지연	1차 (11월)	-
	창원시 (덕동)	200	-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으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	2차 (5월, 8월)	-
	합천군	342	-	주민 민원 및 집중 호우에 의한 사업 지연	1차 (5월)	-
소각시설	광주시	300	-	계약심의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	1차 (11월)	-
	고흥군	300	-	인허가(사업자 선정 및 의견수렴 등) 절차 지연	3차 (6월, 7월, 11월)	-
	과천시	200	-	기본계획(안) 및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1차 (11월)	-
	남양주시	600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공고 등 절차 지연	1차 (11월)	-
	논산시	0	-	인허가(민간투자사업 재원협의) 절차 지연	-	-
	대구	2,000	430	1차분 철거공사(전액 시비) 진행에 따른 국비 집행 지연	3차 (6월, 9월, 11월)	21.5
	목포시	3,600	-	주변지역영향지역 지원 등 주민 협의 지연	3차 (6월, 7월, 11월)	-
	보령시	250	-	인허가(민간투자사업 협상 등 지연) 절차 지연	1차 (6월)	-
	보성군	900	-	인허가(통합환경허가 등) 절차 지연	3차 (6월, 7월, 11월)	-
	부안군	1,200	280	인허가(통합환경허가 등) 절차 지연	3차 (6월, 11월, 12월)	23.3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지자체	2023년 예산액 (A)	2023년 집행액 (B)	부진사유	보조금 교부 횟수(월)	실집행률 (B/A)
	성남시	4,000	-	주변지역영향지역 지원 등 주민 협의 지연	1차 (6월)	-
	성주군	1,600	-	인허가(재원협의) 절차 지연	2차 (10월, 11월)	-
	수원시	3,000	-	주민 민원에 의한 사업 지연	1차 (6월)	-
	양구군	715	-	설치 부지 매입 협의(국유림, '23.7~) 진행으로 사업 지연	3차 6월, 6월, 11월)	-
	영광군	422	-	주변지역영향지역 지원 등 주민 협의 지연	3차 6월, 8월, 11월)	-
	용인시	-	-	주민 민원에 의한 사업 지연	-	-
	이천시	900	603	물가변동 및 표준사업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재원협의) 절차 지연	1차 (4월)	67.0
	장수군	674	349	지방비 확보 지연	3차 (3월 5월 10월)	51.8
	정선군	-	-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민원으로 인한 사업 취소	-	-
	제천시	865	-	원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 용역 입찰 유찰(4회)에 따른 사업 지연	2차 (5월, 11월)	-
	진천군	600	300	사업 선정 이후 입지결성 고시 및 인허가(재원협의) 절차 지연	1차 (6월)	50.0
	청도군	900	507	사업내용 재검토(용량 및 부지)에 따른 사업 지연	2차 (10월, 11월)	56.3
	합천군	1,000	-	인허가(통합환경허가,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 지연	1차 (10월)	-
음식물처리시설	양양군	240	-	공법 선정('23.9.) 완료하여 공사 실시 예정이었으나, 업체의 지위 포기로 업체 선정 재추진으로 사업 지연	1차 (5월)	-
매립지정비	세종 조치원읍 (죽림리)	231	-	시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	1차 (10월)	-
	순창군 (순환형)	500	-	시공사 협의 및 장마로 인한 사업 지연	2차 (10월, 11월)	-
	진안군	212	-	현장여건(굴착구간 조정 등)에 따른 공사 지연	2차 (8월, 10월)	-
	세종 (부강면)	30	-	시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지연	1차 (7월)	-
	세종 (연서면)	11	-	시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지연	1차 (7월)	-
	해남군 (순환형)	660	-	인허가(공법사 선정, 계약심사 등) 절차 지연	2차 (10월, 11월)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지자체	2023년 예산액 (A)	2023년 집행액 (B)	부진사유	보조금 교부 횟수(월)	실집행률 (B/A)
	전주시 (순환형)	1,600	398	실시설계(공법선정 등) 지연	2차 (4월, 5월)	24.9
유기성 바이오 가스화 시설	태백시	-	-	법적 인허가(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절차 지연	-	-
	포항시	-	-	입지선정 검토에 따른 사업 지연	-	-
	무안군	600	-	사업계획 변경 검토(단독→광역화)에 따른 설계 지연	1차 (12월)	-
	광주	700	-	법적 인허가 절차 지연	2차 (10월, 12월)	-
	남양주시	-	-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 취소	-	-
친환경 에너지 타운	괴산군	2,116	936	공사 진행 중으로 대금납부시기 미도래	2차 (6월, 10월)	44.2
	성주군	840	514	공사 진행 중으로 대금납부시기 미도래	1차 (6월)	61.2
	화천군	900	-	인허가(bf예비인증 등) 절차 지연	2차 (6월)	-
	장수군	600	125	실시설계 진행으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	1차 (3월)	20.8
	부여군	600	-	실시설계 진행으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	1차 (6월)	-
	청양군	600	-	인허가(건축기획업무 등) 절차 지연	1차 (6월)	-
	상주시	-	-	인허가(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절차 지연	-	-
	무주군	100	-	인허가(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절차 지연	1차 (3월)	-

자료: 환경부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의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세 출>

13. 전기차 보급 사업: 전기승용차 예산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전기차 보급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차량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22억 3,000만원(△12.2%) 감액된 1조 5,21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43)]

[2025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무공해차 보급사업	2,319,254	2,263,104	△56,150	△2.4
전기차 보급사업	1,734,000	1,521,770	△212,230	△12.2

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전기승용차를 27,000대 확대하여 총 26만대의 전기승용차를 보급할 예정임.

[2025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전기승용차 233,000대 × 40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57,272대 × 1,100만원 전기승합차 2,000대 × 7,000만원 전기이륜차 40,000대 × 80만원	전기승용차 **260,000대** × 30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57,272대 × 1,000만원 전기승합차(일반) 1,710대 × 7,000만원 전기승합차(어린이) 290대 × 11,500만원 전기이륜차 20,000대 × 80만원
1조 7,340억원	**1조 5,217억 7,000만원**

4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대기환경정책관)

전기차 보급사업의 보조금은 차종별로 일부 상이하며, 자동차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됨.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 유형에 따라 250~400만원의 정액 지원을 받고, 이후 성능·배터리·사후관리 등 다양한 계수를 고려하여 최대 550만원(소형)·650만원(중·대형)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기준]

구분	2024년(개편안)
전기승용	■(중·대형)최대 400만원, (경·소형)최대 300만원, (초소형)250만원 정액
	■(성능차등)주행거리 500km까지 보조금 차등, 400km 미만 차량은 보조금 대폭 축소
	■(배터리안전보조금) 국제 표준 OBD 장착 차량 20만원 지원
	■(배터리계수) 배터리 에너지밀도*, 자원순환성**에 따른 차등계수 신설(경형 이하 미적용) * (500Wh/L 초과) 1.0 / (455~500) 0.9 / (410~455) 0.8 / (365~410) 0.7 / (365 이하) 0.6 **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총계(원)/2,800(원)이 (0.9 초과) 1.0 / (0.8~0.9) 0.9 / (0.7~0.8) 0.8 / (0.6~0.7) 0.7 / (0.6 이하) 0.6
	■(사후관리계수) 전 권역에 직영 A/S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만 차등계수 1.0 적용 (1.0~0.7, 4등급화)
	■(기본가격 기준) 5.5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5.5천만원 이상 ~8.5천만원 미만 50%/8.5천만원 이상 시 미지급 ※ 2025년에는 최대 5.3천 미만 전액지급
	■(취약계층지원) 20%(차상위계층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인 경우 (20+10)%)
	■(택시 지원) 250만원, 법인은 중소기업 이하만 지원
	■(사후보증지원) 전기차 10년/50만km 이상 보증 시 30만원 지원
	■ 최대 650만원(中·大) or 550만원(小이하) = [성능보조금(400(中·大) or 300(小이하)) + 배터리안전보조금(20)] × 배터리효율계수(1.0~0.6) × 배터리환경성계수(1.0~0.6) × 사후관리계수(1.0~0.7)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40) + 혁신기술보조금(50)

자료: 환경부

나. 검토의견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차종별 집행내역을 보면, 전기승용차의 집행실적이 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기승용차의 적정 계획물량 검토 및 이에 기반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함.

2024년 8월말 기준 전기차 보급실적을 보면, 2024년 계획 물량은 총 29만 2,272대였으나, 실제 8월말 기준 보급된 물량은 10만대에 불과함. 이는 주로 전기승용차의 집행부진에 기인함.

[전기차 보급실적(물량) 및 2025년도 계획 물량]

(단위: 대)

구분	2021년까지 보급실적(A)	2022년		2022년까지 보급실적(C=A+B)	2023년		2024년		2025 계획
		계획	실적(B)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전기승용	191,755	164,500	123,920	315,675	215,200	115,817	233,000	81,209	260,000
전기승합	3,146	2,000	2,074	5,220	3,000	2,820	2,000	1,736	2000
전기화물	43,036	41,000	38,471	81,507	50,000	43,940	57,272	13,180	57,272
전기이륜	48,089	20,000	14,892	62,981	40,000	8,183	40,000	3,900	20,000
계	237,937	207,500	164,465	402,402	268,200	162,577	292,272	100,025	338,982

주 1) 보급실적 기준은 차량 실제 신규등록 실적으로, 보조금 집행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음
2) 2024년 실적은 8월말 기준임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22년 이후 전기차 보급계획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하여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음. 그런데, 연도별 전기승용차 보급 실적을 보면 2022년 이후 보급계획 달성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19~2024.8. 전기승용차 보급계획물량 대비 보급실적]

(단위: 대, %)

구분	연도	보급계획물량 (A)	보급실적 (B)	달성률 (B/A)
전기승용차	2019	43,480	33,423	76.9
	2020	41,567	31,329	75.4
	2021	71,419	71,517	100.1
	2022	162,486	123,920	76.3
	2023	215,200	115,817	53.8
	2024.8.	233,000	81,209	34.9
	2019~2023년 평균 보급실적		75,201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이에 대해 일시적 수요위축으로 인한 집행부진이 발생한 것이고, 경제적 취약계층 추가지원 강화[44] 등의 인센티브 부여로 전기승용차 수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4년 8월말까지의 보급실적을 볼 때, 실제 환경부가 기대한 수요 활성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전기승용차의 경우, 2024년 계획물량은 23만 3,000대였으나, 8월말 기준 실제 보급물량은 8만 1,000대에 불과함.

이와 같이 2019~2023년 5개년 평균 보급물량이 75,201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서 보급계획물량을 26만대로 확대 편성하는 것은 시장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안 편성으로 보여지므로,[45] 전기승용차 보급계획물량을 검토하여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무공해차 보급 사업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2022년 이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부족한 재원을 전력기금 전입과 공자기금 예수를 통해 조달하고 음.[46] 이에 따른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비용이 2025년도 예산안 기준 1,590억원에 달함.

그런데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사업 불용액이 3,450억원,[47] 지자체 차원의 불용액이 2,173억원에 달하고, 최근 5개년 지자체의 누적 보조금 불용

44) 전기승용 기준 차상위 이하 계층 대상 국비보조금의 20% 추가지원(청년은 30%)

45)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제작사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의 물량을 산출하고 있다는 입장임.

46) 2025년도 예산안 기준 공자기금 예수금 1조 9,221억 4,700만원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입금 1,582억 4,400만원임.

47) 수소차 보급사업의 불용액까지 고려할 경우, 2023년 결산 결과 환경부 차원에서 6,563억원이 불용된 것임.

액이 5,574억원 상당임.

[최근 5개년 전기차 보급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환경부			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19	457,720	457,720	-	457,720	30,669	488,389	353,525	72,556	62,308
2020	817,008	817,008	-	817,008	72,556	889,564	568,833	194,133	126,598
2021	1,027,463	1,027,463	-	1,027,463	194,133	1,221,596	1,030,585	111,001	80,009
2022	1,719,000	1,446,291	272,709	1,446,291	111,001	1,557,292	1,388,714	97,351	71,227
2023	1,918,000	1,572,969	345,031	1,572,969	96,596	1,669,565	1,339,691	112,613	217,261

자료: 환경부

이는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결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부터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금을 불용액만큼 더 조달하게 만드는 것으로,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할 특별회계의 재정적 독립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국채발행 규모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기승용차의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점과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기승용차의 계획물량 및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14. 수소차 보급 사업: 집행실적 및 미교부액 등을 고려한 감액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수소차 보급사업’**은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차량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04억 8,000만원(26.3%) 증액된 7,218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48)]

[2025년도 수소차 보급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무공해차 보급사업	2,319,254	2,263,104	△56,150	△2.4
수소차 보급사업	571,350	721,830	150,480	26.3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사업을 통해 수소승용·버스·화물차 등 차량을 보급하는 사업과 스택(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에서 환경부는 수소 승용차를 11,000대(전년 대비 4,200대 증가), 저상 수소버스를 1,190대(전년 대비 200대 증가) 보급하는 등 차종별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스택교체지원의 경우, 2024년 60개 지원에서 2025년 118개 지급 목표로 지급 개수를 상향하였음.

[수소차 보급 사업 산출내역]

24예산	25예산안
수소 승용 6800대×22.5백만원 수소버스(저상) 910대×2억 1,000만원 수소버스(고상) 810대×2억 6,000만원 수소화물 15대×2억 5,000만원 수소폐기물청소차 15대×7억 2,000만원 스택교체지원 60개×3,500만원	수소 승용 **11,000대**×22.5백만원 수소버스(저상) 1,190대×2억 1,000만원 수소버스(고상) 810대×2억 6,000만원 수소화물 10대×2억 5,000만원 수소폐기물청소차 10대×7억 2,000만원 스택교체지원 **118개**×3,500만원
5,713억원 5,000만원	**7,218억 3,000만원**

4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대기환경정책관)

나. 검토의견

수소차 전 차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제작사의 생산물량보다도 환경부의 보급계획이 과다함을 고려하여 과다계상된 물량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수소차 보급 사업의 2021~2023년 실집행현황을 보면, 본예산 대비 자치단체에 교부되지 않고 환경부 차원에서 불용·이용되는 금액의 비율이 2021년 37.3%, 2022년 24.4%, 2023년 49.1%임. 본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2021년 54.6% 이후 30% 내외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2024년 8월말 기준 본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29.9%임.

[2021~2024년 수소차 보급사업 실집행현황(금액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본예산 (A)	추경	자치단체 교부액(B)	불용+ 이용	전년도 이월액(C)	예산현액 (B+C)	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A)
2021	365,500	365,500	229,010	136,490	45,660	274,670	199,608	15,698	59,364	54.6
2022	679,505	454,505	288,813	165,693	15,698	304,510	243,748	23,698	37,064	35.9
2023	633,400	633,400	322,320	311,080	23,585	345,905	185,574	90,688	69,643	29.3
2024.8.	571,350	571,350	243,150	-	89,248	332,398	171,373	-	-	29.9

자료: 환경부

이러한 저조한 집행실적은 물량기준으로 보아도 동일하게 나타남. 2024년 8월말 기준 보급대수를 보면, 수소승용차는 6,800대의 보급을 계획하였으나 2,057대(30.3%)만 보급되었고, 저상수소버스는 362대(39.8%), 고상 수소버스는 172대(21.2%), 수소화물차는 3대, 수소청소차는 5대만 보급되었음.

[2021~2024년 수소차 보급 사업 실집행현황(물량기준)]

(단위: 대)

구분	2021년 까지 보급실적	2022년		2022년까지 보급실적	2023년		2024 계획	2024.8.	2025 계획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승용	19,341	17,650	10,104	29,445	16,000	4,294	6,800	2,057	11,000
버스	131	300	152	283	400	266	910	362	1,190

(단위: 대)

구분	2021년 까지 보급실적	2022년		2022년까지 보급실적	2023년		2024 계획	2024.8.	2025 계획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저상)									
버스 (고상)	-	40	-	-	300	102	810	172	810
화물	5	6	-	5	100	5	15	3	10
청소차	-	4	-	-	120	3	15	5	10
계	19,477	18,000	10,256	29,733	16,920	4,670	8,550	2,599	13,020

주) 보급실적 기준은 차량 실제 신규등록 실적으로, 보조금 집행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음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이러한 저조한 집행실적에 대하여, 승용·승합·화물 등 각 차종별 단일차종으로 인해 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었고, 차량 출시 지연, 지방비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차량 보급 실적이 부진하였다는 입장임.

[수소차 출시 현황]

구 분	승용	승합		화물	청소차
	넥쏘	일렉시티 FCEV(저상)	유니버스 FCEV(고상)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윙바디	에이엠수소암롤트럭, 에이엠수소압축진개형 차량
차량 사진					
국고보조금	2,250만원	2.1억원	2.6억원	2.5억원	7.2억원
편성물량	11,000대	1,190대	810대	10대	10대
출시일	2018.3월	2020년	2023.4월	2022.11월	2023.10월 (당초 2022년 말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연)

자료: 환경부

한편, 연도별·차종별 수소차 생산물량을 보면, 이러한 집행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 환경부가 생산물량보다도 집행물량을 과다편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수소차 보급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소승용차의 경우, 연례적으로 제작사의 생산물량을 상회하는 환경부의 보급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 2023년의 경우, 실제 제작사 생산물량은 4,439대였는데 환경부는 16,000대의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음.

[2020~2024.8. 수소차 차종별 생산물량과 보급실적의 차이]

(단위: 대)

차종	회계 연도	생산물량 (A)	보급계획 (B)	실제 보급실적 (C)	보급계획과 생산물량 차이 (B-A)
승용차	2020	5,522	10,100	5,783	4,578
	2021	8,303	15,000	8,473	6,697
	2022	10,260	17,650	10,104	7,390
	2023	4,439	16,000	4,294	11,561
	2024.8	2,140	6,800	2,057	4.660
저상 버스	2020	82	80	60	△2
	2021	64	180	54	116
	2022	145	300	152	155
	2023	253	400	266	147
	2024.8	438	910	362	472
고상 버스	2020	-	-	-	
	2021	-	-	-	
	2022	-	40	-	
	2023	73	300	102	227
	2024.8	295	810	172	515
화물차	2021	5	5	5	0
	2022	2[3)]	6	-	
	2023	6	100	5	94
	2024.8	3	15	3	12
청소차	2022	-	4	-	
	2023	-	120	3	
	2024.8	5	15	5	10

주 1) 2022년 수소화물차 2대 생산물량은 군수용 차량 등으로 사용된 생산물량임
2) 2024년 실제 보급실적은 2024년도 8월말 기준임
자료: 환경부

이러한 집행부진 상황 및 제작사의 생산물량을 상회하는 환경부의 보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5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 차종에 대해 면밀한 보급계획 물량산정 및 이에 따른 예산안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49]

49) 한편, 환경부는 2025년 상반기 제작사에서 수소승용차 신차 출시 계획 중이어서 전년 대비 수소 승용차 계획물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제작사 출시 계획이 미뤄진 이력이 다수 있고, 상반기에 출시 된다고 하여도 연내 11,000대의 수량이 보급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 스마트 제어 충전기(舊 화재예방 완속충전기)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은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72억 5,000만원(42.9%) 증액된 6,23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50]

[2025년도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734,441	928,423	193,982	26.4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436,500	623,750	187,250	42.9

환경부는 2023년까지는 완속충전기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 급속충전기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편성하여 왔으나 2024년부터는 충전기 종류와 관계없이 민간자본보조로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만을 지원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민간자본보조로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임.

[2025년도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1. 직접설치(환경부 소유・운영) : 91,500백만원
 - (급속 350kW) 610기×150백만원=91,500백만원
2. 민간자본보조(민간사업자 운영) : 532,250백만원
 - (급속 350kW) 3,790기×150백만원×50%=284,250백만원
 - (스마트 제어, 舊 화재예방 완속충전기) 71,000기×3백만원(정액)=213,000백만원
 - (스마트 제어 교체) 20,000기×1.5백만원(정액)=30,000백만원
 -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500기×20백만원×50%=5,000백만원

환경부는 2024년도 예산부터 전기차 화재 예방 기여를 목적으로 전기차 충전제어와 배터리 정보[51] 수집이 가능한 통신기능(PLC[52]모뎀 사용)이 장착된 완속충전기를 ‘화

5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1633-312)(대기환경정책관)

재예방 충전기’로 정의하고, 화재예방 충전기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024년 예산에는 화재예방 완속충전기 20,000기 보급을 위한 보조금 800억원이 편성되었음.

화재예방 완속충전기는 벽부형, 스탠드형 충전기 내부에 PLC 모뎀을 장착하여 운영되는 형식인데, 환경부는 해당 종류의 완속충전기 보급 확대와 더불어 사업자가 2024년 하반기부터 PLC모뎀이 장착된 충전시설을 보급할 경우 보조금 4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음.[53]

[2024년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단가(2024.9. 기준)]

충전기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만원)
① 30kW 이상 충전기	500(1기), 400(2기), 350(3기 이상)
② 11kW 이상 충전기	160(1기), 140(2기~5기), 120(6기 이상)
③ 7kW 이상 충전기	140(1기), 120(2기~5기), 100(6기 이상)
④ 3kW 이상 충전기	50(1기), 45(2기~5기), 40(6기 이상)
⑤ 전력분배형 충전기	①~③ 용량별 지원단가에 케이블 1기당 10만원씩 추가 지원
⑥ 키오스크 충전기(7kW)	140(2기)
과금형콘센트	35(1기)
화재 예방형 충전기 (現 스마트 제어 충전기)	**충전기(①~④) 보조금 지원단가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장치 비용”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안부터 화재예방 충전기의 명칭을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변경하고, 최근 전기차 화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충전기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있음.[54]

---

51) SOC(State Of Charge), 주행거리, SOH(State Of Health), 전류, 전압, 온도 등의 정보

52) Power Line Communication(전기차-충전기 간 충전·통신 기능, 급속은 기장착)

53) 한편,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이 배터리・충전의 문제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 충전기를 화재예방 충전기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최근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의 경우에도, 차량 아래 쪽에 외부 청격이 가해져 배터리 팩 안에 있는 셀이 손상되었고, 배터리 셀 안에서 절연체가 손상되어 화재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온바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배터리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하는 화재예방 충전기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내 분리막 손상 및 단락 현상(배터리에서 전기가 흘러야 할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전기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로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접촉하면서 큰 전류가 흐르는 현상)으로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가 흐르면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 발생하는데, 분리막 손상과 단락 현상의 원인은 기계적 남용/전기적남용/열적남용으로 구분되어 전기적 남용의 주요 사례로 과충전・과방전이 지적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원인 중 일부가 과충전・과방전에 있다는 입장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관련하여 아래 기사를 인용함.
김지성. (2024년 9월 20일).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외부 충격 배터리 손상 개연성”.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8680_36515.html

구체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서 환경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7.1만기 신규 설치를 위한 보조금 2,130억원, 그리고 노후된 일반형 완속 충전기 2만기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하기 위해 30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4년	2025년
○ 민간자본보조(320-07) : 376,500백만원 - 초급속 2,900기 × 150백만원 × 50% = 217,500백만원 - **화재예방 완속충전기 20,000기 × 40백만원 = 80,000백만원** - 완속충전기 37,000기 × 2백만원 = 74,000백만원 - 이륜교환형 500기 × 20백만원 × 50% = 5,000백만원 ○ 역무대행사업비(320-08) : 60,000백만원 - 초급속 200기 × 150백만원 = 30,000백만원 - 이동형, 무선 등 신기술충전기 300기× 100백만원=30,000백만원	○ 민간자본보조(320-07) : 532,250백만원 - 초급속 3,790기 × 150백만원 × 50% = 284,250백만원 - **스마트 제어(舊 화재예방 완속충전기) 71,000기 × 3백만원(정액) = 213,000백만원** - **스마트 제어 교체 20,000기 × 1.5백만원(정액) = 30,000백만원** - 이륜교환형 500기 × 20백만원 × 50% = 5,000백만원 ○ 역무대행사업비(320-08) : 91,500백만원 - 초급속 610기 × 150백만원 = 91,500백만원

나. 검토의견

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舊 화재예방 완속충전기인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확대하여 보급할 계획인데, 해당 충전기의 화재예방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환경부는 화재예방 완속충전기(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2024년 2만기 보급하던 것에서 2025년 7만1천기 보급으로 확대하고, 노후 완속충전기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는 비용도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이에 따라 총 2,430억원의 보조금이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와 관련되어 편성되었음.

환경부는 현재의 전기차 충전방식은 전기차에서만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관리 시스템)를 활용한 충전제어가 가능하고 BMS 오류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나,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BMS 오류발생시 능동적으로 충전을 제어[55]

54) 「2025년 예산안 보도자료」 p.46

55) BMS 오류시 충전 차단, 100% 충전시 재충전 차단, 충전량 설정・제어 등

하여 안전 이중장치 역할을 수행하여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환경부는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충전기를 통해 수집된 배터리 상태정보를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화재 원인 진단[56]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도 설명함.

그런데 환경부의 설명과 같이 PLC 모뎀이 장착된 충전기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예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전을 수행하며 전기차로부터 차량 데이터를 수신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전기차 제작사에서 배터리 충전량(SOC, State of Charge) 정보를 공개하고 차량 소프트웨어(통신규격)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운행 중인 전기차 중 제작사 정보공개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차량이 없어, 당초 환경부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국내 제작사는 충전량 공개에 동의하고 차량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고, 수입제작사는 본사와 협의 중이어서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나,[57]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舊 화재예방 완속충전기인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와 관련한 화재예방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56) 전기차 화재는 차량 전소로 BMS 정보가 소실되어 원인 파악이 곤란

57) 환경부는 국내 제작사 중 KGM은 이미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고, 현대/기아차는 2024년도 내에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함. 수입제작사와는 아직 협의 진행 중이라고 설명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입>

16. 환경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신규 반영 필요

가. 개 요

‘기타재산이자수입’ 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자수입으로, 국고보조금·대행역무비 및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예치이자 등이 수납되는 세입 목임. 환경부 소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안에 기타재산이자수입 세목이 편성되지 않았음.

[2025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	-	-	-

나. 검토의견

환경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개 세부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자수입이 계상되는 세목을 미편성하고 있으므로 기타재산이자수입 세목의 신규 반영이 필요함.

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개 세부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편성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포함 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결산	2024예산	2025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요구	조정(B)	(B-A)	%
총 계	1,527,090	1,897,357	2,599,236	2,596,694	321,969	14.2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131-301)	-	-	12,488	12,488	12,488	순증
하수도시설 설치(제주) (1132-301)	-	300	-	-	△300	순감
하수관로 정비 (1132-312)	953,051	1,281,593	1,626,418	1,626,418	344,925	26.9
하수관로정비BTL사업임대료지급 (1132-750)	-	-	357,040	357,040	357,040	순증
하수관로정비(세종) (1147-301)	3,887	3,693	8,073	6,151	2,458	66.6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1232-301)	-	-	459	459	459	순증
상수도시설 확충및 관리(지역자율) (2031-301)	35,408	46,326	55,078	55,078	8,752	18.9
상수도시설 확충및 관리(제주) (2031-301)	7,562	14,763	11,855	11,855	△2,908	△19.7
노후상수도정비(제주) (2031-303)	18,264	31,214	27,195	27,195	△4,019	△12.9
노후상수도정비(자율) (2031-306)	391,876	405,490	370,041	370,041	△35,449	△8.7
노후상수도정비(세종) (2032-302)	-	-	1,895	1,895	1,895	순증
녹색환경지원센터활성화 지원 (1532-301)	6,057	6,057	6,377	6,057	-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자율)(1633-301)	16,395	17,616	17,434	17,434	△182	△1.0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제주)(1633-301)	120	122	122	122	-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세종)(1633-301)	165	170	170	170	-	-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제주) (1831-301)	9,177	11,251	14,328	14,328	3,077	27.3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자율) (1831-301)	-	-	3,300	3,300	3,300	순증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지원) (1831-301)	-	-	13,678	13,678	13,678	순증
슬레이트관리(자율) (2206-301)	82,220	76,176	70,506	70,506	△5,670	△7.4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결산	2024예산	2025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요구	조정(B)	(B-A)	%
슬레이트관리(제주) (2206-301)	2,400	2,074	1,961	1,961	△113	△5.4
슬레이트관리(세종) (2206-301)	305	305	305	305	-	-
제주환경업무지원(제주) (7131-301)	203	207	213	213	6	2.9

자료: 환경부

그런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는 기타재산이자수입목이 없어, 세입예산안의 규모에 국고보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대해 환경부는 결산 시 국고보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수납하기는 하였으나, 결산액이 크지 않아 그간 별도로 기타재산이자수입을 편성해오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3년의 경우 26억 600만원이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수납되고 있어 결산액이 과소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결산액이 과소하다고 하더라도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납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할 필요가 있음.

[2019~2023년 지특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역자율계정	519	891	1,328	597	2,561
지역지원계정	5	17	56	80	15
제주계정*	-	-	-	-	-
세종계정	3	-	-	37	30
계	**527**	**908**	**1,384**	**714**	**2,606**

주) 제주계정은 기타재산이자수입 1백만원 미만이 수납되고 있음
자료: 환경부

따라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에 기타재산이자수입 세목을 신설하여 면밀한 세입예산안 계상을 할 필요가 있음.

<세 출>

17. 대심도 하수저류 시설: 집행가능한 공사비만 계상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은 강남역·광화문(대심도하수저류시설 사업) 일대에 침수 방지를 위해 대심도 방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6,900만원(9.2%) 증액된 150억원이 편성되었음.[58]

[2025년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하수관로 정비	1,281,593	1,626,418	344,925	26.9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13,731	15,000	1,269	9.2

이 사업은 2023년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2022년 8월 서울시 대홍수시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해 강남역 일대의 도심이 침수되고 경제, 인명 피해가 발생한바, 도시 침수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에 큰 저류조(터널)을 설치하여 도심지의 빗물을 일시에 저류하였다가 펌프장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주요 내용]

구분	강남역 일대	광화문 일대
총사업비	3,500억원→5,386억원	2,500억원→3,298억원
사업규모	강남역~한강, L=3.1km, D=8.3m →L=4.5km, D=5~11m	효자동~청계천, L=3.2km, D=5.5m →L=3.4km, D=6.0m
사업기간	2023~2027년→2023~2028년(1년 연장)	
2025년도 예산안	공사비 60억원	공사비 90억원

주) 서울특별시는 대심도하수저류시설 사업과 함께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3,000억원→5,005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세부사업: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5338-309))

자료: 환경부

5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하수관로정비(1132-312)(물환경정책관)

2025년도 예산안은 강남역 대심도 공사비 60억원, 광화문 대심도 공사비 90억원 총 150억원이 자치단체자본보조금(보조율 25%)으로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은 2024년 9월말 기준 실집행액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2025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2억 6,900만원(9.2%) 증액 편성할 경우 연쇄적인 이월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가능한 수준의 공사비만 편성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3년 최초 시행 이후 국고 집행액이 전혀 없음. 이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행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것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서울특별시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2023	5,435	4,500	4,500	-	4,500	-	4,500	-	-
2024.9.	13,731	-	-	4,500	4,500	-	-	-	-

자료: 환경부

당초 사업시행주체인 서울특별시는 총사업비가 강남역 3,500억원, 광화문 2,500억원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강남역 5,640억원(61.1% 증액), 광화문 3,504억원(40.2% 증액)으로 변경되어[59] 2023년 7월 20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었음. 2023년 10월 말 도출된 적정성 검토 결과, 3,144억원의 총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었음.[60]

2023년 11월 타당성 검토 이후 총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환경부는 보조사업자인 서울특별시가 2023년 말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계

59)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용역비 13억 400만원, 용역기간 2022.11.21.~2023.11.30.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용역비 7억 200만원, 용역기간 2022.11.21.~2023.11.30.

60)강남역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상 유출부였던 한강 한남IC 유역이 지형적으로 공사가 곤란함을 고려하여, 반포빗물펌프장을 유출부로 변경하고 기본계획 노선 및 시설에 따라 사업규모의 증가가 발생하였음.
광화문의 경우, 당초 유입구인 옥류동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고, GTX-A공사 구간과의 중복을 방지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중학천 침수피해 해소를 위해 노선을 일부 변경하며 수직구 위치가 변경되어 길이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 증액이 발생하였음.

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보조금 45억원을 2023년 11월에 교부하였음.

그러나 조달청 공고 이후 사업이 2차례 무응찰 유찰되었고, 환경부는 기재부와 총사업비 재협의를 통해 2024년 2월 8,684억원(강남역 5,386억원, 광화문 3,298억원)으로 총사업비를 확정하였고, 이후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보조사업자인 서울특별시는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음.

2024년 9월 10일 기준,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결과가 나와, 현재 서울특별시는 설계 적격심의를 위한 절차 진행 중임.

환경부와 서울특별시는 2024년 11월까지 설계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12월에 우선시공분 계약 및 착공을 진행하여 2025년 10월 본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임.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향후 일정계획(안)]

구 분	2024년(월)				2025년(분기)				2026년(분기)				2027년(분기)				2028년(분기)			
	9	10	11	1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기본(실시) 설계 (4개월)	9/10																			
설계 적격심의																				
설계적정성 검토																				
우선시공분 계약·착공																				
본공사 실시설계 (6개월)																				
본공사 계약·착공							10월													
공사 완료																				12월

그러나, 이미 2024년도 예산으로 환경부에 편성된 공사비 137억 3,100만원이 전액 보조사업자 서울특별시에게 미교부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사비 총 150억원 중 일부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상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기상청 소관 총수입은 88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3.8%) 증가함.[1)]

[2025년도 기상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 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85	88	3	3.8
총수입	85	88	3	3.8

2025년도 기상청 소관 총지출은 4,6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6억원(4.8%) 증가함.

[2025년도 기상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 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4,482	4,698	216	4.8
총지출	4,482	4,698	216	4.8

문의 : 정지현 예산결산조사관 jihyunjung95@assembly.go.kr (02-6788-569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5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88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3.8%) 증가함.

[2025년도 기상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 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85	88	3	3.8
합 계	85	88	3	3.8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기상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6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6억원(4.8%) 증가함.

[2025년도 기상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 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462	4,684	222	5.0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19	14	△6	△29.9
합 계	4,482	4,698	216	4.8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기상청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3개(271억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기후위기 대응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R&D)’ 사업은 기후변화 가속화로 극단적 이상기후가 빈발함에 따라 3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의 매년 제공을 위한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임.

‘기상위성 융합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은 기상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다중위성 융합 활용 기술과 위성기반 기후변화 감시 기술을 개발하여 내부 및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기상청 예보관, 방재기관, 기후변화 대응 부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 사업은 기후위기 시대, 극심해진 위험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을 강화하기 위한 세 번째 정지궤도 기상위성(천리안위성 5호)을 개발하기 위한 것임.

[2025년도 기상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기후위기 대응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R&D)	4,800
2	기상위성 융합활용 기술개발(R&D)	2,800
3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	19,500
총지출		27,10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기상청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업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기상청)(R&D)’,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Ⅱ)(R&D)’,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R&D)’, ‘지진화산업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R&D)’ ‘해양기상정보 전달 체계 운영(정보화)’ 사업 등 총 5개임.[3)]

[2025년도 기상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기상청)(R&D)	2,788	7,638	4,850	174.0
2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Ⅱ)(R&D)	3,070	6,400	3,330	108.5
3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R&D)	600	1,200	600	100.0
4	지진화산업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R&D)	1,431	1,950	519	36.3
5	해양기상정보 전달 체계 운영(정보화)	946	1,246	300	31.7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는 없음.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5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안은 일상화된 이상기상과 지진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지진 관측·감시·예측 역량 강화, 탄소중립 등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한 지원 강화, 기상 분야 선도 기술 연구개발 사업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2025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 사업’ 시험연구비의 과거 집행 실적을 보면, 시험연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집행이라 보기 어려운 집행사례가 있고, 시험연구비의 최근 5개년 평균 이·전용액이 1억 5,100만원, 최근 5개년 평균 불용액이 2억 200만원으로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2025년도 시험연구비 예산안의 조정이 필요함.

둘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사업 관련,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결원 발생 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인건비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미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동시에 면밀한 인력수급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불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기술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인력채용 지연 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인건비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음.

넷째,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사업은 국립기상과학원의 사업 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시험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과다계상된 시험연구비 예산안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R&D) 사업: 시험연구비 부적정 집행 및 과다한 이·전용액, 불용액을 고려한 조정 필요

가. 개 요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R&D)’ 사업은 기상현상의 분석 및 수치예보 기술을 개발·개선하여 위험기상 예측정보의 정확도를 향상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1,200만원(6.5%) 증액된 67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R&D)	6,324	6,736	412	6.5
시험연구비(210-13목)	1,627	1,676	49	3.0

이 사업은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가 자체수행하고 있음. 2025년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는 수치예보 및 자료응용 기술 개발, 태풍 분석 및 예측기술 개발, 지역특화 영향예보 서비스 고도화 3개 연구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할 예정임. 기술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 사업에는 원활한 연구개발 사업을 위한 시험연구비(210-13목)이 편성되어 있음.

시험연구비(210-13목)는 국가시험 연구기관 및 방위력 개선사업에서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10개 세목[5)]을 통합하여 집행할

4) 일반회계-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R&D)(3133-303)(수치모델링센터)

5)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고용부담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비목 간의 전용 절차를 생략하여 시험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시험연구의 특성상 비목별 지출소요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집행가능비목을 한정하여 편성하는 비목임. 2025년도 이 사업의 시험연구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900만원(3.0%) 증액된 16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 사업 시험연구비의 과거 집행 실적을 보면, 시험연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집행이라 보기 어려운 집행사례가 있고, 시험연구비의 최근 5개년 평균 이·전용액이 1억 5,100만원, 최근 5개년 평균 불용액이 2억 200만원으로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2025년도 시험연구비 예산안의 조정이 필요함.

먼저, 수치모델링센터는 이 사업 시험연구비 중 일부를 내부 직원의 민간위탁 교육비로 집행한바 있었음.

2022년 수치모델링센터는 기업 교육업체인 ㈜멀티캠퍼스를 통해 민간위탁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며 3,514만원을 시험연구비로 지출하였고, 2023년에도 동일 업체에 3,008만원의 시험연구비를 지출하여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하였음.[6)]

[2022~2024.9. 시험연구비를 통한 민간위탁 교육 실시내역]

(단위: 원)

자금이체일자		지출결의금액	건명	수령인명
2022	05.18.	810,000	(교육비)수치모델개발과 민간위탁 교육	㈜멀티캠퍼스
	05.20.	1,384,000	민간위탁 교육 훈련비 지급(4월 수치자료응용과)	
	06.10.	882,000	(교육비)수치모델개발과 민간위탁 교육비 지급	
	06.17.	220,000	민간위탁 교육 훈련(5월)비 지급(수치자료응용과)	
	07.04.	1,164,000	수치예보활용팀 5월 민간위탁교육비(멀티캠퍼스)	
	07.20.	3,400,000	민간위탁 정보화교육 훈련비지급(수치모델개발과)	
	07.21.	4,250,000	민간위탁 교육 훈련비지급(수치자료응용과)_6월분	
	08.19.	3,500,000	민간위탁 교육 훈련(7월)비 지급(수치자료응용과)	

6) 참고로, 수치모델링센터는 ㈜멀티캠퍼스를 통한 민간위탁 교육과 관련하여 동 사업 시험연구비 외에도 2022년 1,650만원, 2023년 1,580만원, 2024년 490만원을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목)로 나누어 지출하고 있음.

(단위: 원)

자금이체일자		지출결의금액	건명	수령인명
	08.23.	2,528,000	7월 수치모델개발과 민간위탁 교육비 지급	
	09.20.	6,100,000	민간위탁 교육 훈련(8월)비 지급(수치자료응용과)	
	10.18.	3,900,000	민간위탁 교육 훈련(9월)비 지급(수치자료응용과)	
	11.16.	2,200,000	민간위탁 교육 훈련비(10월, 11월) 지급(수치자료응용과)	
	11.18.	1,200,000	수치예보활용팀 민간위탁(멀티캠퍼스) 교육 훈련비(10월)	
	11.18.	1,000,000	11월 민간위탁 정보화 교육 훈련비 지급_수치모델개발과	
	12.13.	2,600,000	수치예보활용팀 민간위탁 교육비(11월)	
2023	03.16.	3,500,000	민간위탁 교육훈련비 지급(2월)	
	03.22	1,500,000	2023년 2월 민간위탁 정보화 교육비 지급	
	04.21.	950,000	수치예보활용팀 민간위탁 교육훈련비(1분기)	
	05.10.	3,700,000	민간위탁 교육훈련비 지급(4월)	
	05.15.	3,700,000	2023년 4월 민간위탁 교육비 지급(시험연구비)	
	06.16.	2,400,000	2023년 5월 민간위탁 교육비 지급(시험연구비)	
	06.16.	230,000	수치예보활용팀 민간위탁 교육 훈련비(5월) 지급(멀티캠퍼스)	
	06.16.	1,000,000	민간위탁 교육훈련비 지급(5월)	
	07.14.	3,500,000	수치예보활용팀 민간위탁 교육훈련비(6월)	
	07.14.	2,400,000	민간위탁 교육훈련비 지급(6월)	
	08.10.	2,400,000	멀티캠퍼스 민간위탁교육 수치자료응용과 7월 교육비	
	08.29.	2,200,000	2023년 7월 민간위탁 교육비 지급(시험연구비)	
	09.11.	2,600,000	민간위탁 교육 훈련비 지급(8월)	
2024	09.11.	3,800,000	수치예보 역량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멀티캠퍼스) 훈련비(8월) 지급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 재작성

공무원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육훈련 경비는 기본행정경비로, 기관의 기본경비에서 집행해야 할 사항이고,[7] 민간위탁 교육이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해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 사업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연구개발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음.

다음으로,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 사업 시험연구비의 과거 집행실적을 보면, 최근 5개년 평균 이·전용액이 1억 5,100만원, 최근 5개년 평균 불용액이 2억 200만원으로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음.

7)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4

[2019~2024년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 사업 시험연구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개발 (R&D)	2019	1,525	1,525	-	△213	1,312	1,254	-	58
	2020	1,269	1,269	-	△40	1,229	1,061	-	168
	2021	1,586	1,586	-	△250	1,336	1,072	-	264
	2022	1,402	1,372	-	△50	1,322	856	-	466
	2023	1,699	1,699	-	△200	1,499	1,445	-	54
	2024.8.	1,627	1,627	-	-	1,627	1,061		
	5개년 (2019~2023년) 평균 불용액								202
	5개년 (2019~2023년) 평균 이・전용액								151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2019~2023년 간 타 사업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신규 기획연구를 추진할 목적으로 이 사업의 시험연구비를 이・전용했음.

[2019~2023년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 사업 시험연구비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연도	이·전용 금액	이전용 사유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 (R&D)	2019년	△213	- 2019년 기후서비스포럼 운영에 따른 예산 부족분(전용, 1억 6,800만원) - 국제지진조기경보컨퍼런스 진행에 따른 시험연구비 부족분 (수치내역사업→지진내역사업 증감재배정, 4,500만원)
	2020년	△40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1140-501)의 문자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예산 충당(이용, 4,000만원)
	2021년	△250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1140-501)의 취약계층 문자서비스 제공 및 기상정보 통보 회선료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예산 충당(이용, 1억원) - 수치예보기술 R&D사업 중기 성과관리방안 연구(전용, 1억원) - 미래 기상기후재해 대응 융합형 예보기술개발 추진방안 연구 등 기획연구 추진(전용, 5,000만원)
	2022년	△50	- 관측자료의 수치예보모델 활용성 저조 등 현행 기상관측표준화 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전용, 5,000만원)
	2023년	△200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슈퍼컴퓨터 전기요금 부족분 충당 (이용, 2억원)

자료: 기상청

이러한 과다한 이·전용액 및 불용액을 고려하면 이 사업 시험연구비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시험연구비의 경우 이·전용액, 불용액 등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험연구비를 집행가능한 수준만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 개선 사업: 저조한 이용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 개선’** 사업은 일반 국민 및 유관기관 대상 다채널 기상정보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날씨누리, 날씨알리미 등)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9,000만원(48.6%) 증액된 5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5년도 종합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상정보서비스 개선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기상정보통신시스템 운영(정보화)	16,233	20,096	3,863	23.8
종합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상정보서비스 개선 운영	8,140	11,148	3,008	37.0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 개선 (일반연구비)	391	581	190	48.6

기상청은 이 사업을 통해 날씨누리,[9)] 날씨알리미[10)] 등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기상청은 날씨알리미 등 인터넷 기상정보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홈페이지・모바일어플리케이션 개선을 실시하고 있음. 기상청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9,000만원(48.6%) 증액된 5억 8,100만원의 일반연구비(260-01목)를 편성하고 있음.

8) 일반회계-기상정보통신시스템운영(정보화)(1239-500)(관측기반국)

9) 기상청이 운영하는 날씨, 지진 정보 등 제공 홈페이지임.

10) 기상청이 운영하는 날씨, 지진 정보 등 제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임.

[2025년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 개선 관련 일반연구비 세부 산출내역]

날씨누리·날씨알리미 개선(4억 4,100만원)	날씨지도 개선(1억 4,000만원)
■ 날씨누리·날씨알리미 콘텐츠 구성 개편 - 사용자 목적별 콘텐츠 메뉴 개편 - 라이트 버전 앱 개발 및 위젯 개편 ■ 모바일 기상서비스 최적화 - 타일형태의 콘텐츠 제공체계 전환 - 모바일웹·앱 통합 프로그레시브 방식 적용 - 태블릿, 와치 등 모바일기기 적용 ■ 사용자 맞춤형 UI/UX 전면 개편 - 날씨누리·날씨알리미 화면 개편 - 콘텐츠 분류 재구성	■ 지도기반 기상정보서비스 기능 고도화 - 동아시아지역의 대규모 기상현상 격자형태 수치예측자료 제공 - 사용자 지역별 CCTV정보 묶음 제공 - 날씨지도 메뉴 체계 개편(관리기능) - 날씨지도 DB(지리정보) 업그레이드* * 2020년 구축분 DB 버전 및 정보 현행화

자료: 기상청

나. 검토의견

기상청은 대국민 기상정보 전달을 위해 날씨누리, 날씨알리미 앱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2023년 기상업무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기상청 날씨알리미·날씨누리의 활용도가 전년 대비 감소한 9.2%(△1.4%p)에 불과하므로, 저조한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은 날씨알리미 등 인터넷 기상정보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2020년 기상청은 날씨누리 개선을 위해 8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2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2023년의 경우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통해 대국민 기상정보 서비스의 개선을 추진하였고, 2024년 3억 9,100만원, 2025년 5억 8,100만원의 예산안을 투입할 예정임.

[2020~2025년 인터넷 기상정보서비스 사업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사업내용
2020년	900	873	2020년 대국민 기상정보 서비스(날씨누리) 개선
	200	190	2020년 기상청 홈페이지 통합정비 사업
	65	65	날씨알리미 개선 *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3차년도 구축사업에 포함
2021년	200	196	2021년 대국민 기상정보 서비스(날씨누리) 개선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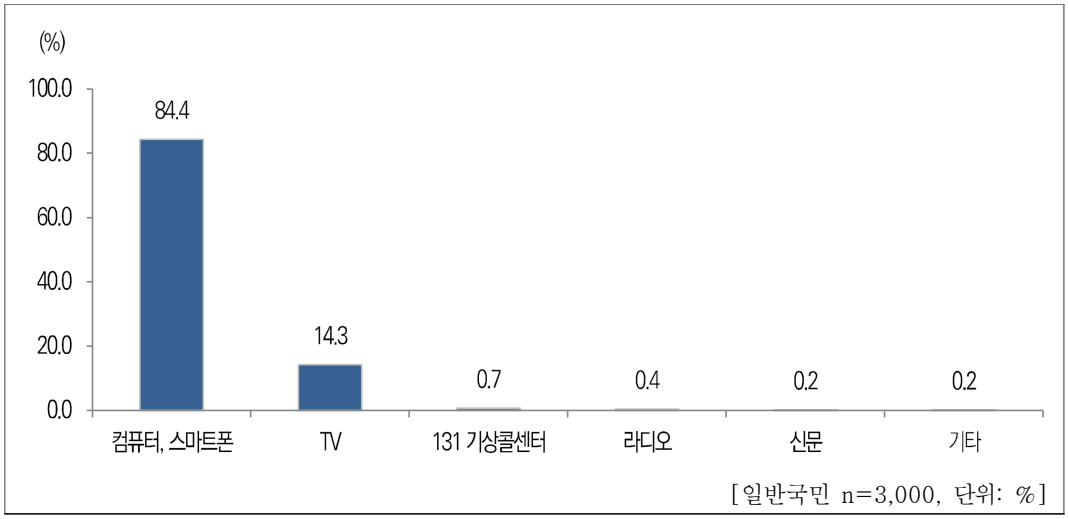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사업내용
	193	94	날씨알리미 개선 *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4차년도 구축사업에 포함
2022년	200	156	2022년 대국민 기상정보 서비스(날씨누리) 개선
	100	100	모바일 서비스 날씨알리미 앱 개선
2023년	220	220	대국민 기상정보 서비스(날씨누리) 개선
2024년	391	385	날씨누리, 날씨알리미 앱 개선
2025년(안)	581		날씨누리, 날씨알리미, 날씨지도 등 개선

자료: 기상청

그런데 이러한 지속적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대국민 기상정보 서비스를 통해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빈도는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2023년 기상업무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일반국민 중 인터넷 기상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상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먼저, 일반국민의 기상서비스 이용 매체로는 '컴퓨터, 스마트폰'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84.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일반국민의 기상서비스 이용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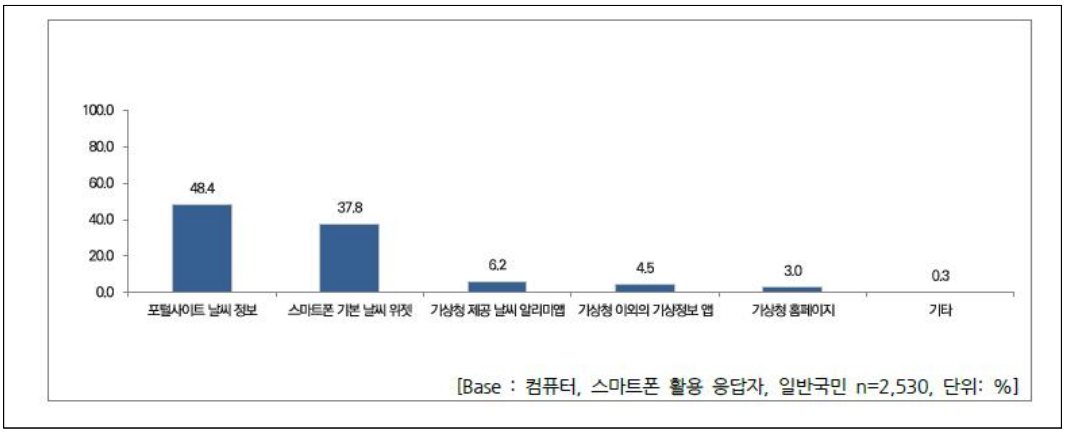


자료: 기상청

이때,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을 받는 국민 중 48.4%가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 날씨 정보를 활용한다고 응답하였고, 스마트폰 기본 탑재 날씨 위젯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37.8%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상청이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기상정보서비스'를 통해 기상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중은 9.2%로 전년 대비 감소(△1.4%p)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기상청 날씨알리미 사용은 6.2%, 기상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국민은 3.0%에 불과하여, 기상청이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기상정보서비스의 이용률이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음.

[일반국민의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기상서비스 이용매체]



자료: 기상청

이처럼 저조한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 매체(날씨누리, 날씨알리미)의 이용률을 고려할 때, 자체 매체의 개편·개선을 위한 예산을 매년 투입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에 대해 기상청은 가독성, 표출방식, 컨텐츠 등에 대한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속적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일반 국민의 활용도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자체 매체의 개편·개선을 위해 단순히 예산만 계속 증액하기보다는 대다수의 일반국민이 활용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날씨정보', '스마트폰 기본 날씨 위젯' 등 서비스와의 연계·지원 강화 등 사업 운영방식의 개편도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따라서 일반국민의 저조한 기상청 날씨알리미·날씨누리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인건비 미집행잔액 반납 및 불용 최소화 노력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사업은 「기상법」 등에 따라 기상·지진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전담하고,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기상기업 육성 및 기상산업 지원업무도 담당하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900만원(△1.0%) 감액된 90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2025년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기상산업 활성화	15,320	14,753	△567	△3.7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9,130	9,041	△89	△1.0

나. 검토의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결원 발생 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인건비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미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동시에 면밀한 인력수급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불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인건비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최근 7개년 동안 평균 4억 9,8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020년 5억 500만원, 2021년 3억 2,400만원, 2022년 2억 7,200만원의 인건비를 이월하였고, 2023년의 경우에는 인건비 미집행액 5억 800만원을 이월하였음.

11) 일반회계-기상산업활성화(1431-301)(기상서비스진흥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인건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2025(안)
기관운영 출연금 (인건비)	수입	4,661	4,782	4,887	5,092	5,667	6,346	6,637	6,803	7,007
	지출	4,185	3,877	4,390	4,587	5,343	6,074	6,129	2,957	
	잔액 (=차년도 이월액)	476	905	497	505	324	272	508		

주) 2024년 지출액은 7월말까지의 지출액임
자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은 2023년 이월된 인건비로 2024년 6월까지의 급여를 일부 지급하였음. 이에 따라 2024년에도 인건비의 일부는 미집행될 것으로 예상됨.[12)]

[2023년 이월 인건비의 2024년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명	지출결의일자	지출세부내역	지출결의금액
(이월)2023년 기상산업활성화 인건비_지출	2024-01-24	기상산업활성화(이월) 1월분 급여	157,784,616
	2024-01-24	기상산업활성화(이월) 1월분 계약직 급여	7,027,382
	2024-01-31	(이월)기상산업활성화 2024년 설 명절휴가비	33,023,140
	2024-02-23	(이월) 기상산업활성화 2월분 급여	99,641,372
	2024-02-23	(이월) 기상산업활성화 2월분 계약직 급여	9,751,372
	2024-03-22	(이월) 기상산업활성화 3월분 급여	101,126,078
	2024-03-22	(이월) 기상산업활성화 3월분 계약직 급여	9,703,240
	2024-04-24	(이월) 기상산업활성화 4월분 급여	52,862,275
	2024-04-24	(이월) 기상산업활성화 4월분 계약직 급여	9,670,970
	2024-05-22	(이월) 기상산업활성화 5월분 계약직 급여	14,152,550
	2024-05-23	(이월) 기상산업활성화 5월분 계약직 급여	-14,152,550
	2024-05-23	(이월) 기상산업활성화 5월분 계약직 급여	13,952,550
	2024-05-30	2024년 청년인턴 5월 퇴직자 급여 환수(기상산업활성화(이월))	-877,370
	2024-06-25	(이월) 기상산업활성화 6월분 계약직 급여	14,191,747
계			507,857,372

자료: 기상청

이에 대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퇴직자 및 휴직자 등 결원 발생으로 인해 인건비

12)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024년부터 미집행액은 이월하지 않고 반납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미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2023년까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이를 차년도 기관세입에 계상하여 사용해 왔으나, 향후에는 인건비 미집행 잔액을 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지난 7년 동안 매년 발생한 약 3억원~9억원에 이르는 인건비 미집행잔액을 반복하여 차년도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기관 인건비를 운용해온 것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정·현원 차이, 충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특히, 이러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인건비의 연례적 이월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 이와 관련한 국회 시정요구사항(제도개선) 의결 및 기상청의 조치완료 보고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적정한 집행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연례적 인건비 미집행잔액 이월 관련 시정요구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17) 기상청의 출연예산을 활용한 제3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사례 개선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인건비 이월 등 시정 필요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인건비를 이월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할 것(제도개선)
조치상황	조치완료
조치결과	ㅇ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예결위 내 인건비 이월 관련 지적사항 개선 계획 수립('21.12.)하여 시행중임 - '22~'26년 중기사업계획서(출연금)에 정원 대비 인건비 부족분 요구 및 '23년부터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음 ※ 정원 대비 인건비 확보 시, 향후 인건비 잔액은 반납조치 - 대행역무사업 및 기획평가관리비(R&D사업) 내 인건비 자연 증감분 반영을 위해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와의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따라서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인건비 미집행액을 불용 조치하고 면밀한 인력수급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향후 인건비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R&D) 사업: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인건비의 효율적 집행 필요

가. 개 요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R&D)’ 사업은 위험기상 예보의 정확도 개선을 위하여 수치예측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 4,700만원(20.2%)이 증액된 121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음.[13)]

[2025년도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R&D) 사업	10,125	12,172	2,047	20.2

이 사업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에 출연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4차원 고품질 기상분석을 위한 최신 자료동화기술 개발, 가변격자체계 기반 통합형수치예보모델개발, 거대 수치예측자료의 효율적 처리와 수요맞춤 활용기술 개발 3개 과제를 계속 수행할 예정임.

2025년도 이 사업 예산안은 3개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인건비 68억 9,000만원, 연구개발경상경비 12억 9,900만원, 연구개발활동비등 39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13) 일반회계-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3133-312)(수치모델링센터)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4차원 고품질 기상분석을 위한 최신 자료동화기술 개발	○ 연구개발인건비(360-01) - 6,806백만원	○ 연구개발인건비(360-01) - 6,890백만원
가변격자체계 기반 통합형수치예보모델 개발	○ 연구개발경상경비(360-02) - 1,299백만원	○ 연구개발경상경비(360-02) - 1,299백만원
거대 수치예측자료의 효율적 처리와 수요맞춤 활용기술 개발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2,020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3,983백만원
계	**101억 2,500만원**	**121억 7,200만원**

자료: 기상청

나. 검토의견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기술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인력채용 지연 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인건비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음.

사업단의 최근 3개년 인건비 집행실적을 보면, 2021년의 경우 인력채용 지연 등에 따라 인건비 미집행잔액이 18억 7,400만원이 발생하여 2022년으로 이월되었음. 2022년에도 정원 96명 대비 현원 74명 운영으로 기상청에서 9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고, 사업단에서도 예산현액 70억 5,900만원 중 63억 5,0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900만원이 이월되었음. 2023년의 경우에도 인건비 집행 잔액 5억 7,6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2024년 8월 말 기준, 기상청이 13억 6,100만원의 인건비를 미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의 예산현액 대비 인건비 집행액은 40억 3,200만원(67.0%)에 그쳐, 본예산 대비 인건비 집행률은 59.2%에 불과함.

[2021~2024.8.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이월사유 및 비고
	예산액	교부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2021	5,672	5,672	5,672	717	6,389	4,516	70.7	1,874	-	정원 미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등 집행 잔액 이월
2022	6,100	5,185	5,185	1,874	7,059	6,350	90.0	709	-	정원 미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915백만원 미교부(불용)
2023	6,506	6,506	6,506	709	7,215	6,639	92.0	576	-	인건비 집행 잔액 이월
2024	6,806	5,445	5,445	576	6,021	4,032	67.0	-	-	

주) 2024년 집행액은 8월 말 기준임
자료: 기상청

이처럼 사업단에서 인건비 미집행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연례적으로 인력 채용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 2021년은 정원 104명 대비 현원이 31명 부족하였고, 2022년의 경우에도 정원 104명 대비 현원 21명이 부족하였음. 2023년은 정원 99명·현원 84명으로 15명의 인원이 채용되지 못하였음.

2024년 8월말 기준, 정원 99명 대비 현원은 다시 80명으로 감소하여,[14] 여전히 인력 충원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최근 연도별 인건비 정원, 예산반영 인원, 현원]

(단위: 명)

연도	구분	정원	예산반영 인원[1]	인건비 단가[2]	현원[3]	현원-정원
2021	단장	1	-	-	1	0
	책임	17	17	1억 710만원	18	1
	선임	47	40	6,620만원	27	△20
	원급	34	28	4,290만원	20	△14
	연구근접인력	5	-	-	7	2
2022	단장	1	-	-	1	0
	책임	23	21	1억 480만원	19	△4
	선임	42	43	6,310만원	30	△12
	원급	31	34	3,720만원	26	△5
	연구근접인력	7	-	-	7	0

14)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시 현원 81명이었는데, 3개월 동안 1명의 인원이 추가적으로 퇴사하였음.

2023	단장	1	1	1억 4,000만원	1	0
	책임	23	21	1억 630만원	20	△3
	선임	40	44	6,400만원	31	△9
	원급	28	29	3,770만원	25	△3
	연구근접인력	7	7	5,180만원	7	0
2024	단장	1	1	1억 4,200만원	0	△1
	책임	23	22	1억 780만원	20	△3
	선임	40	31	6,490만원	33	△7
	원급	28	26	3,820만원	20	△8
	연구근접인력	7	7	5,250만원	7	0

주 1) 해당연도 확정예산 기준
2) 2021년은 선행사업단 평균연봉에 인건비 상승률 1.4% 적용, 2022년은 예산 산출 시(2021.5월) 평균연봉, 2023~2024년은 직전연도 단가에 인건비 상승률 1.4% 각각 적용
3) 현원은 각 연도별 12.31. 기준, 2024년의 경우 8월말 기준 현원임
※ 예산반영인원은 채용예정인원 포함
자료: 기상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실인건비 목적으로만 지출하여야 하므로, 예산반영인원이 모두 채용되지 않는 이상 동 인건비는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15)]

따라서, 2024년 인건비 이월예상액 등을 감안하여 기상청 및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인건비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기술 개발 사업의 인건비는 동일한 사유로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2023년 7억 8,000만원, 2022년 4억원 감액된 바 있고, 사업단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조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5)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일반출연금(350목) 세부지침: 출연기관의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및 사업비 집행잔액은 **제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순위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사회 등을 거쳐 확정된 결산잉여금이어야 하며, 결산절차 완료 전에 미리 잉여금을 예측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
1) 퇴직급여충당금 부족기관('18.12.31 기준)은 퇴직급여충당금에 최소한 70%이상을 적립(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이 상기 결산잉여금의 70%이하인 기관은 부족분만 적립)
2)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명시된 인센티브 성과급 재원 또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계상

5.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사업: 시험연구비 부적정 집행분 감액 필요

가. 개 요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사업은 융합(관측, 분석, 자료동화, 모델, 예측, 응용 등)과 다학제(기상학, 기후학, 해양학, 수문학, 생지화학 등)적인 접근이 필요한 기상업무지원 관련 기술개발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9억 6,800만원(17.9%) 증액된 327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16)]

[2025년도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R&D)	27,785	32,753	4,968	17.9
시험연구비(210-13목)	4,789	7,281	2,492	52.0

시험연구비(210-13목)는 국가시험 연구기관 및 방위력 개선사업에서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10개 세목[17)]을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비목 간의 전용 절차를 생략하여 시험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시험연구의 특성상 비목별 지출소요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집행가능비목을 한정하여 편성하는 비목임. 2025년도 이 사업의 시험연구비는 전년 대비 24억 9,200만원(52.0%)이 증액된 72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립기상과학원은 기상조절용 연소탄 구입(10억원), 인공지능 GPU 임차료(5억원), 위험기상 관측용 항공기 드롭존데 추가 구입(4억 7,900만원), 기후변화시나리오 대용량 저장장치 구매(3억 7,500만원), 기타시설장비유지비(1억 3,700만원) 등 증액 소요가 있어 전년 대비 증액된 시험연구비를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16) 일반회계-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4133-301)(국립기상과학원)

17)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고용부담금

나. 검토의견

국립기상과학원이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다수의 시험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과다계상된 시험연구비 예산안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시험연구비(210-13목)는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 중 ① 일용임금(110-04목) ② 일반수용비(210-01목)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④ 피복비(210-03목) ⑤ 임차료(210-07목) ⑥ 유류비(210-08목)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⑧ 재료비(210-11목) ⑨ 여비(220목) ⑩ 고용부담금(320-09목)으로 집행할 수 있음.

그러나, 2023년 국립기상과학원의 집행내역을 보면, 국립기상과학원의 일반용역비(210-14목), 공사비(420-03목) 등의 비목으로 집행해야 할 일반적인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 지급,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수행에 대한 대금 지급 등을 시험연구비로 집행하였음.

[2023년 일반용역비·공사비 등 관련 시험연구비 부적정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시험연구비 내 비목	집행 내역	금액
210-09목 (시설장비 유지비)	예보연구부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재배치 용역**	15
	종합기상관측탑 기상관측시스템 **철거용역**	20
	서귀포 혁신도시 지역 상세기상 공동관측을 위한 통합센서 **설치 용역**	22
	연구용 윈드라이다 점검 및 **수리 용역**	64
	2023년 서해상 대기질 입체관측을 위한 컨테이너 및 관측장비 **이전설치 및 점검 용역**	47
	구름물리실험챔버 **시설개선 용역**	56
	종합기상관측탑 기상장비 장착 표준구조물 **설계용역**	12
	도시기상관측망 강남지점 **관측환경 조성 및 장비이전 용역**	22
	구름물리실험챔버 **시설개선 용역**	24
	구름물리실험챔버 습도제어 **개선 용역 계약**	20
	보성 기상관측탑 관측장비 및 구조물 **설치 용역**	15
	수도권 위험기상 집중관측을 위한 신규 장비 도입에 따른 **관측 환경 보강 용역**	65
	인공강우 집중검증망 장비 이전설치를 위한 **환경조성 용역**	15
	연구용 라디오미터 제조사 점검 및 **수리 용역 계약**	84
	연구용 윈드라이다 점검 및 **수리 용역**	16

(단위: 백만원)

시험연구비 내 비목	집행 내역	금액
	기상조절 검증용 관측장비 **전원 연결 공사**	2
	인천공항 다목적 기상관측 제3사이트 **전기 공사**	11
	토양수분(단일층) 센서 및 보안장비 현장**설치 공사**	9
	연구용 관측장비 **전기배선 공사**	1
	K-UAM 수도권 도시기상관측 제1사이트 **전기공**사	10
	계	**520**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 재구성

이러한 집행 내역은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관의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공사비 등 타 예산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들임.

또한, 국립기상과학원은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홍보비 명목으로도 2022년 1억 2,700만원, 2023년 1,7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한 사례가 있음.[18)]

[2022~2023년 홍보비 관련 시험연구비 부적정 집행 내역]

(단위: 원)

자금이체일자		지출결의금액	계정과목	건명	수령인명
2022	02.24	2,530,000	홍보물품비	구름물리실험챔버 홍보물(융합,기상조절)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03.17	1,122,000	홍보물품비	구름물리실험챔버 홍보물 추가(융합,기상조절)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03.24	1,076,900	홍보물품비	세계기상의 날 기념행사 참여를 위한 홍보물 제작 검사·검수 알림 및 대금지급 요청(재해, 재해기상)	디자인픽업
	03.31	1,870,000	기타수수료	2022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행사 관련(홍보부스설치, 안전차단봉 대여) 대금 지급(재해, 재해기상)	(주) 아이전시
	03.31	308,000	기타수수료	2022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행사 관련(홍보부스설치, 안전차단봉 대여) 대금 지급(재해, 재해기상)	(주)한스틸
	04.27	2,530,000	인쇄비	서해상 대기질 입체관측 홍보 판넬 대금 지급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08.17	4,840,000	홍보물품비	실내 실험장비 및 관측장소 홍보액자 제작 완료에 따른 대금지급(관측, 기상관측)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09.15	754,600	홍보물품비	제9회 생명기상워크숍 홍보용 물품 제작(응용,생명농림)	대전판촉물

18) 참고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시험연구비의 편성과 관련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기념품 제작, 홍보책자 발간, 워크숍 개최 비용 등 해당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단위: 원)

자금이체일자		지출결의금액	계정과목	건명	수령인명
	11.01	4,217,400	홍보물품비	국립기상과학원 한국기상학회 홍보 관련 기념품(마스크) 제작 대금 지급(관측,기상관측)	고려기프트
	11.01	3,200,000	홍보물품비	한국기상학회 홍보 관련 홍보현수막 제작 대금(관측, 기상관측)	DNA디자인
	11.01	9,000,000	건물임차료	국립기상과학원 한국기상학회 홍보 관련 부스 임차료(관측, 기상관측)	(사)한국기상학회
	11.01	1,127,500	기타자산임차료	한국기상학회 홍보 관련 전시부스 비품 임차 및 로고 제작 대금 지급(관측, 기상관측)	(주)한국이엔아이 인터내셔널
	11.08	946,000	운송비	국립기상과학원 한국기상학회 홍보 관련 전시물운송 대금 지급(관측, 기상관측)	(주)고려국제운송
	11.15	2,068,000	인쇄비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 연구 5개년 홍보 리플릿 발간(예보, 위험기상)	동아피앤씨
	11.28	1,100,000	업무대행수수료	대기환경학회 특별세션 및 홍보부스 운영 대금 지급(기후,입체감시)	(사)한국대기환경학회
	11.28	2,970,000	업무대행수수료	대기환경학회 홍보부스 운영 대금 지급(기후,입체감시)	(사)한국대기환경학회
	12.15	3,000,000	업무대행수수료	2022년 하반기 기후변화학회 홍보부스 임차료 및 학술대회 세션 광고비 지급(기후변화)	(사)한국기후변화학회
	12.15	20,000	기타수수료	조달수수료(기후변화 홍보강화를 위한 전시물 이전설치) 지급(기후변화)	조달청 징수관
	12.30	84,869,220	이동성기계장치/일반유형자산	기후변화 홍보강화를 위한 전시물 이전 및 설치사업	에이피건축주식회사
2023	02.14	330,000	홍보물품비	2023 클린에어엑스포 홍보 포스터 제작(기후,황사감시)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03.08	1,848,000	홍보물품비	우수성과 경진대회 홍보 포스터 제작(연구기획,기상정책)	디자인픽업
	03.08	3,905,000	업무대행수수료	2023년 클린에어 엑스포 홍보부스 대금(기후,황사감시)	메쎄이상
	05.10	819,500	홍보물품비	기관(부서) 홍보물 제작 관련(신분증 케이스) 대금 지급(응용, 생명농림)	주식회사 현승홍성지점
	05.10	3,190,000	시험연구재료비	전시부스 운영(홍보패널.포스터 제작 및 전시부스 비품 대여)	(주)이렌컴서비스
	05.26	1,100,000	홍보물품비	구름물리실험챔버 영문 홍보액자 제작에 따른 검사 결과 알림 및 대금(응용, 기상조절)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06.15	3,400,000	소모성물품비	기상관측장비 연구실험동 및 챔버동 홍보물품	MS사운드
	06.28	80,000	홍보물품비	책임운영기관 성과공유워크숍용 홍보용 배너 제작(연구기획,기상정책)	춘강인쇄사
	11.10	2,200,000	홍보물품비	국립기상과학원 우수성과 경진대회 홍보용 배너 제작(연구기획,연구노트)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 재구성

이외에도, 국립기상과학원은 연례적으로 시험연구비를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감)하여, 신규 용역과제를 추진하거나 기존 용역비 예산에 추가하여 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었음.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사업 시험연구비 세목조정(감) 사례]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코드	금액	~으로 코드	사유
2022	210-13	20	210-14	인공강우시딩물질 사출장비 전자파 적합성 검증용역 수행 위한 **일반용역비(210-14)부족분을 시험연구비(210-13)**집행잔액에서 세목조정하여 충당
		21		기관 전략체계·성과목표·발전방안 토론을 통해 사업계획 도출, 우수 책임운영기관 도약을 위한 **미래발전방안토론 연찬회**를 위해 일반용역비(210-14)부족분을 시험연구비(210-13) 집행잔액에서 세목조정하여 충당
2023	210-13	15	210-14	예산확보 등을 위해 **선진국 조직·예산 현황 분석**을 전문기관 통해 수행하고자 시험연구비(210-13)에서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조정하여 충당
		9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실현을 위해 국회, 관련부처, 민간기업이 참여한 **행사(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발전 포럼)**를 전문기관 통해 수행하고자 시험연구비(210-13)에서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조정하여 충당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 재구성

이상의 사례와 같이 국립기상과학원은 관행적으로 이 사업의 시험연구비를 과다편성한 후 이를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에 집행하거나, 시험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는 비목에 집행하는 등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 시험연구비의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계상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연구비 소요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과다계상된 부분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 출>

6.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 관리 필요

가. 개 요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은 종합상황실인 국가기상센터를 대전광역시에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8,000만원(△29.9%) 감액된 13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19)]

[2025년도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1,943	1,363	△580	△29.9

당초 기상청은 5년(2022년~2027년) 내에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청사로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추진과정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음.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2~2027년 → 2022~2028년(1년 연장)
○ 총사업비: 675억 1,500만원(기상청) → 454억 3,600만원(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후 확정값)
○ 사업 추진 경과
- 2021.6: 국가기상센터(대전) 청사수급관리계획 확정(8,127㎡)
- 2021.8: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 예비타당성 면제(기재부)
- 2021.11~2023.5.: KDI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 2023.8.: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 총사업비 확정(총사업비 변경 없이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증액)
- 2023.10.: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계약
- 2024.1.: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 국제지명설계공모
- 2024.5.: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 기본설계 계약 체결

자료: 기상청

1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7141-301)(운영지원과)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3억 6,300만원은 실시설계비 13억 1,3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0만원으로, 기상청은 ① 총 설계비 34억 3,700만원의 38.2%인 13억 1,3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편성하였고, ② 총 시설부대비 2억 7,400만원 중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비용인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나. 검토의견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은 탄소중립청사로 국가기상센터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지선정 및 KDI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2022년에 이어 2023년 역시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2024년 5월에서야 국제지명설계공모를 통한 기본설계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은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다가, 2023년 5월 검토가 완료된 후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기상청은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2022년 5월까지 KDI 적정성 검토 완료 후 동 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KDI와의 이견에 따라 총사업비 확정에 기간이 소요되었고, 2023년 8월에야 총사업비가 454억 3,600만원으로 확정되어 이후 사업을 추진 중임.[20]

총사업비 확정 이후 기상청은 국가기상센터를 탄소중립센터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국제설계공모로 센터 신축 설계공모를 시행하였음. 이에 따라 2023년 9월 27일 조달청에 국제설계공모 관리를 위한 용역 입찰공고를 시행함.

그런데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추진이 다시 지연되었음. 당초 기상청은 2023년 12월까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12월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8개월의 기본설계 후 2024년 하반기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2023년 10월 12일 국제설계공모 관리

20) [KDI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시 기상청과 KDI의 주요 이견사항]

주요 이견사항	기상청 의견	KDI 의견
건축 특수시설 기본단가	- 3개 사례 단가: 4,628천원/㎡ * 탄소중립건물과 24시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 설비 구축 필요 * KDI 선정 사례는 주요기반설비(공조설비, 전력이중화 등) 부족하거나 추후 공사 진행된 사례임	- 타 3개 사례 단가: 2,671천원/㎡ - 추후 설계 후 총사업비 조정 필요
면적	탄소중립 청사 개발을 위한 기계실 등 적정면적 확보 필요	일반청사 기준의 기설기준에 의한 기계실 면적 축소 필요
총사업비	675억 1,500만원	413억원

자료: 기상청

용역의 유찰(단일응찰)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이후 2023년 10월 말에서야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1월 국제지명설계공모를 실시하여 2024년 5월 설계용역을 계약하였음.

이러한 사업 지연에 따라 이 사업 예산은 2022년 전액 불용된 이후 2023년에도 집행액이 전혀 없이 1억 8,100만원이 이월되고 28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 7월말 기준 국제지명설계공모 관리용역비 및 지명비가 집행되어, 예산현액 21억 2,400만원 중 6억 1,900만원(집행률 29.1%)이 집행되었음.

[2022~2024년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945	945	-	-	945	-	-	-	-	945
2023	3,044	3,044	-	-	3,044	-	-	-	181	2,863
2024	1,943	1,943	181	-	2,124	619	31.9	29.1	-	-

주) 2024년은 7월말 기준 집행액임
자료: 기상청

이 사업은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확정이 지연되며, 기편성되었던 예산의 불용이 반복되었던 사업이고, 2025년 연내에 설계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이미 1년의 사업기간이 연장된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바, 기상청은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예산안이 추가적인 지연 없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21)]

21) 이에 대해 기상청은 국제지명설계공모를 통해 체결한 설계용역 계약기간이 2024년 5월부터 2025년 8월까지로, 2024년 9월 현재 기본조사설계 진행 중이고, 2024년 12월까지 기본조사설계를 완료하여 차질없는 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은 34조 7,382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4,440억원(11.0%) 증가함. 예산은 3,4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억원(1.4%) 증가하고, 기금은 34조 3,91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4,390억원(11.1%) 증가함.[1)]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3,423	3,472	50	1.4
기 금	309,519	343,910	34,390	11.1
총수입	312,942	347,382	34,440	11.0

문의 :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70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은 35조 3,6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836억원(5.0%) 증가함. 예산은 5조 7,639억원으로 전년 대비 512억원(△0.9%) 감소한 반면, 기금은 29조 6,0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348억원(6.2%) 증가함.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58,151	57,639	△512	△0.9
기 금	278,674	296,022	17,348	6.2
총지출	336,825	353,661	16,836	5.0

나. 예산안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4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억원(1.4%) 증가함.

[2025년도 고용노동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235	3,254	19	0.6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87	218	31	16.4
합 계	3,423	3,472	50	1.4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4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6조 3,353억원으로 전년 대비 988억원(1.6%) 증가함.

[2025년도 고용노동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55,520	57,273	1,753	3.2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896	866	△29	△3.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839	1,229	△610	△33.2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4,111	3,985	△126	△3.1
합 계	62,365	63,353	988	1.6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54조 7,888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 6,015억원(16.1%) 증가함.

[2025년도 고용노동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고용보험기금	234,136	234,136	277,005	42,869	18.3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202,950	202,950	234,250	31,300	15.4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20,048	20,048	21,829	1,782	8.9
임금채원 보장기금	9,728	9,728	9,142	△586	△6.0
근로복지 진흥기금	5,011	5,011	5,661	651	13.0
합 계	471,873	471,873	547,888	76,015	16.1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고용노동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4개(623억 8,500만원)의 신규 사업이 편성됨.[2)]

‘중장년 인턴제’ 사업은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층에게 다양한 직무의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6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은 청년의 취업부터 산업 내 경력개발까지 全 주기 토탈 케어를 통해 청년성장 및 산업인재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억원이 편성되었음.

‘노동약자지원’ 사업은 현행 노동관계법과 노동조합 등의 제도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주체가 되어 두텁게 보호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59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은 기존 분절된 컨설팅으로 인한 중복·비효율을 제거하고 사업평가, 품질관리 등을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컨설팅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07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고용노동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중장년 인턴제	3,640
2	청년미래플러스	2,000
3	노동약자지원	15,989
4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40,756
총지출		62,385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고용노동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모성보호육아지원’, ‘대지급금’,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 등 총 20개임.[3)]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 방식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5일→20일) 등을 위해 1조 5,256억원이 증액(2024년 2조 4,968억원 → 2025년 4조 225억원)되었음.

대지급금은 건설경기 둔화 등에 따른 기업경영 악화로 체불신고액이 증가하여,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546억원이 증액(2024년 4,747억원 → 2025년 5,293억원)되었음.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은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하여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91억원이 증액(2024년 831억원 → 2025년 1,122억원)되었음.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은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트렌드 변화로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을 1만명 추가 확대하는 등 538억원이 증액(2024년 2,441억원 → 2025년 2,979억원)되었음.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업종 유형을 신설하여 1,195억원이 증액(2024년 6,577억원 → 2025년 7,772억원)되었음.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도모 및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원인원이 약 13만명 늘어남에 따라 540억원 증액(2024년 3,234억원 → 2025년 3,774억원)되었음.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2025년도 고용노동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83,147	112,230	29,083	35.0
2	청년일자리창출지원	657,680	777,181	119,501	18.2
3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244,113	297,894	53,781	22.0
4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837,516	885,130	47,614	5.7
5	취약계층취업촉진	6,185	9,199	3,014	48.7
6	고용노동국제협력및통상협상대응	755	2,989	2,234	295.9
7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2,282	3,930	1,648	72.2
8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1,187	7,276	6,089	513.0
[고용보험기금]					
9	조기재취업수당	463,837	525,484	61,647	13.3
10	고용안정장려금	233,836	390,894	157,058	67.2
11	모성보호육아지원	2,496,830	4,022,454	1,525,624	61.1
12	고용보험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5,657	10,873	5,216	92.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3	산재보험급여	7,876,091	8,004,326	128,235	1.6
14	산재병원지원	32,762	79,654	46,892	143.1
15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71,792	481,792	10,000	2.1
16	업종별재해예방	158,255	170,052	11,797	7.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7	장애인고용장려금	323,371	377,377	54,006	16.7
18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630	1,072	442	70.2
[임금채권보장기금]					
19	대지급금지급	474,733	529,346	54,613	11.5
20	체불청산 지원 융자(융자)	40,190	70,352	30,162	75.0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5,500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213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82백만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원금 1조 3,842억원, 예수이자 1,206억원을 상환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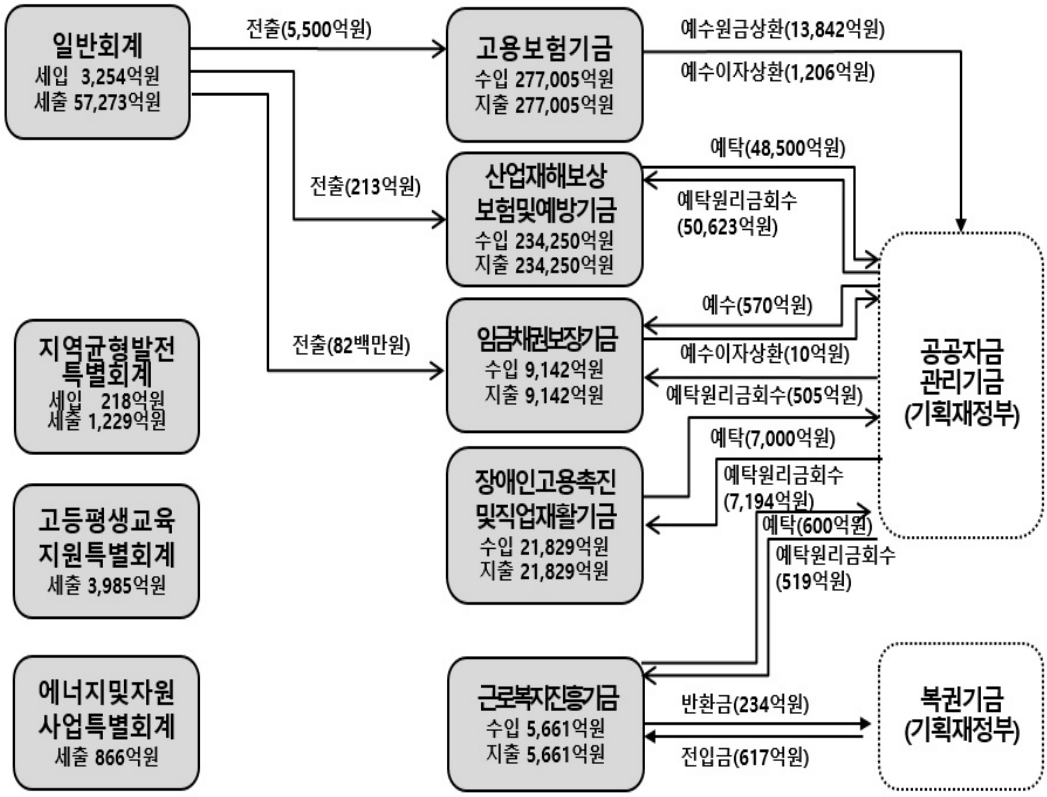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4조 8,500억원을 예탁하면서 예탁원리금 5조 623억원을 회수하며,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570억원을 예수하면서 예수이자 10억원을 상환하고 2024년도에 예탁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리금 505억원도 회수할 예정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7,000억원을 예탁하면서 예탁원리금 7,194억원을 회수하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억원을 예탁하면서 예탁원리금 519억원을 회수하고, 복권기금으로부터 617억원을 전입받고 234억원을 상환 예정임.

[고용노동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정부 최대 현안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투자한 것을 들 수 있음.

초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고, 노동시장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동약자 보호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보다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진로탐색-구직-재직' 단계별 맞춤형 지원(All Care)을 강화하였음.

또한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 안전, 고용관리 예산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화성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하였음.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확대된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으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중장기 기금 건전성에 대한 관리계획을 엄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2024년 하반기 시행 중인 졸업생 특화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장 시킬 필요가 있음.

셋째,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2024년 8월말 집행실적 및 기술사, 기능장 시험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5년도 청년 응시료 지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난임치료휴가급여' 사업의 경우 제도 시행 전 난임치료와 관련한 치료·시술 등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근로복지진흥기금 실업대책사업계정 내 여유자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가. 개 요

(1) 2025년 모성보호육아지원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계획안

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 6개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배우자출산휴가급여・난임치료휴가급여)가 있으며, 전년(2조 4,968억 3,000만원)대비 1조 5,256억 2,400만원(61.1%) 증액된 4조 224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직업능력계정에 4개 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대체인력 지원금・업무분담 지원금)이 있으며, 전년(1,806억 3,800만원)대비 1,559억 9,900만원(67.2%) 증액된 3,366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모성보호육아지원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 계획안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2,261,495	2,496,830	4,022,454
출산전후휴가급여		326,290	347,012	352,497
유산사산휴가급여		1,647	1,858	1,859
육아휴직급여		1,796,995	1,986,864	3,402,970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130,324	149,048	233,521
배우자출산휴가급여		6,240	8,375	24,213
난임치료휴가급여		-	3,673	7,39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직업능력계정)	172,075	180,638	336,637
육아휴직 지원금		115,407	117,610	333,63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26,849	43,261	55,404
대체인력지원금		28,379	14,391	119,352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	2,376	35,235

자료: 고용노동부

(2) 2025년 모성보호육아지원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제도개선 사항

모성보호육아지원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관련하여 정부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 자녀연령을 상향하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과 급여 기간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실시할 계획임.

[2025년도 모성보호육아지원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단위: 백만원)

제도	구분	개선사항	'25년 예산
①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 (부모 각각 3月 이상 육아휴직 또는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 부모)**	3,402,970
	분할횟수	2회 → **3회**	
	급여인상	월 최대 150만원 → **(1-3월250만원, 4-6월200만원, 7월~160만원)**	
	사후지급	사후지급금 25% 공제 → 사후지급 방식 폐지	
	통합신청	출산·육아휴직 각각 신청 **→ 통합 신청(생후 18개월 이내 사용예정)**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8세(초2) → **12세(초6)**	233,521
	기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배**	
	최소 사용기간	3개월 → **1개월**	
	급여지원	주 10시간 단축분 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 → **220만원**	
③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청구기한	10일 → **20일** / 90일 → **120일(사용기한)**	24,213
	분할횟수/ 급여지원	1회 → **3회** / 5일 → **20일**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주지원)	④ 육아휴직 지원금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신설** (남성 육아휴직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초 3인까지 휴직기간 동안 월 40만원 지급)	119,352
	⑤ 대체인력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원 → **월 120만원으로 인상**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에만 지원 **→ 육아휴직까지 확대**	
	⑥ 업무분담 동료근로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에만 지원 → **육아휴직까지 확대**	35,23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먼저, 모성보호육아지원 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임.

① **‘육아휴직급여’** 는 2025년부터 급여지급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출산 초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간별 수급액(휴직 후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이후 3개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은 월 160만원)에 차이를 둘 예정임.

그 결과 1년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수령하는 경우, 이전까지는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2,310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됨.

[2024년 및 2025년 계획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및 수급액 비교]

(단위: 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24년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800
2025년 계획	250	250	250	200	200	200	160	160	160	160	160	160	2,310

주) 1년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를 가정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4년까지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일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나, 2025년부터는 이러한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을 수 있게 됨.

또한 2025년부터는 출산 초기 부모 맞돌봄을 장려하기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6개월을 추가로 부여하여 최대 1년 6개월을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추가로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월 상한 160만원)을 지급 예정임.[4)]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 지급하는 ‘6+6 육아휴직제’의 경우 2025년부터 첫 달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임.[5)]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에서 부모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 상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중 주 10시간 단축분의 월 기준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임.

4)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됨.

5) 육아휴직급여의 첫달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 ‘6+6 육아휴직제’의 상한액 200만원도 함께 상향한 것임.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기간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에서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로 연장할 계획임.

③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5년부터 지급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6)]

다음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대체인력 지원금·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은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④ **‘육아휴직 지원금’**은 2025년부터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신설하여 남성 근로자에게 한번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사업장이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3번째 남성 육아휴직 인원까지는 월 40만원을 지급하게 됨.

⑤ **‘대체인력 지원금’**은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파견 방식으로 대체인력을 충원하여도 지원금을 지급하며, 단가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임.

⑥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까지 확대할 예정임.

6) 2024년 9월 26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5년부터 배우자출산휴가가 종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될 예정임.

나. 검토의견

첫째, 육아휴직이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인상과 육아휴직기간 연장, 사후지급 방식의 폐지가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휴직급여제도는 출산 후 여성이나 남성이 일정 기간 육아에 전념하고 다시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여성의 경력단절 가능성을 낮추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데 기여한다는 평가가 있음.[7)]

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인적자본 감소와 휴직 후 업무 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이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어렵게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8)]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인상하고 추가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할 예정인데, 사후지급 방식은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중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회사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에 지급하는 제도로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2011년 도입되었음.

육아휴직 급여인상과 사후지급 방식의 폐지는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비자발적인 사유(경영상 해고 등)로 원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어 사후지급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에 따른 소득대체율의 상승과 추가 육아휴직기간의 부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수요와 사용 기간 연장의 유인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개선이 출산 및 양육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후지급 방식의 폐지는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대체율 인상 및 비자발적 퇴직자의 급여 상실 부작용 완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복귀 인센티브 부재가 고용유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직장 복귀를 지원할 보육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복귀 후 적응을 돕는 제도 마련 등 고용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7) 곽은혜・김민희(2023)는 육아휴직제도가 출산 후 여성의 직장 복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보았음.

8) 정한나・윤정혜・최숙희(2016)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복귀율은 91.2%, 1년 이상인 경우 67.6%로 육아휴직을 길게 사용 할수록 직장 복귀 확률이 줄어들고, 복귀 후의 직장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둘째, 특정 시점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어 한 제도의 활성화가 다른 제도의 활성화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의 방향을 설정하고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화시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제도와 동시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고,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특정 시점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하므로 한 제도의 활성화가 다른 제도의 활성화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9)]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자녀연령을 보면, 육아휴직 사용자 중 76.2%가 자녀 연령이 0~1세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중 40.8%가 자녀연령이 0~1세일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두 제도의 수요가 큰 시점이 중복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자녀연령]

(단위: %)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9세
육아휴직	47.8	28.4	7.2	3.5	2.4	1.1	2.8	6.9
남성	25.9	40.2	14.4	5.7	5.2	1.7	2.3	4.6
여성	51.2	26.5	6.1	3.1	2.0	1.0	2.8	7.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4.2	26.6	13.5	8.6	6.0	8.0	5.5	17.5
남성	10.0	25.0	15.8	8.3	6.7	10.8	7.5	15.8
여성	15.7	27.2	12.7	8.8	5.7	6.9	4.8	18.1

자료: 「모성보호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

9)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사용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28.1%)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음.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인 경우도 13.2%에 해당하였는데 실제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여 홍보 등을 통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육아휴직은 사용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업무 특성 상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능해서	출퇴근 때마다 다른 직원들(관리자)의 눈치가 보여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육아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서	신청했으나 반려 되어서	기타
28.1	25.5	15.1	13.2	10.2	2.3	5.5

자료: 「모성보호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사용가능 자녀연령 인상・통상임금 100% 지급기간 확대)도 예정되어 있으나, 주로 육아휴직 활성화(기간연장・급여인상・사후지급 방식 폐지・육아휴직까지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에 집중한 측면이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계속 유지하면서 육아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인력공백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과 임금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경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수요에 보다 부합하므로 육아휴직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고용유지 측면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근로자의 계속 취업과 노동시장 이탈방지 측면에서 육아휴직보다 더 유리하다는 연구도 확인되고 있으며,[10] 2022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모성보호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후에는 92.5%가 동일 직장으로 복귀하였으나, 육아휴직의 경우 82.7%만 동일 직장으로 복귀하고 17.3%는 퇴직이나 이직을 결정하였음.[11]

[2022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후 동일직장 복귀 여부]

(단위: %)

구분	동일 직장으로 복귀	퇴직(이직)
육아휴직	82.7	17.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2.5	7.5

자료: 「모성보호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

따라서 각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모성보호육아지원 정책방향을 면밀히 설정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적절히 조화되어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0) 황수경(2008)은 2001년 유급육아휴직 시행 이후 육아휴직자 중 직장 미복귀 및 복귀 후 30일 이내 퇴사자 비율은 2006년 23.2%로 5명 중 1명으로 퇴사자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은 육아휴직제도의 선택 폭을 넓혀 활용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중의 경력단절을 막아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였고, 김영숙・김난주・장윤선・김효진(2014)에 따르면 여성근로자의 계속취업확률에 대한 한계효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31.2%), 가족의 육아지원(22.1%), 육아휴직제도(17.9%) 순으로 나타남.

11)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동일 직장으로 복귀하더라도 동일 직무로 복귀하는 경우는 88.3%이며 11.7%는 다른 직무로 복귀하였음.

셋째, 2025년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급여 지급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영세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4년 9월 26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은 배우자출산휴가와 관련하여 ① 근로자가 '청구' 하는 경우가 아니라 '고지' 하는 경우에 휴가를 주도록 하고, ②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을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며, ③ 1회에 한정하지 않고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 규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규정은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그 분할 사용 횟수 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기회를 더욱 넓게 보장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 휴가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12]의 경우 20일에 대해서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법률 개정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추가적인 급여 지급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13]

또한, 배우자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가 확대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져 인력 운용상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도 있음.[14]

12)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상시 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예: 제조업의 경우 500명 이하)이 이에 해당함.

13) 2024년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40만 1,910원)을 지원하고 사업주는 최초 5일분 통상임금과 40만 1,910과의 차액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기간이 2025년부터 20일로 확대될 경우 고시 개정을 통해 상한액 또한 높아질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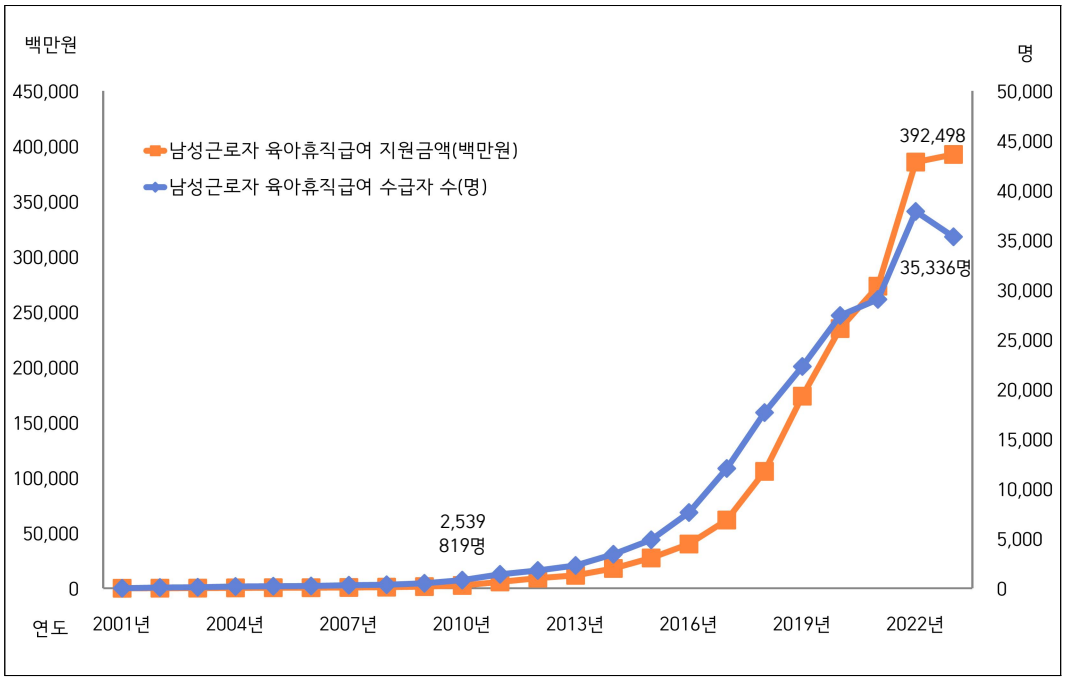
14)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2024.9.)

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연장 및 급여 수급기간 연장으로 인해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운용하고, 영세 사업주에 대한 보완조치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2025년부터는 남성 육아휴직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남성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3번째 육아휴직자까지는 월 30만원이 아닌 4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장 내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10년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총 819명에게 25억 3,9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2023년에는 3만 5,336명에게 3,924억 9,800만원이 지급되어 10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세의 원인을 2022년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15]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분석하였음.[16]

[2001~2023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연도별 지급액 및 수급자 수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5)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 '6+6'으로 개편되었음.

1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늘어', 2023.1.25.

추가로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을 실시할 경우 1~3번째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까지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4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함.[17)]

고용노동부는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사업장에 남성 육아휴직 사용 선례를 만들고 남성 육아휴직을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하였음.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될 경우 부모가 함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분담할 수 있으므로 남성의 육아휴직 선례를 만들고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개선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지속적인 급여인상 등을 통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사업장은 구조적 문제가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2년「모성보호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 때문이며, 그 다음으로는 경영진 및 상급자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임.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주요 원인]

(단위: %)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경력개발의 어려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부정적인 조직문화	경영진 및 상급자의 부정적인 인식	최고경영자(CEO)의 부정적 인식	어려움 없었다
41.1	14.0	22.5	25.6	11.6	31.8

주) 중복응답이 가능
자료:「모성보호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사유 중 ‘업무공백 부담’(25.6%) 다음으로 ‘회사에서 제도를 사용한 선례가 없어서’(24.5%)가 가장 큰 사유이며, 성별 중에서는 남성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중이 높았음.

17) 현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기간 동안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자의 미사용 사유]

(단위: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자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	회사에 선례가 없어서	대상이 아니어서	소득 감소 우려	불필요	기타
전체		25.6	24.5	15.9	11.1	10.7	9.2
성별	남성	29.1	25.0	7.3	19.7	10.9	6.2
	여성	23.5	24.3	20.7	6.1	10.5	10.8
직장 규모	5~29인 이하	23.9	30.5	14.2	9.2	11.5	8.2
	30~99인 이하	27.4	23.5	16.3	8.8	10.7	9.8
	100~299인 이하	33.7	18.4	12.9	11.0	11.0	9.2
	300인 이상	23.1	12.4	22.3	19.5	8.0	11.2

주) 중복응답이 가능
자료: 「모성보호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

이를 종합해보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조직문화 등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이력이 없던 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경우 1~3번째 사용자까지 인센티브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추가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으며, 동 인센티브가 도입된 2021년 이후 매년 10%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증가하고 증가율도 매해 상승추세에 있으므로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증가 등은 2019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고, 2020년에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제도개선 요인 또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2020~20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수급 인원		14,698 (-)	16,689 (13.5)	19,466 (16.6)	23,188 (19.1)
	남성 수급자 수	1,639 (-)	1,632 (△0.4)	2,001 (22.6)	2,415 (20.7)
	여성 수급자 수	13,059 (-)	15,057 (15.3)	17,465 (16.0)	20,773 (18.9)

주) 괄호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남성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내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업무분담금 지원제도는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직장 문화를 형성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인센티브로서 작용할 수 있을지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2025년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휴직인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사업주가 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나 한도는 동일하게 월 최대 20만원으로 설정되었음.

고용노동부는 일본 미쓰이스미토모보험[18]과 광주시 및 경상북도,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등의 관련 사례를 참고하여 상한을 월 최대 20만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함.

[업무분담지원금 유사 사례]

유사 제도명		사유	지급액
육아휴직 동료 응원수당 (미쓰이스미토모보험, '23~)		육아휴직	최대 100만원
육아휴직 업무 대행 수당	광주시 ('21~)	육아휴직	월 20만원
	경상북도 ('23~)	육아휴직	월 30만원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05~)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	월 2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에 대해 사업주는 주로 추가인력 없이 팀 또는 부서의 기존인력으로 해결하고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때문에(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을 하고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분담 지원금의 지급은 육아휴직을 통한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18) 미쓰이스미토모보험사는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해 팀원이 4명 이하일 경우 1인당 100만원(출산전후휴가 30만원), 팀원 5~8명 이하인 경우 1인당 70만원(출산전후휴가 20만원), 팀원이 9명 이상인 경우 1인당 40만원(출산전후휴가 1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육아휴직 기간 중 업무대체 방식]

(단위: %)

추가인력 없이 팀 또는 부서의 기존인력으로 해결	대체인력을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해결	신규인력을 고용하여 해결	타 부서에서 인력보충 (업무지원)	잘 모름
43.0	28.6	18.8	5.2	4.1

자료:「모성보호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이유]

(단위: %)

업무공백 부담 때문에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회사에서 제도를 사용한 사례가 없어서	대상이 아니어서 (임신 중 등)	소득 감소가 우려 되어서	필요하지 않아서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경력중단을 원하지 않아서	신청했으나 반려 되어서
25.6	24.5	15.9	11.1	10.7	4.2	3.5	1.5

자료:「모성보호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은 2025년부터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휴직 상태인 '육아휴직' 보다는 업무공백이 길지 않음.

이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과 '육아휴직' 간 제도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분담 지원금 지급상한을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고용노동부는 업무분담 지원수준을 인력공백 기간에 비례하여 설정하는 경우 기업이 대체인력 채용보다 기존 인력을 통한 업무분담을 선호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채용 여력을 고려할 때 유연한 대체인력 충원은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존 인력의 활용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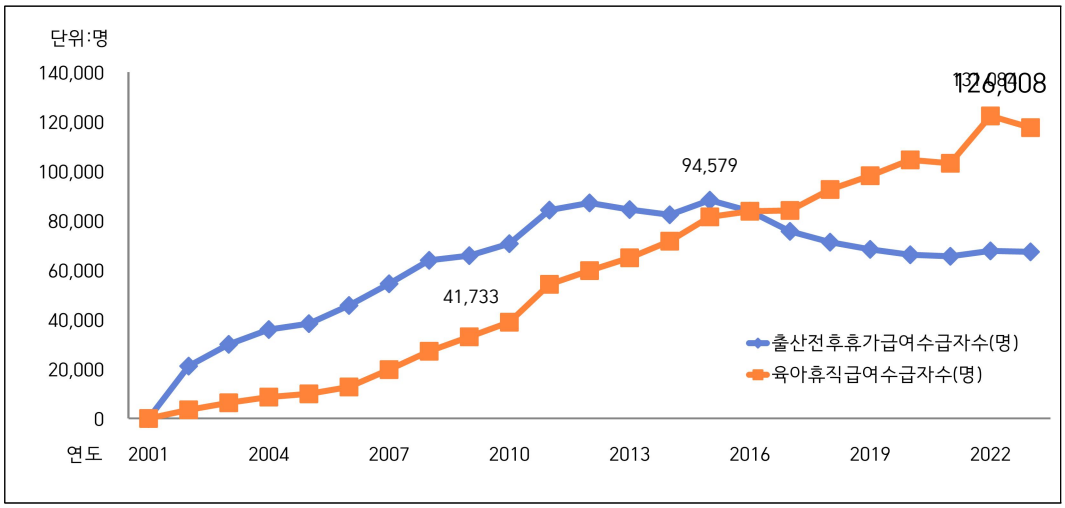
따라서 집행 추이와 제도의 효과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확대된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으로 인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중장기 기금 건전성에 대한 관리계획을 엄밀하게 수립하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 94,579명 지급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가 2015년부터 감소한 사유는 출산률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41,733명에게 지급된 이후 2022년 131,084명에게 지급되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2001~2023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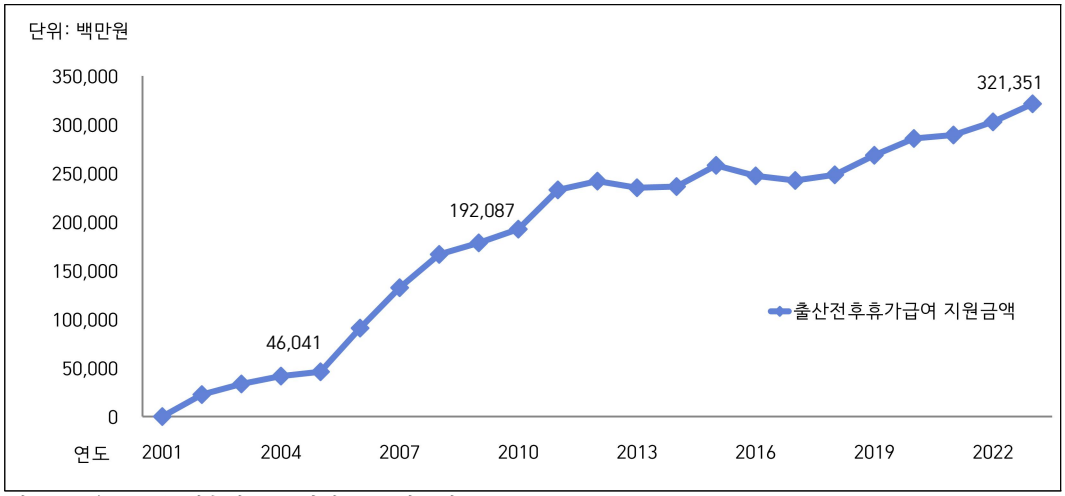


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 수를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지급한 급여액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별로 보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2005년 460억 4,100만원에서 2010년 1,920억 8,700만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합계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지급액 또한 증가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음.

수급자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은 급여 상한액 인상 등 제도개편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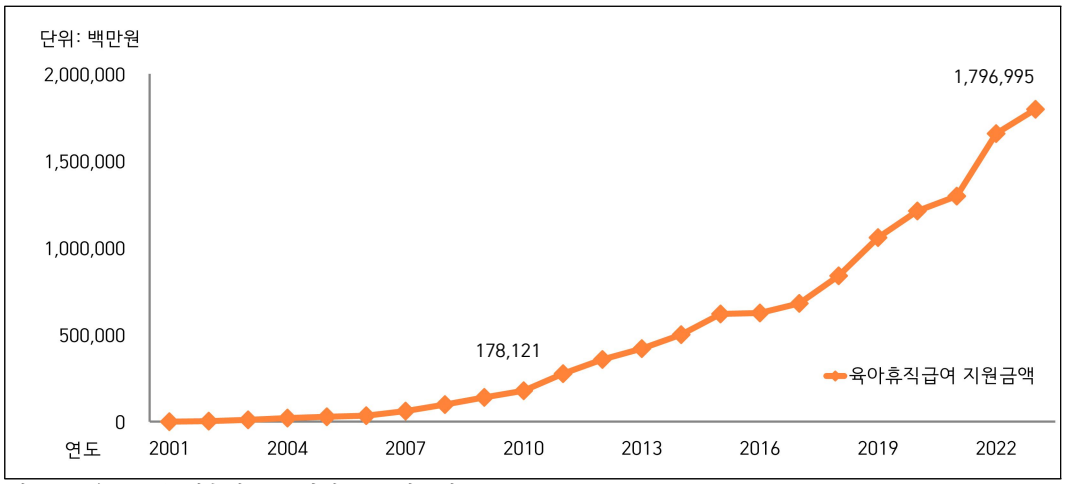
[2001~2023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연도별 지급액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2010년 1,781억 2,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23년 1조 7,969억 9,500만원을 지급하여 같은 기간 10배 이상 지급액이 상승하였음.

[2001~2023 육아휴직급여 연도별 지급액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유는 2010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50만원에서 2023년 150만원으로 상향되고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조정되어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 및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19]

이와 같이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이 비가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2025년에도 모성보호육아지원급여 지급 계획액은 육아휴직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제도개편 영향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해당 급여가 집행되는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은 연례적으로 법정 적립배율[20] 미준수 및 건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2020~2023년도 결산 기준 고용보험기금 (근로자) 계정별 재정수지 현황]

(단위: 백만원, %)

계정(근로자)	구분	2020결산	2021결산	2022결산	2023결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수 입(a)	6,188,433	5,169,062	5,169,550	4,123,762
	사업비(b)	6,570,643	6,632,479	3,918,207	2,710,074
	수지차(a-b)	△382,211	△1,463,417	1,251,344	1,413,688
	연말적립금	2,780,008	1,316,337	2,565,764	3,979,414
	적립금배율	0.4	0.2	0.7	1.5
실업급여	수 입(a)	13,628,678	14,814,055	13,567,529	14,387,917
	사업비(b)	13,885,952	14,413,779	14,132,507	14,330,660
	수지차(a-b)	△257,275	400,277	△564,978	57,258
	연말적립금	3,866,572	4,266,495	3,695,306	3,752,509
	적립금배율	**0.3**	**0.3**	**0.3**	**0.3**

자료 : 고용노동부

출산·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계정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고 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에 비해 급여 지출 규모는 더 크게 증가하였음.

그 결과 실업급여계정지출에서 모성보호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계획 기준 17.6%에서 2025년 25.5%로 상승하였으며, 실업급여계정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음.

---

19) 2010년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총 819명에게 25억 3,9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2023년에는 35,336명에게 3,924억 9,800만원이 지급되어 100배 이상 증가하였음.

20)「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2020~2025년도 실업급여 계정 중 모성보호급여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실업급여 계정지출(A)	모성보호 급여(B)	비율 (B/A)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전입금 (C)	비율 (C/B)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20년	138,860	15,614	11.2	2,942	12,672	1,800	11.5
’21년	144,138	16,850	11.7	2,963	13,887	2,200	13.1
’22년	141,325	20,772	14.7	3,095	17,677	3,000	14.4
’23년	143,307	22,615	15.8	3,342	19,273	3,000	13.3
’24계획	141,712	24,968	17.6	3,609	21,359	4,000	16.0
’25(안)	157,775	40,225	25.5	3,860	36,365	5,500	13.7

주) 실업급여 계정 지출은 근로자계정의 결산(23년까지) 기준, ’24년은 계획값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추계를 강화하고, 전문가 및 노·사와 모성보호에 대한 적정 수준의 분담 규모를 논의하며,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의 확대를 재정당국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세수결손으로 인해 국채발행규모가 확대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모성보호육아지원급여 지급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중장기 건전성에 대한 관리계획을 엄밀하게 수립하고, 근본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2.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신규) 사업: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후 점진적 사업확대 필요

가. 개 요

내내역 사업인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사업은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고 졸업생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역기업의 구인 수요에 맞는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1)]

[2025년도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83,147	112,230	29,083	34.9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	82,801	111,884	29,083	35.1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	20,000	20,000	순증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24) 0 → ('25) 200억원(신규)
- **(보조, 일반형) 8,000만원 × 60개교 = 48억원**
- **(보조, 거점형) 2억원 × 60개교 = 120억원**
- (출연) 전산망 개선 30억원
- (홍보비) 2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대학의 분절된 취업지원 기능 및 인프라를 통합·연계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청년 친화 고용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함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 중임.

21) 일반회계-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303)(청년고용정책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취업상담, 자기소개서 컨설팅이나 모의면접 등 취업에 필요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지역기업과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있음.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졸업생에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동문 선배를 활용한 현직자 멘토링, 발굴 졸업생 대상 밀착 관리 서비스(국민취업지원제도, 기업 알선·매칭 등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2025년 사업대상 학교 수가 8개교에서 120개교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내실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시행 중인 졸업생 특화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2024년 8월 16일부터 8개 대학(건국대·성신여대·단국대·동의대·대구카톨릭대·계명대·배제대·전주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졸업생 3,000명을 대상으로 졸업생 특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시범 사업 개요]

○(개요)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미취업 졸업생 발굴 → 선제적으로 졸업생 특화지원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개편) 졸업생·지역기업 수요 기반 프로그램 기획·운영 ○(특화 서비스) 동문 선배를 활용한 현직자 멘토링 및 발굴된 졸업생은 취업 시까지 밀착관리 (고용복지+센터 연계 →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업 알선·매칭 등 사후관리)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는 120개 대학에 졸업생 특화 사업을 확장시킬 예정이나, 2024년 11~12월 예정인 시범사업 모니터링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경우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 시까지 밀착관리 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각 단계의 어려움이나 문제점,[22] 미취업 졸업생의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가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내실있는 사업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2)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로 인한 장벽이 있어 접근 및 서비스 연계가 어렵다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음.

점진적인 물량 확대 의견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쉬었음’[23]청년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높으며, 교육부와 연계하여 국가장학금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정보 제공 동의까지 함께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임.

‘쉬었음’ 청년에 적극 대응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사업대상 학교 수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2024년: 8개 대학 → 2025년(안): 120개 대학)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보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3) ‘쉬었음’이란 비경제활동 인구 중 육아나 가사를 맡고 있거나 학교에 다니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지만, 그냥 쉬고 있는 상태를 뜻함. 취업이나 이직 등의 사유로 ‘쉬었음’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청년 개인의 고용가능성이나 고용의 질 저하 뿐만 아니라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도 우려됨. 2023년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40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000명 증가하여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급실적을 고려한 계속 지원분 감액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활성화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4)]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657,680	777,181	119,491	18.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607,780	777,181	169,401	27.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기타보전금(지원금): (’24) 5,938억 8,00만원 → (’25) 7,510억 3,100만원 1,571억 5,100만원 증액
- 유형1: 6,959억 2,800만원: ’23년 채용자(8.8만명), ’24년 채용자(10.4만명)에 대한 잔여 지원금(6,285억 8,100만원) + ’25년 채용자(5.5만명) 신규 지원분(673억 4,700만원)
- 유형 2 (551억 300만원): 25년 빈일자리 업종 채용자(4.5만명) 신규 지원분(551억 300만원)

○ 민간위탁사업비: (’24) 12,500백만원 → (’25) 24,750백만원, 12,250백만원 증액
○ 사업출연금: (’24) 200백만원 → (’25) 200백만원, 전년 동일
○ 수용비 등 경상경비: (’24) 1,200백만원 → (’25) 1,200백만원, 전년 동일

자료: 고용노동부

24) 일반회계-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303)(청년고용정책관)

나. 검토의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의 경우 2024년 9월 말까지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할 때 2025년 계속 지원분이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부터 유형1과 유형2로 나뉘며, 기존 사업인 유형1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2025년 신설된 유형2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기업에서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① 기업에게는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② 근로자에게는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여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 및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것임.[25]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개선 개요]

구분	2024년		구분	2025년
유형	단일 유형		Ⅰ유형	Ⅱ유형(신설)
지원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지원대상청년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	모든 청년
지원기간	2년		1년	2년
사업주지원 (청년1인당)	1,200만원 〈2년〉 *720만원(60만원/月) + 2년차 480만원	개편 ⇒	720만원 〈1년 지원〉	720만원 〈1년 지원〉
청년 지원금	-		-	480만원 〈2년 지원〉 *18·24개월차 각 240만원
목표인원	12.5만명		5.5만명	4.5만명
예산	6,078억원		7,772억원(27.9%↑)	

자료: 고용노동부

유형1의 경우 2025년도 예산에 2023년 채용자 8만 8,000명과 2024년 채용자 10만 4,000명에 대한 잔여지원금 6,285억 8,100만원,[26] 2025년도 신규채용자 5만 5,000명에 대한 신규 지원분 673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5) 추계는 유형1과 유형2로 나눠서 하였으나,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므로 유형 2 수요가 높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전용 절차없이 유형 1로 추계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26)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 등을 고려하여 편성함.

그런데 2024년 9월말까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실적을 보면,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지급실적이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음.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18만 861명에게 3,314억 5,900만원이 지급되어 월 평균 2만 96명에게 368억 2,900만원이 지급되었음.

2024년도 연말 특이소요 없이 월 평균 집행실적이 지속될 경우 기타보전금 예산현액 5,923억 8,000만원 중 약 4,419억 4,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어 2024년도 기타보전금 집행률은 약 74.6% 정도일 것으로 보임.

[2022~2024년 9월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집행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인원	사업시작 전						1,139	5,307	16,248	30,885	20,140	25,464
대상인원							1,138	5,301	16,213	30,793	20,088	25,407
지급인원							150	2,134	8,372	21,896	28,463	23,045
지급금액							469	9,258	30,018	51,629	63,440	49,183
구분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인원	24,734	32,199	37,728	35,242	34,752	33,789	34,741	34,012	30,402	33,582	27,074	21,614
대상인원	24,658	32,123	37,607	35,122	34,611	33,675	34,607	33,844	30,247	33,421	26,968	21,484
지급인원	19,020	26,887	35,593	36,203	36,852	35,019	35,561	34,953	35,193	40,921	22,653	25,546
지급금액	36,627	51,137	68,437	68,227	68,580	64,817	65,391	63,309	60,694	67,693	41,436	43,766
구분	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인원	22,143	20,944	22,221	20,071	22,111	18,901	18,572	17,586	12,840	지급 예정		
대상인원	22,034	20,812	22,048	19,889	21,915	18,786	18,419	17,435	12,743			
지급인원	20,259	18,684	23,614	21,675	21,470	19,181	22,284	17,502	16,192			
지급금액	34,478	32,295	41,160	37,806	37,545	33,583	39,846	37,437	37,309			

주) 대상인원은 월 신청 건수 중 지급 대상인 건수(명) (해당월 신청 건수에 한정)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비해 2024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① 2024년 지원 대상인 2023년 신규 채용자의 고용유지율이 예상보다 낮고, ② 2024년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신규 채용인원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① 2023년 채용자의 고용유지율이 계획보다 저조할 경우 2년 근속 시 지급하는 장기고용 인센티브 예산이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으며, ② 2024년 신규채용이 저조하여 10만 4,00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2025년도 계속 지원분이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 지원분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개선방안 마련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은 청년층에 일경험(인턴) 및 취업지원 등을 통해 직무를 경험하고 관련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68억 7,000만원(27.3%) 증액된 2,186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27)]

[2025년도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244,113	297,894	53,781	22.0
청년일경험지원	171,820	218,690	46,870	27.3
기업탐방형	4,650	4,495	△155	△3.3
인턴형(해외)	5,400	10,800	5,400	100.0

[2025년도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청년일경험지원 : (’24) 1,718억 2,000만원 → (’25) 2,186억 9,000만원, +468억 7,000만원(+27.3%)
○ (프로그램 지원 편성내역) 2,083억 9,500만원, 58,000명
- **기업탐방형 44억 9,500만원(31만원×14,500명)**
- 프로젝트형 270억원(270만원×10,000명)
- 인턴형(국내) 1,311억원(570만원×23,000명)
- **인턴형(해외) 108억원(1,080만원×1,000명)**
- ESG지원형 350억원(35개×10억원, 9,500명)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기업탐방형・프로젝트형・인턴형(국내/해외)・ESG 지원형 등으로 나뉘며, 참여청년・기업・프로그램 운영기관에게 참여수당이나 운영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27) 일반회계-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1051-305)(청년고용정책관)

[2025년도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개요]

유형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기업탐방형
기간		1~5개월 내외	2개월 내외	6개월 이내	5일 내외
수행 방식		• 기업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 • 기업은 과업 수행 지도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	•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를 수행 • 기업 또는 운영기관 지정 전문가가 수행 과정 코칭 •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을 심사·평가하여 피드백	• 기업이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 수행	•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체험, CEO 및 현직자와의 대화 등
	사전 교육	직업기초능력 + 직무교육		프로그램 안내	직업기초능력 교육(OT)
지원 내용	청년	참여수당	프로젝트 수행비	운영비 지원 (대기업 50% 매칭) -	-
	기업	멘토수당 등 운영·관리비	프로젝트 기획·코칭·심사 등 운영·관리비		시설 이용 등 운영비
	기타	프로그램운영비(운영기관) 직무교육운영비(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비(운영기관) 직무교육 운영비(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기관)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첫째, 기업탐방형 일경험의 경우 감축을 판정한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 인원을 2024년 대비 500명 감축(△3.3%)하였는데, 사업물량 조정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사업관리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기업탐방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미취업 청년이 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체험이나 CEO 및 현직자와의 대화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참여기업에게는 시설 이용 등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되고 운영기관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지원됨.

[2025년도 기업탐방형 일경험 사업 집행절차]

사업 공고	▸	운영기관 선정	▸	약정체결	▸	프로그램 운영	▸	일경험 참여
고용부		고용노동청·대표지청		(지)청-운영기관		운영기관		청년, 기업

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연장평가결과에 따르면, 기업탐방형 프로그램은 기업·직무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다양한 직무 탐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일경험을 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감축(일정수준, '25년~'27년)을 판정을 받았음.

실제 2024년 9월 21일 기준(모집 시작일 '24.9.1.~'24.10.21.) 모집 중인 기업탐방형 프로그램을 보면, 5일 이내라는 사업설명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이 대부분 1일 또는 2일로 운영되고 있음.

[2024년 9월 21일 기준 기업탐방형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모집 현황(일부)]

탐방기업	운영기관	모집 인원	모집기간	교육기간	교육시간
강○○○(주)	㈜채움에이치알디	15명	24.09.02. ~24.09.04.	24.09.05. ~24.09.06.	1일차: 09:00 ~ 18:00 2일차: 09:00 ~ 16:00
주식회사○○	㈜아이디러닝 아카데미	20명	24.09.08. ~24.10.30.	24.10.31.	1일차: 09:00 ~ 16:00
비○○○○	㈜일로이룸	21명	24.09.13. ~24.09.25.	24.09.25. ~24.09.26.	1일차: 09:30 ~ 17:30 2일차: 09:30 ~ 15:30
선○○○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	15명	24.09.23. ~24.10.06.	24.10.07. ~24.10.08	1일차: 10:00 ~ 17:00 2일차: 09:00 ~ 15:00
상○○○○○ ○○○○	㈜워크잡	30명	24.09.12. ~24.09.25.	24.09.26. ~24.09.27.	1일차: 12:30 ~ 18:00 2일차: 13:00 ~ 18:30

자료: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500명(△3.3%)만이 감축된 14,500명분 44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28)]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탐방형 일경험이 기업·직무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다양한 직무탐색 경험을 제공하여 진로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청년의 참여 정도와 만족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500명분을 감축 편성하였으며, 2026년 이후에는 청년 일경험 수요 및 만족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 규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짧은 프로그램 운영 기간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 없이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로 지원대상 인원만을 축소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는 다소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음.

28) 일경험 운영기관에 프로그램 운영일수에 비례(청년 1인당 14만원)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일수와 관계없이 청년 1인당 3만원을 정액지급함.

따라서 사업물량의 감축뿐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 운영기간 연장이나 프로그램 내용의 개편 등 기업탐방형 일경험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해외인턴형의 경우 2025년에 전년 대비 물량과 예산을 2배로 확대하였으나, 기존 해외취업지원(K-move 스쿨)사업의 존재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일경험 환경을 조성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해외인턴형 일경험은 청년이 해외 기업현장에서 2~4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2024년 현재 500명분의 해외 인턴 예산을 집행 중이나 2025년도 예산안에는 해외 인턴 물량을 2배로 늘려 1,000명분을 편성하였음.

참여청년 1인당 단가는 1,080만원으로 운영기관 지원금, 참여청년 지원금, 체제비 및 사업관리비 등으로 구성됨.

[2025년 인턴형(해외) 단가 산출 근거]

ㅇ **운영기관 지원금 300만원**
- (1차) 현지 일경험 개시인원 1인당 200만원
(2차) 현지 일경험 수료인원 1인당 50만원
(성과금) 개시율 70% 이상 현지 일경험 개시인원 1인당 50만원
ㅇ **참여청년 지원금 250만원**
- 국가별 지원금(최소 50만원~최대 300만원*) 평균값
* 항공료, 보험료, 비자발급비 등 지원금으로 국가별 차이
ㅇ **참여청년 체재비 450만원(3개월×150만원)**
- 현지 일경험 기간인 2~4개월의 평균인 3개월
- 현지 일경험 수행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소요비용 월 150만원
ㅇ **사업관리비 80만원**
- 사업 홍보비용 및 각종 관리비용 등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해외 인턴형 일경험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이전 단계인 청년층이 해외에서 진로탐색 및 직무체험 기회를 갖고, 글로벌 역량이 필요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 일경험을 제공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해외진출 희망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어학, 직무 등)을 제공한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체계적인 사업인 해외취업연수(K-Move 스쿨) 사업이 2000년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음.[29)]

[K-Move 스쿨 및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내 해외 인턴 사업 간 비교]

구분	K-Move스쿨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인턴)
참여 대상	최종 학교(대학교 이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인 자로 연수종료 후 졸업 및 해외취업이 가능한 자	대학·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서 미취업자 4년제 이상 대학의 1/2 이상 마친자
교육 시간	트랙Ⅰ: 최소 300시간 트랙Ⅱ: 최소 800시간	사전 교육 : 25시간 이상
국가 제한	1년 이상의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 국가 (예외 :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	제한 없음 단, 여행경보 3단계 '출국권고' 이상 국가는 불가
근무 형태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예외 : 호주 6개월 이상)	미체결(인턴), 2~4개월
참여자 지원	■ 연수장려금 지급 - 연수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해 연수기관과 지역을 달리하는 청년에게는 월 20만원, 동일지역 청년에게는 월 10만원 지원(최대 160만원)	■ 국가별지원금 지급 - 비자발급, 항공료, 보험료 등 일경험 수행 준비 비용 중 일부를 최대 300만원(미국·영국)~최소 50만원(일본·태국·싱가포르 등) ■ 체재비 지급 - 현지 일경험 개시 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에 소요 비용을 지급, 국가 구분 없이 월 150만원 최대 6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유사사업인 K-move 스쿨 사업의 경우 고용유지율 관리방식 개선 및 고용유지율 제고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고, 실제 취업을 하더라도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사업 참여자가 많지 않은 상황임.[30]

[2019~2023년 K-Move 스쿨 연수 참여 후 취업인원의 고용유지기간별 인원]

(단위: 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취업자 수	2,636	1,241	1,020	1,700	1,707
1개월 이상	2,636	1,241	1,020	1,700	1,707
6개월 이상	1,328	528	752	1,492	1,539
12개월 이상	916	407	509	843	245(진행중)

주) 2020~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실적이 감소하였으며, 2022년부터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실적이 회복세임. 2022년까지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는 연수종료 후 6개월 12개월 시점까지 조사하였으나 2023년부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연수종료 후 18개월까지 확대함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29) 2025년 해외취업지원사업은 연수 2,700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3,900명 지급 등을 목표로 471억 1,600만원이 편성됨.

30)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복귀자 중 34.7%가 취업을 준비 중인 자로 확인하였음.

또한 2024년 실제 인턴 근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역량을 갖춘 자들을 위와 같은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여 취업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유사한 기존 해외취업지원 사업과 차별화하고 양질의 일경험 환경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사업: 후속 상담 연계 강화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사업은 실직·구직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 및 자신감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8억 9,700만원(98.8%)가 증액된 38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31)]

[2025년도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취약계층취업촉진	6,185	9,199	3,014	48.7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1,920	3,817	1,897	98.8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①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 ('24) 19억 2,000만원 → ('25) 38억 1,700만원, 18억 9,700만원 증액
②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운영 : ('24) 27억 9,100만원 → ('25) 39억 800만원, 11억 1,700만원 증액
③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직접운영 : ('24) 14억 4,000만원 → ('25) 14억 4,000만원, 전년동
④ 기타운영비 : ('24) 3,400만원 → ('25요구) 3,400만원, 전년동

자료: 고용노동부

이 사업은 지방관서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수탁기관이 일선 고용센터에서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업평가 결과가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운영됨.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 집행절차]

계획 수립 (사업공고)	⇨	자체계획 수립 및 위탁기관 심사선정	⇨	위탁(약정) 계약 체결	⇨	사업운영 및 지도점검	⇨	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평가
본부		지방관서		지방관서		지방관서 수탁기관		지방관서 수탁기관		본부 (한고원)

자료: 고용노동부

31) 일반회계-취약계층취업촉진(1070-300)(고용서비스정책관)

나. 검토의견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사업은 고용센터에서 상담한 인원을 위험군별로 분류한 후 적절한 후속사업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이 집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심리안정프로그램에 구직자가 참여할 경우, ‘구직자 심리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심리정서적 위험 수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후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서비스에 연계하고 있음.[3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위험수준이 낮은 구직자는 상담을 조기에 종료하고 위험군의 경우 심리정서적 위험 수준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고용노동부는 2024년 6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고용-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해당 방안에 따르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복지센터[33)] 직접 연계 등 지원 강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정신건강 교육 제공 활성화, 고용복지+센터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34)] 의뢰서 직접 발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고용-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지원 강화 내용]

(개선①) 고용복지+센터 구직자 대상 정신건강 지원 강화*

* **❶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접 연계 등 지원 강화**

❷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정신건강 교육, 캠페인 등 제공 활성화

❸ 고용복지+센터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뢰서 직접 발급

(개선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에게 고용지원 제도* 연계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료: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32) 과거에는 구직자 심리진단 검사 없이 상담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연간 700~800명 정도가 후속조치로 연계되었으며, 2024년부터 구직자 심리진단 검사가 도입되었음.

33) 지역사회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프로그램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건소 직영 또는 위탁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34)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에는 16만명분이 457억 4,500만원 편성되었음. (국비 지방비 매칭)

향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에서 발표한 고용-정신건강 서비스간 연계 지원 강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의 위험군과 고위험군 참여자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되어 정신건강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유사사업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한 사업 물량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은 민간 혁신 훈련기관,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 대학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9억 2,800만원(1.0%) 증액된 4,781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35]

[2025년도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내일배움카드(일반)	584,906	580,161	△4,745	△0.8
K-하이테크플러스 사업[36]	-	498,116	498,116	순증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473,188	478,116	4,928	1.0%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24) 4,731억 8,800만원→ ('25) 4,781억 1,600만원, 49억 2,800만원(1.0%) 증액
- (요구) 체계적 인력양성을 위해 유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인력공급 확대 추진
- (산출) 가. 훈련비, 훈련장려금 등 : 4,768억 5,600만원(45,125명×1,056만 7,000원)
*** 부처 간 협업을 통해 1,125명 추가 양성**
나. 운영비: 12억 6,000만원(21개 기관×6,000만원), 전년동

자료: 고용노동부

35) 일반회계 - 내일배움카드(1131-300)(직업능력정책국)

36) 기존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과 평생크레딧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합해 2025년 K-하이테크플러스 사업 신설

나. 검토의견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은 ① 과거 실제 훈련에 참여한 인원이 목표 대비 저조하고, ②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에 유사 직업훈련 사업이 존재하며, ③ 일부 업종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2년까지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2023년부터는 반도체·로봇·3D 프린팅 등 첨단산업까지 교육 범위를 확대하여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

[2025년도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개요]

사업개요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및 반도체·로봇·3D프린팅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 1개월별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만원) 및 특별훈련수당(월 최대 20만원)
훈련기간	훈련과정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6개월
사업 집행절차	훈련과정 심사 계획 공고 (고용부·심평원) ⇨ 훈련과정 선정 (고용부·심평원) ⇨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 (고용센터) ⇨ 훈련 실시 (훈련생 훈련기관) ⇨ 훈련비 등 지급 (고용센터)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은 49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한 1,125명의 추가 인력 양성임.[37]

그런데 사업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었으나, 연례적으로 목표 훈련 인원 달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37) 고용노동부는 교육부, 환경부, 과기부 등이 특화된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면, 이 사업 예산으로 훈련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하였음.

[2021~2023년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훈련인원·훈련비용의 목표 대비 실제]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목표(A)	실제(B)	목표 대비 실제 (B/A)	목표(A)	실제(B)	목표 대비 실제 (B/A)	목표(A)	실제(B)	목표 대비 실제 (B/A)
훈련 인원	24,015	11,727	48.8	28,521	22,394	78.5	36,580	31,922	87.3
훈련 비용	222,462	81,454	36.6	306,822	233,952	76.3	414,260	369,114	89.1

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 8월말 기준으로도 집행률은 71%이지만, 목표인원(44,000명) 대비 실시인원은 (23,835명) 54.2%에 불과하였음.[38]

[2024년도 8월말 기준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집행현황(누계)]

(단위: 백만원, 명, %)

목표	구분	월 별 집 행 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473,188	집행액	29,033	88,341	136,700	174,775	233,480	252,695	282,251	335,883
	집행률	6.1	18.7	28.9	36.9	49.3	53.4	59.6	71.0
44,000	실시인원	2,418	5,380	7,765	10,432	12,755	15,927	20,735	23,835
	실시율	5.5	12.2	17.6	23.7	29.0	36.2	47.1	54.2

자료: 고용노동부

2021~2023년 과거 훈련인원 실적과 2024년 8월까지의 실시 추이를 고려할 때 사업 물량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타 부처의 유사 직업훈련 사업과 인력수급 전망 등 또한 사업물량 조정 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반도체 분야의 경우 이 사업을 통해 2023년 917명, 2024년의 경우 9월까지 718명의 인원이 훈련에 참가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2025년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반도체 인력 추가 양성을 계획하고 있음.[39]

그런데 2023~2027년 소재・부품 부문 중 차세대 반도체 분야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인력의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이 예측되는 상황임.[40]

---

38)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하여 2024년 하반기 훈련 과정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며 예년 대비 더욱 많은 과정이 신청된 만큼, 해당 과정이 개설되는 10월 이후에는 훈련 실시 인원이 보다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며 실시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음.

39)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2023~2027년 소재·부품 부문 중 차세대 반도체 분야 인력수급 전망]

(단위: 만명, 배)

분야	수준	수요	공급			수급차 (공급-수요)	수급배수 (수요/공급)
			소계	정부·민간	대학		
차세대 반도체	전체	1.08	1.54	0.71	0.83	0.46	0.70
	초급	0.42	0.36	0.18	0.18	△0.06	1.17
	중급	0.54	0.79	0.41	0.38	0.25	0.68
	고급	0.12	0.39	0.12	0.27	0.27	0.31

자료: 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3), 「범부처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이 다수 존재하며, 고용노동부도 한국폴리텍대학 학과개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도체 인력 공급 확대를 시도하고 있음.[41] 민간에서도 대학들이 계약학과를 신설하여 반도체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음.[42]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비교]

구분	교육기관	교육범위		
		설계	제조	후공정
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	반도체산업 협회 & 대학	-	· FAB공정 · 소부장(단위공정)	· 패키징(제작)
시스템반도체설계 실무인력양성	대학	· 회로설계	-	-
반도체아카데미 구축	반도체 산업협회	· 디자인서비스	· 소부장 (장비 설계 및 분석)	· 패키징 특성검증 · 테스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타 부처에서도 첨단 기술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사업은 전공자는 물론 비전공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첨단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다는 설명임.

그러나 타 부처에도 미취업 인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하게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 물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40)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은 중급 수준의 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임

4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사업(1135-308)에 2023년 반도체 학과 10개(450명) 신설을 위해 350억원을 집행하고, 2024년 반도체 학과 10개(450명) 신설을 위해 350억을 편성하여 집행 중이며, 2025년 폴리텍 대학 반도체학과 3개(135명) 신설을 위해 105억이 편성되었음. (괄호안은 입학정원)

42) 2024년 기준 카이스트 반도체시스템공학과(100명),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70명), 연세대학교 시스템반도체공학과(50명), 포항공과대학교 반도체공학과(40명), 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40명),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30명), 서강대학교 시스템반도체학과(30명) 등이 있음. (괄호안은 입학정원)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중 미취업자 지원 내용]

소관 부처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2025년 목표
산업통상 자원부	시스템반도체 설계 실무인력양성 사업	3,700	2,960	**(미취업자)** **9개 과정×20명×1,000만원 = 18억원**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사업	4,260	4,710	① 파운드리형 Design 교육 21억 6,000만원 **(미취업자) 2개 과정×85명×1,000만원** ② 장비·부품 및 패키징 교육 11억원 **(미취업자) 2개 과정×50명×500만원**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인력 양성사업	5,013	4,762	① 파운드리형 Design 교육 21억 6,000만원 **(미취업자) 2개 과정×85명×1,000만원** ② 장비·부품 및 패키징 교육 11억원 **(미취업자) 2개 과정×50명×500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과거 훈련실적, 인력수급 전망, 타부처 및 민간의 유사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규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43)]

43)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 부처 직업훈련 사업 물량을 분야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해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사업물량 조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 시 인력양성 규모를 업종별로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7.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 직업훈련 후 취업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은 노인돌봄이나 보육 등의 돌봄분야에 특화된 훈련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9억원(△5.4%) 감액된 331억원이 편성되었음.[44)]

[2025년도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내일배움카드(일반)	584,906	580,161	△4,745	△0.8
돌봄서비스 훈련	35,000	33,100	△1,900	△5.4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훈련비) 138억 200만원 (=90,000명㉠×정부승인훈련비평균㉡×훈련비지원율㉢)
- 의료기술지원: ㉠ 80,000명, ㉡ 85만원(단기과정 25만원), ㉢ 일반 10%(취약계층 90%)
- 아이돌봄: ㉠ 10,000명, ㉡ 47만원(단기과정은 18만원), ㉢ 일반 10%(취약계층 90%)

○ (환급) 7,995백만원
- ’24년 및 ’25년 훈련참여자 중 ’25년 지급시기 도래자에 대한 선부담금 환급액

○ (장려금) 113억 300만원
(=90,000명×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비율(77.3%)×23만 2,000원(116천원×2개월)×실업자 등 비율(70%))

자료: 고용노동부

이 사업은 2024년 처음 신설되었으며, 훈련과정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보미 양성훈련 등이 있음.

44) 일반회계-내일배움카드(1131-300)(직업능력정책국)

나. 검토의견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은 2024년 8월말 기준으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을 받은 후 동일직종에 취업한 취업자 수가 많지 않으므로, 취업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의 경우 참여자가 우선 훈련비의 90%를 선부담하고 훈련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훈련분야와 동일직종으로 취·창업을 하고, 6개월 이상 근속 시 선부담한 훈련비를 전액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훈련과정 심사선정	⇨	훈련생 모집 및 훈련실시	⇨	훈련비 및 장려금 지급	⇨	동일직종 취업 및 6개월 근속	⇨	훈련비 환급
고용부 심평원		훈련기관		고용센터		〈환급기준〉		고용센터

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 돌봄서비스 훈련과정 훈련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훈련실시인원에 비해 동일직종 취업자 수가 다소 저조함.[45)]

[2024년 돌봄서비스 훈련과정 훈련수료 인원 및 동일직종 취업자 수 현황]

(단위: 명)

시점	훈련수료인원				동일직종 취업자수	
	요양보호사		아이돌봄		요양 보호사	아이 돌봄
	전체	실업자	전체	실업자		
1월	157	104	-	-	21	-
2월	365	178	-	-	36	0
3월	5771	4355	184	122	1,508	57
4월	4894	3797	523	392	1,157	180
5월	5646	4446	474	349	1,202	130
6월	5161	3978	359	259	782	60
7월	5654	4534	608	440	329	32
8월	3746	3044	866	567	27	25
계	31,394	24,436	3,014	2,129	5,062	484

주) 2024년 8월말 기준(보건의료직·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만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45) 고용노동부는 2024년 요양보호사 훈련의 경우 2023년(일반직종 훈련 내 요양 보호사 훈련)같은 기간 대비 약 2배(10.8% → 20.7%) 상승되어 취업률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하였음.

실제 6개월 근속 조건 및 다소 낮은 동일직종 취업자 수 규모로 인하여 2024년 7월말 기준 예산현액 350억 중 76억 1,300만원만 집행(집행률 21.8%)되어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상황임.

[2024년 7월말 기준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2024년							2025예산안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35,000	35,000	7,613 [7,613]	35,000	7,613 [7,613]	-	-	33,100

주) 2024년 7월말 기준 집행실적임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아이돌보미의 경우 3,409명이 훈련에 참여하여 3,014명(실업자 2,129명)이 수료하였고, 이 중 484명이 동일 직종에 취업하여 훈련수료자의 취업률은 약 16.1%로 사업실적이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2024년 시작된 신설사업이고 직업훈련 후 취업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였으나, 구직기간(평균 4.5개월)을 고려하더라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해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는 사유는 특정 시간 대 아이돌보미의 수요와 공급간 매칭이 원활하지 못해 대기 가구까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임.

실제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수요는 출퇴근 시간대와 등하교 시간에 집중되는 반면, 동 시간대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규모에는 한계가 있어 수요와 공급간 매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기 가구 수까지 증가하여 2023년에는 13,031개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음.

[2020~2023년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대기 가구 수]

(단위: 가구)

연도	합계	시간제, 영아종일제			
		가형	나형	다형	라형
2020	2,623	539	554	141	1,389
2021	6,842	1,357	1,421	481	3,583
2022	14,807	3,333	3,268	1,112	7,094
2023	13,031	2,881	3,068	996	6,086

주) 2020년 3월부터 대기관리시스템이 운영되었음
자료: 여성가족부

따라서 이 사업을 통해 활동 아이돌보미 수가 증가하여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훈련 참여 후 취업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8.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사업: 응시료 감면 규모의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사업은 수지차보전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1억 4,900만원(△1.2%)이 감액된 1,823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46)]

[2025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184,482	182,333	△2,149	△1.2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24) 1,844억 8,200만원 → (’25) 1,823억 3,300만원(△21억 4,900만원)
① 자격검정사업: (’24) 1,329억 8,900만원 → (’25) 1,375억 600만원(+45억 1,700만원)
② 외국인고용관리사업: (’24) 256억 4,100만원 → (’25) 324억 9,200만원(+68억 5,100만원)
③ HRD확산: (’25) 18억 4,300만원, 전년동
④ 국제교류협력: (’25) 5억 400만원, 전년동
⑤ 경상운영비: (’24) 1,369억 4,500만원 → (’25) 1,399억 7,100만원(+30억 2,600만원)
⑥ 수입: (’24) 1,134억 4,000만원 → (’25) 1,299억 8,300만원(+165억 4,300만원)
□ 자격검정수입 : (’25) 807억 400만원(전년동)
ㅇ 국가기술자격 수수료(375만 9,000명) : (’25) 687억 7,900만원(전년동)
- (산출) ① 기술자격 수수료 : 375만 9,000명 × 24,384원 = 916억 6,300만원
② 청년 응시료 지원 : 78만 7,000명×24,624원×2.5회×50% = △242억 1,0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지차보전기관으로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지출에서 자체수입 예상액을 차감한 만큼을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음.

46) 일반회계-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1134-307)(직업능력정책국)

나. 검토의견

청년 응시료 지원 사업은 2024년 8월말까지 약 124억원만 지원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기술사와 기능장의 경우 응시 수수료에 부담을 갖는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2025년도 청년 응시료 지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만 19~34세)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회까지는 응시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응시료를 감면함에 따라 발생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체수입감소분은 이 사업을 통해 보전됨.

그러므로 만약 응시료 감면규모가 과도하게 산출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비가 필요액 보다 과도하게 지원되는 문제가 있음.

청년 응시료 감면 사업의 2024년도 8월까지의 집행실적을 보면, 111만 1,859건에 대해 약 124억 8,030만 1,000원이 감면되었으며 월 평균으로는 15억 6,000만원이 감면되었음.

[2024년 8월말 기준 청년 응시료 감면 현황]

(단위: 천원, 건)

구분	종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지원금액	기능사	428,781	500,263	496,230	684,133	928,305	281,074	1,001,373	699,257	5,019,416
	(산업)기사	1,352,927	52,293	1,156,070	1,405,710	47,588	3,080,670	23,897	-	7,119,155
	기능장	38,270	41,744	917	-	43,069	791	64,663	235	189,689
	기술사	36,510	-	3,963	44,951	2,415	4,224	59,325	653	152,041
	합계	1,819,979	594,302	1,653,220	2,089,847	1,018,967	3,362,541	1,089,940	699,500	12,328,296
지원횟수	기능사	52,735	33,061	60,226	42,356	75,157	28,079	65,299	86,105	443,018
	(산업)기사	139,475	5,391	84,123	144,203	4,906	275,984	1,773	-	655,855
	기능장	2,225	1,523	27	-	2,504	46	2,233	13	8,571
	기술사	1,077	-	91	1,326	59	97	1,750	15	4,415
	합계	2,014,414	634,277	1,797,596	2,276,406	1,101,534	3,666,650	1,159,245	785,618	13,435,740

자료: 고용노동부

만약 연말 특이소요 없이 월평균 집행실적이 지속될 경우, 2024년 당초 예상했던 242억 1,000만원보다 적은 187억 2,000만원(계획대비 약 77.3%)이 감면될 것으로 보임.

그런데 위와 같은 집행현황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청년응시료 총감면액을 2024년과 동일하게 242억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추계 시 집행단가는 낮추고 감면인원과 감면횟수를 증가시켰음.

[2024년 및 2025년 청년응시료 감면 규모 추계 근거 비교]

○ (2024년 청년응시료 지원 산출) △242억 1,000만원 = **56만명**×**3.6만원**×**2.4회**×50%
○ (2025년 청년응시료 지원 산출) △242억 1,000만원 = **78.7만명**×**24,624원**×**2.5회**×50%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① 지원인원의 경우 2024년 신규사업으로 상반기 수험자 인지 부족 및 지원 시스템의 불안정 등 사유로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실적증가가 예측되어 위와 같이 감면인원을 증가시켰으며, ② 시행단가의 경우 응시료 단가가 높은 실기시험에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응시단가가 낮은 필기시험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단가가 낮은 필기시험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단가를 조정하는 것은 추계의 정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내년에 20만명의 추가 소요를 예상하는 것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어 보임.

또한 국가자격시험 등급 중 상대적으로 상위 등급인 기술사와 기능장의 경우 응시요건에 실무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이미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등급에 대한 지원은 응시 수수료에 부담을 갖는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기술사 응시자격]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료: Q-net

따라서 2024년도 집행현황과 지원대상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청년 응시 수수료 감면액 규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맞춰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금 지급규모도 조정할 필요가 있음.

9.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사업수행방식에 부합하는 비목 설정 필요

가. 개 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1억 1,300만원(23.3%)가 증액된 217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47)]

[2025년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7,676	21,789	4,113	23.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4) 176억 7,600만원 → (’25) 217억 8,900만원(+23.3%)
- (요구) 최근 4년간 평균 지원인원 추이 등 고려하여 ‘24년 목표와 동일하게 설정
- (산출)
  ① 기존지원 176억 7,600만원 = 11,784명* ×150만원
  * 최근 3년간 평균 지원인원(10,836명) 및 24년 목표(11,784명) 등을 감안하여 전년동
  ② ’24년 예산부족분 41억 1,300만원 = 37억 4,900만원* + 3억 6,400만원**
  * ’24.7월말 누적 지원인원 8,678명(금액환산 130억 1,700만원) - ’24.7월 누적집행액 167억 6,600만원간 차액)
  ** ’24.7월 누적 지원인원 8,678명(금액환산 130억 1,700만원)은 ’23.7월 누적 지원인원 7,103명(106억 5,400만원) 대비 22.1% 증가, ’24년 지원인원 및 집행예정액 증가전망 등 고려하여 ’24년 예산 부족분 약 10% 추가 필요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를 지원받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음.

47) 일반회계-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339-301)(통합고용정책국)

이 사업 지원 대상은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임.

[2025년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예산안]

<table>
<tr><td rowspan="3">임금
근로자</td><td rowspan="2">고용보험적용대상</td><td>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td></tr>
<tr><td>①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td></tr>
<tr><td>고용보험적용제외</td><td>②초단시간근로, 4인 이하 농어업 등</td></tr>
<tr><td colspan="2">비임금근로자</td><td>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1인 사업자)</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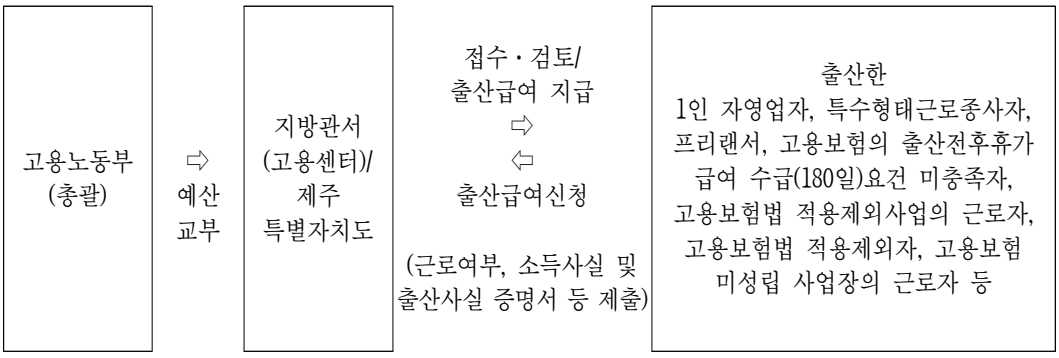
주)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급여가 민간경상보조(320-01)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다른 유사 급여사업과 동일하게 기타보전금(310-04) 비목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방관서(고용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예산을 교부하면, 지방관서에서 출산급여 신청을 접수하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음.

[2025년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집행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가 직접 예산을 교부하고 지급하는 직접 수행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5년 지급 예산 217억 8,900만원 중 213억 3,1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목(320-01)으로 편성되어있음.[48]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민간경상보조(320-01)목은 ①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본적인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②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등에 해당하는 목이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업 중 지방관서를 통해 지급되고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일반회계-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장려금(1345-350)) 등의 경우, 기타보전금(310-04)목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비목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가 기타보전금(310-04)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49]

48) 자치단체보조금 4억 5,800만원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보조사업자로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고용노동청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음.

49) 급여가 민간보조비목으로 편성되어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까지 받는 등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10. 노동약자참여·소통활성화 지원 사업(신규): 기존 고용서비스 인프라 활용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노동약자참여・소통활성화 지원’** 사업은 근로자 이음센터 개소・기능 확대를 통해 노동약자 참여・소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4억 4,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0]

[2025년도 노동약자참여·소통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노동약자지원	-	15,989	15,989	순증
노동약자참여・소통활성화지원	-	4,446	4,446	순증

[노동약자참여·소통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노동약자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 44억 4,600만원
- ○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비: 15억 5,600만원(10개소)
- ○ 이음센터 內 분쟁조정협의회 신설: 2억 3,500만원
  - 조정위원 수당 및 운영비 8,500만원(100회)
  - 화해 성공수당 1억 5,000만원(50회)
- ○ 이음센터 內 특화프로그램 신설 22억 7,700만원
  - 노무제공자 케어 프로그램 3억 500만원(100회)
  - 일반근로자 특화 프로그램 1억 6,000만원(40회×10개소)
  - 참여형 프로그램 1억 1,200만원(40회×7개소)
  - 스텝업 프로그램 5억원(350명)
  - 노동약자 유관단체 협업 교육・상담 프로그램 12억원
- ○ 이음센터 홍보비 8,000만원
- ○ 노동약자 타운홀 미팅 2억 9,800만원(4회)

자료: 고용노동부

이 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며, 근로자이음센터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이해 대변을 위한 공간으로 2024년 현재 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 등 6개 권역에 근로자 이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임.[51]

50) 일반회계 - 노동약자지원(2031-303)(노동개혁정책관)

51) 2024년에는 ‘상생협력확산지원(2031-301)’(85억 4,200만원) 세부사업 내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34억 1,200만원) 내역사업에서 추진 중임.

[2024년 현재 운영 중인 근로자 이음센터]

센터명	주소	운영시간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1로 131 BYC 하이시티 C동 125호	평일 10:00~20:00 토요일 09:00~17:00
평택 근로자 이음센터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102호	평일 10:00~20:00 토요일 09:00~17:00
청주 근로자 이음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중테크노벨리 109호	평일 10:00~20:00 토요일 09:00~17:00
대구 근로자 이음센터	대구 서구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평일 09:00~18:00
부산 근로자 이음센터	부산 사하구 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 8층	평일 09:00~18:00
광주 근로자 이음센터	광주 북구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평일 09:00~18:00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자 이음센터는 주료 상담·지원·소통 등의 업무를 노동약자들을 위해 지원하며, 종사상 지위에 따라 엄격히 참여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근로자 이음센터의 주요 업무]

상 담	지 원	소 통
·노동법률 상담 ·산업단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노동법 교육	상담결과에 따른 고용·노동서비스 연결 ·취업알선,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고용센터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직업트라우마센터로! ·임금체불 등 사건 접수 희망시 노동지청으로!	·소모임 공간 제공 ·정책제안 등의견수렴 ·서울·평택·청주 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이음센터 신설을 통해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확대되고 있는 고용서비스통합네트워크 구축과 연계하여 기존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24년 현재 운영 중인 6개소의 근로자이음센터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상담, 고용서비스 연계, 정책제안과 같은 노동자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24년도 8월말 기준 근로자이음센터 운영 실적]

(단위: 건)

구분 (개소일자)	상담		연결 (고용노동서비스)	소통 (정책제안)
	오프라인 (내방・전화・찾아가는상담)	온라인 (카카오톡・네이버)		
서울 ('24.4.29)	306	903	15	116
평택 ('24.5.7)	469		149	
청주 ('24.5.7)	220		4	
대구 ('24.4.29)	302		78	
부산 ('24.4.29)	208		40	
광주 ('24.5.10)	203		58	
총계	1,708		344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에는 이음센터 4개소 신설을 위해 9억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음센터 입주를 위한 임차료・공사비・관리비 및 상담을 위한 노무법인 용역비 등을 집행할 예정임.

[이음센터 신설 예산안 세부내역]

ㅇ (신설 4개소) 9억 1,200만원 (2억 2,800만원×4개소)
* 임차료・공사비・관리비 등 1억 4,500만원, 용역비(노무법인) 8,3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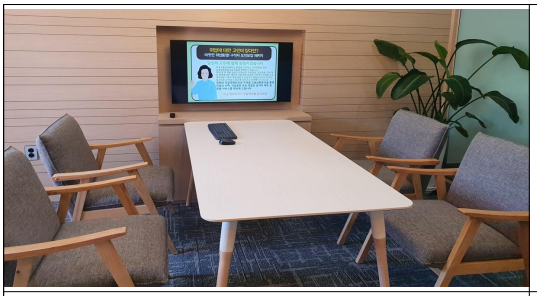
다만, 한번 이음센터가 신설된 이후에는 매년 관리를 위한 운영비 예산이 투입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고용서비스통합네트워크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양적으로 확대되어온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질적 고도화 및 참여기관 연계・협업 강화를 위해 고용서비스통합네트워크 구축을 계속하여 추진 중임.[52)]

52) 2025년 2개소 추가 구축 및 운영을 위해 55억원 편성

고용서비스통합네트워크는 새일센터 및 중장년센터와 같은 기관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함께 입주함과 동시에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여 심층상담을 위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수요자 편의성과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제고하는 시설(북카페, 스터디룸 및 커뮤니티 공간, 스마트워크부스, 휴식공간)들을 도입하고 있음.

[고용서비스통합네트워크 시설 예시]

<table>
<tr><td>  </td><td>  </td></tr>
<tr><td>편안하고 안전한 심층상담실</td><td>자유로운 오픈 상담실</td></tr>
<tr><td>  </td><td>  </td></tr>
<tr><td>북카페</td><td>스터디룸 및 커뮤니티 공간</td></tr>
</table>

자료: 고용노동부

개선된 고용서비스통합네트워크 공간에서 이음센터 프로그램들을 함께 제공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며 점진적으로 이음센터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구직자가 주로 방문하는 고용센터와 재직상태인 노동약자가 주로 방문하는 근로자 이음센터는 정책 대상자가 서로 상이하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과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계정)】

<지 출>

11. 난임치료휴가급여 사업: 제도 시행 전 난임치료와 관련된 치료 및 시술 범위 명확화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난임치료 휴가급여'** 사업은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7억 2,100만원(101.3%)이 증액된 73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53)]

[2025년도 난임치료휴가급여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모성보호육아지원	2,496,830	2,496,830	4,022,454	1,525,624	61.1
난임치료휴가급여	3,673	3,673	7,394	3,721	101.3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난임치료휴가급여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73억 9,400만원 = 45,994명 × 80,383원 × 2일
a. (지원인원: 45,994명) 252,288명 × 79.8% × 77.0% × 56.7% × 52.3%
(신설제도 감안, '24년 예상 지원인원 1년치 반영)
・(252,288명) '21년 불임치료환자수(보건의료빅데이터)
・(79.8%) 취업자 중 자영업(20.2%) 제외한 비율
・(77.0%) 취업자 대비 피보험자수 비율
・(56.7%)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출산전후휴가급여 현황 참고)
・(52.3%) 휴가사용 예상률
(21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상 난임치료대상 8.6% 중 실제활용실적 4.5%를 사용률로 환산)
b. (일 지원단가: 80,383원) '25년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일 지원단가와 동일
c. (지원기간: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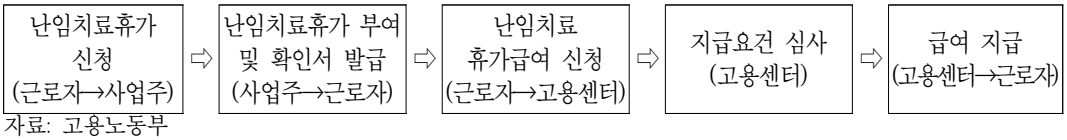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53) 고용보험기금-모성보호육아지원(1345-358)(통합고용정책국)

난임치료 휴가급여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난임치료 휴가를 부여하고 확인서를 발급함.

이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확인서 제출과 함께 난임치료 휴가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난임치료휴가급여 사업 집행 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남녀고용평등법」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치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난임치료 휴가급여 제도 시행 전 난임치료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치료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024년 9월 26일 난임치료휴가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개정 법률은 난임치료 휴가와 관련하여 과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의 난임치료 휴가일수를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급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54]

[난임치료 휴가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4) 난임치료휴가급여제도 예산은 2024년 처음 편성되었으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됨에 따라 2024년 난임치료휴가급여 예산은 2024년 7월말 기준으로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음.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 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55]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2일의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60,760원)를 지원할 예정임.

[난임치료휴가급여 사업 개요]

소속	최초 2일	나머지 4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 최초 2일분(상한 160,760원)의 난임치료휴가급여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 2일분 차액분 지급	무급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2일분(통상임금 100%) 지급	무급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난임치료 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임의 영향을 끼치는 소인 상병[56] 등의 치료를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5월 발표한 2018~2022년 불임 및 난임시술 진료현황 분석을 보면 불임치료와 난임시술은 구분되며, 불임치료 환자 수가 난임시술 환자 수보다 더 많음.

[2018~2022년 불임과 난임시술 진료 현황]

(단위: 명, 억원, 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연평균	'18년 대비 '22년
불임	환자 수	227,922	225,209	226,346	248,356	238,601	1.2	4.7
	진료비	1,245	1,340	1,831	2,230	2,447	18.4	96.5
	1인당 진료비	546,208	595,186	808,883	897,908	1,025,421	17.1	87.7
난임시술	환자 수	121,038	122,597	129,230	143,142	140,458	3.8	16.0
	진료비	1,542	1,738	2,092	2,415	2,591	13.9	68.0
	1인당 진료비	1,273,668	1,417,552	1,618,655	1,686,951	1,844,354	9.7	44.8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5)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기업임.

56) 불임에 영향을 끼치는 소인(素因)이 있는 상병으로, 뇌하수체기능저하, 다낭성 난소증후군, 원발성 난소부전, 음낭정맥류, 습관적 유산자, 정관의 폐쇄 등이 있음.

불임에 영향을 끼치는 소인 상병을 진료 받은 환자 수는, 2022년 기준 다낭성 난소 증후군(63,701명), 뇌하수체기능저하(23,758명), 음낭정맥류(15,045명) 순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난임치료 휴가는 원칙적으로 난임 시술을 위한 휴가 시에 사용할 수 있으나, 제도 시행 전에 난임치료와 관련된 치료 및 시술 등의 범위에 대해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그런데 만약, 원칙적으로 난임시술에만 사용할 수 있다면, 현재 불임치료인원 25만 2,288명을 기준으로 편성된 난임치료 휴가급여 계획안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도 시행 전 난임치료와 관련된 치료와 시술 등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제 사업장에서 난임치료휴가 사용과 급여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지 출>

1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의 목표 달성 노력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9억 6,000만원(5.8%)이 증액된 358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57]

[2025년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고용안정장려금	233,836	233,836	390,894	157,058	67.2
워라밸일자리장려금	33,866	30,866	35,826	1,960	5.8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소정근로시간 단축: 250억 3,700만원 - 장려금: 244억 4,900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244억 4,900만원 (산출) 13,767명×41만 3,000원×4.3개월 - 운영비: 5억 8,800만원 가. 일반수용비(210-01): 5억 2,700만원 나. 특근매식비(210-05): 2,200만원 다. 임차료(210-07): 400만원 라. 국내여비(220-01): 1,600만원 마. 사업추진비(240-01): 1,900만원	**○ 실근로시간 단축: 107억 8,900만원** - 장려금: 107억 8,900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107억 8,900만원 (산출) 7,493명×30만원×4.8개월

자료: 고용노동부

57)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장려금(1345-350)(고용지원정책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내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과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이 있으며,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2024년 처음 도입되었음.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과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공모형’으로 진행된다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실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포함한 사업참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구체적인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여야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비교]

구분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목적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실근로시간은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
지원 대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대상 근로자: 단축근무 개시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무한 자, 최소 1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단, 임신 사유는 최소 2주 이상)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이 감소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 요건	①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②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근로 허용, ③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④ 단축 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 출퇴근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부지급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고용센터 승인 필요) ② (실근로시간 감소)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③ (근태관리)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
지원 내용	장려금, 임금감소액보전금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근로시간 단축 시행 기간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의 30% 지원(1인당 월 30만원 정액)
지원 기간 및 주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실근로시간단축 유형의 경우 2024년 8월말 기준 집행이 저조하고 공모형 방식으로 인해 제도의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2025년 계획된 사업 물량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4년 8월말까지의 지급실적을 보면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의 경우 12,581명에게 223억 4,300만원 지급을 계획하여 6,681명에게 총 139억 4,9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의 경우 7,493명에게 107억 8,900만원 지급을 계획하였지만 274명에게 8,500만원만 지급되었음.

[2024년 1~8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집행 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소정 근로시간 단축	지원 인원	1,573	752	995	583	511	719	967	581	6,681
	지원 금액	2,241	1,169	2,108	1,729	1,385	1,667	2,268	1,382	13,949
실근로 시간단축	지원 인원	-	-	-	-	-	-	33	241	274
	지원 금액	-	-	-	-	-	-	15	70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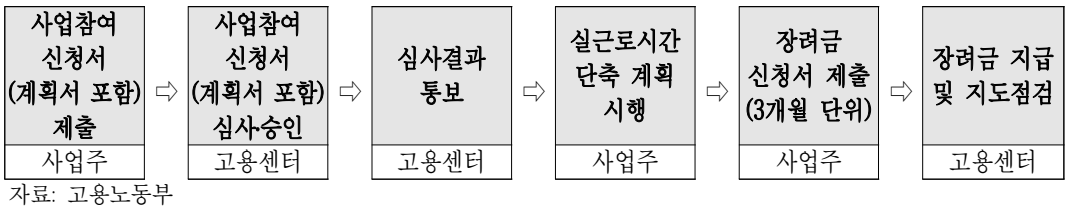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의 경우 2024년 신설된 공모형 사업으로, 계획승인 및 이후 3개월 단위의 지원구조상 사업 참여 후 지원시까지 약 6개월 소요되어 202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근로시간 단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자·기계적인 방식으로 소속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하나 사업장에 위와 같은 인프라가 적절하게 구축되지 못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실제로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장려금을 받기 위해 수립해야 하는 계획에는 근로자 1인당 초과근무시간 등 장시간 근로 현황, 단축 목표 시간 및 시행일, 구체적인 단축 계획(교대제 개편, 연장근로 관리방안, 연차제도 활성화 방안 등), 향후 지속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함.

또한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전자카드·지문인식·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함.

[실근로시간단축 유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집행 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지원이 저조하다면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과 연계하여,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기업의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을 통한 유연근무 활성화 및 자발적인 근무혁신 유도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근무혁신 계획수립·이행 후 심사를 거쳐 우수 등급(SS, S, A등급)을 부여받은 사업장('20년 신설)

□ (지원내용)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투자비용의 50~80% 범위 내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재택·원격근무) 50%, (근무혁신)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재택근무부문 50%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종류		지원 시스템 예시	지원방식
	유연근무	■ **근태관리 시스템**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재택·원격 근무혁신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승인(고용센터) → 인프라 구축(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계획안은 실근로시간단축 유형 사업의 지원대상 규모를 2024년과 동일하게 7,493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2024년 8월말 기준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계획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과 연계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등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 출>

13.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 예방 기술지도 사업: 사업 물량 증가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 예방'** 사업은 화학공장 대형사고 예방 등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5억원(100.0%)이 증액된 10억원이 편성되었음.[58]

[2025년도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 예방기술지도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업종별 재해예방	158,255	158,255	170,052	11,797	7.5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2,620	2,620	2,620	-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 예방기술지도	500	500	1,000	500	100.0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 예방기술지도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26억 2,000만원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및 기술지도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5억 9,400만원(1,600건×37만 1,000원)
-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3억 9,600만원(2,000회×19만 8,000원)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 예방 기술지도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사고 예방 기술지도(4,000개소×25만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5억 1,900만원(검사 3,000건×17만 3,000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1억 1,100만원(268건×41만 3,000원)

자료: 고용노동부

58)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업종별 재해예방(4152-350)(산업안전보건정책관)

나. 검토의견

2025년도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 예방 기술지도 사업은 미래 인력충원을 전제로 2024년 대비 2배 이상의 물량을 편성하였으나, 인력충원 시점 및 기술지도인원의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사업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 예방기술지도 사업은 중·소규모 화학공장 대형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과 기술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며, 최근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사고 이후 발표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대책」, 범부처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 이행관리를 위한 사업임.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 예방 기술지도 사업 집행 절차]

사업 단계	대상사업장 선정	사업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1차 기술지원	2차 기술지원	〈개선완료시〉 종결
세부 내용	•PSM 대상 사업장 외 화학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	•사업내용 및 자체 위험요인 발굴•개선방안 등 교육 실시	•화재•폭발•누출 등의 화학사고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유도	•위험요인 개선 여부 확인 및 추가적 재해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유도	〈미개선시〉 고용노동부 보고•개선추진

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에는 2,000개소를 목표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도 계획안에는 기술지도 물량을 2배로 증가시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4년도 계획 및 2025년도 계획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 백만원)

2024년 계획	2025년도 계획안
500 (2,000개소×250천원)	1,000 (4,000개소×250천원)

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2023년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예방 기술지도 현황 및 실적을 살펴보면, 담당인력 20명이 약 2,000개소 물량을 수행하였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2025년도에 증가한 2,000개의 기술지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20명의 인력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19~2023년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예방 기술지도 현황 및 실적]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백만원)	500	500	500	500	500
담당인력(명)	20	20	20	20	20
기술지도 건수	2,019	1,488	1,803	1,966	2,013
개선완료 건수	2,018	1,485	1,795	1,956	2,011
미개선 건수	1	3	8	10	2

주) 미개선은 고용노동부로 행정조치 요청(고용노동부에서 시정지시 후 종결)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기술지도 인력충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KOSHA-MS) 사업인력 등의 재배치를 통해 기술지도 수행인력(10명)을 확보하고, 수시 인력증원을 통해 추가인력(10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재배치되는 사업인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인원이므로 기술지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고,[59] 수시인력증원의 경우 6월경에 증원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가된 기술지도 사업 물량을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60]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기술지도 건수의 목표달성 뿐만 아니라 내실있는 기술지도를 통해 화재·폭발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담당 인원의 확충·교육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9)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하여, ① 충원 인력들은 채용 시부터 화학분야 학위, 자격증 또는 경력 등 사업수행 전문성이 있는 신규 인력을 확보하고, ② 신규채용자 교육과정(2주)을 실시하며, ③ 사업수행 경험이 풍부한 선배 직원들과 2인 1조로 구성하여 현장점검 OJT등을 통해 내실있는 기술지도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임.

60) 화학안전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자격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화학안전 업무 담당자 직무설명서 지원자격〉

구분	세부자격
학위	화학공학, 공업화학, 정밀화학, 응용화학, 화학시스템, 고분자, 화학소재 및 이에 준하는 학과(과정)
자격	우대 자격증 - 기술사(화공 화공안전, 소방, 가스), 산업안전지도사(화공안전) - 기능장(위험물 기능장, 가스 기능장) - 기사(화공, 정밀화학,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소방, 가스)
경력	관련분야 4년 이상 (화학, 공정, 방폭, PSM, 설계, 검사, 안전 등)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 출>

14.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필요

가. 개 요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은 신체·정신적 장애로 기능저하 또는 상시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근로자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1억 9,000만원(1.0%) 증액된 197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61)]

[2025년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보조공학기기 지원	19,603	19,603	19,793	190	1.0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025년도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 예산안]

('24) 196억 300만원 → ('25) 197억 9,300만원, 1억 9,000만원 증액
- (산출) 보조공학기기지원금: ('24) 165억원 → ('25) 167억 7,200만원(증 2억 7,200만원)
  기기수리 및 발송: ('24) 8,300만원 → ('25) 순감('22.7월 비용지원으로 변경되어 순감)
  보조공학기기개발: ('24) 2억원 → ('25) 2억원(전년 동)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운영비: ('24) 6억 2,700만원 → ('25) 6억 2,800만원(증 100만원)
  맞춤보조공학서비스지원: ('24) 21억 9,300만원 → ('25) 21억 9,300만원(전년 동)

자료: 고용노동부

6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보조공학기기지원(1453-305)(통합고용정책국)

나. 검토의견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은 근거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와 달리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한 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사업 내용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을 통해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 1인당 1,500만원 한도(중증 2천만원) 내에서 신체 및 심리 기능의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개인 이동과 교통 관련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인공적 환경의 안팎활동 지원을 위한 가구와 설비 등의 보조공학기기, 물건 및 장치의 제어·운반·이동 및 조작용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고 있음.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 지원내용]

ㅇ (대상) 장애인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ㅇ (범위) 지원 대상자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 ※ 지원한도액 초과는 신청인이 부담하여 가격 제한 없이 제품 선택 가능 ※ 제품가액의 최대 10% 본인부담금 납부('24년 시행) ㅇ (방법)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조건

자료: 고용노동부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의 법적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로, 동 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비용 또는 기기를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함.[62)]

2005년 10월 6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문이 신설되었으며 개정 법률은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업주에 대한 융자·지원 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우대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적극 도모하고자 하였음.

6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를 우대할 뿐,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우대사항은 없어 근거법의 취지를 다소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자 1인당 한도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나,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는 특별한 우대사항이 없음.

2024년 8월 기준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의 성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이 1,841명(34.1%), 남성장애인이 3,562명(65.9%) 지원되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비중이 다소 낮음.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집행결과에 대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남성장애인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실제 2023년 상반기를 기준 남성장애인 경제활동인구(469,791명)가 여성장애인 경제활동인구(147,410명)의 3배 이상으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규모 자체가 작은 측면이 있으나,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업 근거법에 따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1~2023년 15세~64세 남성 및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단위: 명, %)

연도	성별	15세~64세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2021년	남성	837,685	504,667	469,166	35,501	333,018	60.2	7.0	56.0
	여성	406,858	153,662	140,072	13,589	253,196	37.8	8.8	34.4
2022년 상반기	남성	829,657	508,668	484,456	24,212	320,989	61.3	4.8	58.4
	여성	406,563	145,633	137,273	8,360	260,930	35.8	5.7	33.8
2023년 상반기	남성	802,417	469,791	451,441	18,350	332,626	58.5	3.9	56.3
	여성	388,456	147,410	141,302	6,109	241,045	37.9	4.1	36.4

자료: 2021~2023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보조공학기기 사업에서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우대하여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여성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기회와 여건을 넓힐 필요가 있음.

【임금채권보장기금】

<지 출>

15. 체불청산지원 융자 사업: 사업주 융자 제도 활성화 필요

가. 개 요

‘체불청산지원 융자’ 사업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301억 6,200만원 증액된 703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음.[63)]

[2025년도 체불청산지원 융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체불청산지원 융자	40,190	65,387	70,352	30,162	75.0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025년도 체불청산지원 융자 사업 예산안]

-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24) 401억 9,000만원 → (’25) 703억 5,200만원, 301억 6,200만원 증액

〈사업주 융자〉 (’24) 235억 3,500만원 → (’25) 247억 2,400만원, (11억 8,900만원 증액)

- ① (신청인원) ’23년 지급인원에 최근 6년간의 체불근로자수 증가율 반영, ② (지원단가) ’23년도 1인당 평균 지급액에 최근 5년간의 보수상승률을 반영
- 3,816명*×647만 9,000원**

* ’25년 추정 근로자 수 = ’23년 지급인원(4,210명)×최근6년간 체불근로자수증감율(95.2%)[2]
** ’25년 지원단가 = ’23년 지급단가(607만 6,000원)×최근5년간 보수상승률(103.27%)[2]

〈근로자 융자〉 (’24) 166억 5,500만원 → (’25) 456억 2,800만원, 289억 7,300만원 증액

- ① (신청인원) ’23년 지급인원에 최근 6년간의 체불근로자수 증가율 반영, ② (지원단가) ’23년도 1인당 평균 지급액에 최근 5년간의 보수상승률을 반영
- 5,356명*×851만 9,000원**

* ’25년 추정 근로자 수 = ’23년 지급인원(5,910명)×최근6년간 체불근로자수증감율(95.2%)[2]
** ’25년 지원단가 = ’23년 지급단가(798만 8,000원)×최근5년간 보수상승률(103.27%)[2]

자료: 고용노동부

63) 임금채권보장기금-체불청산지원 융자(3054-304)(노동정책실)

나. 검토의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과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체불청산지원 융자 사업 지출계획안은 2024년 대비 301억 6,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근로자 융자 수요의 증가로 보임.[64)]

2021년 도입된 체불근로자 융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1,000만원의 한도에서 1.5%의 이자율로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할 수 있는 제도임.

[2025년도 체불청산지원 융자 사업 예산안]

구분	체불사업주 융자('12.8월~)	체불근로자 융자('21.6.9. 시행)
지원형태	융자	융자
지원대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자에서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중인 근로자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가동	①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이상 임금체불 ② 체불확인서 필요
이자율	(담보) 2.2%, (신용) 3.7%	1.5%
융자금액	원칙적으로 근로자 체불액만큼 융자 (사업장 1개소당 1억5천만원, 근로자당 1천5백만원 한도)	총 체불금액에서 대지급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체불금액 (1천만원 한도)
융자상환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자료: 고용노동부

64) 추계 시 사업주 융자와 근로자 융자를 분리하여 하고 있으나, 내역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음. 따라서 계획보다 근로자 융자 수요가 높아질 경우 사업주 융자로 추계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체불근로자 융자의 경우 2021년 2,842명에게 197억 2,400만원을 융자한 이후 융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2023년에는 5,910명에게 472억 700만원을 융자하였음.

반면 체불사업주 융자의 경우에는 체불근로자 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융자 사업장 및 융자금액의 변화가 크지 않았음.

[2018~2024년 7월 체불청산지원 융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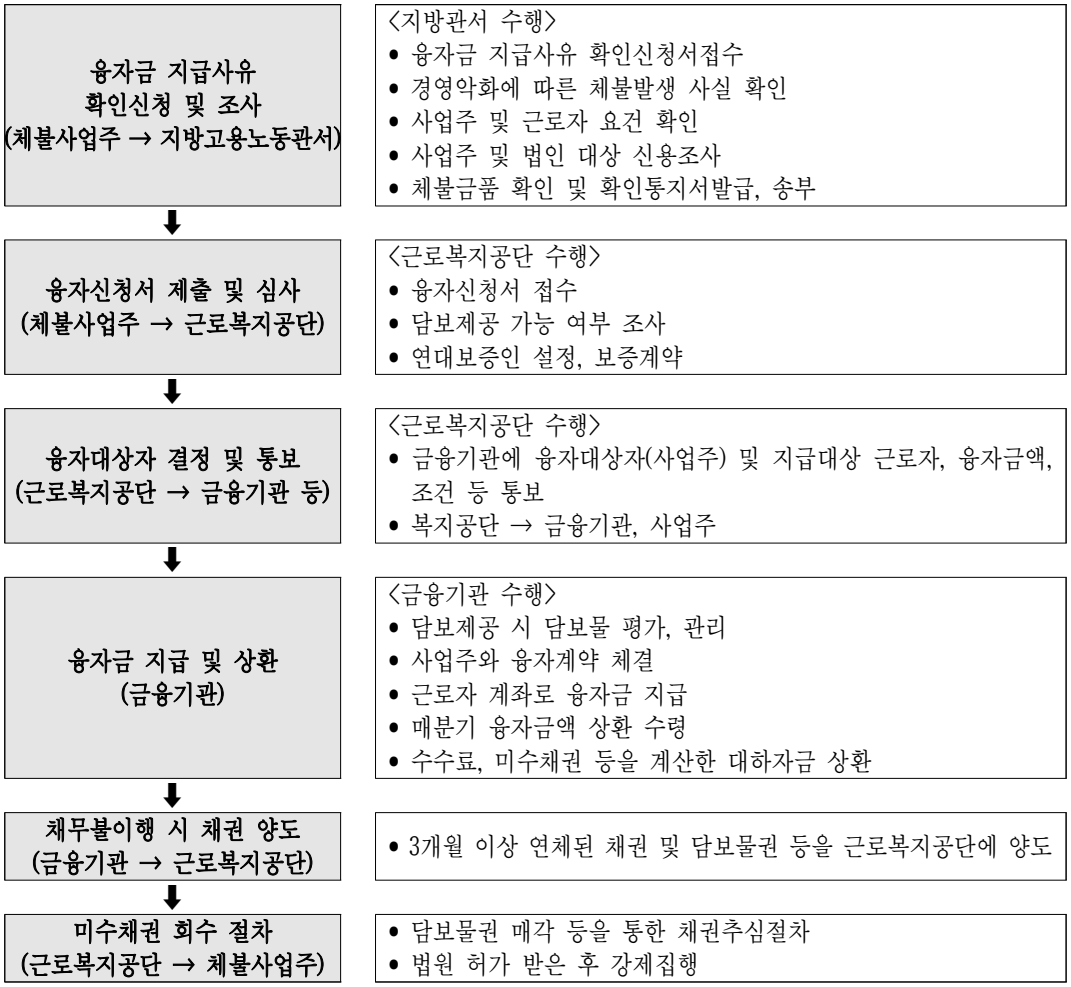
연도	계		체불 사업주 융자			체불 근로자 융자	
	근로자	융자금액	사업장수	근로자	융자금액	근로자	융자금액
2018	3,038	12,777	419	3,038	12,777	-	-
2019	4,488	18,046	564	4,488	18,046	-	-
2020	5,344	19,240	585	5,344	19,240	-	-
2021	7,020	40,979	555	4,178	21,255	2,842	19,724
2022	5,758	33,177	342	2,678	14,259	3,080	18,918
2023	10,120	72,786	482	4,210	25,579	5,910	47,207
2024.7	6,064	43,655	405	3,319	23,104	2,745	20,551

자료: 고용노동부

저리 융자로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업주의 책임 하에서 체불임금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체불근로자가 융자를 받았다고 해서 체불임금이 청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청산 노력을 기울여야함.

[체불사업주 융자 사업 집행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반면 체불사업주 융자는 사업주가 융자를 받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므로 체불임금이 청산되고, 채무불이행 시 채권이나 담보물권을 양도하고 매각 등을 통한 채권추심 절차 및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사업주의 책임 하에 실효적으로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체불 사업주 융자의 경우 2019~2023년 각 연도말까지의 누적 융자 회수율이 ('19)56.8%, ('20)52.5%, ('21)53.0%, ('22)56.9%, ('23)57.4%로 2023년말 기준 누적 대지급금 회수율 30.9% 보다 높아 활성화 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65]

65) 체불임금의 증가로 대지급금 지급액이 커짐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건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융자까지 받아 임금을 지불하려는 사업주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으며, 사업주 융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한도를 1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빙하여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설명함.

향후 사업주의 책임 하에 실효적인 체불임금 청산이 될 수 있도록 사업주 체불융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 2019~2023년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체수입	827,130	1,051,845	844,279	775,395	975,222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비 지출 (A)	506,251	627,195	613,715	584,138	773,028
대지급금 지급 지출 (B)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	958,777	834,032	730,494	695,537	520,487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진흥기금】

<지 출>

16.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 실업대책사업계정 내 여유자금 활용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실업대책사업계정 여유자금 일부를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60억(66.7%)이 증액된 400억원이 편성되었음.[66]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증감	
	당초 (A)	수정	계획안 (B)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24,000	24,000	40,000	16,000	66.7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근로복지진흥기금 실업대책사업계정의 경우, 2018년도 기금존치평가 시 중기가용자산 과다 보유로 공자기금 예탁을 권고함에 따라 2019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을 실시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근로복지진흥기금 실업대책사업계정 내 여유자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융자, 신용보증사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출할 수 있음.[67]

66) 근로복지진흥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9005-841)

근로복지진흥기금은 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퇴직연금운영 지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복지계정’, ② 근로자의 생활자금대출 등의 보증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신용보증사업계정’, ③「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실업대책사업계정’을 두고 있음.

이는「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운영에 관한 자금은 독립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해당 자금은 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임.[68]

---

67)「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4. 제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6. 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공동기금제도 관련 지원
8.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자금 지원
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10.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11.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12.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3. 근로복지사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
14.「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5.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7.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68)「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과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및 제52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6.「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7. 제71조에 따라 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
8.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9.「고용정책 기본법」제35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
10.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1. 그 밖의 수입금
②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그런데 2019~2023년까지 각 계정별 사업비 지출을 보면, 실업대책사업계정의 경우 2020년에는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으로 35억원, 2021년에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으로 513억 8,900만원을 집행한 외에 2019년, 2022년, 2023년은 사업비가 집행된 실적이 없음.

[2019~2023년 근로복지진흥기금 계정별 사업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계정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소복지계정	111,427	231,592	179,053	261,769	202,545
신용보증사업계정	19,597	16,031	19,156	28,343	33,550
실업대책사업계정	-	3,500	51,389	-	-

주) 기금운영비, 기금간 거래(공자기금예탁, 복권기금전출 등), 계정간 거래, 여유자금운용 등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에도 별도의 사업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69] 2025년 계획안에 따르면 별도의 사업 없이 실업대책계정 내 여유자금의 공공자금 예탁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임.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실업대책사업계정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계획액		2025년도 계획	증 감	
		당초(A)	수정		B-A	%
실업대책사업계정	44,564	47,424	47,424	46,241	△1,183	△2.5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2,436	2,436	-	△2,436	순감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예탁	24,000	24,000	24,000	40,000	16,000	66.7
신용보증사업계정전출	-	-	-	-	-	-
여유자금운용	20,564	20,988	20,988	6,241	△14,747	△70.3
통화금융기관예치	6,729	2	2	2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3,835	20,986	20,986	6,239	△14,747	△70.3

자료: 고용노동부

①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 ·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각각 제91조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진흥기금 내에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자금 간에 상호 전용(轉用)하여 사용할 수 있다.

69)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으로 편성된 24억 3,600만원은 2021년 종료된 사업에 대한 증여세(금융노사 등의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급)지급분으로 사업비는 아님.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업대책사업은 경제·사회적 위기상황 신속대응,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예비적 성격의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당 계정을 운용하고 있고, 여유자금 잔여분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을 통해 타 재정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실업대책 계정은 실업대책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된 계정으로 타 기금 예탁을 바람직한 자금운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근로복지진흥기금 실업대책계정의 여유자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70]

70)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에는 실업의 예방 또는 재취업 촉진 등을 위한 사업도 규정하고 있음.

17.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은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6억 7,600만원(8.3%)이 증액된 218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71]

[2025년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퇴직연금사업운영	22,324	22,324	24,001	1,677	7.5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20,179	20,179	21,855	1,676	8.3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025년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 계획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24) 201억 7,900만원 → (’25) 218억 5,500만원(16억 7,600만원) 증액
- (산출) 사업주지원금 (101억 7,550만원, 5억 9,750만원 증), 근로자지원금 (101억 7,550만원, 전년 대비 5억 9,750만원 증), 일반수용비 (9억 9,900만원, 4억 8,100만원 증) 그 외는 전년대비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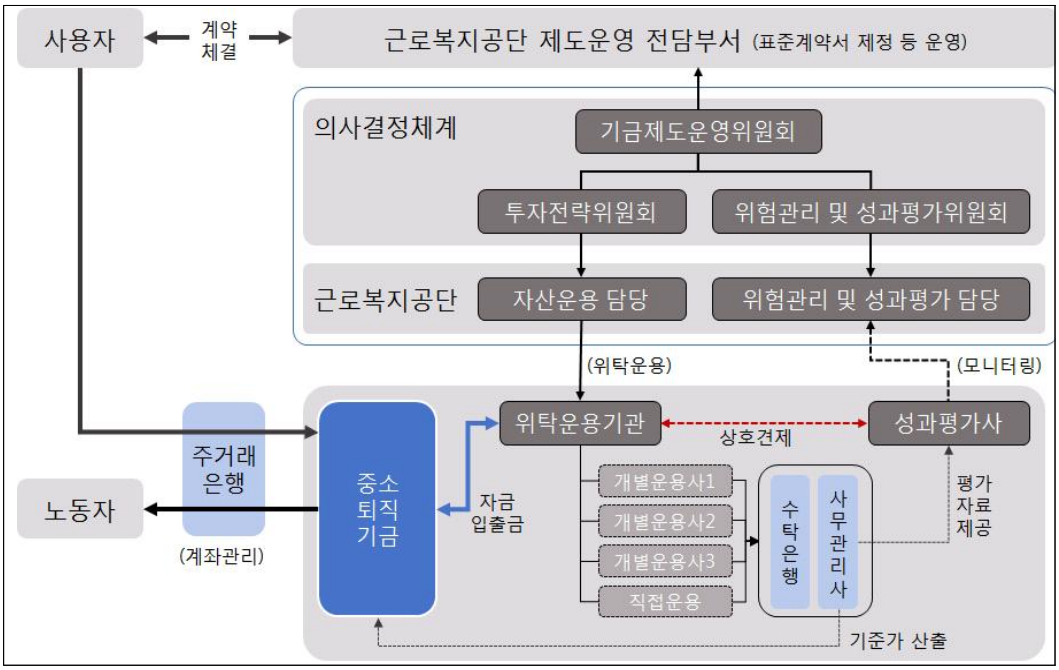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이 사업은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임.[72]

71) 근로복지진흥기금-퇴직연금사업운영(3061-318)(근로기준정책관)

72) 시중에서 “푸른씨앗”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음.

[2025년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 집행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이 사업에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사업주에게는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임금총액의 1/12이상)의 10%를 지원하고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사업주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적립을 지원하고 있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 개요]

ㅇ (내용)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ㅇ (운영)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 위탁) * 적립금을 기금화(pooling) →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및 규모의 경제 추구 ㅇ (제공 서비스) 재정지원*, 가입절차 간소화**, 수수료 면제('23.4월부터 5년간) * (지원요건)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23년까지는 120% 미만) (지원수준) **① (사업주) 매년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의 10% ('22년부터 계속)** **② (근로자) 매년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의 10% ('24년 신설)** (지원한도) 지원금별로 "1인당 최대 26만8천원, 1개社 당 최대 30명, 최대 3년간 지원" ** 표준계약서 체결(사용자↔공단)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사업은 연례적으로 재정지원 목표인원에 비해 실제 지원인원이 미달되고 있는데, 미가입 사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내실있는 사업홍보를 통해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장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2021년 4월 13일 신설되면서 도입되었음.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 동의(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표준계약서 동의 및 가입자 등록이 이루어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 개요]

1단계: 제도도입 동의	2단계: 가입신청	3단계: 가입심사 및 통지
사용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음	사업주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공단은 가입대상 여부 확인 후 사업주에게 가입여부를 통지

자료: 고용노동부

이후 사업장에서 정해진 납입 기한에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면, 공단에서는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함.

그런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의 과거 재정지원 실적을 보면, 재정지원 목표인원 및 재정지원 목표 금액에 비해 지급 실적이 연례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음.[73)]

[2022~2023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금 지급 실적]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인원			예산		
	재정지원 목표 근로자 수(A)	실제 재정지원 근로자 수(B)	목표 대비 실적 (B/A)	계획(A)	집행(B)	계획 대비 집행 (B/A)
2022년	54,420	1,113	2.0	3,115	38	1.2
2023년	87,072	21,844	25.1	9,240	2,303	25.0

자료 : 고용노동부

73) 2022년의 경우 사업 시행 첫해로, 제도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에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운영기간이 4개월 정도에 불과하였음을 고려할 필요는 있음.

2024년 8월말 기준으로 재정지원금 집행률은 37.8%에 불과하며, 분기마다 지원금이 집행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2024년 집행률도 목표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이 사업은 분기마다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음.)

[2024년 8월말 기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재정지원금		지원 인원		비고
	예산액	집행현황	연간 목표	지원 현황	
사업주 지원	9,578	4,349	87,358	40,560	* 24.8월 현재 가입자 90,740명 사업장 19,506개소
근로자 지원	9,578	2,887	87,358	33,309	
합계 (집행률)	19,156	7,236 (37.8%)	-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2~2023년 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도입 단계에서 가입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으나, 가입유인 부족 등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낮아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물론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제도 특성상 가입유인이 제한적일 수는 있으나,[74] 이 사업의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했던 사유는 미가입 사업장의 낮은 인지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2023년 11월 실시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가입 이유에 대해 '제도에 대해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3%로 가장 높았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미가입 사유]

(단위 : %)

제도에 대해 잘 모름	지켜본 후 가입 검토	다른 대출 상품이 묶여 있어서	제도 설정 등이 복잡할 것 같아서	사업주 재정 지원금이 적어서	원리금 보장형이 아니라서	기타
58.3	15.5	14.3	26.2	19.0	16.7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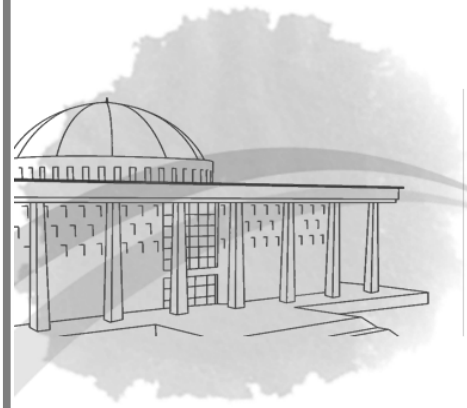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따라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75]

74) 2023년 4월부터 5년간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2024년부터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적립하는 인센티브 등을 시행하고 있음.

75) 2023년 찾아가는 설명회, TV, 라디오, KTX 옥외광고 등을 위해 약 21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기존 홍보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수입은 27조 6,409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595억원(9.3%) 증가함. 예산은 1조 6,921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원(△1.3%) 감소한 반면, 기금은 25조 9,488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825억원(10.1%) 증가함.[1)]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7,152	16,921	△231	△1.3
기 금	235,663	259,488	23,825	10.1
총수입	252,814	276,409	23,595	9.3

문의 : 강세욱 예산결산조사관 sewook@assembly.go.kr (02-6788-567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은 58조 2,1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7,278억원(△4.5%) 감소함. 예산은 22조 7,610억원으로 전년 대비 8,974억원(△3.8%) 감소하고, 기금은 35조 4,5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304억원(△4.9%) 감소함.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236,583	227,610	△8,974	△3.8
기 금	372,856	354,552	△18,304	△4.9
총지출	609,439	582,161	△27,278	△4.5

나. 예산안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4조 7,835억원으로 전년 대비 5,090억원(△3.3%) 감소함.

[2025년도 국토교통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899	2,010	111	5.8
교통시설특별회계	139,403	137,932	△1,471	△1.1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8	8	0	0.8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5,811	2,049	△3,762	△64.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804	5,837	33	0.6
합 계	152,925	147,835	△5,090	△3.3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5개 회계(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9조 5,0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9억원(△0.5%) 감소함.

[2025년도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21,312	234,574	13,262	6.0
교통시설특별회계	148,134	137,932	△10,202	△6.9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144	137	△8	△5.3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5,840	2,036	△3,804	△65.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1,617	20,380	△1,237	△5.7
합 계	397,047	395,058	△1,989	△0.5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2개 기금(주택도시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04조 78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873억원(△1.5%) 감소함.

[2025년도 국토교통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주택도시기금	1,054,003	1,054,003	1,038,192	△15,811	△1.5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2,654	2,654	2,592	△62	△2.3
합 계	1,056,657	1,056,657	1,040,784	△15,873	△1.5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국토교통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52개(8,961억 2,9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일반회계 내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접목한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보육 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운영’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관련 국제 협력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주택도시기금 내 ‘주택정비사업(융자)’은 도심 내에 주택공급 확대에 효과적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조합에 초기사업비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4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2025년도 국토교통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건설현장다목적고소작업을위한로봇플랫폼및XR기반인간-로봇협업기술개발(R&D)	1,500
2	건축물화재확산방지및피난성능향상기술개발(R&D)	1,500
3	스마트+빌딩핵심기술개발(R&D)	2,100
4	고층형ZEB3등급공동주택핵심기술개발(R&D)	2,100
5	리튬기반배터리제조소및저장취급시설안전을위한기술개발(R&D)	400
6	공동주택의고층·단지화및생산성제고를위한OSC고도화기술개발(R&D)	2,400
7	국토정보고도화를위한입체격자체계적용및활용기술개발(R&D)	2,400
8	사용후배터리안전관리및재제조유통순환기술개발사업(R&D)	2,400
9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	2,700
10	수소전기차내압용기검사소구축사업	3,476
11	김제특장차검사지원센터구축	2,980
12	제로에너지건축신산업육성	3,546
13	이륜자동차이동검사소운영	530
14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수립	400
15	국토교통창업및기업지원	750
[교통시설특별회계]		
16	도로안전및환경개선(비총액)	413,604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17	새만금신항인입철도	5,400
18	평창진부-강릉연곡국도건설	500
19	무주설천소천-무풍철목국도건설	500
20	대구읍내-칠곡동명국도건설	500
21	남해삼동-창선국도건설	500
22	공주신풍-유구국도건설	500
23	경주양남-문무대왕국도건설	500
24	용인처인이동-남동국도건설	500
25	대장-홍대광역철도	160
26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운영	250
27	초고속하이퍼튜브철도인프라핵심기술개발(R&D)	3,680
28	수소전기동차실증사업(R&D)	1,000
29	데이터기반철도시스템안전평가・예측기술개발(R&D)	1,500
30	내연기관차-전기차전환안전성검증기술개발및튜닝승인실증(R&D)	1,500
31	AI-XR기반비행장원격관제운용기술개발(R&D)	1,500
32	도심지드론운용위험도예측및안전성평가기술개발(R&D)	1,500
33	전기차배터리인증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233
34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36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5	혼잡도로건설	105,615
36	국가지원지방도건설	265,061
37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지원	10,882
38	대구도시철도영천연장	1,960
39	아산신창일반산단진입도로	510
40	아산선장그린산단진입도로	300
41	포항그린산단진입도로	471
42	강진제2일반산단진입도로	500
43	천안에코밸리산단진입도로	413
44	천안신사산단진입도로	484
45	청양일반산단진입도로	490
46	청주에어로폴리스3산단진입도로	800
47	진천스마트복합산단진입도로	1,005
48	양촌용정산단진입도로	1,010
49	논산국방산단진입도로	449
50	케이밸리산단진입도로	310
[주택도시기금]		
51	신도시리츠(출자)	2,500
52	주택정비사업(융자)	40,000
총지출		896,129

주) 도로안전및환경개선(비총액)사업은 기존 총액사업 중 일부가 2025년부터 비총액사업으로 분리되었고, 혼잡도로건설 및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사업은 기존에는 개별 도로 단위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25년부터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됨

한편,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계양-강화고속도로건설’,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등 총 148개임.[3)]

[2025년도 국토교통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주거급여지원	2,742,436	3,036,823	294,387	10.7
2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243,794	288,382	44,588	18.3
3	철도기본계획수립	5,144	10,005	4,861	94.5
4	건설분야성능기반표준실험절차개발(R&D)	1,797	2,600	803	44.7
5	국토교통기술사업화를위한이어달리기사업(R&D)	3,339	6,707	3,368	100.9
6	국토교통데이터산업생태계플랫폼구축(R&D)	3,840	6,038	2,198	57.2
7	성과확산형국토교통국제협력연구개발사업(R&D)	1,600	3,501	1,901	118.8
8	기반시설첨단관리(Totalcare)기술개발(R&D)	3,000	6,040	3,040	101.3
9	신소재기반부유식구조체기술개발(R&D)	2,260	2,943	683	30.2
10	공동구활성화를위한스마트운영및성능개선기술개발(R&D)	2,794	6,000	3,206	114.7
11	시설물안전기반플랜트통합위험관리패키지기술개발(R&D)	1,689	2,496	807	47.8
12	비전통오일생산플랜트건설핵심기술개발사업(R&D)	16,688	30,993	14,305	85.7
13	공간지식추론엔진기술개발(R&D)	1,037	2,128	1,091	105.2
14	광역단위노후건축물디지털안전워치기술개발(R&D)	1,220	3,353	2,133	174.8
15	디지털기반건축시공및안전감리기술개발(R&D)	4,000	5,374	1,374	34.4
16	빅데이터기반인공지능도시계획기술개발(R&D)	2,679	3,626	947	35.3
17	국토교통기술기반주거생활환경문제해결사업(R&D)	949	3,200	2,251	237.2
18	건물에너지소비데이터통합관리기반구축(R&D)	921	3,343	2,422	263.0
19	물류시설화재안전성및위험도관리기술개발(R&D)	3,000	4,653	1,653	55.1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20	전기자동차안전성평가및통합안전기술개발(R&D)	3,600	9,735	6,135	170.4
21	자동차전용도로주행이가능한저상좌석버스표준모델개발(R&D)	1,986	8,850	6,864	345.6
22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개발사업(R&D)	500	2,500	2,000	400.0
23	스마트시티인프라AIoT핵심기술개발(R&D)	2,921	6,038	3,117	106.7
24	SOC안전정보시스템(정보화)	3,247	4,460	1,213	37.4
25	건설산업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3,123	4,792	1,669	53.4
26	주택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559	16,105	10,546	189.7
27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6,519	8,726	2,207	33.9
28	교통사고예방지원	3,000	4,100	1,100	36.7
29	국토발전전시관운영	1,686	2,935	1,249	74.1
30	국토정책종합연구	876	2,438	1,562	178.3
31	국토위성센터및국토관측위성운영	5,790	7,584	1,794	31.0
32	협력거점형국토교통국제협력연구개발사업(R&D)	2,865	4,950	2,085	72.8
[교통시설특별회계]					
33	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	95,240	204,281	109,041	114.5
34	동광주-광산고속도로건설	14,974	36,663	21,689	144.8
35	계양-강화고속도로건설	100	148,031	147,931	147,931.0
36	남양주-춘천1국도건설	500	6,372	5,872	1,174.4
37	남양주-춘천2국도건설	500	4,481	3,981	796.2
38	남양주-춘천3국도건설	500	9,721	9,221	1,844.2
39	남양주-춘천4국도건설	500	2,903	2,403	480.6
40	경주외동녹동-문산국도건설	1,000	22,051	21,051	2,105.1
41	안동풍산-서후국도건설	1,000	48,642	47,642	4,764.2
42	여주점동-이천장호원2국도건설	1,000	7,257	6,257	625.7
43	인제상남-기린국도건설	1,000	3,052	2,052	205.2
44	무안현경-해제국도건설	1,000	5,965	4,965	496.5
45	남해서면-여수신덕국도건설	40,040	69,395	29,355	73.3
46	신안비금-암태국도건설	100	7,777	7,677	7,677.0
47	고창해리-부안변산국도건설	100	20,000	19,900	19,900.0
48	춘천-화천	71,212	84,623	13,411	18.8
49	팔당대교-와부국도건설	14,060	24,005	9,945	70.7
50	김천-구미국도건설	4,012	5,911	1,899	47.3
51	군위-의성국도건설	3,545	2,960	9,415	265.6
52	성남-장호원6-1국도건설	11,658	15,797	4,139	35.5
53	함평-해보국도건설	8,604	15,326	6,722	78.1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54	화순동면-순천주암국도건설	8,931	14,257	5,326	59.6
55	신림-판부국도건설	18,435	29,938	11,503	62.4
56	연곡-현북국도건설	9,421	20,427	11,006	116.8
57	예천-지보국도건설	6,192	10,167	3,975	64.2
58	오지-동송국도건설	5,304	9,137	3,833	72.3
59	임실-장수국도건설	21,619	31,827	10,208	47.2
60	입장-진천국도건설	7,217	14,310	7,093	98.3
61	천안시계-연기소정국도건설	4,006	7,662	3,656	91.3
62	충청내륙4국도건설	13,645	24,262	10,617	77.8
63	포천이동-철원서면국도건설	2,118	4,577	2,459	116.1
64	화산-운주국도건설	6,820	9,151	2,331	34.2
65	화순동면-송광봉산국도건설	3,041	10,266	7,225	237.6
66	정선임계-동해신흥국도건설	4,131	12,968	8,837	213.9
67	천안동면-진천국도건설	29,840	85,689	55,849	187.2
68	울산농소-경주외동국도건설	19,269	39,030	19,761	102.6
69	용진-우아국대도건설	36,986	50,068	13,082	35.4
70	연산-두마국대도건설	27,053	35,713	8,660	32.0
71	도로병목지점개선	260,775	294,035	33,260	12.8
72	민자도로운영지원	173,328	191,597	18,269	10.5
73	민자도로건설지원	843,128	979,919	136,791	16.2
74	교통사고유발도로노면위험요소저감기술 개발(R&D)	2,952	4,865	1,913	64.8
75	평택-오송2복선화	141,462	250,000	108,538	76.7
76	월곶-판교복선전철	68,750	171,983	103,233	150.2
77	인덕원-동탄복선전철	139,937	212,064	72,127	51.5
78	여주-원주복선전철	42,263	91,811	49,548	117.2
79	수서-광주복선전철	4,000	27,700	23,700	592.5
80	문경-김천철도	3,000	6,000	3,000	100.0
81	용산-상봉광역급행철도	234,970	296,800	61,830	26.3
82	신안산선복선전철	208,093	265,000	56,907	27.3
83	철도차량및용품형식승인기술기준고도화 개발(R&D)	3,577	5,720	2,143	59.9
84	대심도장대터널(GTX등)의재난대응복합 훈련장개발(R&D)	2,776	6,932	4,156	149.7
85	철도종사자의인적오류분석・평가・예방 기술개발(R&D)	2,766	6,920	4,154	150.2
86	부산사상-하단도시철도건설	18,800	63,300	44,500	236.7
87	양산도시철도건설	41,462	53,600	12,138	29.3
88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	23,000	58,686	35,686	155.2
89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58,100	112,616	54,516	93.8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90	동북선경전철건설	25,600	45,700	20,100	78.5
91	광역버스공공성강화지원	99,765	163,774	64,009	64.2
92	제주제2공항건설	17,286	23,557	6,271	36.3
93	새만금신공항건설	32,651	63,186	30,535	93.5
94	가덕도신공항건설	536,321	964,025	427,704	79.7
95	드론종합인프라구축및운영	7,464	10,185	2,721	36.5
96	도심항공교통산업활성화지원	20,171	26,350	6,179	30.6
97	민수용GTF엔진정비기술및인증체계개발(R&D)	1,440	5,296	3,856	267.8
98	AI진단기반항공기로봇검사및정비기술개발(R&D)	960	5,231	4,271	444.9
99	소형항공기용수소연료전지기반추진시스템인증체계개발(R&D)	593	5,920	5,327	898.3
100	다목적복수저고도드론교통관리시스템및드론식별기술개발(R&D)	2,000	5,835	3,835	191.8
101	서청주-증평고속도로건설	2,000	32,144	30,144	1,507.2
102	성주선남-대구다사국도건설	1,000	44,621	43,621	4,362.1
103	서산대산독곶-대로국도건설	500	2,409	1,909	381.8
104	울주범서-경주외동국도건설	500	3,217	2,717	543.4
105	거제남부-일운국도건설	500	4,056	3,556	711.2
106	김천양천-대항국대도건설	2,000	12,738	10,738	536.9
107	내구연한도래노후디젤기관차대체를위한친환경수소전기기관차기술개발(R&D)	3,000	4,585	1,585	52.8
108	울산도시철도(트램)1호선건설	2,742	6,000	3,258	118.8
109	대중교통비환급지원	73,469	237,460	163,991	223.2
110	대구경북신공항건설	10,000	66,653	56,653	566.5
111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설립・운영	9,708	24,330	14,622	150.6
112	한국형도심항공교통(K-UAM)핵심기술개발사업(R&D)	11,999	21,155	9,156	76.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13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정보화)	2,231	3,398	1,167	52.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4	수소도시지원(자율)	29,700	44,430	14,730	49.6
115	다사-왜관광역도로	10,000	15,000	5,000	50.0
116	서대전IC-두계3광역도로	3,030	5,879	2,849	94.0
117	조야-동명광역도로	20,036	30,000	9,964	49.7
118	검단-대곡광역도로	3,000	4,850	1,850	61.7
119	도시재생사업	429,540	472,946	43,406	10.1
120	옥산국사산단진입도로	750	2,230	1,480	197.3
121	전주탄소산단진입도로	4,700	10,040	5,340	113.6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122	창녕영남산단진입도로	2,993	10,850	7,857	262.5
123	동두천국가산단진입도로	10,510	17,688	7,178	68.3
124	평택브레인시티산단진입도로	1,310	6,024	4,714	359.8
125	음성맹동인곡산단진입도로	1,500	8,305	6,805	453.7
126	예산제2산단진입도로	1,300	3,553	2,253	173.3
127	울산미포국가산단(주전-어물동)진입도로	2,200	4,060	1,860	84.5
128	음성용산산단진입도로	1,212	2,236	1,024	84.5
129	빛그린산단광주방면진입도로	1,760	2,320	560	31.8
130	제주구국도건설지원	2,000	4,390	2,390	119.5
131	광령-도평우회도로건설	10,869	15,146	4,277	39.4
132	도시형교통모델(세종)	3,137	5,428	2,291	73.0
133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13,500	19,500	6,000	44.4
134	울산KTX역세권일반산단진입도로	543	2,263	1,720	316.8
13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진입도로	1,500	2,000	500	33.3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36	의무보험전산망	2,241	3,067	826	36.9
[주택도시기금]					
137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57	4,055	3,998	7,014.0
138	이차보전지원	1,395,141	1,839,836	444,695	31.9
139	주택구입 · 전세자금(융자)	12,364,500	14,057,155	1,692,655	13.7
140	국민임대(융자)	157,653	187,597	29,944	19.0
141	전세임대(융자)	4,546,931	5,114,122	567,191	12.5
142	전세 · 매입임대경상보조	145,290	160,043	14,753	10.2
143	임대주택리츠출자	300,000	450,000	150,000	50.0
144	통합공공임대출자	1,216,141	1,642,403	426,262	35.1
145	통화금융기관예치(주택)	147,607	571,366	423,759	287.1
146	비통화금융기관예치(도시)	899,965	1,082,907	182,942	20.3
147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13,647,300	16,460,100	2,812,800	20.6
148	국공채원금상환	15,383,000	18,639,500	3,256,500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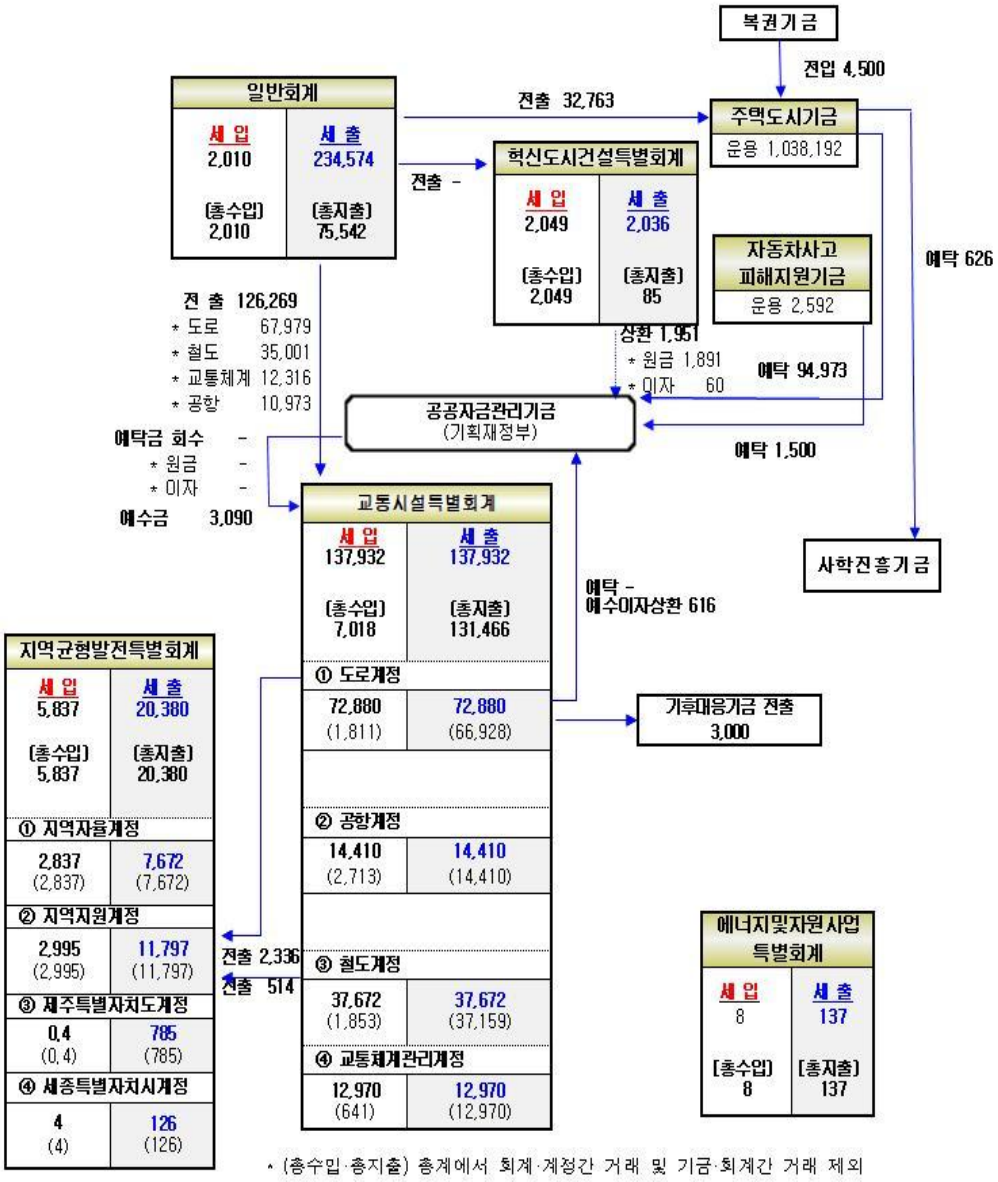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12조 6,269억 3,100만원, 주택도시기금으로 3조 2,762억 7,400만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2,849억 300만원, 기후대응기금으로 3,000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500억원이 예탁되었음. 또한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9조 4,973억 2,500만원이 예탁되고, 25억 3,400만원의 예수원금 및 이자가 상환되었음. 또한, 복권기금으로부터 4,500억 4,000만원을 전입받는 한편, 사학진흥기금으로는 626억 3,700만원이 예탁되었음.

[국토교통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주거안정과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였음. 특히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 공급(25.2만호)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확대(7.5천호), GTX 노선 적기 개통 및 K-패스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360만명)한 것을 들 수 있음.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토교통부 소관 R&D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연구비 감액조치를 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미흡등급을 받은 과제에 대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재 운영 중인 국토교통창업지원센터 입주 신청이 저조하여 재공고까지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산 신규 편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대상 노선이 고시된 이후(2025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넷째, K-패스 가입자 수가 매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최근 증가율 감소 추세 및 유사한 기후동행카드의 이용자 수 통계를 고려하여 산출 근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광역버스 노선과 경합되는 GTX 노선이 부분 개통됨에 따라 광역버스 승차 인원이 감소하였는바, GTX 개통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수송실적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을 감차하거나 통·폐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 1,800억원 부실자산 재발 방지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1년 49조원에서 2024년 6월 기준 20조원으로 약 60%가 감소되었고, 여유자금 수익률은 2023년 8.26%에서 2024년 6월 기준 2.67%로 낮아졌으며, 2024년 6월 기준 해외채권(△1.05%)과 대체투자(△1.86%)는 음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조원)

구분	'21		'22		'23		'24.06	
	말잔	평잔	말잔	평잔	말잔	평잔	말잔	평잔
전체	48.98	45.04	28.72	43.06	18.87	20.23	20.58	16.76
단기	0.94	1.58	1.61	1.54	4.29	2.58	9.86	4.43
중장기	48.04	43.46	27.11	41.53	14.58	17.65	10.73	12.33
국내주식	3.29	3.04	1.79	2.84	1.04	1.20	0.78	0.84
국내채권	36.39	33.05	18.90	30.54	8.49	11.15	5.70	6.89
해외주식	4.23	3.74	2.29	3.80	1.38	1.57	0.96	1.13
해외채권	2.05	1.83	1.43	1.91	0.87	0.95	0.54	0.67
대체투자	2.08	1.80	2.70	2.44	2.80	2.78	2.75	2.80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수익률 현황]

(단위: %)

구분	'21	'22	'23	'24.06
전체	3.29	-3.58	8.26	2.67
단기	0.83	2.08	4.29	1.95
중장기	3.33	-3.82	8.83	2.86
국내주식	4.35	-22.37	28.88	11.86

국내채권	0.26	-1.23	6.84	2.40
해외주식	31.02	-12.40	22.70	18.21
해외채권	-1.65	-12.29	3.84	-1.05
대체투자	11.41	11.27	4.42	-1.86

나. 검토의견

첫째, 주택도시기금 운용과정에서 1,800억원의 부실자산이 발생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택도시기금의 주간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7년 9월 보스턴 스테이트 스트리트 빌딩을 담보로 한 중순위 대출채권(메자닌)[4]을 400억원에 매입하는 대체투자[5]를 실행하였음.

이후 시중금리 인상, 미국 오피스 부동산 침체로 2021년 10월 차주(건물운영자)가 투자자들에게 채무불이행을 선언(EOD: 대출만기전 자금 회수 요구)하고 2021년 12월 선순위 투자자가 기금 자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였음.

[투자자산 개요]

항목	내용
건물명	보스턴 스테이트 스트리트 빌딩 (업무시설)
투자대상	미국 보스턴 State Street Financial Center 메자닌 대출채권
펀드명	KTB글로벌CREDebt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호
차주 (건물운영자)	Fortis Property Group
투자금액	(최초) 430억원 (추가) 1,350억
만기	(당초) '17.5.19~'22.5.18 (연장) '17.5.19~'27.5.18
자산정보	(준공) 2003년, (층수) 지하 5층 ~ 지상 36층, (감정평가액) 약 1조 2,746억원 ('21년 기준)
임대율	35% ('24.10 기준)
심각자산 분류일자	'21.12.10 (대체위, 정상 → 심각)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지침」에 따라 위탁운용기관(미래에셋) 내에 설치된 투자심사위원회[6]는 2021년 12월 위 압류된 자산에 대한 전액 손실을 방지하고 자산

4)「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지침」
제3조(정의) 10. "메자닌(Mezzanine) 대출"이란 지분투자와 대출형투자 중간 성격의 수익성 및 안정성을 보유한 중순위 대출형투자를 말한다.

5) 대체투자란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와 차별화된 새로운 전략, 상품, 자산 혹은 자본구조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함(「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지침」 제3조 제1항)

안정화시 추후 상승한 가격으로의 매각을 목적으로 1,400억원의 추가투자 및 투자기간 연장안(2027년까지)을 의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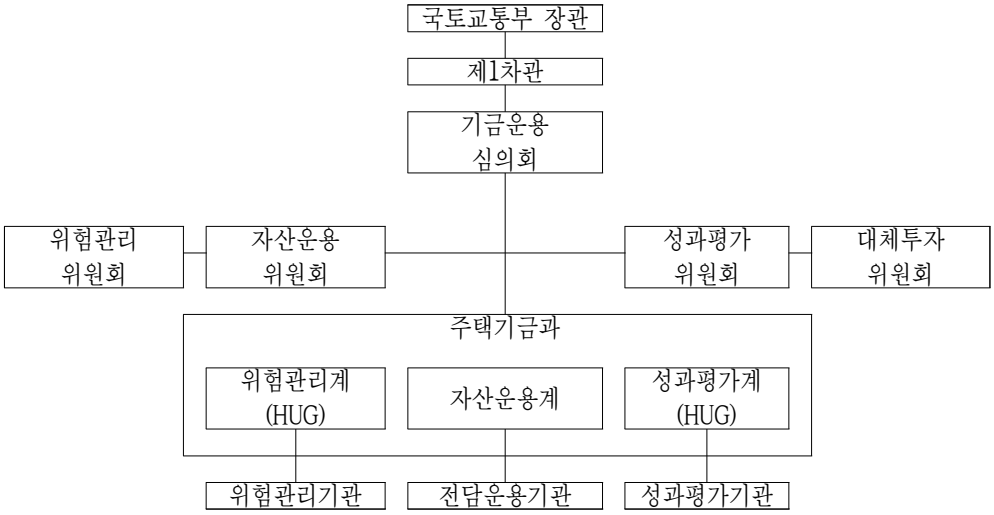
이후 2024년 9월 주택도시기금 위험관리위원회[7]는 그간 투자된 1,800억원의 대출채권을 부실자산으로 지정하고,[8] 후속조치로서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부실자산 회수 처리 결과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음.[9]

한편, 본건 대체투자에 대한 EOD 발생 이전부터 금융감독원은 해외 대체투자는 규모가 크고 중도환매가 어려워 부실화될 경우 증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고, 투자자 피해구제에도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

---

6)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지침」
제12조(투자심사위원회) ① 위탁운용기관은 대체투자 의사결정기구로서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투자심사위원회는 대체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투자여부에 대한 사항
2. 투자회수에 대한 사항
3. 투자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

7)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기금운용 조직은 기금운용심의회, 자산운용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등의 위원회 조직과 기금운용주체인 주택기금과로 구성되어 있음



8) 선순위 투자자가 기금자산에 대한 담보처분(경매)을 개시하면 전액 손실이 확정되나 현재까지 미실행

9)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위험관리기준」
제34조(부실자산 처리) ①부실자산이란 발행기업의 부도,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주식, 채권 등의 운용자산을 말한다.
②공사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한다.
③국토교통부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실자산의 회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처리 결과를 위험관리위원회와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10]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2021년 EOD 발생시까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위험관리기준」에 따른 위험관리 실무회의 개최, 투자상품 제한, 위험분석, 신용위험 발생시 조치, 신용한도 측정주기, 위기관리계획 운영, 위기상황 분석, 위험관리위원회 소집 등 위기상황 대응체계 운영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11]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위험관리기준」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소집 등의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지만,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12],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지침」 제13조[13]에 따라 대체투자위원회를 통한 분기별·반기별 사후점검 절차는 이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개별 대체투자 상품에 대해서 임의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위험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위험 발생시 해당 규정에 따른 자금회수, 운용자산 보유한도 축소, 신규 편입제한, 저위험 자산으로 교체, 적극적인 헤지 등의 조치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체투자에 대한 위험관리를 이행했어야 하는 대체투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더라도 추가투자 심의 및 투자기간 연장[14]

---

10) 금융감독원,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2021.1.5.
: 당시 증권사 자체적으로 부실·요주의로 분류한 해외 대체투자는 7.5조원(해외 부동산 4.0조원, 해외 특별자산 3.5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

11)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위험관리기준」 제9조(위험관리 실무회의), 제14조(투자상품 제한), 제15조(신규상품 위험분석), 제22조(신용위험), 제23조(관리방법), 제24조(측정주기), 제31조(위기관리계획), 제32조(위기상황분석), 제33조(위기상황 대응체계)

12)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대체투자위원회의 기능) 대체투자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지침」의 제정 및 개정
2. 대체투자 계획 수립 및 변경
3. 대체투자 연간 공정가치 평가 등 성과평가
4. 대체투자 위험관리
5. 대체투자 사후관리
6. 그 밖에 대체투자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3)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지침」
제13조(사후관리 및 위험관리) ① 대체투자위원회는 여유자금 대체투자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을 심의하여 위험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는 여유자금 대체투자 위험관리에 대한 사항을 대체투자위원회에 반기별 보고한다.
③ 위탁운용기관은 여유자금 대체투자 운용과 관련하여 공실률의 변동, 자금운용 계획의 변화 등 운용 중 발생한 중요한 사항과 위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④ 사후관리기관은 대체투자 전체 또는 개별 투자건별로 분기별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을 위해 개최된 2건(2021년 12월, 2024년 3월) 외에는 본건 대체자산의 위험관리를 위한 회의는 7년간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본건 대체투자에 대해서 감사원은 지난 2024년 6월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주택도시기금 대체자산의 투자 여부 결정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른 기금운용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운용기관 내에 설치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시 국토교통부가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따라서 현재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가 투자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상품별 투자한도 및 손실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부실자산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주간운용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조치와 더불어 유사한 손실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운용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건 대체투자의 EOD 발생 이전인 2021년 1월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해외 부동산 투자의 펀드 가치 하락으로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여[15] 자산·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하였음에도 주택도시기금 운용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자산운용담당자가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16] 금융감독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운용사의 중과실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감사원은 2019년 11월 국회가 '고용노동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감사요구안'[17]을 통보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파생결합펀드 투자손

14) 투자기간이 7년을 넘게 되면 대체투자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15) 금융감독원,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2021.1.21.
: 해외부동산 투자 자산 중에서 총 1,94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2020년 9월 기준 차주 부도, 공사지연·중단 등 부실 징후가 있는 자산은 2,721억원 수준으로 손실 확대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

16)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자산운용지침」 제29조(기금운용관련자의 윤리기준)

17) (주문)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감사를 요구
(제안 이유)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자산을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국

실[18] 관련 내용을 지연·부실 보고한 OO증권에 대해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고, 이후 2023년 OO증권은 주간운용사 선정에서 배제되었음.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법률 자문 결과 주간운용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1년 11월 주간운용사의 지연·부실보고로 인한 고용보험기금 원금 손실에 대해 주위적으로 308억원, 예비적으로 81억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19]

따라서, 부실자산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주간운용사의 중대한 과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조치와 더불어 유사한 손실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운용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민의 재산인 고용보험기금이 위험자산에 투자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바, 고용보험기금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

18)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OO증권)의 '18.7월에 글로벌 금리상승 기조에 따른 채권수익률 하락을 상쇄할 목적으로 독일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584.7억원을 투자하였으나, 2019년 7월 만기가 도래한 독일 DLF는 독일국채금리 하락(-0.4% 수준) 으로 475.6억원 손실(원금 대비 81.5% 수준)

19) 2024년 8월 고용노동부는 2심까지 패소하였으나,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및 위 자료 청구' 에 대한 판단 누락을 대법원 상고이유로 검토 중에 있음

2. 국토교통 R&D : '미흡' 평가 과제에 대한 감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R&D 예산안은 전년 대비 554억 7,500만원(12%) 증액된 4,878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기후대응기금에 포함된 국토교통 R&D를 포함하면 전년 대비 828억 7,000만원(18%) 증액된 5,420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토교통 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50,813	302,200	51,387	20.5%
교통시설특별회계	176,587	180,675	4,088	2.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00	5,000	0	0.0%
기후대응기금	2,6750	54,145	27,395	102.4%
합계	459,150	542,020	82,870	18.0%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 소관 R&D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연구비 감액조치를 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미흡등급을 받은 과제에 대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20],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 및 제36조 등에 따르면[21]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및 최

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완 · 변경 · 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 · 증액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21)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각각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평가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분류하고,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36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보완 · 변경, 연구개발비 감액 · 증액 또는 연구개발과제 중단 등 평가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받은 경우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완·변경 또는 연구개발비 감액·증액 등 조정, “극히 불량”으로 평가받은 경우는 지원 중단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함.

그런데 최근 3년간 단계평가를 실시한 160건 중 ‘미흡’ 평가를 받은 과제는 “RE100 기반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등 3건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하였고, 해당 과제에 대한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보고서를 일부 보완한 정도에 그쳤으며 감액 조치를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음.[22)]

[최근 3년간 단계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현황]

연도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평가결과	조치현황
2021	국토교통기술 사업화지원(R&D)	수소연료전지드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농작물 모니터링 및 작황 예측 기술	’21.4.～’23.12	미흡	과제 보완
2022	국토교통지역 혁신기술 개발사업(R&D)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안개제거 및 살얼음 예방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21.04～’23.12	미흡	과제 보완
2023	RE100 기반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RE100 기반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22.04～’26.12	미흡	과제 보완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최종평가를 실시한 862건 중 미흡평가를 받은 과제는 4건으로 전체의 0.5%에 그쳤는데, 마찬가지로 미흡 평가에 대한 조치는 보고서 보완 등에 그쳤음.

[최근 3년간 최종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현황]

평가연도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평가결과
2023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R&D)	방폭구조물의 일반화를 위한 지능형 폭발해석 및 성능평가 기술 개발	’21.4~’22.12	미흡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33조(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단계평가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우수”, “보통”, “미흡” 과제
가. 과제의 보완·변경 또는 연구개발비 감액·증액 등 조정
나. 연구환경 변화, 목표 조기달성 등으로 연구목표 수정 및 과제 중단 결정을 위한 특별평가 실시(필요시 단계평가, 특별평가 통합운영 가능)
2. “극히 불량” 과제는 지원중단

22) 동 기간 동안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차세대 대인 보안검색 기술개발(R&D)’은 과제중단 조치함.

평가연도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평가결과
	철도기술연구사업(R&D)	도시철도차량용 컨버터 일체형 경량 반도체변압기 및 경량 고효율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개발	'18.4.~'23.09.	미흡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R&D)	독거노인 total care system 및 장애인 이동성 보장시스템 개발	'18.09.~'22.12	미흡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R&D)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인공지능 선로 검측 시스템 개발	'20.4~'22.8.	미흡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미흡 과제는 전문가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과제 보완·변경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고, 연구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그간 평가 결과와 예산 조정 등의 조치 간 연계성이 낮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은 4~5년 이상 장기간에 이루어져 급변하는 기술발전,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해 해당 사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물이 상용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미흡 과제에 대해서는 감액조정 등의 조치도 취함으로써 연구개발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RE100 기반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2025년도 예산안 62억 1,900만원,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일반회계】

<세 출>

3. 해외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 사업성과와 연계하여 예산 지원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해외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은 우리기업이 사업주로서 해외건설, 개발 또는 운영 관리에 참여하는 해외투자개발형 사업(교통, 수자원인프라, 신도시 등)에 대해 타당성 조사 비용 및 제안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43억원이 편성되었음.[23)]

[2025년도 해외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해외인프라시장개척	47,643	57,520	9,867	20.7
해외건설사업 타당성조사지원	14,300	14,300	-	-

나. 검토의견

해외건설사업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의 경우 ’09년부터 ’24년 8월까지 164건(713억원)을 지원하였으나 그 중 5.5%인 9건만 사업화(수주)되는데 그쳤으므로, 사업 성과에 연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외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모집공고-지원사업 선정-수행용역사 선정-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의 절차로 진행되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국토교

23) 일반회계-해외인프라시장개척((4310-302)(건설정책국)

통부가 직접수행하다가 2019년부터 KIND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절차]

① 모집공고	⇨	② 지원사업 선정	⇨	③ 수행용역사 선정	⇨	④FS/제안서작성지원
• 4주간 공고 •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상사 신청 • 예타·본타로 구분		• 선정위원회 선정 • 예산범위내 고득점 순 • 선정前 재외공관 등 의견조회		• 용역사 모집공고 • 선정위원회 선정		• 건설외교 지원 • 최대 9개월

그런데 '09년부터 '24년 8월까지 약 15년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총 164건에 대해 713억원을 지원하였으나 그 중 5.5%인 9건만 사업화되었고, 사업화 추진 중인 23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추진이 잠정적으로 중단·보류되거나 입찰 참여 후 최종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적이 미흡한 상황임에도 예산액이 2019년 70억원에서 2025년 143억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음.

[해외건설사업 타당성 조사지원 사업 지원 건수 및 예산액]

(단위: 건)

연도	합계	'09~'18	'19	'20	'21	'22	'23	'24.8
예산(억원)	890	230	70	74	100	130	143	143
지원금액(억원)*	713	218	62	65	90	105	128	45
지원건수	164	79	16	14	16	13	18	8
수주건수**	9	2	1	1	4	-	1	-

주1) 지원금액은 위수탁계약 낙찰차액 및 위탁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기업 지원 금액
2) 수주건수는 기존 타당성조사를 지원했던 사업이 실제 사업화(수주)된 연도 기준으로 계산
자료: 국토교통부

이는 이 사업이 타당성 조사지원 후 사업화 성공 또는 실패에 따른 인센티브나 제재수단 없이 자금지원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업제안자가 사업화가 아닌 단순히 지원금 자체를 목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수주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정보화) 사업: 전자계약 체결건수 산출 근거 명확화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종이 없는 전자계약 및 부동산 거래 원스톱서비스 구축·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3,000만원(54.4%)이 증액된 26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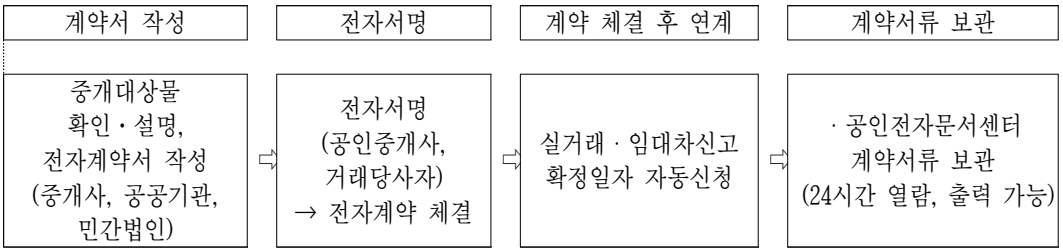
[2025년도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운영	6,519	8,726	2,207	33.9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1,709	2,639	930	54.4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종이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하고, 실거래·임대차 신고, 등기 등을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운영 중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절차]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시스템 유지관리 17억 3,800만원, 전자계약운영지원 7억 8,200만원, 시스템 기능개선 1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4) 일반회계-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운영(4263-503)(주택토지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가. 시스템 유지관리 (1,738백만원) · 서버HW 등 구입 : 2식x36백만원 + 1식x45백만원=117백만원 · 상용SW : 1식x63백만원 + 2식x413.5백만원=890백만원 · DB서버 버전 업그레이드 : 0.30MMx243.3백만원=73백만원 · 개발SW 유지관리 : 1식x4,840백만원x10%=484백만원 · 상용SW 유지관리 : 1식x1,208백만원x12%=145백만원 · HW 유지관리 : 1식x414백만원x7.0%=29백만원 나. 전자계약운영지원 (782백만원) **· 전자문서 인증 및 보관 : 40만건x540원=216백만원** **· 거래당사자 본인인증 : 18만건x461원=83백만원** · 콜센터 운영 : 48.3MMx4.14백만원=201백만원 · 홍보 및 광고 : 1식x65백만원=65백만원 · 위탁운영 인건비 : 2.59MMx61.8백만원=160백만원 · 직접경비 : 12개월x4.75백만원=57백만원 다. 시스템 기능개선 (119백만원) · 개발SW(FP) : 120.4FPx0.988백만원=119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전자계약 예상건수(31.8만건), 전자문서인증 및 보관사업의 추정건수(40만건), 거래당사자 본인인증 사업의 추정건수(18만건)에 차이가 발생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예산 규모를 재산출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도 부동산 전자계약 예상건수는 민간 9만건, 공공 17.4만건, HUG 임대보증 5.4만건을 포함한 총 31.8만건으로 추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사용하게 되면 확정일자 자동 신청, 동일 주소지 이중계약 불가능으로 보증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전자계약 후 HUG 임대보증 가입시 보증료율을 인하하기로 한국부동산원과 HUG간 업무협약이 체결('24.8.27)되었고, 이로 인해 전자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였음.

[부동산 전자계약 예상건수]

(단위: 만건)

구 분			추정물량			
년 도			'23	'24	'25	근거
전자계약 건수	민간	중개	1.9	3.8	7.6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약 100% 적용 - '20→'21 : 18% 증가 - '21→'22 : 72% 증가 - '22→'23 : 221% 증가
		기타	1.0	1.2	1.4	
	공공		15.1	16.2	17.4	
	HUG 임대보증		-	-	5.4	- HUG와의 협약('24.8.27)에 따라 '25년부터 전자계약시 임대보증수수료 20~30% 인하 예정 ⇒ '23년 보증실적 36만건 기준, 하반기(18만건) 시행시 30% 가입(5.4만건) 추정
	계		18.0	21.2	31.8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이 사업의 세부내역 중 '전자문서인증 및 보관' 사업은 40만건을 기준으로, '거래당사자 본인인증'의 경우 18만건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국토교통부가 추정하고 있는 31.8만건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전자계약 체결시 거래당사자 본인인증 후 전자문서 인증 및 보관이 연계되므로 두 사업이 동일한 수치를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건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25)]

[전자문서인증 및 보관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구분	산출내역	금액(원)
① 시점확인(TSA)	**40만건** × 약 3.0/회(발급횟수) × 발급비용 1)계약시 1회, 확정일자 부여시 1회, 수기서명시 각 1회 등 2)구간별 차등요금 적용 : 100만건 이하의 경우 건당 약 61.87원	74,957,220
② 실시간유효성확인(OCSP)	**40만건** × 약 2.9/회(발급횟수) × 발급비용* * 구간별 차등요금 적용 : 100만건 이하의 경우 건당 약 59.04원	67,603,636
③ 전자문서 보관	[**40만건**(신규)+94.1만건(기존)] × @50.0원 (1년 보관금액) × @0.8MB(건당 용량)	53,671,320
④ 서버용 공동인증서 등	@0.1백만원 × 1식	100,000
소 계		196,332,176
VAT		19,633,218
합 계		215,965,394

자료: 국토교통부

25)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재부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세부 산출 근거에 오류가 있었다는 입장임

[거래당사자 본인인증 세부내역]

구분	산출내역	금액(원)
① 문자전송서비스	(카카오알림톡) **18만건** x (단문 및 장문 4.9원/건 × 평균 5.0회) (문자메시지) **18만건** x [(단문 평균 0.2회 × 7.9원/건) + (장문 평균 0.1회 × 23.9원/건)]	5,124,600
② 휴대폰본인인증	@43원/건 × **18만건** × 5.2회	40,248,000
③ 아이핀인증	35,155원/월 × 12개월	421,860
④ 인터넷임대료	2.5백만원/월 × 12개월	30,000,000
소 계		75,794,460
VAT		7,579,446
합 계		83,373,906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HUG는 최근 보증사고 급증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로 최저 0.121%에서 최대 0.339%의 보증료율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26]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보증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27] 보증료율을 인하하기로 업무협약이 체결된 점만을 근거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자계약 추정건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6)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개선용역」, 2024.

27) KD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 2023.9.

5. 철도기본계획수립 사업: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일정을 고려한 예산 편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철도기본계획수립’ 사업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8억 6,100만원(94.5%)이 증액된 100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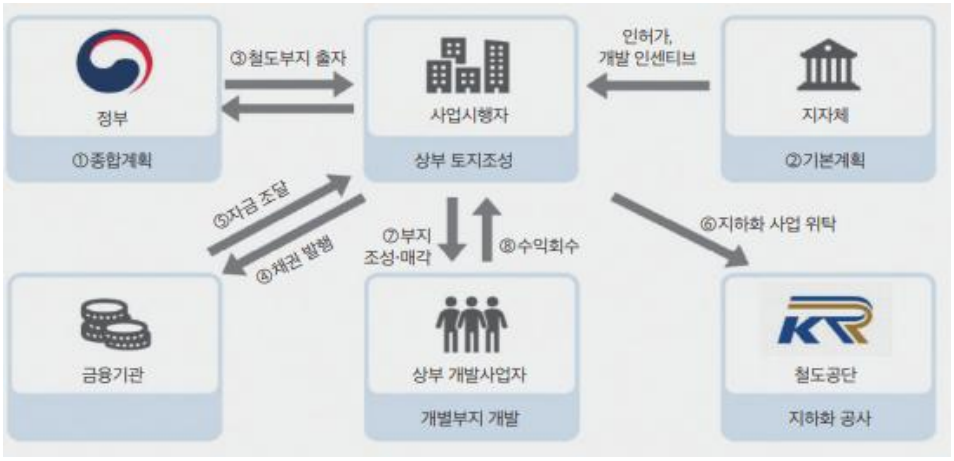
[2025년도 철도기본계획수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철도기본계획수립	5,144	10,005	4,861	94.5

2024년 1월 30일「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라 함) 제정에 따라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철도지하화사업과 노후화된 구도심 지역의 철도부지 개발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



28) 일반회계-철도기본계획수립(2733-303)(철도국)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사업추진방식은 정부가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우선 출자하면, 사업시행자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하여 민간자본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해 사업비를 선투자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추가부담 없이 상부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것임.

2025년에는 철도지하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근거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대상 노선이 고시된 이후(2025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제4조[29] 및 제6조[30]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철도지하화 사업대상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1]

---

29)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0)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6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선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도지사 간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1)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철도지하화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4개월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32]을 수행하고 용역이 완료되기 전인 2025년 12월에 종합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33]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선도사업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34] 지정된 선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따라서 근거법률의 취지에 따라 종합계획을 2025년 말까지 수립하고 그에 따라 고시된 노선에 대해 2026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2) (용역기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유신엔지니어링(주), 도화엔지니어링, ㈜싸이트플래닝건축사무소 (용역기간) ’24.3월~’26.3월 / (용역금액) 30억원

33) 국토교통부,「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2024.3.22.

34)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시동 건다」, 2024.5.7.

6. 승강장 안전시설 개량 사업: 긴급개량 방식 등을 통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승강장안전시설 개량’** 사업은 수도권 광역철도 전철역 승강장의 열차 접촉 및 선로추락 등 철도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장안전문(PSD)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4억 9,500만원(△8.7%) 감액된 790억원이 편성되었음.[35)]

[2025년도 승강장안전시설 개량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850,739	733,058	△117,681	△13.8
승강장안전시설 개량	86,495	79,000	△7,495	△8.7

승강장안전시설 개량 사업 내 ‘민자 PSD[36)] 안전보호벽 개량 사업’은 총 10개역의 1,138개소의 민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57조[37)]에 따라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도록 시설개량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6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민자 PSD 안전보호벽 개량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구분	선 별	역 명	위치	시행년도	개량내용	사업비 (백만원)
민자 PSD 안전보호벽 개량 10역 22트랙						
1	경부선	용산	#5, #6	2023-2025	안전보호벽 개량(2트랙)	
2	경부선	영등포	#1, #2	2023-2025	안전보호벽 개량(2트랙)	
3	경부선	신도림	#1, #2	2023-2025	안전보호벽 개량(2트랙)	

35) 일반회계-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2731-302)(철도국)

36) Platform Screen Doors

37)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57조(승강장) 승강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8.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은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도록 할 것

구분	선 별	역 명	위치	시행년도	개량내용	사업비 (백만원)
4	경부선	구로	1, 3번홈	2023-2025	안전보호벽 개량(4트랙)	6,500 (사업비 50%, 손실보상 발생시 금액 포함)
	경인선		2, 4번홈			
5	경부선	가산디지털단지	1, 2번홈	2023-2025	안전보호벽 개량(2트랙)	
6	경부선	안양	1, 4번홈	2023-2025	안전보호벽 개량(2트랙)	
7	경부선	수원	2, 8번홈	2023-2025	안전보호벽 개량(2트랙)	
8	경부선	부평	1, 4번홈	2023-2025	안전보호벽 개량(2트랙)	
9	경부선	선릉	1, 2번홈	2023-2025	안전보호벽 개량(2트랙)	
10	경부선	서현	1, 2번홈	2023-2025	안전보호벽 개량(2트랙)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민자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자사업자에 대한 광고사업 손실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긴급개량 방식 등을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손실보상에 따른 추가적인 국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철도공사는 2008년 10개역에 민자사업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였고, 민자사업자는 PSD설치 및 기부채납 후 22년간('12.~'32.) 광고영업 및 유지보수를 하기로 계약하였음.[38)]

그런데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은 대기승객 추락방지 목적의 안전펜스 역할 외에 열차화재 등 비상상황시 탑승객들의 긴급탈출통로(비상개폐)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민자사업자가 부착한 광고판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함.[39)]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부터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수동으로 개폐하기 위한 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자사업자와 11차례 협의를 추진해왔으나 민자사업자는 광고사업 손실 등을 이유로 거부해왔음.

이후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는 민자 PSD 긴급개량을 위한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민자사업자의 동의 없이도 안전문을 옆으로 밀어서 여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긴급개량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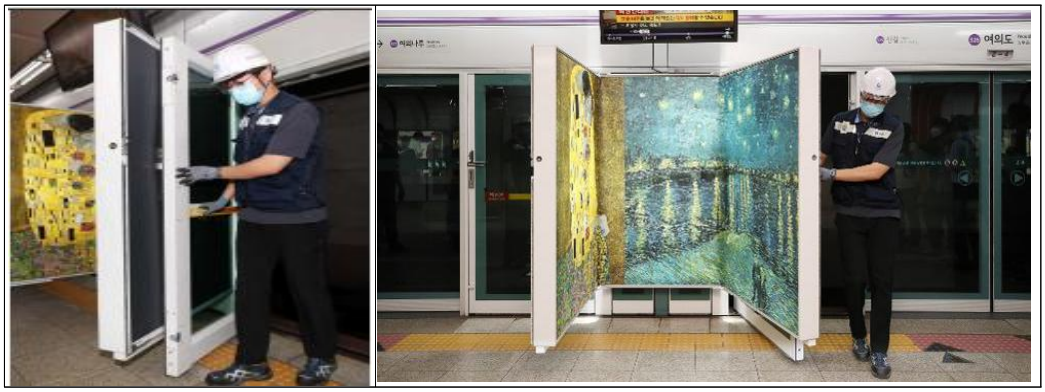
38) <민자 스크린도어(PSD) 운영사업 개요>
‹사업자/기간) ㈜효천(舊 질서지킴이(주)) / 2012년 1월~2033년 2월(21년간)
‹설치현황) 10개역 < PSD 22트랙 > 지하(선릉,서현) + 지상(용산 등 8개역)

39) 국민권익위원회,「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관리 강화」, 2015.

[슬라이딩 방식 안전보호벽 (비상시 좌우 개폐)]



[접이식 방식 안전보호벽 (비상시 안전보호벽을 앞으로 밀어 열고 대피)]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안전문 패닉바를 누르고 앞으로 밀어서 여는 '접이식' 방식이 대피시간이 짧고 공사비가 저렴(25억원)하다는 이유로 접이식 방식을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민자사업자와 영업손실 금액에 이견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민자 PSD안전보호벽 개량에 따른 민자사 영업손실 보상액 산정]

(단위: 백만원)

구분	민자사업자 요구안	공단 검토안
총계	16,424	5,580
광고면적 축소에 따른 손실	4,269	4,207
공사기간 중 손실	3,632	298
광고판 소재변경에 따른 손실	8,523	1,075

자료: 국토교통부

이러한 상황에서 접이식 방식과 슬라이딩 방식을 면밀히 비교하여 조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접이식 방식은 사고시 더 빠른 대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상 협의 지연으로 안전보호벽의 신속한 개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언제든 불의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40]

또한 접이식 방식의 공사비가 저렴하기는 하나 보상협의 과정에서 민자사업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슬라이딩 방식(76억원)보다 예산 투입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음.

[개폐방식 비교]

구분	접이식 방식	슬라이딩 방식
개폐 방식	• 패닉바를 누르고 앞으로 밀어서 여는 방식	• 승강장 안전문을 옆으로 밀어서 여는 방식
장점	• 승객의 대피 시간이 짧음 • 개량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25억원)	• 기존 광고 시설물 변경 없이 사용 가능 • 손실보상 협의없이 개량 가능
단점	• 기존 광고시설물의 변경으로 유지비용 증가 • 손실보상 협의로 지연 우려(56~164억원)	• 접이식에 비해 대피시간 증가 및 긴급 상황에서 승객의 혼란 야기 가능 • 개량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76억원)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각각의 개량방식에 대해 안전성, 개량 사업의 신속 추진 가능성, 예산 투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긴급개량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40)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등

7.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신규): 수요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D.N.A)을 접목한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여건이 취약한 예비 ·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보육공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7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1)]

[2025년도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 지원	-	750	750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23년 7월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 국토교통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4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과 1개의 교육장을 갖추고 있음. 동 센터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2억원, 2024년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예산안은 국토교통창업지원센터 확대를 위한 임차료 및 관리비 3억 7,600만원, 구축비 3억 6,000만원, 운영비 1,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100%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음.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임차료 및 관리비 376백만원 -구축비(인테리어, 전기・통신, 소방공사, 비품 및 사무기기 등) 360백만원 -운영비(여비/수용비 등) 14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41) 일반회계-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7036-308)(기획조정실)

나. 검토의견

현재 운영 중인 국토교통창업지원센터 입주 신청이 저조하여 재공고까지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산 신규 편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분야 창업기업 수요가 증가 추세이나 예산 및 공간이 부족하여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국토교통창업지원센터 목표]

현재 수준(모습)	사업 수행시 개선수준(모습)	
	'25년 수준	목표수준
~'24	'25(착수년도)	'29(5년 이후)
■ 국토교통분야 창업기업 수요가 증가 추세이나 '국토교통 창업지원센터' 예산·공간부족으로 추가 지원 한계 - '24년 현재 4개 기업 입주 - 강의실 1개, 스튜디오 0개	■ 국토교통 분야 창업교육, 세미나 공간 및 마케팅 스튜디오 조성, 비입주형 열린 창업공간 마련 및 입주 창업 공간 확대 - 입주공간 4개 → 10개 - 강의실 1개 → 6개 - 스튜디오 0개 → 1개	■ 국토교통 분야 창업자, 투자사, 수요처 참여 네트워킹 가능한 창업공간 확대 조성 - 입주공간 20개 - 강의실 10개 - 스튜디오 2개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국토교통창업지원센터의 지원 경쟁률을 살펴보면 2023년 처음 모집시 경쟁률은 1.5:1 이였고, 2024년에는 첫 공고에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경쟁률 2:1)를 하여 입주기업을 선정한 상태로, 추가 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센터 입주 희망 수요조사('24.9.25. ~ 10.2.)를 실시한 결과, 60개社가 입주희망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입주희망 의견과 달리 실제 경쟁률이 저조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기존에 입주한 기업들의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 프로그램 등 사업비가 아닌 단순한 사무실 구축 및 운영비를 확대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토교통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수요의 충분성 및 공간조성 위주의 운영비 편성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신규 편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8. 소속기관 직원 숙소임차 사업: LH공공임대주택의 공가 등을 활용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소속기관 직원 숙소임차’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속 비연고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생활안전 지원 등 복지향상을 위해 숙소를 임차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00만원(0.3%) 증액된 19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42)]

[2025년도 소속기관 직원 숙소임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소속기관 직원 숙소임차	1,925	1,931	6	0.3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존관사 19채에 대한 재계약 3억 8,700만원과 신규관사 14채에 대한 임차료 15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소속기관 직원 숙소임차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기존관사 19채 재계약 등 387백만원
○ 신규관사 14채 임차 소요 1,544백만원
- 서울국토청 3채(수원2, 의정부1)
- 원주국토청 3채(본청3)
- 대전국토청 1채(본청1)
- 부산국토청 4채(본청3, 포항1)
- 국토지리정보원 3채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직원을 위한 관사 예산이 최근 5년간 약 10배가 증가되었는데, LH 공공임대주택의 공가 등을 우선 활용(기관공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예산을

42) 일반회계-소속기관 직원 숙소임차(7041-318)(기획조정실)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속기관 직원 숙소임차 사업의 최근 5년간 예산액을 살펴보면 2020년 2억 1,000만원에서 2025년 19억 3,100만원으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소속기관 직원 숙소임차 사업 예산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안)
사업비	210	448	1,300	1,145	1,925	1,931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LH 공공임대주택의 연도별 공가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24,820호에서 2024년 6월 기준 50,093호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입주자격 완화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LH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공가 추이]

(단위: 호)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계	1,025,316	1,061,405	1,110,424	1,151,742	1,164,623
공가호수(6개월 이상) (공가율)	24,820 (2.4%)	32,607 (3.1%)	32,064 (2.9%)	39,579 (3.4%)	50,093 (4.3%)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LH는 개별적인 계약체결로는 공가축소에 한계가 있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기관공급을 통해 공가해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바,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공공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을 위한 관사로 활용하여 소속기관 직원 숙소임차 사업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을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직원을 위한 관사로 사용하는 경우 특혜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현재 LH는 공가 해소를 위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한 상태이고,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1차례 이상 2단계 완화기준으로 모집한 미임대 주택 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1년 이상 미임대 주택에 한하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LH의 공공주택 입주자격 완화 현황]

구분		국민	영구	행복	신축 다세대 및 분양 전환형
입주자격 완화		▸단계에 따라 순차적 적용			
	1단계 (공특법)	소득완화	소득완화	소득 · 기간완화 (순위모집)	소득 · 자산요건 배제, 무주택요건 선택적용 가능
	2단계	자체방안	자체방안	자체방안	
	3단계	-	-	통합공임 일반대상 공급	
임대조건 완화		▸계약금 인하, 월 임대료 할인, 전세전환			
계약절차 간소화		▸선계약 후검증, 상시모집 동호지정			

자료: 국토교통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 공가로 방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기관공급을 통해 직원 숙소 임차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실제로 LH는 국방부 및 경기도 교육청과의 계약을 통해 각각 686호, 74호를 관사로 공급하였고, 2025년 예산안 기준 국토교통부 신규 관사 1채 전세비용이 평균 1억원 수준인데 반해 경기도 교육청에 공급한 공가 전세는 평균 4,100만원 수준임.

[국방부 및 경기도 교육청 평균 공급금액]

ㅇ 국방부 : 월평균 17만원, 무보증 월세 (평균 전용면적 25㎡, 2023년 계약 686호 기준)
ㅇ 경기도 교육청 : 평균 41백만원, 전세조건 (평균 전용면적 19㎡, 2024년 상반기 계약 74호 기준)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따라서 직원 숙소 임차 예산의 증가 추이, 공공임대주택 공가 해소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공공임대주택의 기관공급 활용에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숙소 임차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9.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사업 간 유사성에 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부분반환부지 관리’** 사업은 용산기지 반환에 대한 대국민성과 체감 및 향후 공원조성에 대한 기대감 확산 등을 위해 부분반환부지에 대한 대국민 임시개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억 8,200만원(△4.5%) 감액된 399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43)]

또 다른 내역사업인 **‘국민소통활동’** 사업은 용산공원 조성과정에 대한 국민참여 취지 극대화를 위해 국민 의견수렴, 국민 대상 정보제공, 국민의 직접 참여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8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43,542	41,660	△1,882	△4.3
부분반환부지 관리	41,719	39,923	△1,882	△4.5
국민소통 활동	814	814	-	-

부분반환부지 관리 사업 내에는 공원운영 기획 및 행사 사업 14억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용산공원 개방의 날 행사, 용산공원 겨울 페스티벌, 예술가 버스킹 등 상시공연, 팝아트 전시행사, 상설 시민 프로그램, 시민 아카데미, 공원 안내 홍보물 제작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원운영 기획 및 행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안
용산공원 개방의 날 행사	584
용산공원 겨울 페스티벌	293

43) 일반회계-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 (5635-301)(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안
상시공연(예술가 버스킹)	203
팝아트 전시행사	117
공원 상설 시민프로그램 (역사투어, 어린이 교육형 레크리에이션. 가족참여형 프로그램)	111
용산공원 시민 아카데미	62
공원 안내 홍보물 제작	42
	1,412

자료: 국토교통부

국민소통활동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용산어린이정원 홍보 영상물 제작 및 부스 운영, 용산기지 버스투어, 그림그리기 대회, 전문가 토크 콘서트, 온라인 사진 공모전 등의 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민소통활동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SNS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추진 200백만원
- 용산기지의 역사 및 용산어린이정원 현황 등 홍보 영상물 제작 등
- 유튜브 협업 콘텐츠 및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200백만원)

■ 찾아가는 용산어린이정원 관련 홍보 200백만원
- 다양한 세대가 모이는 인구 밀집 지역을 찾아가서 용산어린이정원 홍보 부스 운영

■ 용산기지 버스투어 운영 100백만원
- '20년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된 미개방 용산기지 버스투어 재개
  * 2백만원×8개월×4회/월= 64백만원, 안내 영상 및 참가자 모집 홍보 등 36백만원

■ 용산어린이정원 대표 행사 개최 200백만원
- 국토부장관배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전문가 토크 콘서트 등

■ 온라인 소통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행사 개최 114백만원
- 용산어린이정원 온라인 사진 공모전(50백만원), 현장 프로모션 연계 온라인 행사 등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첫째, 용산공원·용산어린이정원 홍보 및 대국민 소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간 유사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분반환부지 관리 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인 '공원운영 기획 및 행사사업'과 내역사업인 '국민소통활동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유사한 목적의 투어, 세미나 개최, 시민 참여 및 홍보 프로그램이 특별한 기준 없이 나누어져 추진되고 있어 예산

이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① 공원운영 기획 및 행사 사업 내에 ‘용산공원 개방의 날 행사’, ‘용산공원 겨울 페스티벌’, ‘상시공연(예술가 버스킹)’의 경우 공연자 섭외비 및 무대설치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단순한 공연 행사를 이름만 달리하여 여러 차례 개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 행사내용과 산출내역 등을 더욱 상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② 공원운영 기획 및 행사 사업 내에 ‘용산공원 역사투어’와 국민소통활동 사업 내에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③ 공원운영 기획 및 행사 사업 내에 ‘공원안내 홍보물 제작’과 국민소통활동 사업 내에 ‘SNS운영 및 온라인 홍보’는 홍보방식(오프라인/온라인) 차이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④ 공원운영 기획 및 행사 사업 내에 ‘어린이교육형 레크리에이션’과 국민소통활성화사업 내에 ‘찾아가는 용산어린이정원 홍보’, ‘용산어린이정원 대표 행사’는 모두 용산어린이정원을 통한 대국민 소통 및 홍보 사업이라는 점에서 콘텐츠가 중복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음.

[유사한 행사 및 프로그램 비교]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2025년 예산안	비고
용산공원 개방의 날 행사	584	공연자 섭외 및 무대설치
용산공원 겨울 페스티벌	293	
상시공연(예술가 버스킹)	203	
용산공원 역사투어	36	용산 투어 행사
용산기지 버스투어	100	
공원 안내 홍보물 제작	42	온·오프라인 홍보
SNS 운영 및 온라인 홍보	144	
어린이교육형 레크리에이션	30	용산어린이정원 소통 및 홍보
찾아가는 용산어린이정원 홍보	200	
용산어린이정원 대표 행사	200	

자료: 국토교통부

이상의 사업내용을 감안할 때, 각각의 행사·프로그램과 홍보사업 간 유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 일부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42조 및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제25조[44]에 따르면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산공원시설의 설치에 직접 필요한 공사비 중 일부는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해성 저감조치 및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위해성 저감조치 및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등 26,285백만원 - 위해성 저감조치 등 부지정비 및 환경 모니터링, 기반시설 정비 등 - 임시개방 부지 내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 '24년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정비 및 리모델링 등 단가 적용 **- 부분반환부지 경계펜스 설치공사** *** 경계담장 3km × 600백만원/km('22년 공사 단가) = 1,800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부분반환부지 관리 사업 내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반환부지 경계펜스 설치공사에 대해 서울시와 비용분담을 협의하지 아니하고 전액 국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용산공원시설 설치 공사비 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음. [45]

---

4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2조(비용부담) ①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비용부담) ① 국가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에 직접 필요한 공사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일부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45) 다만, 서울시는 임시개방 사업에 대한 서울시 참여 없이 비용만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10.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지방비 확보 여부에 따른 국비 지원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기후위기・지역쇠퇴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3억 3,500만원(△7.2%) 감액된 560억원이 편성되었음.[46]

[2025년도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78,831	73,312	△5,519	△7.0
스마트시티 조성	60,335	56,000	△4,335	△7.2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국비 지원비율은 50%이고, 각 유형(거점형・강소형・솔루션 확산사업)별로 사업기간(1~3년)과 국비 지원액(20~200억)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고 있음.

[스마트시티조성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신규 선정】
1)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2,000백만원 (1곳×4,000백만원×50%보조)
* 3년간 국비 160억원/곳 지원(20억+70억+70억)
2)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6,000백만원 (3곳×4,000백만원×50%보조)
* 3년간 국비 80억원/곳 지원(20억+30억+30억)
3)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 6,000백만원 (3곳×4,000백만원×50%보조)
* 1년간 국비 20억원/곳 지원(단년도 사업)
4) 특화단지형 조성・확산사업 : 2,000백만원 (1곳×4,000백만원×50%보조)
* 3년간 국비 80억원/곳 지원(20억+40억+20억)
【계속 사업】
1) 거점형(3차년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12,000백만원 (2곳×12,000백만원×50%보조)
* 3년간 국비 200억원/곳 지원(70억+70억+60억)
2) 거점형(2차년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6,000백만원(1곳×12,000백만원×50%보조)
* 3년간 국비 160억원/곳 지원(50억+60억+50억)

46) 일반회계-스마트시티 확산사업 (5637-308)(국토도시실)

3) 강소형(3차년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12,000백만원(4곳×6,000백만원×50%보조) * 3년간 국비 120억원/곳 지원(60억+30억+30억) 4) 강소형(2차년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9,000백만원(3곳×6,000백만원×50%보조) * 3년간 국비 80억원/곳 지원(20억+30억+30억)

자료: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조성 사업 유형별 특징]



나. 검토의견

스마트시티조성 사업에 선정된 일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국비 지원액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48개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연차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된 A시는 2024년 10월 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51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2025년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A시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집행 현황(2024년 9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9월말 기준)		2025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안
국비	7,000	7,000	7,000	7,000	6,000
지방비	4,900	4,900	-	-	15,100
계	11,900	11,900	7,000	7,000	21,100

자료: 국토교통부

이 사업은 국고와 지방비가 50:50으로 매칭되어 추진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가 지자체에 교부되더라도 차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이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통시설특별회계】

<세 출>

11.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가입자 수 감소추세를 고려하여 산출근거 조정 필요 등

가. 개 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은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 금액을 환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39억 9,100만원(223.2%) 증액된 2,374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47)]

[2025년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73,469	237,460	163,991	223.2%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패스)은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임.

나. 검토의견

첫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증가 없이 이미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귀속되고 있고, 자가용 이용자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투

47)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대중교통비 환급 지원(4931-35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입 예산 대비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알뜰교통카드라는 이름으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을 시작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월 평균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2020년에는 2.2회, 2023년 6.6회로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알뜰교통카드 이용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 변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알뜰카드 이용전	29.1회	27.5회	27.7회	28.1회
알뜰카드 이용후	31.3회	31.4회	34.2회	34.7회
증가	2.2회	4.0회	6.5회	6.6회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2024년부터 시행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주 2회(6회 → 8회) 증가하고, 자가용 이용일수는 주 1.66일(3.45일 →1.79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음.[48)]

그런데 위 결과는 단순비교에 불과하고,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도입 전후 및 적용/미적용 구간을 대상으로 한 통계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49)] 기후동행카드 도입이 대중교통 이용 증가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50)]

즉, 기후동행카드 도입의 효과는 초기에 약간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카드 발급건수 증가 등의 성과는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카드 전환 효과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일 사용건수가 많은 사용자만 기후동행카드를 계속 이용하는 행태를 보여 교통복지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51)] 자가용 이용자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음.

비록 위 실증분석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K-패스에 관한 분석 결과는 아니지만, 사후환급방식(K-패스)인지 사전구매방식(기후동행카드)인지의 차이 외에 본질적인 사업구조는 동일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비 지원 시업의 예산 투입 규모 대비 효

48) 국토교통부, 「K-패스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 돌파!」, 2024.8.2.

49) 「교통비 지원정책 국내외 사례분석 : 재원부담 및 재원조달 방식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2024.8.

50) 이중차분법(DID), 단순 ITS(Interrupted Time Series) 분석, 월별 변동을 통제한 ITS 분석, ARIMAX 모형을 이용한 ITS 분석, 통제집단, 처리집단이 있는 ITS 분석 등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51) 당초 예상한 46회(지하철 또는 버스 이용 출퇴근, 1일 2회 사용) 혹은 92회(버스-지하철 환승을 통해 출퇴근, 1일 4회 사용)를 고려할 때, 100회 이상 사용자 수가 전체의 23.3%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과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K-패스 가입자 수가 매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최근 증가율 감소 추세 및 유사한 기후동행카드의 이용자 수 통계를 고려하여 산출 근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2025년에 월평균 9.6만명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총 115.2만명이 신규 가입, 2025년 12월 누적 기준 총 361.5만명 가입을 전제로 [(246.3만명+361.5만명) x 0.5] 예산을 편성하였음.

[K-패스 이용자 수 추이]

223,880백만원=(246.3만명ⓐ+361.5만명ⓑ) x 0.5ⓒ x 76%ⓓ x 1,640원/회ⓔ x 28.6%ⓕ x 37회ⓖ x 46.55%ⓗ x 12개월ⓘ

ⓐ246.3만명 : K-패스 '24.12월 가입자 규모
ⓑ361.5만명 : K-패스 '25.12월 예상 가입자 규모
ⓒ0.5 : 신규 이용자의 점진적 가입 추세 반영(중간값)
ⓓ76% : 전체 이용자 중 월 15회 이상 이용자 비율
ⓔ1,640원/회 : K-패스 가입자 대중교통비 1회 사용 시 평균 지출금액
ⓕ28.6% : K-패스 평균 환급비율
ⓖ37회 : 월평균 15회 이상 사용자들의 평균 적립 횟수(1일 최대 적립 횟수 2회 고려)
ⓗ46.55% : 평균 국고보조율
ⓘ12개월 : 지원기간('25.1~12월)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K-패스 월별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전월대비 증가율이 2024년 6월 18.1%에서 2024년 9월 6.4%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2024년 6월의 전월 대비 증가인원이 27.3만명인데 반해, 2024년 9월의 전월 대비 증가인원은 13.9만명으로 약 50%가 감소하는 등 비선형적인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K패스 이용자 수 추이]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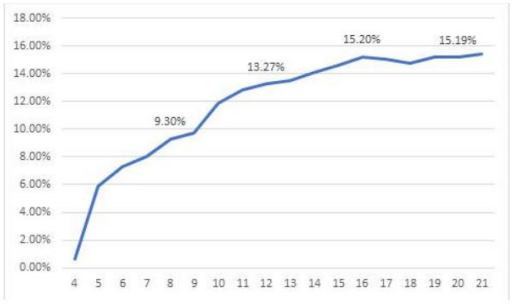
구분	'24.5월	'24.6월	'24.7월	'24.8월	'24.9월
이용자 수	151.1	178.4	197.3	216.6	230.5
전월 대비 증가율	-	18.1%	10.6%	9.7%	6.4%

자료: 국토교통부

기후동행카드 또한 출시 직후 주간 이용건수가 43만 7천건에서 시작하여 급속히 증가하다가 14주차부터 100만-110만건 수준으로 안정화되었고, 기후동행카드 대상 역사

및 버스 전체 승차량 중 기후동행카드 이용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16주차 이후 15%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52)]

[기후동행카드 이용추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수 및 이용건수 추이	역사 및 버스 전체 승차량 중 기후동행카드 이용량의 비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비록 2025년도 월별 예상 가입자 수를 현재 추이보다 다소 낮은 규모로 예측한 점은 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유사한 기후동행카드의 경우도 특정구간에 진입하면서 안정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K-패스가 국토교통부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선형적으로 추가 수요를 발생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2025년도에 월 평균 9.6만명이 신규가입할 것으로 산출한 근거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알뜰교통카드나 기후동행카드 발급 추이와 현재 K-패스 교통카드 사용자의 이용 패턴 등을 분석하여 산출근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인해 운송사업자의 운수수입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민자철도 운영 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민자철도운영지원(내역사업: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사업),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철도·버스 등 운송사업자의 운영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안 세부내역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모두 예상 운임수입 등과 연계되어 있음.

52) 「교통비 지원정책 국내외 사례분석 : 재원부담 및 재원조달 방식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2024.8.

[2025년도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액	비 고
A. 예상 운영수입	150,855	**운임수입(132,602),** 부속수입(18,253)
B. 예상 운영비용	566,831	
- 운영비용	255,022	본사업 운영비(240,555), 법인세(40,590)
- 기타운영비	84,597	차량 증차(77,365), 차량기지 유치선(7,232)
- 민간투자비 상환액	145,880	실시협약 금액 반영
- 민간투자비 이자	81,332	'23년 대비 기준사업수익률 0.12%p↓예측 (현재 4.09% → 3.97%)
C. '25년 공항철도 운영지원	415,976	(B - A)

자료: 국토교통부

[2025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요구) 광역버스의 연차별 이관에 따른 사업확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 상승 등 감안, '24년 대비 +80.6% 증액 요구 - (산출) 준공영제 사업 214개 노선 × 1,400백만원(1개 노선/年) × 지자체 보조 50 % + 준공영제 사업 36개 노선(이관) × 1,400백만원(1개 노선/年) × 지자체 보조 50 % × 1/12개월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으로 운송사업자의 운수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정부의 재정보조와 상계할 필요가 있음.

무제한 정기권 도입에 따른 예산추계 연구결과에 따르더라도[53] 운수수입 증가에 따라 정부 보조금 지원금을 상쇄하는 효과를 고려하면 연간 6천억~9천억원의 재정 지원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음.

실제로 세종시의 경우 대중교통 월 정액권인 '이응패스' 도입에 따라 시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보조를 연 630억원에서 589억원으로 감소하여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54]

따라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을 통한 운송사업자의 수입증가분을 추계하여 민자철도운영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정부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3) 「해외 대중교통 요금정책 변화와 무제한 정기권 도입방향」, 사회공공연구원, 2023.4.

54) 대중교통 이용시민 수 증가 : 월 15만명 → 20만명 이상
대중교통 이용금액 증가: 월 1.2만명 →3만원 이상

12. 광역교통정책연구 사업: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용역의 실효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광역교통정책연구’ 사업은 대도시권 출퇴근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평가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2,200만원(200.9%) 증액된 13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55]

[2025년도 광역교통정책연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광역교통정책연구	459	1,381	922	200.9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0억 5,000만원이 정책연구비(260-02)로 신규 편성되었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56]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의 근거가 되고 있음.

[광역교통시행계획 연구용역 연혁]

ㅇ 제1차 광역교통시행계획('07～'11) : 11.4억원('06.4～'07.10)
ㅇ 제2차 광역교통시행계획('12～'16) : 11.64억원('10.6～'11.12)
*광역교통기본계획('07～'26) 변경 병행
ㅇ 제3차 광역교통시행계획('17～'20) : 8억원('15.7～'16.12)
ㅇ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 14.27억원('19.5～'21.7)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1～'40) 병행

자료: 국토교통부

55) 교통시설특별회계-광역교통정책연구(4931-341)(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5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구용역 결과의 정책 반영도가 높지 않으므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통연구원이 2021년에 수행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용역(2021-2025년)에 따르면, 고양/파주축의 혼잡도(V/C)[57]는 1.13, 과천/안양축의 혼잡도(V/C)는 1.34, 김포축의 혼잡도(V/C)는 1.44로서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차량이 자주 멈추는 등 도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로 나타남.

그 결과 김포축의 "계양~서울" 등 2개 광역도로[58]의 경우 사업시행 전·후 혼잡도 개선율이 4.0%p를 넘어 사업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한바 있음.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안한 3개 노선의 혼잡도 분석 결과]

교통축	사업명	광역교통축 혼잡도(V/C)		
		미시행(A)	시행(B)	개선효과(A-B)
과천/안양축	시흥대로 지하차도	125.4%	113.8%	11.6%p
김포축	계양-서울	123.8%	119.4%	4.4%p
고양/파주축	제2자유로 성산연장	120.4%	1201.%	0.3%p

주) 교통축은 지역 간 간선교통기능을 담당하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통로를 말함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위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 없이, 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광역도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관할 지자체가 모두 동의하였다는 사유로 V/C가 0.74로서 교통류 흐름이 원활한 "검단-대곡 간 광역도로"를 신규사업으로 포함시켰음.

또한, "벌말로 확장" 및 "봉오대로~김포공항 확장" 광역도로 사업의 경우 제2차(2012~2016년) 및 제3차(2017~2020년)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기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다는 사유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음.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도권 광역도로 혼잡도 분석 결과]

교통축	사업명	광역교통 혼잡도(V/C)		
		미시행(A)	시행(B)	개선효과(A-B)
인천-김포축	검단-대곡	76.4%	74.8%	1.6%p

57) Volume/Capacity: 도로용량 대비 실제 교통량의 비율로 그 값이 클수록 도로가 더 혼잡함

58) 두 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교통축	사업명	광역교통 혼잡도(V/C)		
		미시행(A)	시행(B)	개선효과(A-B)
광명축	천왕-광명시계	96.2%	95.9%	0.3%p
구리/남양주축	태릉-구리IC	88.1%	87.4%	0.7%p
인천-김포축	인천서구 거점도-약암리	76.4%	76.3%	0.1%p
인천/부천축	벌말로 확장	93.7%	90.3%	3.4%p
인천/부천축	봉오대로-김포공항 확장	91.2%	90.3%	0.9%p

자료: 국토교통부

더욱이 계획수립 연구용역결과와 관계없이 임의로 선정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른 수도권 광역도로 사업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수도권 7개 사업 중 5개는 지난 5년간 예산에 반영조치 되지 않았으며, 1개 사업은 집행실적이 전혀 없어,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유명무실했던 측면이 있음.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른 수도권 광역도로 사업 진행 상황]

구분		사업명	연장 (㎞)	사업비 (억원)	시행계획 반영 여부	예산 반영 여부
신규	1	검단-대곡	3.0	548	4차	2년간 집행률 0%
계속	2	천왕-광명시계	6.9	1,381	3,4차	예산 미반영
	3	동부간선도로	9.5	3,880	3,4차	예산 미반영
	4	태릉-구리IC	4.7	621	3,4차	예산 미반영
	5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	6.4	465	3,4차	정상추진
	6	벌말로	8.0	2,530	2,3,4차	예산 미반영
	7	봉오대로-김포공항	2.4	860	2,3,4차	예산 미반영
합계 (7개)			40.9	10,285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업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추진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혼잡도 개선 효과 등도 큰 비중을 갖고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광역교통축 혼잡도 개선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대상사업을 선정·추진할 필요가 있음.

13.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GTX와의 경합노선 조정 등을 통해 예산 지원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은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광역버스 운송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대신 노선 선정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해 국가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77억 7,500만원(80.6%)이 증액된 1,519억원이 편성되었음.[59)]

[2025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99,765	163,774	64,009	64.15
광역버스 준공영제	84,125	151,900	67,775	80.6

광역버스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버스 중 광역 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일반 광역버스)를 의미하는데, 이 사업은 경기도 직행좌석형 버스에 대해 국비 50%, 지방비 50%로 운송적자를 지원하는 것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기존) 214개 노선 × 1,400백만원(1개 노선/年) × 지자체 보조 50 % +
(신규 이관) 36개 노선 × 1,400백만원(1개 노선/年) × 지자체 보조 50 % × 1/12개월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광역버스 노선과 경합되는 GTX 노선이 부분 개통됨에 따라 광역버스 승차인원이 감소하였는 바, GTX 개통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수송실적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59)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4931-342)(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노선을 감차하거나 통·폐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192개 노선의 연차별 이관이 모두 완료('25년)될 경우, 연 1,700억원~1,800억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어 재정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준공영제 연차별 예산액 추이]

(단위: 억원, 개)

연도	'20	'21	'22	'23	'24	'25	'26예상	'27예상	'28예상
예산액	13.5	40.5	364	560	841.25	1519	1753.5	1795.5	1837.5
노선수	9	27	101	153	214	250	256	262	268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GTX-A 부분개통 구간 중 동탄↔서울역 구간과 경합되는 광역버스 노선을 살펴본 결과 GTX-A 부분개통 전후 14개 노선의 승차인원이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60]

더욱이 2024년말 운정-서울역 구간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며, 20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 등을 고려하면 경합노선 확대에 따른 광역버스 승차인원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GTX-A 경합노선 현황]

연번	노선&업체	기점 정류소	종점 정류소
1	6002화성여객	동탄2차고지	신분당선강남역
2	M4108대원고속	나루마을	서울역
3	M4403대원고속	나루마을	강남역
4	G6009화성여객	호수자이파밀리에	잠실광역환승센터
5	6008화성여객	동탄2차고지	서초역
6	6002-1화성여객	한화꿈에그린	신분당선강남역
7	6004화성여객	동탄국제고등학교	신분당선강남역
8	6001화성여객	동탄2차고지	강남역
9	4108화성여객	나루마을.월드반도	서울역버스환승센터.6번홈(중)
10	4403화성여객	나루마을.월드반도	신분당선강남역
11	M4130화성여객	호수자이파밀리에	서울역
12	M4137화성여객	아이파크	서울역
13	M4434화성여객	동탄2	강남역(동탄대로)
14	M4448화성여객	동탄2	강남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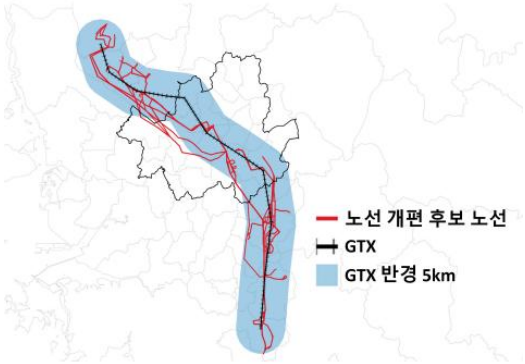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60) (전) '24. 3. 20. 및 3.27. 총 승차인원 평균, (후) '24. 4.3, 및 4.17일 총 승차인원 평균

참고로, 한국교통연구원[6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315개 전체 광역버스 노선의 GTX 개통 전 노선 평균 일평균 수송량은 1,661명, GTX 전체 구간 개통 후 1,291명으로, 전체 노선 일평균 수송량은 약 370명(22.3%)이 줄어들고, 수송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노선의 경우 약 3,449명(42%)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그 중 20개 노선은 GTX 개통 전 수송실적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구간 개통 후 수송실적이 64% 급감하여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GTX-A와 경합되는 광역버스 노선도]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따라서, GTX 개통에 따른 광역버스 수요 감소율이 커서 수송실적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감차 또는 통·폐합을 통해 정부의 운송적자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1) 「출퇴근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광역급행철도 경합 광역버스 노선 개편 방향」, 한국교통연구원, 2023.10.

14.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 사업: 교통보조수당 지급액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 사업은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하여 발주 및 계약 체결, 설계・시공 등 사업관리를 위한 신공항건설공단 설립・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6억 2,200만원(150.6%) 증액된 24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62)]

[2025년도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	9,708	24,330	14,622	150.6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관운영을 위한 임직원 인건비 173억원과 경상비 70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직원에게 교통보조수당을 매월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액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운영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교통보조수당 3억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는 3급 이하 직원 109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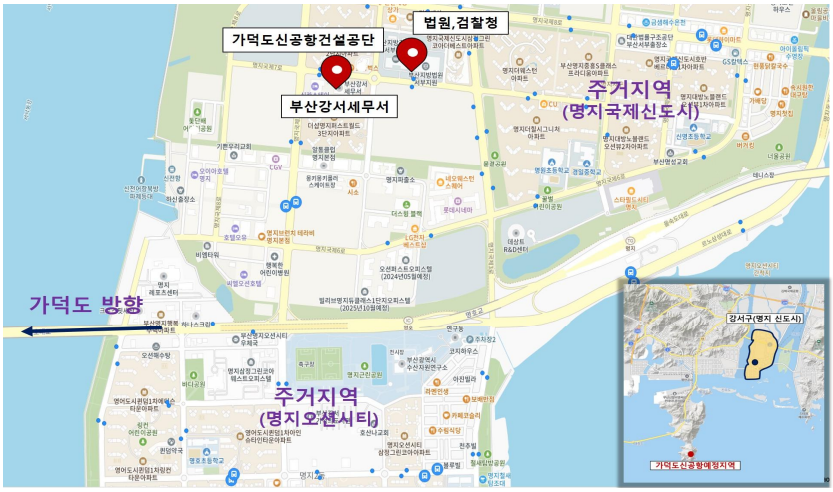
그런데 공단의 위치가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인근에 현재 개발 중인 명지국제신도시에 위치하여 인프라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63)] 「지방공무원 수당 등

62)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 (3538-313)(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63)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44

에 관한 규정」[64]에 따르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3~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급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위치]



이에 대해 공단은 교통보조수당을 지급 중인 직원 22명 중 50%(해운대 5명, 동래·서면 등 부산시내 6명)가 장거리(약 1시간 20분 내외) 출퇴근 중으로 공단 사무실까지 출근을 위해서는 유료도로 이용이 필수적(1.04만원/일)으로 한 달 기준 약 21만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음.[65]

그러나 부산시내에서 지하철 1회 + 버스 1회 탑승으로 공단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66], 공단보다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새만금개발공사[67] 등 최근 설립된 유사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도 교통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2025년 기준 공단 직원의 연 평균급여가 8,200만원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높은 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6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범위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65) (해운대→공단) ①광안대교 1,000원, ②부산항대교 1,400원, ③남항대교 1,400원, ④을숙도대교 1,400원

66) 부산지하철 하단역 하차 후 공단까지 시내버스로 20~30분 소요

67) 군산역에서 새만금개발공사까지 대중교통 노선은 1개로, 배차간격은 1시간임

15.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사업: 노후차량(폐차) 판매수익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조정 필요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사업은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도시철도 차량의 적기교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45억 1,600만원(93.8%) 증액된 1,126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68]

[2025년도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58,100	112,616	54,516	93.8

이 사업은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차량에 대해 서울시 및 부산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보조율: 서울 25%, 부산 30%)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일반출자금(460-01, 출자비율 30%)으로, 연차별 지급비율(1차 10%, 2차 20%, 3차 30%, 4차 40%)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지자체보조금(330-03) : 98,754백만원
 가. ’25년도 신규 노후차량 교체 발주 노후차량 368칸에 대한 1차년도 시행 비용 11,776백만원 지원
  · 서울시 368칸 × 칸당 철도차량 가격 1,280백만원 ×지원율 25% × 1차년도 지원율 10% = 11,776백만원
 나. ’24년도 노후차량 교체 발주 노후차량 358칸에 대한 2차년도 시행 비용 25,062백만원 지원
  · 서울시 190칸 × 칸당 철도차량 가격 1,280백만원 ×지원율 25% × 2차년도 지원율 20% = 12,160백만원
  · 부산시 168칸 × 칸당 철도차량 가격 1,280백만원×지원율 30% × 2차년도 지원율 20% = 12,902백만원
 다. ’23년도 노후차량 교체 발주 물량 272칸에 대한 3차년도 시행 비용 27,494백만원 지원
  · 서울시 200칸 × 칸당 철도차량 가격 1,280백만원 ×지원율 25% × 3차년도 지원율 30% = 19,200백만원
  · 부산시 72칸 × 칸당 철도차량 가격 1,280백만원×지원율 30% × 3차년도 지원율 20% = 8,294백만원
 라. ’22년도 노후차량 교체 발주 물량 260칸에 대한 4차년도 시행 비용 34,422만원 지원
  · 서울시 200칸 × 칸당 철도차량 가격 1,280백만원 ×지원율 25% × 3차년도 지원율 30% = 34,422백만원
○ 일반출자금(460-01) : 13,862백만원
 가. ’25년도 노후차량 교체 발주 노후차량 물량 152칸에 대한 1차년도 시행 비용 5,837백만원 지원
  · 한국철도공사 152칸 × 칸당 철도차량 가격 1,280백만원 ×지원율 30% × 1차년도 지원율 10% = 5,837백만원
 나. ’24년도 노후차량 교체 발주 노후차량 물량 104칸에 대한 2차년도 시행 비용 8,025백만원 지원
  · 한국철도공사 104칸 × 칸당 철도차량 가격 1,280백만원 ×지원율 30% × 2차년도 지원율 20% = 8,025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68)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3031-351)(철도국)

나. 검토의견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사업은 기존 객차 판매수익을 제외한 기준 단가 적용을 통해 향후 3년간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보조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객차 CCTV 설치는 타 사업으로 이관하고, 기존 객차의 판매 수익 등을 제외하여 기준단가를 적용' 하여 "향후 3년간 높은 수준의 감축" 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지원단가를 12억 8,000만원으로 유지하면서,[69]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보조사업에 해당하므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70] 에 따라 폐차 수익을 반납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함.

한편,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출자금이라 별도 정산을 실시하지 않지만, 예산 지원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출자규모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폐차판매는 최고가 경쟁입찰으로 폐차수익 금액의 예측이 어려우므로 예산편성단계에서 이를 고려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최근 3년간 도시철도 노후차량 폐차시 평균 판매단가를 살펴본 결과 1칸당 약 2,500만원으로 판매수익에 대한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도시철도 노후차량 폐차 판매 금액]

(단위: 칸, 천원)

구분	폐차 수	금액	단가/칸
서울시	10	260,580	26,058
부산시	146	2,826,022	26,205
철도공사	726	17,658,510	24,323
합계	882	21,745,112	24,654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출자사업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에서 '최소 소요' 만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한국철도공사는 2021년 정부 지원

69) 객차 CCTV 설치사업은 2022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되었음

7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을 최초로 받아 교체대상이 된 74칸이 2024년 기대수명이 도래되어 폐차 진행 중에 있으나 판매수익에 대한 처리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원단계에서부터 단가를 조정하면 국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도시철도 노후차량 지원 현황]

(단위: 칸)

지 역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2,086	572	260	272	462	520
서울시	1,316	298	260	200	190	368
부산시	440	200	-	72	168	-
철도공사	330	74	-	-	104	152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서울시 및 부산시의 경우 2025년 예상되는 폐차 판매수익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한 후 국고로 세입조치하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폐차 판매수익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71]

71)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대상 차량 2,086칸의 폐차 판매수익은 대략적으로 521억 5,000만원이고 그 중 국고 지원 비율을 30%로 가정하면 약 156억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6. 과적단속 운영: 특정감사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과적단속운영’ 사업은 도로 및 도로구조물 보호를 위하여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의 인건비 및 단속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억 3,900만원(5.8%)이 증액된 426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72)]

[2025년도 과적단속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과적단속운영	40,307	42,646	2,339	5.8

이 사업에는 저속·고속·이동식 축중기[73)] 유지관지를 위한 예산 30억원(166.7백만원 × 18개 국토관리사무소)이 편성되어 있음.

나. 검토의견

전국의 과적단속장비(고속축중기) 15개 중 9개가 불량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특정 유지보수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하여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었는 바, 현재 진행 중인 특정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74)] 고속축중기(1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75)]

---

72)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과적단속운영(1732-303)(도로국)

73) 차량의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또는 기계적 장치

74) 과적검문소 500m 전방에 설치되어 과적혐의 차량을 선별

75) 국토교통부, 「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 2024.5.

그 결과 전체 15개소 중 9개소의 고속축중기 센서가 오차율을 초과한 불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76] 고속축중기 유지관리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그런데, 불량상태의 고속축중기를 사용하고 있는 국토관리소의 유지관리업체를 확인한 결과, 특정 업체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국토관리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2	2021	200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홍천	금액	63	23	32	30	19	24	23	16	15	16	15
(불량)	업체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논산	금액	40	13	37	36	26	32	29	28	25	14	10
(불량)	업체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전주	금액	41	28	66	54	44	44	37	24	38	45	37
(불량)	업체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포항	금액	247	98	130	132	89	98	61	89	86	82	52
(불량)	업체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예산	금액	40	13	19	29	34	20	28	41	41	23	6.8
(불량)	업체	AA	AA	BB	BB	AA	AA	AA	AA	AA	AA	AA
영주	금액	247	98	36	36	31	38	43	43	25	9	43
(불량)	업체	AA	AA	CC	CC	CC	CC	CC	CC	CC	CC	CC

주: 업체명은 익명처리함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센서 및 제어기 등은 특정업체의 독점방지를 위해 고속축중기 운영체계 표준화를 마련('24.8)하였으며, 다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데이터 정확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향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현재 고속축중기 유지관리 등 전반적 문제점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체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76) 고속축중기 정확도 기준 : 축하중 80% 이상, 총중량 90% 이상
- (축하중) 차량이 수평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
- (총중량) 차량이 수평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차량의 모든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의 합 또는 모든 차축에 작용하는 축하중의 합

17. GTX-A 선개통 운영비 사업: 서울시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GTX-A 선개통 운영비'** 사업은 GTX 삼성역 구간 개통 지연에 따른 순운영이익(손실금) 보전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6억 2,400만원(△61.6%) 감액된 191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77]

[2025년도 GTX-A 선개통 운영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민자철도운영지원	872,355	917,060	44,705	5.1
GTX-A 선개통 운영비	49,730	19,106	△30,624	△61.6%

동 사업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삼성역 정거장 개통이 당초 '21년에서 '28년으로 지연됨에 따라 파주운정~삼성 광역급행철도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가 연결되지 못해 개통지연에 따른 영업손실금을 GTX-A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된 것임.

이에 따라 GTX-A 전 구간(파주운정~동탄) 완전 개통을 기준으로 한 실시협약('18.12)상 순운영이익에서,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파주운정~서울역 구간 및 수서~동탄 구간을 분리 운영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25년 순운영이익의 차액 1,185억 2,600만원 중 일부(164억 4,000만원)를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임.[78]

77)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민자철도운영지원 (2732-309)(철도국)

78) 2024년 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서울역(민자) 구간이 개통 예정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 선개통 운영 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위탁 운영비용 지급 소요(2024년도 예산액 497억 3,000만원)는 전액 감액되었음.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191억 600만원은 순운영이익 보전금(164억 4,000만원) 외에 어린이(할인율 50%), 청소년(10%), 노인(30%), 장애인(50%), 유공자(50%)를 대상으로 하는 요금 할인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운임수입 손실금 26억 6,600만원을 포함하여 191억 600만원이 편성된 것임

나. 검토의견

첫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GTX 삼성역 구간 개통 지연 원인은 서울시의 기본설계 기간 과다, 과도한 총사업비 요구, 국토부에 사실 은폐 등으로 밝혀진바,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손실보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삼성역 개통 지연 원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79] 서울시의 국제공모에 따른 설계 장기화(기본설계 22개월), 총사업비 과다요구(기본계획 대비 107% 증가)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GTX-A 영업손실금 일부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점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음.

[삼성역 개통 지연에 대한 감사 결과]

국토부는 서울시가 삼성역을 2023년에 임시개통하기로 협의(2020년 5월)하였으나 이후 2026년 말 개통하는 것으로 서울시 입장이 변경되었다고 2020. 8. 19.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삼성역 정거장 개통 지연 시 **GTX-A 영업손실금 일부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점**을 서울시에 설명하여 삼성역 조기 개통이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의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

자료: 감사원

현재 2025년도 예상 영업손실금 중 13.8% 정도만 예산에 반영되어 손실금 보전 지연에 따른 추가 이자까지 부과될 우려가 있는 바,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서울시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실보전금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체결 당시 삼성-동탄 구간의 적기 준공이 어려울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

79) 감사원, 「국가철도공단 정기감사」, 2021. 11.

서울시는 2017. 2. 10. 시장이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의 디자인 및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하였다는 사유로 기본설계에만 22개월이나 소요되는 국제설계 공모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사업추진 방식을 채택한 후 2017. 8. 10. 국토부의 동의 없이 삼성역 정거장을 2023년 12월 개통하는 것으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서울시는 기본설계 과정에서도 2019. 7. 25. 삼성역 철도시설 공사 사업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체적비율에 따른 지하공간 개발 사업비 분담(안) 및 터널 시공방법 변경(안) 등 서울시의 지하공간 통합개발로 증가하는 사업비를 삼성~동탄 노선의 총사업비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며, 삼성역 철도시설 공사 사업비를 기본계획(1,324억원) 대비 107.7% 증가한 금액(2,750억원)으로 기본설계하여 국토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약 11개월이 지난 2020.6.2.에서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1,841억원)가 완료되는 등 서울시의 과도한 사업비 요구로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되어 삼성역 철도시설 공사의 발주·착공도 더욱 늦어지게 되었다.

한 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민자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재정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는 삼성역 철도시설 공사가 포함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7년 2월 디자인 및 품질을 최우선하라는 내부 방침 변경으로 기본설계에만 22개월이나 소요되는 국제설계 공모 방식을 채택하였고, 2017년 8월 삼성역 정거장을 2023년 12월 개통하는 것으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의 관계기관 추진협의체 회의[80] 등을 통해 2017년 기본계획 협의 당시 서울시의 삼성역 철도시설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7년 3월, 5월,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삼성역 구간 공사를 2021년 삼성-동탄 개통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되었음.

[삼성역 개통 지연에 대한 감사 결과]

서울시는 2017. 3. 6., 2017. 11. 30., 2018. 1. 26. 및 2018. 3. 30. 등 네 차례 관계기관 추진협의체 회의 및 2017. 9. 12. 정책협의 TF회의에서 2021년 삼성역 정거장 개통이 어렵다는 구두 의견을 제시하였고, 2019. 1. 31. 관계기관 추진협의체 회의에서는 삼성역 구간 공사를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삼성역 2023년 12월 개통(2018. 10. 23. 합의된 삼성역 변경 개통예정일)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기본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가 약 1년 반 동안 지연되어 국토부는 당시 변경된 개통예정일인 2023년 12월에 삼성역 개통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이에 국토부는 삼성역 적기 개통 여부 확인 등을 위해 2017. 3. 31.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공문을 송부

자료: 감사원

즉, 국토교통부는 손실보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실시협약 체결시 삼성-동탄 구간이 적기에 준공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가 순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전한다는 내용만 포함시켜, 이번 사안과 같이 국토교통부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도 우선적으로 전액 손실보전을 해야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음.

[GTX-A 실시협약의 적기준공 조항]

제57조(삼성-동탄사업 적기준공) ①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시설이 본 사업시설 운영개시일까지 개통되도록 조치하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설이 본 사업시설 운영개시일 전까지 개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 본 사업시설 운영개시일까지 개통되지 않음으로 인해 순운영익이 감소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지연기간(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통까지의 기

80)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강남구, 서울메트로 등으로 2016. 6. 24. 구성된 업무 협의체임

간) 동안의 순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전한다.(이하 생략) ④ 주무관청은 제2항의 순운영이익 감소분 금액을 지급하되, 협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운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자료: 국토교통부

비록, 실시협약 제57조 제4항이 운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운임상향은 영업손실을 일반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이므로 적용하기 어렵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영업손실분 충당 비중이 미미하다는(13~14%) 입장임.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실시협약 체결 당시부터 수천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 외에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에서 일부 구간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 보전 사례, 철도사업 외 민간투자 사업에서의 협약 및 손실보전 사례, 민자철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의 규정 및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향후 진행될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8.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자부담 확대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2억 500만원(△4.3%) 감액된 1,602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81]

[2025년도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232,427	226,412	△6,015	△2.6
저상버스도입보조	167,495	160,290	△7,205	△4.3%

저상버스 도입지원사업은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단가의 차액(9,200만원) 중 9,000만원[82]에 대해 법정 보조율(서울 40%, 기타 시·도 50%)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었는데,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단가 차액을 정부가 대부분 보조해 줄 경우 보조금이 버스 판매가에 반영되어 시장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송사업자의 자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2004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을 추진하였고,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정

81)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301)(교통물류실)

82) ’21년 판매가격 기준으로 CNG저상버스는 2억원, 일반버스는 1억 800만원으로 그 차액은 9,200만원임

부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판매가격 차액에 대해 보조를 해오고 있었음.

한편, 2022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제7항 신설[83]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 재정지원이 없어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임.

즉,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지원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의 보완적인 정책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도 정책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단가의 차액의 2%인 200만원을 운송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자부담을 확대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차액 대부분을 정부가 보조해 주고 있어 보조금이 버스 판매가에 반영되어 시장가격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송사업자의 자부담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를 살펴보면, 시장·군수 등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계획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제3항)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제4항),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아 지원근거 자체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8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③ 시장 ·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상버스등의 도입, 저상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8. 2. 21., 2020. 10. 2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 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노선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1. 18.>

19. 공항소음대책 사업: 항공수요 회복추이를 고려한 소음부담금 추계치 반영 필요

가. 개 요

‘공항소음대책’ 사업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방음·냉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29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84)]

[2025년도 공항소음대책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공항소음대책	12,909	12,909	-	-

나. 검토의견

공항소음대책사업비의 재원 중 소음부담금에 대한 적절한 추계를 하지 않고, 2년전 징수액을 근거로 편성하여 2025년도 중기계획에 따른 사업비와 예산액 간에 100억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항공수요 회복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소음부담금 징수액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85)]에 따르면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은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86)], 시설관리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착륙료의

84)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공항소음대책(3632-301)(항공정책실)

8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자금)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법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이란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 중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 수익의 100분의 75를 말한다.

75%)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제3차(2021-2025)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에 따르면 공항소음대책사업비는 2021년 314억원에서 2025년 637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는 중기계획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소음부담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차년도(2025년) 예상치가 아닌 2회계연도 이전(2023년) 소음부담금 징수액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회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즉, 2024년 말까지 징수예정액은 80억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으나, 소음부담금 예산액은 57억원으로 20억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2025년 징수예정액은 97억원이나 예산안은 65억원만 편성되어 약 32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2025년에는 중기계획에 따른 사업비(637억원)와 예산액(536억원) 간 약 100억원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공항소음대책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고지원금	예산액(A)	7,415	6,143	4,807	-	-
소음부담금	중기계획	9,902	10,249	10,608	10,979	11,363
	예산액(B)	9,902	7,768	9,093	5,782	6,508
시설관리자 부담 (착륙료 75%)	중기계획	21,500	47,270	48,924	50,636	52,408
	예산액	45,200	32,030	32,700	47,415	47,184
	집행액(C)	19,002	22,242	36,090	47,415	-
공항공사 추가 부담	예산액	-	9,155	11,500	-	-
	집행액(D)	17,619	4,433	△6,690	-	-
총사업비	중기계획	31,402	57,519	59,532	61,615	63,771
	예산액	62,517	58,108	58,100	53,197	53,692
	집행액(A+B+C+D)	53,938	40,585	43,300	27,938	-

주) 소음부담금과 순수 국고보조금은 편성된 예산액이 전액 집행됨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항공수요 회복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의 소음부담금 징수액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86)「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부담금의 부과 ·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20.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착공시기 지연을 고려하여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277억 400만원(79.7%)이 증액된 9,640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87]

[2025년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가덕도신공항 건설	536,321	964,025	427,704	79.7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은 2023~2032년이고, 총사업비는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접근철도를 포함하여 15조 6,056억원임.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개요]

구 분	시설규모
면적	6,669천㎡
사업기간	2023~2032년
항공수요	국제선 여객 2,326만명, 화물 33.5만톤
총사업비	15조 6,056억원 (신공항 13조 7,011억원, 접근도로 6,297억원, 접근철도 1조 2,748억원)
접근도로	연장 9.3km(4차로)
접근철도	연장 16.5Km(복선전철)

자료: 국토교통부

2025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항건설 8,649억 800만원, 접근철도 194억 8,000만원, 접근도로 194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87)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가덕도신공항 건설(3538-308)(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공항〉 864,908백만원 -건설보상비 160,993백만원, 기본조사설계비 40,879백만원, 공사비 604,084백만원, 감리비 : 57,978백만원, 시설부대비 : 974백만원 〈접근철도〉 19,480백만원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접근철도)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에 2025년 사업 시행을 위한 출연금 필요: 공사비 19,480백만원 〈접근도로〉 79,637백만원 -건설보상비 :33,664백만원, 공사비 : 45,053백만원, 감리비 866백만원, 시설부대비 : 54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공사비 등이 2025년 6월 착공을 전제로 6개월분이 편성되어 있으나, 부지조성공사가 4차례 유찰되어 2025년말 공사 착공 예정이므로 추가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일정과 관련하여 개항 필수시설은 2029년 12월 준공, 그 외 시설은 2032년 준공하되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공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힐 뿐 연도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한편, 최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공종이 동시 진행되고, 대규모 해양 매립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의 비중이 큰 점, 연약지반에 대한 해상 시추조사는 기상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 및 설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기간을 6년에서 7년, 기본설계는 5개월에서 6개월, 실시설계는 5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하기로 하였음.[88]

그런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4차례 유찰되고 2024.9.12. 수의계약 전환 결정 후 현대컨소시엄에서 10.14. 수의계약 참여의사를 조달청에 회신함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기본설계(6개월), 실시설계(6개월)을 거쳐 2025년 말 착공 예정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2025년 6월 착공을 전제로 6개월분이 편성되어 있음.

88)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조건 변경」, 2024.7.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사업출연금(350-02) 864,908백만원
가. 건설보상비 : 160,993백만원
나. 기본조사설계비 : 40,879백만원
다. 공사비 : 604,084백만원
· 부지조성 : 604,084백만원,
* ① 설계비(81,720) ② 공사비(522,364) : 총 공사비(10,530,002)에서 '24년 우선시공분(1,000) 및 설계비 제외 공사비(10,447,282)에 대해 연차별 투자 비율 10% 및 **'25년도 6월 착공(6개월)** 고려
※ 6개월 공사비 산출식 : (10,530,002-1,000-81,720)×0.1×1/2 = 522,364백만원
라. 감리비 : 57,978백만원
· 종합건설사업관리용역(PgM, BIM위탁사업 등) : 10,800백만원
· 부지조성공사 감리비 : 45,093백만원
* 부지조성 감리비(496,023)에서 공기 66개월 중 **'25년도 7월 착공(6개월)** 반영
· 여객터미널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비 : 2,085백만원
마. 시설부대비 : 974백만원
· 부지조성공사 시설부대비 : 974백만원
* 부지조성(974) - 시설부대비(10,710)에서 공기 66개월 중 **6개월분 반영**

자료: 국토교통부

2025년도 예산안은 준공기한에 맞춰 연차별 투자비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89]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89)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연차별 투자배부 기준(7년, 10%, 10%, 10%, 15%, 15%, 20%, 20%)을 고려하여 편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출>

21. 도시재생사업: 노후저층주거지정비 사업(뉴빌리지)과 지역특화재생 사업의 내실있는 사업 추진 필요

가. 개 요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노후 주거지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34억 600만원(10.1%)이 증액된 4,729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90]

[2025년도 도시재생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도시재생사업	429,540	472,946	43,406	10.1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제기반형·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 등 계속사업 123곳 지원에 3,671억 1,300만원, 혁신지구·지역특화재생·인정사업·노후저층주거지정비 등 신규사업 41곳 지정에 946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도시재생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ㅇ (산출) ① 계속사업 + ② 신규사업 + ③ **노후저층주거지정비사업 지원**
① 계속사업(123곳, 367,113백만원)
- 경제기반형(4곳) × (연부액 - 기지급액) × 보정율(20%~100%) = 16,661백만원
- 인정사업(6곳) × (연부액 - 기지급액) × 보정율(20%~100%) = 11,580백만원
- 일반근린형(31곳) × (연부액 - 기지급액) × 보정율(30%~100%) = 102,699백만원
- 주거지지원형(12곳) × (연부액 - 기지급액) × 보정율(20%~100%) = 42,987백만원
- 중심시가지형(20곳) × (연부액 - 기지급액) × 보정율(20%~100%) = 90,519백만원

9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도시재생사업(5641-301)(국토도시실)

- **지역특화재생(29곳) × (연부액 - 기지급액) × 보정율(10%~20%) = 33,951백만원**
- 혁신지구(11곳) × (연부액 - 기지급액) × 보정율(10~100%) = 63,716백만원
- 생활밀착형스마트기술지원(10곳) × 500백만원 = 5,000백만원

② 신규사업(41곳, 94,650백만원)

- 혁신지구(3곳) × 연부액(10%) × 보정율(20%) = 1,500백만원
- **지역특화재생(5곳) × 연부액(30%) × 보정율(10%) = 2,250백만원**
- **인정사업(3곳) × 연부액(30%) × 보정율(20%) = 900백만원**
- **노후저층주거지 정비(뉴빌리지)(30곳) × 연부액(20%) = 90,000백만원**

③ 노후저층주거지정비사업(뉴빌리지) 운영 지원 : 3,000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는 2022년 새 정부 도시재생사업 선정시 기존 사업유형을 통·폐합하여 지역특화재생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2024년 3월에는 기존 방침과 달리 지역특화재생을 축소하고 '생활밀착재생' 즉, 노후저층주거지정비 사업(뉴빌리지)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바, 각 유형별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22년 7월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5개 사업유형[91]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92]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음.[93]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2022.7.)]

□ 셋째, 지역특화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 지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강화, 관광·문화거점 조성* 및 방문코스 개발 등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한다.

* 전시·공연장, 예술 골목, 근대문화 산책로, 공방, 체험관광 및 판매장 등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등 공간조성과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여 중심·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 (제주) 모슬개 도시락(4·3사건), (군산) 째보스토리(수제맥주), (부산) 래추고(한복) 등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2022년 12월 새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면서 그 동안 도시재생사업이

91)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92) 역사·문화 등 고유자산을 활용해 스토리텔링·도시브랜드화 추진 및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93) 국토교통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 특화재생까지!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한 새정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20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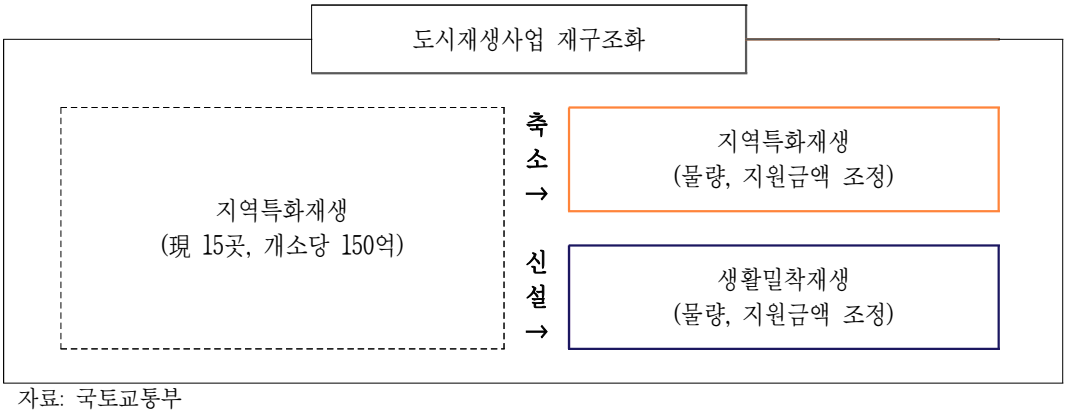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회성 사업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면서,[94] 2022년 및 2023년에 지역특화재생을 집중적으로 선정·지원하였음.

[새 정부 도시재생사업 신규 선정 관련 보도자료(2022.12.)]

> 또한,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공급 위주로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일회성 사업에 그쳤던 반면, 이번 신규사업은 산업(유기농고창)·창업지원(뷰티·SK하이닉스청주)·문화(영상테마파크합천) 등 해당 지역의 고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통해 그 동안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적극 지원하고 있었던 지역특화재생사업이 주거정비와 관련이 없으므로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2025년도 예산안에 노후저층주거지정비사업(뉴빌리지)이라는 이름으로 9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95]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도시재생사업 취소지역 8곳 중 4곳(서울구로, 대구수성, 충남공주, 제주시)이 인정사업[96]으로 나타나 10㎡ 미만의 소규모 점단위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추진함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2025년도에도 인정사업 신규 지정 3곳을 위한 예산 9억원을 편성하였음.

94) 국토교통부,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 26곳 신규 선정, '27년까지 1.5조원 투자」, 2022.12.

95) 관계부처 합동,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2024.3.19.

96) 신속한 소규모 재생사업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수립없이 시행하는 점단위 사업

[취소된 도시재생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선정	광역	기초	사업명	사업유형	마중물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매칭)
2020.12.	서울	구로구	다시 모이는 주민 서로 보듬는 공간 개봉박두	인정사업	17,200	5,000	12,200
2020.12.	대구	수성구	고산 어울림 센터 건립 사업	인정사업	3,150	250	2,900
2020.12.	충남	공주시	공주혁신파크 건립	인정사업	8,400	5,000	3,400
2020.12.	제주	제주시	함덕에 쏙(SOC) 공감센터 조성사업	인정사업	8,000	4,800.0	3,200
2017.12.	경기	고양시	화전지역 상생 활주로 “활활활”	일반근린형	21,670	13,000	8,670
2020.09.	경기	하남시	하남의 주・인・공 신장동!	일반근린형	2,591	1,573	1,018
2019.12.	인천	동구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중심시가지형	29,650	14,650	15,000
2018.08.	경기	고양시	삶이 즐겁고, 情이 송이송이 피어나는 세솔마을	주거지지원형	15,000	9,000	6,000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신규 사업인 노후저층주거지정비사업(뉴빌리지)과 기존사업인 지역특화재생사업이 각각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정사업의 경우 사업취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선정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주택도시기금】

<지 출>

22. 다가구매입임대 사업: 신축매입인 LH든든전세사업 물량의 과도한 확대 통제 필요

가. 개 요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은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조 7,288억 5,800만원(△45.1%) 감액된 3조 3,174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97)]

[2025년도 다가구매입임대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다가구매입임대출자	2,434,322	2,434,322	273,070	△2,161,252	△88.8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612,000	3,612,000	3,044,394	△567,606	△15.7
합계	6,046,322	6,046,322	3,317,464	△2,728,858	△45.1

2025년도 계획안은 든든전세사업 신규 추진을 위해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출자가 각각 1조 80억원 증액 소요가 있는 점이 특징임, 다만,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은 LH에 유보된 출자금 2조 4,638억 6,800만원과의 상계처리로 계획안은 감액 편성되었음.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사업 세부내역]

※다가구매입임대(융자) : (’24) 3,612,000 → (’25요구) 3,044,394백만원, 567,606백만원 감액
- (요구) 공급물량 및 지원단가 현실화, 든든전세 신규도입 등 감안, 신축매입 예산 3년 분할 편성, ’24년 대비 15.7% 감액 요구

①(일반) 1,062,500백만원 = 12,500호 × 170백만원 × 50%
②(취약) 170,000백만원 = 2,000호 × 170백만원 × 50%

97)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다가구매입임대출자 (1440-402)(주택토지실)
다가구매입임대(융자)(1336-401)(주택토지실)

③(청년역세권) 765,000백만원 = 9,000호 × 170백만원 × 50%
④(다자녀 리모델링) 57,500백만원 = 500호 × 230백만원 × 50%
⑤(일반 리모델링) 50,000백만원 = 500호 × 200백만원 × 50%
⑥(고령자 및 고령자 리모델링) 160,000백만원 = 2,000호 × 160백만원 × 50%
⑦(리모델링Ⅰ) 63,000백만원 = 1,200호 × 105백만원 × 50%
⑧(리모델링Ⅱ) 280,000백만원 = 2,800호 × 200백만원 × 50%
⑨(신혼부부Ⅰ) 1,128,750백만원 = 10,500호 × 215백만원 × 50%
⑫(다자녀) 102,500백만원 = 1,000호 × 205백만원 × 50%
⑬(기숙사) 80,000백만원 = 1,000호 × 160백만원 × 50%
⑭(전세피해) 637,500백만원 = 7,500호 × 170백만원 × 50%
⑮(든든전세-신규) 1,008,000백만원 = 14,000호 × 320백만원 × 22.5%

자료: 국토교통부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사업 세부내역]

※다가구매입임대(출자) : ('24) 2,434,322 → ('25요구) 273,070백만원, 2,161,252백만원 감액
- (요구) 공급물량 및 지원단가 현실화, 든든전세 신규도입 등 감안, 신축매입 예산 3년 분할 편성, LH 출자금 2,463,868백만원 상계, '24년 대비 88.8% 감액 요구

①(일반) 956,250백만원 = 12,500호 × 170백만원 × 45%
②(취약) 170,000백만원 = 2,000호 × 170백만원 × 50%
③(청년역세권) 688,500백만원 = 9,000호 × 170백만원 × 45%
④(다자녀 리모델링) 51,750백만원 = 500호 × 230백만원 × 45%
⑤(일반 리모델링) 45,000백만원 = 500호 × 200백만원 × 45%
⑥(고령자 및 고령자 리모델링) 144,000백만원 = 2,000호 × 160백만원 × 45%
⑦(리모델링Ⅰ) 56,700백만원 = 1,200호 × 105백만원 × 45%
⑧(리모델링Ⅱ) 252,000백만원 = 2,800호 × 200백만원 × 45%
⑨(신혼부부Ⅰ) 1,015,875백만원 = 10,500호 × 215백만원 × 45%
⑩(신혼부부Ⅱ) 192,000백만원 = 2,000호 × 320백만원 × 30%
⑪(커뮤니티시설) 120,600백만원 = 670개소 × 400백만원 × 45%
⑫(다자녀) 92,250백만원 = 1,000호 × 205백만원 × 45%
⑬(기숙사) 72,000백만원 = 1,000호 × 160백만원 × 45%
⑭(전세피해) 573,750백만원 = 7,500호 × 170백만원 × 45%
⑮(든든전세-신규) 1,008,000백만원 = 14,000호 × 320백만원 × 22.5%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신축매입인 LH든든전세는 기축매입인 HUG든든전세에 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공실률이 높으며 매입 후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LH든든전세의 공급물량이 과다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전세 상품을 출시하였음.[98]

든든전세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LH 든든전세’는 신축 非아파트(60㎡~85㎡)를 매입한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다자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의 전세로 공급하는 것이고, ‘HUG 든든전세’는 HUG가 전세금반환보증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임대 공급하는 것임.

두 제도를 비교하면, LH 든든전세는 정부 지원금액이 호당 3억 2,000만원으로 목표물량 달성을 위해 총 1조 80억원의 기금이 투입되지만,[99] HUG 든든전세는 매입비용 부담없이[100] 경매낙찰을 통해 신속하게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을 통해 HUG의 재무건전성과 유동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음.[101]

또한, LH 든든전세와 같은 신축매입의 공실률은 4.58%로 기축매입(2.61%)보다 높아 예산집행상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음.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공실률 현황]

(단위: 호)

구분	호수(A)	공실(B)	공실률(B/A)
계	178,844	5,218	2.92%
기존주택	150,958	3,941	2.61%
신축약정	27,886	1,277	4.58%

자료: 국토교통부

98) 국토교통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호 추가 매입」, 2024.4.

99) 14,000호 × 3.2억원 × 22.5%

100) 경매낙찰비용-배당수익 상계 처리로 매입비용 추가 부담없음

101) (재무건전성 제고) 재무적 측면에서 볼 때, 대위변제주택 소유권 취득 시 구상채권이 부동산 자산으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재무건전성 제고 효과 발생
(유동성 확보) HUG가 대위변제주택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현금유입되어 유동성 확보 효과 발생

아울러 기축매입은 매입 후 입주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신축매입은 통상 2년이 소요되어 신속한 임대주택 공급취지에도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2021년 매입한 공공전세주택[102]은 2024년 현재까지 입주자 공고와 계약이 진행되고 있음.

[공공전세 주택 매입 및 계약 실적]

(단위: 호)

구분	2021	2022	2023	2024.9	합계
매입(약정)호수	4,195	3,946	-	-	8,141
공고호수	857	1,432	2,004	1,642	5,935
계약호수	441	967	1,366	856	3,630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같이 신축매입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신축매입인 LH든든전세에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있고 서울의 非아파트 신축매입을 '무제한'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바,[103] 신축매입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든든전세 목표물량 및 예산안]

세부내역		목표 물량			'25년 예산안
		2024년	2025년	합계	
매입형	LH 든든전세(신축)	0.84만호	1.4만호	2.24만호	3,427억원
	HUG 든든전세(기축)	0.55만호	1.1만호	1.65만호	비예산
임차형	非아파트 전세임대	-	0.5만호	0.5만호	5,200억원
계		1.39만호	3만호	4.39만호	8,627억원

자료: 국토교통부

102) 중형평형(60~85㎡)의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든든전세와 기본적인 사업구조는 동일함. 참고로, LH는 '21년~'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2,860호를 확보하였으며, 약 1,600호에 대해 2024년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함.

103)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4.8.8.

23. 민간임대(융자) 사업: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에 대한 지원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민간임대(융자)’ 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29억 9,100만원(1.5%) 증액된 1조 5,000억원이 편성되었음.[104]

[2025년도 민간임대(융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민간임대(융자)	1,477,009	1,477,009	1,500,000	22,991	1.5

‘임대주택리츠출자’ 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토지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2025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500억원(50.0%) 증액된 4,500억원이 편성되었음.[105]

[2025년도 임대주택리츠출자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임대주택리츠출자	300,000	300,000	450,000	150,000	50.0

민간임대(융자) 및 임대주택리츠출자 사업은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나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임대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06] 등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세대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104)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민간임대(융자)(1333-404)(주택토지실)

105)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임대주택리츠출자 (1440-409)(주택토지실)

106)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리츠를 설립한 뒤 리츠가 시행자 입장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는 방식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유형을 신설하였음.[107)]

이 사업은 공급모델을 규제·지원 모두 최소화한 모델(자율형)부터 일부 공적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결합된 모델(준자율형 및 지원형)까지 구성하여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유형]

■ (자율형) 규제·지원 최소화→ 임대료규제 모두 폐지, 지원도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 적용 ■ (준자율형)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 적용 + 기금융자·지방세감면 등 혜택 추가 ■ (지원형) 초기임대료까지 제한(95%)하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 확대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는 기존의 공공지원민간임대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규제 등 공적 의무가 완화된 측면이 있음에도 국비 지원수준은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므로, 기금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는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108)] 및 법인 중과세제[109)]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였는 바, 기존의 공공지원민간임대보다 공적의무가 완화된 측면이 있음.

[기존 민간임대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비교]

구분			현행 10년임대		기업형 장기임대		
			장기 일반	공공 지원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최소 임대기한			10년		20년		
아파트 매입임대 허용			X	●	●	●	●
임대	주임법	2+2년 연장, 갱신시 5% 상한	●	●	●	●	●
	민간	임대보증 가입+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	●	●	●	●

107) 국토교통부,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2024.8.28.

108) ①초기임대료 규제, ②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③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④임차인대표회의 협의의무, ⑤임차인 변경시에도 5% 상한 적용 등

109)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료 규 제	임대법	임대기간 계약갱신청구권, 갱신시 5% 상한	●	●	X	●	●
		초기임대료 규제(시세 95%)	X	●	X	X	●
		임차인 제한(청년, 신혼부부 등)	X	●	X	X	●
		임차인 변경시에도 5% 상한	●	●	X	X	X
		임대료 상승률 CPI 연동	●	●	X	X	X
		임차인대표회의 협의의무	●	●	X	X	X
세제	중과	취득·종부·법인세 중과	△	X	X	X	X
공 적 지 원	도시계획	용적률 완화, 건축규제 완화 등	X	●	●	●	●
	세제	취득·재산세 감면	●	●	X	●	●
	금융	PF 보증	X	●	●	●	●
		기금 융자	●	●	X	●	●
		기금 출자	X	●	X	X	●
		보험업 주택임대 허용	△	△	●	●	●
	택지	공공택지 할인 공급	X	●	X	X	●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	X	X	X	X	X
		법인이 임대업자에게 토지매각시 법인세 감면	●	●	●	●	●
		개인이 임대업자에게 토지매각시 양도세 감면	X	X	●	●	●
	수익실현	포괄양수도시 세제 미추징	X	X	●	●	●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의 융자한도를 살펴보면, 공공지원민간임대 호당 융자한도인 0.7 ~1.2억원[110] 보다 높은 0.9~ 1.4억원을 지원하고, 출자금도 공공지원민간임대와 동일한 수준인 자기자본 중 70%를 우선주로 출자하도록 하고 있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수준은 높거나 비슷한 것으로 보임.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구분		45㎡ 이하		45~60㎡		60~85㎡	
		건설	매입	건설	매입	건설	매입
호당 융자한도		0.9억	0.7억	1.2억	1억	1.4억	1.2억
금리	지원형	2.0%	2.0%	2.3%	2.3%	2.8%	2.8%
	준자율형	2.2%	-	2.5%	-	3.0%	-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의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비해 임

110) 다만,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융자한도를 2023.10부터 2024.6까지 한시적으로 호당 0.9 ~ 1.4억원으로 확대하였음

대기간이 2배로 늘어나는 측면도 고려하여 임대료 규제완화, 세제혜택, 금융지원을 균형있게 설계한 것이라 밝히고 있음.

그러나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보다 임대료 규제 등이 강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고가의 임대료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111] 분양 전환 여부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입주율이 최저 22.1%에 불과한 상황에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적 지원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

[공공지원민간임대 단지 입주율 (24.7월 기준 80% 이하)]

순 번	사업유형	사업장	입주율	총세대수
1	택지공모	대구금호S-1	73.94%	591
2	택지공모	양주옥정 A19-2BL	66.50%	1,304
3	택지공모	양산사송 B-8BL	22.10%	903
4	택지공모	화성동탄2	54.22%	332
5	민간제안	대구대명	62.50%	96
6	민간제안	대구포정	68.30%	287
7	민간제안	당진대덕	47.70%	406
8	민간제안	대구대명(1단지)	70.22%	178
9	민간제안	대구대명(2단지)	59.63%	270
10	민간제안	이천 부발	51.70%	406
11	민간제안	천안두정	72.10%	586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기존의 공공지원민간임대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의 규제 완화 정도 차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적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111) 참여연대, 「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한 뉴스테이 되풀이할 셈인가?」, 2024.8.
한국경제, 「임대 부진에…HUG 경고장 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24.2.
아시아투데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찬밥 신세」, 2024.2.
에너지경제신문, 「“더 비싼데 왜 들어가?” … ‘계륵’ 된 민간임대주택」, 2024.2.

24. 통합공공임대출자: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와 배치되는 증액 편성 부적정

가. 개 요

‘통합공공임대출자’ 사업은 입주자격·임대료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관점에서 개선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2025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262억 6,200만원(35.1%) 증액된 1조 6,424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음.[112]

[2025년도 통합공공임대출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통합공공임대출자	1,216,141	1,216,141	1,642,403	426,262	35.1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입주자의 자격 및 임대료 등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113]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 기준이 복잡하여 수요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이에 정부는 입주자격 통합, 부담능력에 따른(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 가구원수별 대표 면적 도입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고 2021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음.

2025년도 계획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출자 1억 2,011억 8,800만원 및 지자체에 대한 자본보조 4,412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보조율 33~39%).

나. 검토의견

통합공공임대출자 사업은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축’ 평가에도 불

112)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통합공공임대출자 (1440-411)(주택토지실)

113) 최저소득 계층(영구임대), 저소득 서민(국민임대), 신혼부부·청년(행복주택)

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 바, 연장평가 결과 및 연례적 집행 부진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통합공공임대출자 사업 중 지자체에 대한 자본보조 부분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승인 실적은 목표 대비 달성도가 2022년 20.3%, 2023년 52.5%에 불과하고, 실집행률 또한 2022년 42.9%, 2023년 39.3%로 저조하였음.

2024년 또한 8월말 기준 사업승인 실적은 목표 대비 9.4%, 실집행률은 28.7%에 불과하여 연례적 집행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통합공공임대출자 자치단체 보조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승인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계획액	집행액	실집행률
2022	14,000	2,848	20.3%	102,326	43,896	42.9%
2023	6,591	3,458	52.5%	205,013	80,719	39.3%
2024.8.	6,519	610	9.4%	273,276	78,620	28.7%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위와 같은 연례적 집행부진으로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축' 평가를 받았음에도 2025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679억 3,900만원 (61.5%) 증액된 4,412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114)]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및 연례적 집행부진을 고려하여 2025년도 계획안을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114)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2년~'23년은 제도 초기의 안정화 과정과 집행상 예상치 못한 변수(반대민원으로 인한 지방공사 사업지연 등)로 인해 집행률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패스트트랙(지구계획, 주택사업 병행추진)을 적용하여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는 입장임

25.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 사업: 고소득자의 대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은 무주택 서민층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및 저소득 서민에 대한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조 6,926억 5,500만원(13.7%) 증액된 14조 571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115)]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분양주택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수혜대상이 정부 대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정부는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차이를 보전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446억 9,500만원(31.9%) 증액된 1조 8,398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116)]

[2025년도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2,364,500	12,364,500	14,057,155	1,692,655	13.7
이차보전 지원	1,395,141	1,395,141	1,839,836	444,695	31.9

나. 검토의견

첫째, 소득별·주택소유별 출산율에 관한 통계 및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확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2024년 1월 개시한 상품으로,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

115)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1231-401)(주택토지실)

116)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이차보전 지원(1042-401)(주택토지실)

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것임.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신혼부부 통계결과』[117]에 따르면, 주택 미소유 부부의 유자녀 비중(49.5%)이 주택을 소유한 부부(59.6%) 보다 10.1%p 낮고,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층에 비해 하위층의 출산가구가 더 적고 출산율 하락도 더 큰 폭으로 나타났음.[118]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소득분위별 분만 건수를 분석한 결과[119] 전체 분만 산모 중에서 보험료 분위가 높은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저소득·무주택자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됨.

그런데 2024년 8월 기준 신생아특례 버팀목 실적을 살펴보면,[120]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실행금액이 5,355억원으로 전체의 33.9%를 차지하여 6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1.4배에 달하며, 전체 대출실행금액의 약 40% 이상이 1주택자의 대환을 위해 지출되는 등 고소득·유주택자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 대출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누계		
		건수	금액	비중(금액 기준)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	6천만원이하	2,008	3,818	24.2%
	6천만원~1억원	3,491	6,615	41.9%
	1억원~1.3억원	2,910	5,355	33.9%
합계		8,409	15,788	100%

자료: 국토교통부

[신생아특례대출 대환/신규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누 계		
		건 수	금 액	비율(금액 기준)
신생아 디딤돌	대 환	7,630	17,506	41.9%
	신 규	8,044	24,245	58.1%
	소 계	15,674	41,751	100%

117)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결과」, 2023.12

118) 한국경제연구원,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2022.4.

119) 국회입법조사처,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 2019.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한 임신, 유사산, 출산 모니터링 방안", 2016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6.10

120) 신생아특례디딤돌(구입)도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대출 실행금액이 1조 1,522억원으로 전체의 27.6%를 차지하고 6천만원 이하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 건, 억원)

구분		누 계		
		건 수	금 액	비율(금액 기준)
신생아 버팀목	대 환	3,753	6,647	42.1%
	신 규	4,656	9,141	57.9%
	소 계	8,409	15,788	100%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을 '24년 3분기에 2억원, '25년도에 2.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바,

관련 통계 및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저소득층 보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실적(11만원)을 고려할 때 청년 주택드림대출 요건 (1,000만원 이상 납입)을 충족하는 가입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3년 11월 청년 주거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12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122]을 통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2025년 신설)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장기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청년 내집 마련 1.2.3]

❶ 준비기		❷ 내집 마련		❸ 결혼·출산·다자녀 시
청년 주택드림 통장 (1년 가입시 혜택 적용)	》	청년 주택드림 대출 (2% 대 저리대출)	》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생애 3단계마다 우대)
•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내집 마련 기회 제공		• 분양가 80%까지 최저2.2%·최장40년 대출지원		• 결혼(0.1%p)·출산(0.5%p) 다자녀(0.2%p씩) 금리 인하

자료: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대출의 대출조건을 살펴보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및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을 보유한 공공/민영주택의 청약당첨자(당첨시 만 20~39세)에게 분양대금의 최대 80%(4.8억원 내)까지 최저 2.2%의 이율로 대출해주는 상품임.

121) 관계부처 합동,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 청년 내집 마련 1·2·3 -」, 2023.11.

122)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요건]

지원 대상	• 만39세 이하 무주택자 / • 소득 미혼 0.7억, 기혼 1억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원, 85㎡ 이하
대출 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일반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 보다 혜택 강화 (상품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2025년도 청년주택드림대출 예산안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청년주택드림 청약저축 가입자 107만명 중 청약당첨 확률(1.04%)을 고려하여 청약당첨자를 추정한 후 소득·자산 및 무주택 등의 대출요건을 충족한 가입자(61%)가 대출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출하였음.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요건]

ㅇ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 가입자(107만명) 중 당첨 확률(1.04%*)을 고려한 청약 당첨자는 향후 5년간 19.1만명으로 추정(연 평균 3.8만명)
  * ’20년~’23년 2·30대 청약 당첨자는 年 9.14만명이며 청약계좌는 882만좌
ㅇ 이 중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11.7만명(61%*)에게 1인당 2.88억원** 대출
  * 2·30대 무주택자(86%) & 소득 1억(85%) & 분양가 6억(83%) = 61.0%
  ** 대출한도(4.8억원) 대비 디딤돌 대출성향(60%) 적용한 2.88억원

자료: 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대출 연도별 추정치]

(단위: 만명, 조원)

구분		’25	’26	’27	’28	’29	평균	합계	비고
가입자	연간	179	104	101	77	76	107	537	
	❶누적	179	284	385	461	537	369		
❷당첨자		1.9	2.9	4.0	4.8	5.6	3.8	19.1	❶ x 1.04%
❸대출대상		1.1	1.8	2.4	2.9	3.4	2.3	11.7	❷ x 61.0%
❹대출수요		3.3	5.2	7.0	8.4	9.8	6.7	33.6	❸ x 2.88억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이상 청약통장 납입실적이 필요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측면이 있어 보임.

실제로 청년 주택드림통장 1인당 월 평균 납입액(2024.2.21.~8.31 기준)은 113,733원 수준으로 2024년 2월 출시부터 가입하여 2025년말까지 20개월간 꾸준히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약 230만원 정도에 불과함.

2025년말 기준으로 주택드림대출 가입요건(1,000만원 이상 납입)을 충족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입자는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의 약 2%(월 50만원 이상 납부) 정도로 보이므로 이를 토대로 대출수요를 재추정할 필요가 있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금액별 납입건수 집계]

(단위: 건)

납입액 구간	납입건수	비중
2만원 이상 5만원 미만	397,906	22%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216,685	12%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073,767	58%
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9,450	1%
20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63,874	3%
2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816	2%
30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16,500	1%
3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932	0%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056	0%
5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17,147	1%
6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1,321	0%
7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574	0%
8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1,201	0%
9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28	0%
100만원 이상	13,655	1%
합계	1,848,412	100%

자료: 국토교통부

26. 주택정비사업(융자):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을 참조하여 지원단가 및 지원대상에 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주택정비사업(융자)’ 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조합의 기본설계비 등 사업인허가, 시공자 선정에 필요한 초기사업비를 융자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계획안은 4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23)]

[2025년도 주택정비사업(융자)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주택정비사업(융자)	-	-	40,000	40,000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융자심사 기준을 충족하여 융자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20개 조합에 대해 평균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음.

[주택정비사업(융자) 계획안 세부내역]

- (산출) 20개 조합*×평균 20억 = 400억 * 현재 조합설립 되어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 전국 272개 조합과 ’25년 신규설립 47개 조합 중 융자심사 기준을 충족(약 7% 예상)하여 융자를 신청(기준충족 조합 중 88% 예상)할 것으로 예상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사업과 2025년 계획안에 신규 편성된 주택정사업(융자) 사업간 지원 단가 및 내용 등에 차이가 있는 바, 서울시 사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신규 사업의 지원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단가 및 산출내역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제3항[124)]에 따라 추진위원

123)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주택정비사업(융자)(1520-305)(주택토지실)

회 및 조합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고, 2023년 기준 59개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250억원을 집행하였음.

[서울시 융자사업 지원건수]

(단위: 건)

구분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302	57	55	72	59	59
추진위	65	25	17	9	6	8
조합	237	32	38	63	53	51

자료: 서울시

[서울시 융자사업 지원금액]

(단위: 억원)

구분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1,003	222	154	152	225	250
추진위	212	77	39	20	27	49
조합	791	145	115	132	198	201

자료: 서울시

그런데 2025년도 계획안에 신규 편성된 주택정비사업(융자)과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을 비교해보면, 서울시는 조합당 평균 2~5억원을 지원하는데 비해 국토교통부는 평균 20억원(최대 50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여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남.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과의 비교]

구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국토부 검토(안)
대상	추진위원회 및 조합	조합
지원단계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	조합설립인가 이후
한도	건축연면적별 60억원 이내 (실제 집행은 건당 약 2~5억원 수준)	구역당 50억원 이내 (평균 20억원)
지원내역	조합운영비와 사업비	검토 중
이율 (보증료포함)	(신용) 연 4%, (담보) 연 2.5% (이율에 HUG 수수료 포함)	3.5%~4% 검토 중 (이율에 HUG 수수료 포함)

1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보조 및 융자)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 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구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국토부 검토(안)
기간 (최대 융자기간)	최초 융자실행일 ~ 5년	서울시 사업과 유사 수준에서 검토 중
담보	(신용) 조합장 연대보증, (담보) 부동산	조합임원 연대보증
심사요건	사업성, 안정성	공공성, 사업성, 안정성 등

자료: 국토교통부

즉, 서울시도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60억원으로 설정하였지만 보다 많은 조합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평균 지원단가를 낮추었는데, 국토교통부는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가능한 조합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서울시 융자사업 지원한도액]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10억원	12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조합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자료: 서울시

또한, 서울시는 지원금액의 30%까지 조합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국토교통부는 조합운영비에 대한 지원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따라서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사업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안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신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단가나 지원대상 조합 수, 지원내역 등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수입은 44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함.[1)]

[2025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44	44	-	-
총수입	44	44	-	-

2025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지출은 2,288억원으로 전년 대비 940억원(69.8%) 증가함.

[2025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348	2,288	940	69.8
총지출	1,348	2,288	940	69.8

문의 : 강세욱 예산결산조사관 sewook@assembly.go.kr (02-6788-567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5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개 회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303억원으로 전년 대비 940억원(69.0%) 증가함.

[2025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	1,363	2,303	940	69.0
합 계	1,363	2,303	940	69.0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5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09억원(73.1%) 증가함.

[2025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248	2,217	969	77.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	1,363	2,303	940	69.0
합 계	2,611	4,520	1,909	73.1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1개(1억 5,8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다양한 기능 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및 수요 조사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1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	158
총지출		158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세종경찰특공대청사 건립’, ‘과학문화센터 건립’,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대평동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 등 총 15개임.[3)]

[2025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1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249	353	104	41.8
2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7,481	10,925	3,444	46.0
3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646	1,263	617	95.5
4	종합사업관리	1,318	2,438	1,120	85.0
5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	1,020	4,520	3,500	343.1
6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	2,070	2,975	905	43.7
7	광역교통시설 사후관리	130	380	250	192.3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8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1,762	5,821	4,059	230.4
9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100	714	614	614.0
10	과학문화센터 건립	649	1,285	636	98.0
11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6,423	30,016	23,593	367.3
12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6,400	16,704	10,304	161.0
13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6,969	11,670	4,701	67.5
14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12,115	57,882	45,767	377.8
15	대평동종합체육시설 건립	100	9,865	9,765	9,7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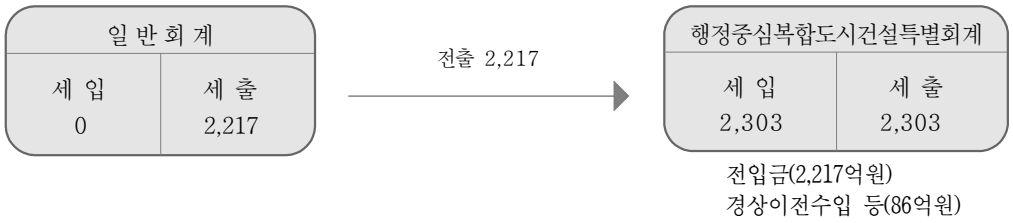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2,217억 2백만원이 전출되었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행복도시의 문화 및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것임. 구체적으로는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및 지난해 12월 개관한 어린이박물관 운영, 올해 9월에 개교한 공동캠퍼스의 운영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음.

또한, 국정과제인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및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예산을 반영하였음.

2025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종합사업관리사업은 행복도시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종합사업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과학문화센터건립사업은 2024년 말 기본설계 완료 후 1년 만인 2025년 12월에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실시설계비 전액이 편성되었는데,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일정을 고려하여 설계비의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대평동 종합체육시설건립 사업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고 후 4차례에 걸쳐 유찰이 되어 2025년말에나 착공이 가능하므로 공사비 등을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고, 2027년 7월 개최 예정인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전에 준공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 추진 여부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 출>

1. 종합사업관리 사업: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의 필요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종합사업관리’ 사업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공정현황 및 사업비 집행 관리, 공정 부진과 일정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개별사업 간 간섭사항 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2,000만원(85.0%) 증액된 24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종합사업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종합사업관리	1,318	2,438	1,120	85.0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 15억 8,600만원, 종합사업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3억 5,200만원 외에 종합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종합사업관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일반연구비(260-01)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 1,586,000천원 · 직접인건비 594,000천원 : 기술자 9인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종합사업관리(1032-304)(시설사업국)

· 제경비 등 : 840,000천원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 8,000천원
· 부가가치세 : 144,0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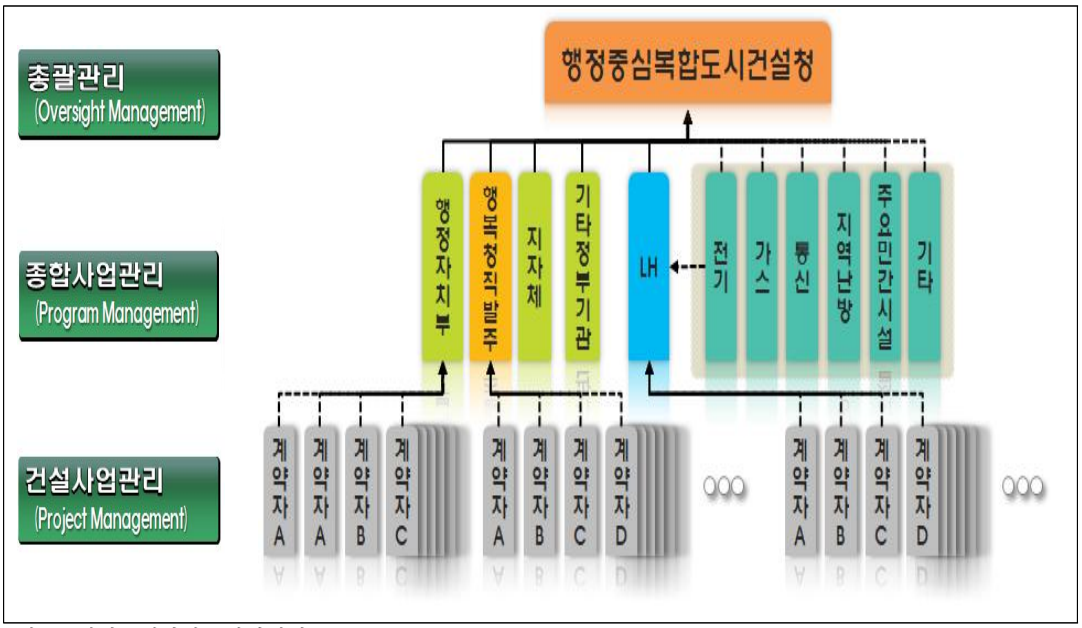
[종합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신규)] 500,000천원
· 직접인건비 231,000천원 : 기술자 6인
· 제경비 등 : 217,000천원
· 부가가치세 : 45,000천원
· 조달수수료 : 7,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종합사업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352,000천원
· 직접인건비 163,000천원 : 기술자 2인
· 제경비 등 : 152,000천원
· 부가가치세 : 32,000천원
· 조달수수료 : 5,000천원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건설사업은 행복청 17.6조원과 사업시행자인 LH 14조원, 총 32조원이 2030년까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자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복합적인 사업의 특성상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을 통해 공정 및 사업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종합사업관리 운영]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검토의견

행복도시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종합사업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 노후화로 인해 보안에 취약한 프레임 워크 변경 및 프로그래밍 언어 업그레이드, 기초데이터 관리기준 변경에 의한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개선을 위해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억원을 편성하여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그런데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2030년 이후 행복청의 존속유무도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4~5년 정도의 추가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현 시점에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08년 도입된 서버의 노후화로 인해 각종 장애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5] 이는 매년 투입되는 유지관리 용역(2025년 예산안 3억 5,200만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건설사업 완료 이후 종합사업관리시스템 전체를 세종시에 이관할 예정으로, 2030년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표준화된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사업 완료 이후 시스템 이관과 관련해서 세종시와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된 바 없는 상황에서 2030년 이후 시스템 활용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보안강화 등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필요성과 행복도시 건설 완료 기간 도래에 따른 예산 투입의 효율성, 행복도시 건설사업 완료 이후 시스템 활용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규 예산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17년 이후 접속불가 등 21건 발생

2. 과학문화센터 건립 사업: 과다 편성된 실시설계비 조정 필요

가. 개 요

‘과학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행복도시 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1생활권)에 학생·학부모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과학문화를 체험·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3,600만원(98.0%) 증액된 12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6)]

[2025년도 과학문화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과학문화센터 건립	649	1,285	636	98.0

과학문화센터의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96억 7,00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로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2025년도 예산안은 실시설계비 12억 6,5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과학문화센터 개요]

ㅇ 사업기간 : ’23 ~ ’27(기획 ’23, 설계 ’24~’25, 공사 ’26~’27)
ㅇ 총사업비 : 49,670백만원(부지비 95, 공사비 357, 설계비 20, 감리비 25 등)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9,444㎡, 연면적 12,000㎡(지상4층, 건축면적 2,950㎡)
ㅇ 지원조건 : 직접수행(국비 50%, 지방비(건설비·공사비 일부) 50%)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검토의견

과학문화센터건립사업은 2024년 말 기본설계 완료 후 1년 만인 2025년 12월에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실시설계비 전액이 편성되었는데,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일정을 고려하여 설계비의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과학문화센터 건립(2034-406)(시설사업국)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7]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획설계·기본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전에 반드시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8조[8]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기본설계 후 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기간까지 고려할 때 과학문화센터보다 총사업비가 작은 사업들의 경우에도 전체 설계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음.

[유사사업의 설계기간]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평생교육원 건립	490억원	21개월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452억원	23개월
과학문화센터 건립	497억원	18개월(계획)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4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후 2025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즉 설계기간 18개월을 목표로 실시설계비 전액(1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음.

[과학문화센터 추진 계획]

- o '23. 5. : 공공건축 사전검토 완료(건축공간연구원)
- o '23. 6. : 공공건축심의 완료
  * 건축기획용역 추진 필요(조건부 의결)
- o '23. 7. : 건축기획용역 착수
- o '24. 3. : 건축기획용역 완료 및 설계공모 공고
- o '24. 6. : 당선작 선정
- o '24. 7.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7)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건축사업의 경우 계획설계·기본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8조(기본설계 완료) ①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제57조제3항·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받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ㅇ '24.12. : 기본설계 완료 ㅇ '25.12. : 실시설계 완료 ㅇ '26. 上 : 착공 ㅇ '28. 下 : 준공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따라서 기본설계 완료 후 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약 5개월)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로 추진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전체 실시설계비의 일부만 집행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실시설계비 예산을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 사업기간 지연을 고려한 공사비 등 감액 필요

가. 개 요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행복도시 3-1생활권(대평동)에 체육활동과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규모의 종합경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7억 6,500만원(9,765%) 증액된 98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5년도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100	9,865	9,765	9,765.0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의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675억 7,90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3 ~ ’27 ㅇ 총사업비 : 167,579백만원(국비 83,790백만원)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74,032㎡, 연면적 21,899㎡ ㅇ 지원조건 : 직접수행(국비 50%, 지방비 50%)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조사설계비 16억 6,200만원, 공사비 77억 4,900만원, 감리비 4억 3,500만원, 시설부대비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기본조사설계비 : 1,662백만원(일괄입찰 설계보상비) -공사비 : 7,749백만원(당선자 설계비 및 착공소요 등 10%)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2051-405)(시설사업국)

-감리비 : 435백만원(설계감리 및 공사감리 착수소요 10%)
-시설부대비 : 19백만원(조달수수료 등 10%)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검토의견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고 후 4차례에 걸쳐 유찰이 되어 2025년말에나 착공이 가능하므로 공사비 등을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고, 2027년 7월 개최 예정인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전에 준공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 추진 여부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은 2023년도 예산에 최초 반영되어 2024년 5월 타당성재조사 완료 후 행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고(7.12)를 하였음.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 추진 경과]

· '22.12. : 2023년도 예산 국회증액 반영(설계비 2억원)
· '22.12. ~ '23. 1. : 종합체육시설 기본계획 현행화 용역
· '23. 1. : 종합체육시설 타당성재조사 신청
· '23.10. : 사업계획 변경 * 체육관, 수영장 우선 건립, 종합운동장 추후 별도 추진
· '24. 5. : 종합체육시설 타당성재조사 결과 통보(기재부)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활용 전제로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
· '24. 5. :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고시
· '24. 7. : 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 및 공고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런데 이 사업은 2024년 7월 발주 공고 후 4차례나 걸쳐 유찰이 되어[10][11] 5차 입찰공고 후 낙찰자가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2025년도 시행가능한 공사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2개월 미만으로 줄어들어 공사비·감리비·시설비의 일부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이 사업은 2024년 5월 타당성 재조사 결과 2027년 7월 개최 예정인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활용을 전제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는 바, 대회 전

10) 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요청(7.2) ⇨ 입찰공고(7.12) ⇨ 유찰(7.30) ⇨ 재공고(8.1) ⇨ 2차 유찰(8.20) ⇨ 재발주 공고(9.11) ⇨ 3차 유찰(9.30) ⇨ 재공고(10.4) ⇨ 4차 유찰(10.21)

11) 공사비 부족이 유찰의 주 원인으로 파악되어(건설사 요구 공사비는 500만원/㎡이상이나, 旣발주 공사비는 403만원/㎡) 세종시 추가 부담으로 공사비를 증액(최초 발주금액 대비 116억 증(세종시 부담분: 883억→999억(403만원/㎡→456만원㎡)))하여 재발주·공고하였음에도 유찰되었음.

에 준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추진 여부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업 지연 일정을 고려하여 공사비·감리비·시설비를 일부 감액 조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전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준공 여부 및 그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명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음.

4. 대외유치·협력기능 지원 사업(신규): 기존 기본경비와 사업목적을 구분하여 집행 필요

가. 개 요

‘대외유치・협력기능 지원’ 사업은 의료・문화 등 다양한 복합기능 유치로 행복도시 자족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억 5,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2)]

[2025년도 대외유치·협력기능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대외유치・협력기능 지원	-	158	158	-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능 다변화를 위한 투자유치 자료제작 등 일반수용비 1,400만원, 복합캠퍼스 및 의료복합단지 유치설명회 등 일반용역비 7,500만원, 미디어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연구비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대외유치·협력기능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일반수용비(210-01) : 14,000천원
  · 기능 다변화를 위한 투자유치 자료제작 : 1건×14,000천원=14,000천원
○ 임차료(210-07) : 2,000천원
  · 복합캠퍼스 국외출장 지원 : 1건×2,000천원=2,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75,000천원
  · 복합캠퍼스, 의료복합단지 유치설명회 개최 : 2건×25,000천원=50,000천원
  · 의료복합단지 수요조사 용역 : 1건×25,000천원=25,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9,000천원
  · 복합캠퍼스 국제투자유치활동 : 1회×2명×4,500천원=9,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000천원
  · 국내투자유치간담회 개최 : 4분기×2,000천원=8,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0,000천원
  · 미디어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50,000천원)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대외유치・협력기능 지원(1032-320)(도시계획국)

나. 검토의견

대외유치·협력기능 지원 사업 수행시 기존 기본경비 내에 편성된 일반용역비 및 국외여비와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음.

대외유치·협력기능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기존에 기본경비 등으로 수행해왔던 투자 유치 업무를 목적별로 세분화하여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짐.[13)]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기본경비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기본경비 내 일반용역비는 전년 대비 160%(1억 6,000만원) 증액된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5년에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2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외여비 또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5.6%(5,000만원) 증액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기본경비 내 일반용역비의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행사대행, 영상자료 제작용역 등" 포괄적인 목적만 기재한 후 특정 홍보 목적이 아닌 '프레스투어', '대학생 견학' 등으로 집행하고 있는바, 대외유치·협력기능 지원을 위해 기본경비 예산이 활용될 우려가 있음.

[2023년 기본경비 내 일반용역비(210-14)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100		260		261
집행액	78		-		
	건명	집행액	건명	예산액	
세부내역	행복도시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작용역	48	행복도시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작용역	50	
	안전보건관리용역	12	안전보건관리용역	10	
	행복도시알리기 프레스투어 용역추진비	8	행사대행, 영상자료제작용역	200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대학생 견학 운영 용역	10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또한, 기본경비 내 국외여비도 각목명세서상 구체적인 소요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외국행정도시 사례연구 등" 포괄적인 목적만 기재하고 있어, 대외유치·협력기능

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6.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기본경비 예산이 활용될 우려가 있음.

[2023년 기본경비 내 국외여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건명	국가	집행액
주요 국가시설 조성 관련 출장	미국, 캐나다	56,887
인도네시아 인프라 협력 대표단 관련 출장	인도네시아	22,511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 트윈 관련 출장	싱가포르	2,327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및 문화레저 유치 관련 출장	아랍에미리트 ,오스트리아	30,567
국장급 공무원 싱가포르 방문 프로그램	싱가포르	1,226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기본경비 1억 6,700만원을 불용하였고, 2024년도에도 기본경비 1억원을 전용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본경비 내 절감가능한 예산이 상당부분 발생하거나 당초 편성내역과 달리 집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2024년도 기본경비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4.5.24.)	기본경비 (1011-200)	특근매식비 (210-05)	100	기본경비(비총액) (1011-250)	일반연구비 (260-01)	'행복도시 건설기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기본경비(비총액) (1011-250)	일반수용비 (210-01)				
		관리용역비 (210-05)				
		국내여비 (220-01)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따라서 대외유치·협력기능 지원 사업과 기존 기본경비 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여 각각의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음.

5.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사업: 2024년 예산안 부대의견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 비율 적정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사업은 2024년 9월 개교한 공동캠퍼스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할 공익법인의 초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1,700만원(95.5%) 증액된 12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14)]

[2025년도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646	1,263	617	95.5

세종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이 교육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융합교육·연구가 가능하도록 LH가 총사업비 약 2천억원을 투입하여 행복도시 4-2생활권에 조성한 것으로, 2024년 9월 개교하였음.

세종공동캠퍼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2023년 11월 공익법인이 설립되었으나, 초기 자체수입(임대료 등)으로는 부족한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익법인 운영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음.

[공동캠퍼스 입주 예정 대학 현황]

대학	정원 (명)	계열	연면적 (㎡)	現단계	개교 (예정)	비 고
서울대	72	행정·정책대학원	2,400	캠퍼스 건립공사중 (공정율 약99%)	’24.2학기	
KDI	170	행정·정책대학원	2,400			
한밭대	200	AI/ICT 등 대학·대학원	5,000			
충북대	150	수의대·대학원	4,715			
충남대	400	의대·대학원	14,990		’25.1학기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1031-515)(시설사업국)

대학	정원 (명)	계열	연면적 (㎡)	現단계	개교 (예정)	비 고
충남대	800	AI/ICT 등 대학·대학원	35,984 (부지면적)	사업시행자 선정 단계	'27.1학기	착공기한 ('25.3월)
공주대	599	AI/ICT 등 대학·대학원	25,102 (부지면적)	사업시행자 선정 단계	'27.1학기	
고려대 (세종캠퍼스)	790	행정전문대학원, IT·AI 관련 대학	32,370 (부지면적)	위치변경 계획 준비	'28~29년	착공기한 ('26.2월)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익법인 기관운영출연금 67억 5,400만원과 사업출연금 3,300만원의 합계에서 법인 자체수입 42억 6,100만원을 차감 후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임.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6,754백만원
-인건비 : 836백만원, 운영비 : 5,918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33백만원
-교육지원사업 8백만원, 교류협력사업 15백만원, 홍보사업 10백만원
※ '25년 기관운영출연금, 사업출연금에 법인 자체수입(임대료·주차료) 예상액(4,261백만원) 차감 후 50%인 1,263백만원을 국비로 편성
※ (지원금액) 지방비 1,263백만원(미정), 국비 1,263백만원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검토의견

국회에서 2024년 예산안 의결시 세종공동캠퍼스를 세종시로 이관·운영하도록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고지원 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함) 제63조의9에 따르면[15] 건설청장은 공동캠퍼스를 운

15)「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⑤ 건설청장은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건설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영·관리하고 공익법인을 둘 수 있으며, 건설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회는 2024년 예산안 의결시 캠퍼스를 세종시로 이관하고 「행복도시법」을 개정하여 세종시의 캠퍼스 운영 및 관리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16)]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법인의 운영주체와 무관하게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입주대학들이 공동캠퍼스의 국가 운영을 전제로 입주를 결정한 것으로 운영주체 변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입주대학에 대한 설득 및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행복도시법」의 취지 및 입주대학 입장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025년 예산안을 2024년 국비 지원비율(27%)[17)] 보다 높은 50%로 편성한 것이 부대의견 취지에 비추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6) (2024년도 예산 부대의견) 정부는 세종공동캠퍼스가 차질없이 개교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LH가 조성한 캠퍼스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하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캠퍼스 운영 및 관리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

17) 2024년도 예산: 국비 6억 4,600만원, 지방비 17억 500만원

새만금개발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수입은 91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3.4%) 증가함.[1)]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88	91	3	3.4
총수입	89	91	3	3.4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지출은 1,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650억원(136.3%) 증가함.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477	1,127	650	136.3
총지출	477	1,127	650	136.3

문의 : 강세욱 예산결산조사관 sewook@assembly.go.kr (02-6788-567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2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3.4%) 증가함.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88	91	3	3.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0.64	0.58	△0.06	△9.4
합 계	89	92	3	3.4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1,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650억원(136.3%) 증가함.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77	1,127	650	136.3
합 계	477	1,127	650	136.3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새만금개발청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4개(87억 6,5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은 새만금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에 맞추어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65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6,542
2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안전진단 및 관리	253
3	새만금 웰컴스페이스 조성	1,244
4	새만금 공유수면 관리	726
총지출		8,765

한편, 새만금개발청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 등 총 5개임.[3)]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2,000	8,800	6,800	340.0
2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12,679	40,165	27,486	216.8
3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200	490	290	145.0
4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지원	4,700	25,539	20,839	443.4
5	행정능률향상 및 위원회 운영	329	1,244	915	278.1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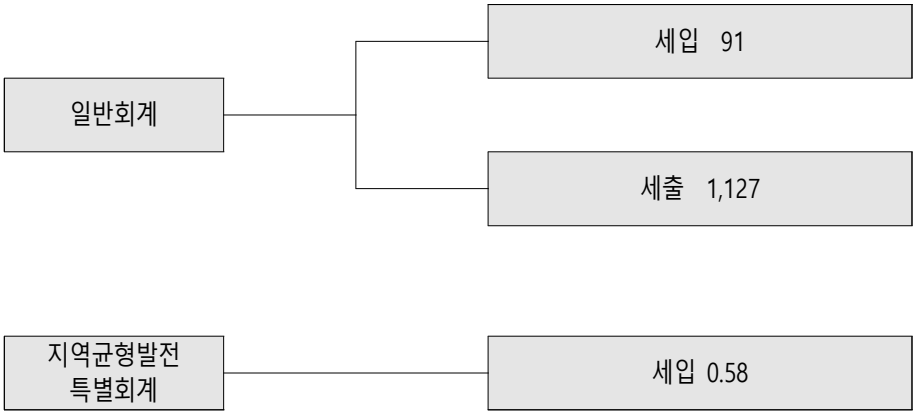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회계는 세입 91억원, 세출 1,127억원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입 0.58억원이고 세출은 없음.

[새만금개발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핵심 SOC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하며, 새만금의 안전관리와 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것임.

구체적으로는 새만금 2~3권역 개발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내년에 착공될 예정이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023년 7월) 취지에 맞게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민간투자 유치를 더욱 확대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와 온·오프라인에서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웰컴스페이스’ 조성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음.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새만금 웰컴스페이스 조성 사업은 현재 새만금 투자상담 및 홍보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만금 투자전시관이나 홍보관과 차별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은 자체 수입 없이 정부 출연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바, 박물관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한 「새만금사업법」의 취지 및 유사 박물관의 사례를 고려하여 자체 수입 확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연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의 BRT노선이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좌측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는 우측에 도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바 BRT노선 위치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새만금 웰컴스페이스 조성 사업(신규): 기존 새만금 투자전시관 및 홍보관과의 차별화 필요

가. 개 요

‘새만금 웰컴스페이스 조성’ 사업은 새만금개발청 내에 전문 투자상담 및 홍보공간을 조성하여 투자(예정)기업 방문시 전문성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2억 4,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2025년도 새만금 웰컴스페이스 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새만금 웰컴스페이스 조성	-	1,244	1,244	순증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존 구조물 철거 등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7억 1,400만원, 사무용 가구 등 자산취득비 1억 9,000만원, 맞춤형 홍보 콘텐츠 등 일반용역비 2억 6,700만원, 임차료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새만금 웰컴스페이스 조성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기존 구조물 철거, 전기・통신 공사, 내부 수선 등을 위한 공사비 714백만원 -사무용 가구, 영상・음향장비, 냉・난방기기 등 구매비 190백만원 -맞춤형 홍보 콘텐츠(영상, 사업조감도, 그래픽 등) 개발・제작비 267백만원 -운영 장소 임차비 73백만원 ※면적 1,162.75㎡ (전용면적 912.04㎡)

자료: 새만금개발청

4) 일반회계-새만금 웰컴스페이스 조성(5557-434)(개발사업국)

나. 검토의견

새만금 웰컴스페이스 조성 사업은 현재 새만금 투자상담 및 홍보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만금 투자전시관이나 홍보관과 차별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청 내에 상담공간이 입구의 오픈된 공간에 위치해 있어 보안 유지가 어렵고, 냉·난방이 취약하며, 영상 등 시청각 자료제시가 불가능해 단순 출력물에만 의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상담 및 홍보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2025년 신규사업으로 새만금 웰컴스페이스 조성사업 예산(1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은 효과적인 투자유치 및 홍보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에 상담 및 홍보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4년부터 서울역 인근에 홍보실과 접견실 및 투자상담실이 각각 별도로 갖추어진 새만금 투자전시관을 운영[5]하여 왔고, 2024년 8월 기준 12,400명의 주요 투자기업과 외국공무원 등이 방문하여 10.2조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새만금 투자전시관의 접견실과 투자상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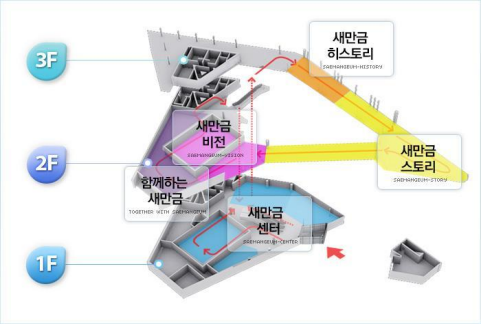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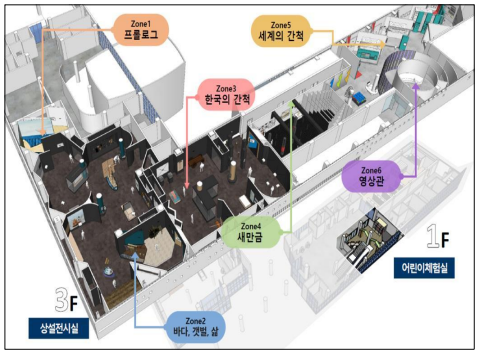


즉, 새만금개발청이 당초 새만금이 아닌 수도권에 새만금 투자전시관을 운영하게 된 취지 및 현재까지의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새만금 내에 별도로 투자 상담 및 홍보 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설사 새만금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투자자를 위한 홍보 및 상담 공간이 필요하더라도 새만금개발청 인근에 위치한 새만금홍보관 및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5) 2025년 예산안 4억 6,800만원

[새만금 홍보관 및 간척박물관 개요]

	새만금 홍보관	새만금 간척박물관
시설개요	ㅇ 개관: '12.7월 ㅇ 위치: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6 ㅇ 규모: 지하1층/지상3층(부지면적 13,784㎡, 연면적 3,610㎡) ㅇ 전시내용: 3D영상, 기획전시실, 모형물, 전망대 ㅇ 운영·관리: 한국농어촌공사	ㅇ 개관: '23.8월 ㅇ 위치: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29-7 일원 ㅇ 규모: 지상3층(부지면적 39,692㎡, 연면적 5,441㎡) ㅇ 전시내용: 전적류・민속품 등 1,935건 7,044점 - 교육콘텐츠(어른이 글짓기 대회, 유치원·초등·중등 대상 단체교육 프로그램) ㅇ 운영·관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주요시설	(1층) 안내데스크, 홍보영상물 상영, 기획 전시 등 (2층) 관광, 방조제 건설기록, 토지이용계획, 배수갑문 모형 등 (3층) 방조제축조과정, 간척지 역사, 사업개요 등 새만금히스토리 	ㅇ (1층) 어린이 전시실, (2층) 사무실, (3층) 상설전시실 - 전시 1,799㎡, 교육 318㎡, 수장 372㎡, 사무 290㎡ - 우리나라와 세계의 간척 역사·문화 전시 및 콘텐츠 조성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홍보관 및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은 대국민 홍보용으로 조성된 곳이므로 개별 기업과의 별도 상담공간(새만금 웰컴스페이스)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투자기업들에 대한 상담은 현재 대부분 서울의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새만금개발청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새만금사업현장을 보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담을 위한 단순한 사무공간 조성보다는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홍보 콘텐츠 개발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사업: 자체 수입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사업은 새만금 간척의 역사와 독자적 기술을 보존·연구하고, 전시와 체험을 통하여 새만금을 알릴 간척 전문박물관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억 2,400만원(△30.6%) 감액된 32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6)]

[2025년도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4,648	3,224	△1,424	△30.6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21억 5,500만원과 경상비 10억 6,900만원이 기관운영출연금(350-01)으로 편성되어 있음.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예산안 세부내역]

○ 기관운영출연금(350-01) 3,224백만원
 가. 인건비 2,155백만원
 · (4.4백만원×34명×12개월) + (법정부담금 327백만원) + (인상률 2.5%, 40백만원)
 나. 경상비 1,069백만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임차료, 유류비 등 1식

자료: 새만금개발청

나. 검토의견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은 자체 수입 없이 정부 출연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바,

6) 일반회계-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5557-392)(개발사업국)

박물관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한 「새만금사업법」의 취지 및 유사 박물관의 사례를 고려하여 자체 수입 확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연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11[7]에 따르면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의 재원은 국가 등의 출연금과 보조금, 박물관 운영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과 효율적인 자산운영으로 자체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은 2023년 8월 개관 후 자체 수입 없이 정부의 출연금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수입창출을 위해 임대사업(편의점, 까페 등)을 7차 공고까지 냈으나 유찰되어 해당 공간을 기획전시 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3년 기준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은 당초 관람객 목표의 4배가 넘는 76,378명이 방문하였고, 2024년 또한 8월 초 기준 이미 목표 관람객을 초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 박물관의 사례에 비추어 시설임대 외에도 단체교육, 주차장 운영, 관람료 등 다양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관람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3년	2024년
목 표	16,465	84,000
실 적	76,378	84,263(8.9.기준)
달성률(%)	463.8%	100.3%

자료: 새만금개발청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11(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 보조금 또는 기부금
2.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025년도 국립 박물관단지 자체수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전시 관람	· (개인)연52,000명 × 할인요율0.7 × 인원요율0.5 × 2천원 = 36백만원 · (단체)연41,600명 × 할인요율0.7 × 인원요율0.5 × 1천원 = 15백만원	51
교육프로그램	· 16종 × 15회 × 20명 × 인원요율0.7 × 1천원	3
문화재수리업	· 2건 × 3백만원	6
시설 임대	· 카페테리아 공간임대 12개월 × 1.6백만원	20
주차장 운영	· (평일)245일 × 일2만원 = 5백만원, (주말)120일 × 일16만원 = 20백만원	25
전기차 충전시설	· 충전기면적1.07㎡ × 법정요율0.05 × 공시지가2,647천원	0.14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은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의 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자체수입을 차감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새만금 기본계획’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타당성조사’ 간 상충 우려

가. 개 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새만금 간선도로망(국도12·30호선)과 내부개발용지(복합개발·농생명·관광레저)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4억 8,600만원(216.8%) 증액된 401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5년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12,679	40,165	27,486	216.8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조사설계비 10억 2,300만원, 공사비 390억 700만원, 감리비 7,900만원, 시설부대비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의 BRT노선이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좌측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는 우측에 도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바 BRT노선 위치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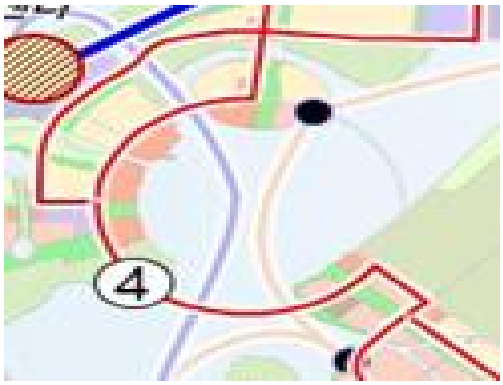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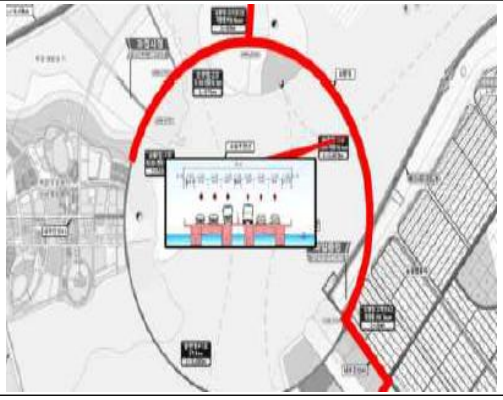
새만금 기본계획(2021.02)에 따르면 주간선도로 남북 2축 및 동서 2축, 새만금지역간 연결도로를 포함한 보조간선도로에 신교통수단(BRT)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 순환링 구간의 신교통수단 노선은 순환링의 좌측에 도입되는 것으로 제시하였음.

그런데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2023.06)」

8) 일반회계-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5557-387)(개발전략국)

에서는 BRT 노선계획을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것과 달리 BRT 노선이 순환링 우측에 도입되는 것으로 반영되어 계획 간 상충이 발생하고 있음.

['새만금 기본계획'과 '지역간 연결도로 기본계획'에 따른 BRT노선도 비교]

새만금 기본계획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자료: 새만금개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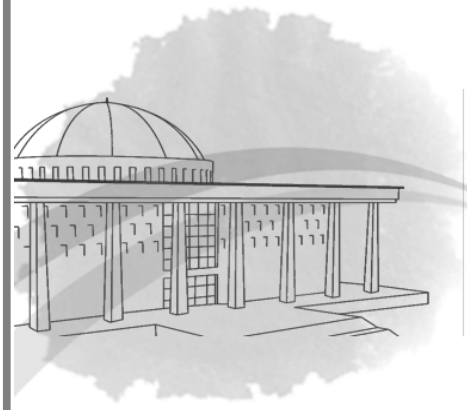
현재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은 3차례 입찰공고에도 불구하고 유찰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바,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가 되는 노선 위치를 조속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추진현황]

ㅇ ('21.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3차) ㅇ ('21.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ㅇ ('21 6. ~ '22.10.) 예비타당성조사(KDI) 시행 ㅇ ('22.10.) 재정사업평가위 개최 ☞ 예타 통과(B/C 0.68, AHP 0.608) ㅇ ('23. 6.) 지역간 연결도로 기본계획 수립·고시 ㅇ ('23. 7.) 대형공사 등 입찰방법 심의 완료(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ㅇ ('24. 5.) 1차 입찰공고 ☞ 기본설계中(3공구) 및 유찰(1·2공구) * (1공구) 롯데건설 / (2공구) 포스코건설 / (3공구) 계룡건설, 금광건설 ㅇ ('24. 6.) 2차 입찰공고 ☞ 유찰(1·2공구) ㅇ ('24. 7.) 3차 입찰공고 ☞ 유찰(1·2공구)

자료: 새만금개발청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총수입은 6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억원(△2.9%) 감소함. 예산은 333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억원(△12.7%) 감소한 반면, 기금은 2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9억원(10.9%) 증가함.[1)]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382	333	△48	△12.7
기 금	268	298	29	10.9
총수입	650	631	△19	△2.9

문의 : 김혜진 예산결산조사관 khj3685@assembly.go.kr (02-6788-569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총지출은 1조 7,769억원으로 전년 대비 908억원(5.4%) 증가함. 예산은 8,445억원으로 전년 대비 730억원(9.5%) 증가하고, 기금은 9,3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8억원(1.9%) 증가함.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7,715	8,445	730	9.5
기 금	9,146	9,324	178	1.9
총지출	16,861	17,769	908	5.4

나. 예산안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3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억원(△12.7%) 감소함.

[2025년도 여성가족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68	329	△39	△10.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3	4	△10	△71.7
합 계	382	333	△48	△12.7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445억원으로 전년 대비 730억원(9.5%) 증가함.

[2025년도 여성가족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6,872	7,528	656	9.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842	917	74	8.8
합 계	7,715	8,445	730	9.5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2개 기금(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조 1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08억원(2.1%) 증가함.

[2025년도 여성가족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청소년육성기금	1,707	1,707	1,714	7	0.4
양성평등기금	8,209	8,209	8,410	202	2.5
합 계	9,916	9,916	10,124	208	2.1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여성가족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1개(287억 3,0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 설립에 따라 안정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지원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8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여성가족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28,730
총지출		28,73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여성가족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아이돌봄지원’ 사업,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등 총 8개임.[3)]

[2025년도 여성가족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575	900	325	56.5
2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386	606	220	57.0
3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291	401	110	37.8
4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3,691	5,706	2,015	54.6
5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9,745	12,727	2,982	30.6
6	아이돌봄지원	467,866	513,428	45,562	9.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75,177	87,713	12,536	16.7
[양성평등기금]					
8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35,595	552,833	17,238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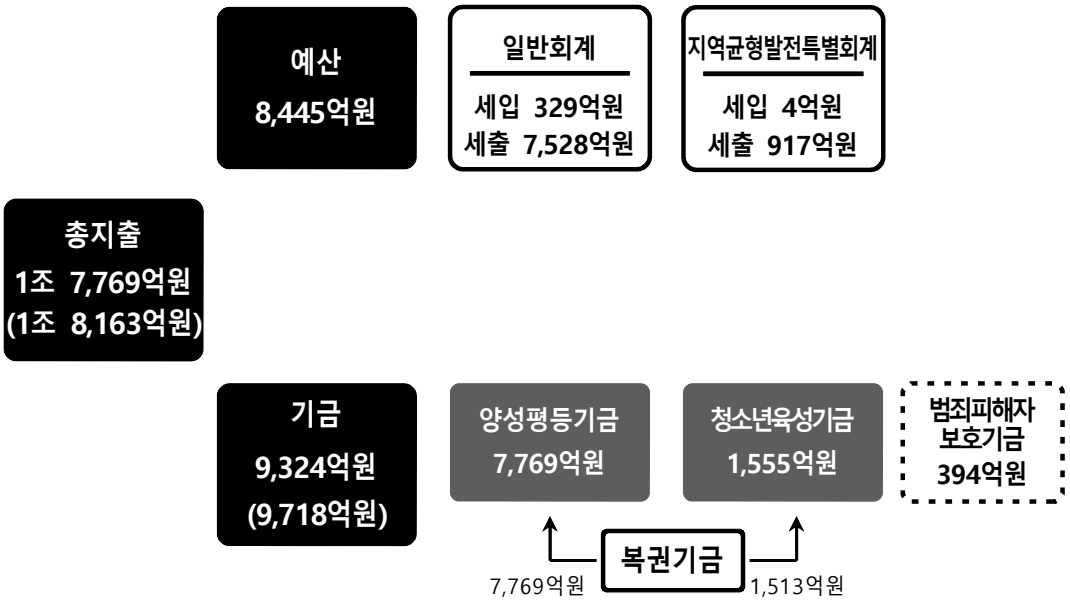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청소년육성기금·양성평등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된 사업 394억원을 여성가족부에서 집행하고 있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복권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7,769억원, 청소년육성기금으로 1,513억원이 전입되었음.

[여성가족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1) 총지출 기준(기금의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을 제외)이며, 괄호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포함한 규모임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중 일부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예산규모에 포함되지 않아 점선으로 표시함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비 지원 확대 및 이행 지원 강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지원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사업은 촉박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사업은 동 제도가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예산소요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된 이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돌봄수당’ 사업은 2025년 정부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비율도 상향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대기로 인한 돌봄 공복을 해소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셋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최근 지원대상수가 다소 과다하게 추계되고 있으므로, 2024년 월별 지원실적 및 청소년부모 가구수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신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관련 준비 철저 필요 등

가. 개 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 설립(’24. 9. 27.)에 따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지원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87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5)]

[2025년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	28,730	28,730	순증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	1,601	1,601	순증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	16,200	16,200	순증

내역사업인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은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충족자에 대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9개월(3개월 연장가능) 동안 한시적으로 긴급지원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 타 세부사업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사업에서부터 이관된 사업이며,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6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4) 일반회계-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2335-352)(가족정책관)

5)「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 9. 27. 시행)에 따라 세부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2335-351)’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2335-352)’ 사업으로 내역 신설 및 이관

또 다른 내역사업인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사업은 현행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지급 요건이 제한적이고 지원 기간이 짧은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6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제' 비교]

구분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중위소득 75% 이하, 질병・장애・주거환경 위태 등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기간	최대 1년(9개월+3개월)	18세까지 *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검토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나. 검토의견

첫째,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사업은 2024년 10월 법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촉박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차질 없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는 2024년 3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통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에 기반하여 2025년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안 162억원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음.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25년) 162억원 (신규)

- 162억원 = 20만원×18,000명×신청률 75%×6개월

* 18,000명: 통계청 ‘부(모)+자녀가구’ 등을 기본 데이터로 하여 2025년 18세 이하 유자녀 한부모가구 추정치 및 선지급제 대상 가구에, 1.45명을 계산하여 추계

* 신청률 75%: 한부모가족 증명서 보유 가구 중 아동양육비 지급 가구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

* 6개월: 2025년 하반기 도입으로 6개월 지급

자료: 여성가족부

이후 2024년 10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의 지원대상을 중위소득의 150% 이하로 결정하고, 선지급의 금액, 지급 기간, 지

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6)7)]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5년 6월말까지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양육비정보시스템에 선지급 기능을 보강하는 고도화작업을 수행하고,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양육비 선지급제에 관한 홍보를 지속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해 가겠다는 계획임.

그런데 시스템 고도화작업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준비기간이 상당히 촉박한 상황이므로,[8)] 2025년 하반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5년 7월부터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는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의 예산소요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된 이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는 2025년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1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음.

---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5. 7. 1.)(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②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여성가족부는 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약 9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사업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기편성된 예산안 내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선지급의 금액, 지급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2024년 3월 발표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할 계획임.

8) 시스템 고도화 추진일정(안)

구분	추진일정(안)	비고
사업계획 수립 및 준비	~’24.10월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작성, 과업 적정성 및 보안성 검토,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등
사업발주 및 계약	~’24.12월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 추진	~’25.6월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서비스 오픈	’25.7월 예정	

자료: 여성가족부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24년) 1,601백만원 → ('25년) 1,601백만원 (전년동) -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778명×2.1백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2022년~2024년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구분	신청 건수	지원 건수	지원자녀수	지원 금액
2022년	672	468	778	1,560
2023년	724	588	953	1,547
2024년 8월말	415	326	555	1,245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2025년 7월부터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폐지되고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될 예정으로, 여성가족부는 선지급 도입 전에 지원 중이던 한시적양육비는 지급이 확정된 기간까지 지급할 계획임.

다만, 개정법 부칙 제5조에 따라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양육비 채권자가 법 개정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경우 양육비 선지급 실시와 동시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종료되게 되고,[9] 지원요건 상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양육비 선지급의 대상자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2025년 하반기에는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예산소요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된 2025년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기존에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결정이 이루어진 채권자에 대해 선지급 도입 후에도 지원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선지급 홍보 확대로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2025년 상반기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임.

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5. 7. 1.)(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일부개정)」 부칙 제5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양육비 채권자가 이 법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경우 양육비 선지급 실시와 동시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한다.

셋째,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따라 양육비 국비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고 청구금액도 증가하게 될 것인바,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의 누적 회수율이 2024년 6월말 기준 18.42%에 불과하므로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경우, 자녀 양육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오히려 소득 활동을 포기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사적 책임을 유기하고 국가에 의존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환수율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10)]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그 비용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데, 긴급지원 실적 증가와 함께 구상권 행사 및 강제징수 청구액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누적 회수율은 2024년 6월말 기준 18.42%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상황임.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구상권 행사 및 환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청구금액	당해	95	74	105	122	239	552	772	120
	누적(A)	95	169	274	396	635	1,187	1,959	2,079
환수금액	당해	-	2	1	17	39	92	150	76
	누적(B)	-	2	3	20	59	151	301	377
소멸금액		2	0	0	6	4	30	37	32
누적 회수율(B/A)		-	1.18	1.09	5.05	9.29	12.72	15.36	18.42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따라 양육비 국비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고 청구금액도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여성가족부는 선지급한 양육비를 조속히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11)]

10)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2024. 9.)

11)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법」 개정(3.26.)을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법인으로 설립('24.9.27.)되어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선지급 대상자에 대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점 등 양육비 회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수율은 점진적으로 상승 중이라는 입장임.

2. 돌봄수당 사업: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방안 강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돌봄수당’** 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88억 1,600만원(10.1%) 증액된 4,230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12)]

[2025년도 돌봄수당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아이돌봄 지원	467,866	513,428	45,562	9.7
돌봄수당	384,222	423,038	38,816	10.1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 (목적)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 파견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 (사업내용) 시간제 돌봄(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돌봄(만 36개월 이하 영아)

- (종일제) 0~2세 자녀 대상 월 최대 200시간(연간 2,400시간) 지원
- (시간제) 취학 전·후 구분 지원, 연간 960시간 지원

○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안)(시간당 이용요금: 12,180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취학전		취학후		다자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85%)	1,826원(15%)	9,136원(75%)	3,044원(25%)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나형	120% 이하	7,308원(60%)	4,872원(40%)	4,872원(40%)	7,308원(60%)	
다형	150% 이하	3,654원(30%)	8,526원(70%)	2,436원(20%)	9,744원(80%)	
라형	200% 이하	1,828원(15%)	10,352원(85%)	1,218원(10%)	10,962원(90%)	
마형	200% 초과	-	12,180원(100%)	-	12,180원(100%)	

자료: 여성가족부

12) 일반회계-아이돌봄 지원(2334-341)(청소년가족정책실)

나. 검토의견

돌봄수당 사업은 아이돌보미 부족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2025년 정부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비율도 상향될 경우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계율은 더욱 낮아지고 대기일수도 길어지면서 집행이 더욱 부진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서비스 대기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돌봄수당 사업 실집행현황을 보면, 2021년 이후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2023년에는 82.3%에 불과하여 예년에 비해 특히 저조하였음.

2024년 8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1,873억 8,000만원으로 본예산 3,842억 2,200만원의 48.8%에 그치고 있어, 현 추세대로면 2024년의 집행실적은 더욱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5년간 돌봄수당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0	173,342	173,342	177,685	177,685	-	177,685	173,852	-	3,833	97.8
2021	180,158	180,158	184,338	184,338	-	184,338	182,451	-	1,887	99.0
2022	202,031	202,031	204,912	204,912	-	204,912	195,935	-	8,977	95.6
2023	281,874	281,874	281,874	281,874	-	281,874	231,883	-	49,991	82.3
2024	384,222	384,222	291,340	291,340	-	291,340	187,380	-	-	64.3

주) 2024년 8월말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이와 같이 집행이 부진한 것은 지속적인 정부지원 확대에 따라[13] 아이돌봄 예산 및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아이돌보미가 부족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가구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실제 연도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이후 신청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연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대기가구 수 및 대기일수는 증가하고 있음.

13) ○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 확대: ('17) 연 480시간 → ('18) 연 600시간 → ('19) 연 720시간 → ('21) 연 840시간 → ('23) 연 960시간
○ 서비스요금 정부지원대상 확대: ('18) 중위소득 120% 이하 → ('19) 중위소득 150% 이하
○ 취약가정(가형 중 한부모, 조손가정, 장애부모, 장애아동 등): ('21) 5% 추가지원
○ 서비스요금 정부지원비율 상향: 종일제 가형 ('20) 80% → ('21) 85%, 시간제 미취학 가형 ('18) 80% → ('19) 85%, 시간제 미취학 나형 ('20) 55% → ('21) 60%, 시간제 미취학 다형 ('23) 15% → ('24) 20%, 시간제 취학 나형 ('23) 20% → ('24) 30%
○ 돌봄취약가정 5% 추가지원: ('21) 한부모・조손・장애 등 가형 가구, ('22) 청소년부모 가형 가구
○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24) 90% 정부지원, ○ 2자녀 이상 가구: ('24) 10% 추가지원

[2020년~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및 대기 현황]

(단위: 개, %)

구분	연계 현황			대기 현황	
	신청가구	매칭가구	연계율	대기가구 수	대기일수
2020년	66,694	59,663	89.5	2,606	8.3
2021년	65,949	60,071	91.1	6,809	19.0
2022년	71,345	63,898	89.6	14,745	27.8
2023년	122,729	86,100	70.2	13,031	33.0
2024년 6월말	84,670	73,531	86.8		

주) 대기가구 수는 해당 연도말 기준 대기 상태에 있는 가구의 수로, 2024년 자료 없음(2020년 3월부터 대기관리 시스템 운영)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여성가족부는 돌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4년 150%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할 계획으로, 2025년도 이 사업의 예산안을 전년 대비 약 10% 증액 편성하였음.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계획(안)]

'24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다자녀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75%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나	75%~120%	60%	30%	
다	120%~150%	20%	15%	
라	150% 초과	-	-	-

⇨

'25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다자녀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75%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나	75%~120%	60%	40%	
다	120%~150%	30%	20%	
라	150%~200%	15%	10%	
마	200% 초과	-	-	-

자료: 여성가족부

이와 같이 정부지원이 확대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이 낮고 대기일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이돌보미의 공급 확대 없이는 연계율이 더욱 낮아지고 대기일수도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서비스 대기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14]

14)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확대를 위하여 돌봄수당 인상(전년 대비 4.7% 인상), 영아돌봄수당 신설(시간당 1,500원) 등 처우개선 및 요양보호사 등 돌봄전문인력 대상 단축교육과정 신설('24.7.시행)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복수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추진 등 전달체계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2024년 월별 지원실적 및 청소년부모 가구수 추이 등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6,000만원(△29.3%) 감액된 15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15)]

[2025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가족역량강화 지원	2,762	2,102	△660	△23.9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250	1,590	△660	△29.3

이 사업은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보조율 50%) 사업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24년) 2,250백만원 → (’25년) 1,590백만원
- (중위 63% 이하) 1,060명×250천원×12개월×50%

자료: 여성가족부

나. 검토의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매년 지원대상수를 과다추계하여 예산집행률이 부진하므로, 2024년 월별 지원실적 및 청소년부모 가구수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일반회계-가족역량강화 지원(2332-321)(가족정책관)

이 사업은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2023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추진 경과]

구분	사업 추진 경과
2022년	○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6개월) - 지원대상 소득기준: 60% 이하, 지원금액: 월 20만원
2023년	○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기간 확대(6개월 → 12개월) - 지원대상 소득기준: 60% 이하, 지원금액: 월 20만원
2024년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실시(1월~) - 지원대상 소득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23년 60% 이하 → '24년 63% 이하) - 지원단가 인상('23년 월 20만원 → '24년 월 25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이 사업은 본예산 대비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사업 첫해인 2022년에 34.0%, 다음 해인 2023년에도 35.3%에 그쳤고, 2024년 다소 개선되었으나 8월말 기준 37.7%에 불과하여 매년 실집행실적이 저조함.

[2022년~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A)	추경								
2022년	2,000	2,000	1,943	1,757	-	1,757	680	-	1,077	34.0
2023년	3,600	3,600	1,800	1,800	-	1,800	1,272	-	528	35.3
2024년	2,250	2,250	1,522	1,522	-	1,522	849	-	-	37.7

주) 2024년 8월말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이는 예산 편성 기준 지원대상수와 실제 지원인원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2022년 및 2023년 각각 3,000명을 지원대상으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월평균 지원인원수는 2022년 1,133명, 2023년 1,060명에 그침에 따라 집행이 부진하였음.

[2022년~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편성 기준 지원대상수	3,000명	3,000명	1,500명
월평균 지원인원수	1,133명	1,060명[16]	(집행중)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2024년은 현재 사업추진 중이나, 2024년 8월말 기준 월별 지원실적을 보면 최대 지원인원수가 906명(6월)에 불과하여 예산 편성 기준 지원대상수인 1,500명에 여전히 크게 미달하는 상황임.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별 지원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인원	784	806	836	862	883	906	662	704	-	-	-	-
지원금액	97	99	104	106	110	112	81	87	-	-	-	-

자료: 여성가족부

이와 함께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수가 연평균 약 20%씩 감소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17] 2025년도의 지원인원수는 2024년보다도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지원대상수를 1,060명으로 산정하여 편성한 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6)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별 지원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인원	990	1,042	1,095	1,131	1,171	1,217	872	944	954	971	992	1,018
지원금액	99	104	110	113	117	122	87	94	95	97	99	102

자료: 여성가족부

17)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수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청소년부모 가구수	7,557가구	6,188가구	4,900가구	3,760가구	2,969가구	2,350가구

자료: 여성가족부(출처: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

4.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추가 지연 방지를 위해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은 청소년의 진로·직업에 대한 정보·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균형 잡힌 직업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대구에 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억 9,400만원(160.2%) 증액된 47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18)]

[2025년도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9,745	12,727	2,982	30.6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건립	1,807	4,701	2,894	160.2

자료: 여성가족부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직접 수행하는 총사업비 402억 7,100만원 규모의 사업으로, 당초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년이었으나, 2027년까지로 2년 연장할 예정이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건설보상비 10억 9,400만원과 건설비(공사비 등) 36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개요]

○ 총사업비: 402억 7,100만원(2024년 8월 기준)
○ 사업기간: 2021년~2027년(현재 2021년~2025년이나, 2년 연장 예정)
○ 사업규모: 부지 86,921㎡, 연면적 10,713㎡(위치: 대구 동구 괴전동 1번지 일원)
○ 주요시설: 청소년 직업체험관, 생활관, 직원숙소 등

자료: 여성가족부

18) 일반회계-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2236-361)(청소년가족정책실)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건설보상비: 10억 9,400만원
○ 공사비: 33억 9,700만원(전체 공사비 339억 6,900만원×10%)
○ 감리비: 2억원(전체 감리비 19억 9,400만원×10%)
○ 시설부대비: 1,000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나. 검토의견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은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연례적으로 예산의 이·전용,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을 면밀히 관리하여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1년 총사업비 등록 당시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2023년 3월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개발제한구역인 건립부지에 대한 대구광역시와 국토교통부 간 협의('22년 1월~11월)가 길어짐에 따라[19] 설계용역이 중지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로 2년 연장할 예정임.

이와 같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 사업에서는 예산의 이·전용, 이월 및 불용이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1년	기본조사설계비	500	-	-	500	361	139	-
	계	500	-	-	500	361	139	-
2022년	기본조사설계비	-	139	-	139	112	-	27
	실시설계비	1,441	-	△1,041	400	-	370	30
	시설부대비	14	-	-	14	6	-	8
	계	1,455	139	△1,041	553	118	370	65

19) 당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협의 과정에서 관리계획 변경이 아닌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조정되면서 해제 범위, 승인 주체 등을 검토하는 데 10개월 이상 소요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건설보상비	300	-	△300	-	-	-	-
	실시설계비	-	370	-	370	370	-	-
	공사비	179	-	△179	-	-	-	-
	시설부대비	1	-	△1	-	-	-	-
	계	480	370	△480	370	370	-	-
2024년	건설보상비	827	-	-	827	-	-	827
	기본조사설계비	302	-	-	302	232	61	9
	실시설계비	671	-	-	671	469	202	-
	시설부대비	7	-	-	7	7	-	-
	계	1,807	-	-	1,807	708	263	836

주) 2024년은 9월말 기준 연내 집행 계획(전망)으로 작성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에는 9월말 현재 중간설계에 대한 조달청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 중으로, 여성가족부는 실시설계가 2025년 6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예산 중 설계비 잔금[20]은 이월하고 건설보상비(농지보전부담금)는 건축협의 과정에서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전액 불용할 계획임.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추진 일정(안)]

단계	추진 일정(안)
○ 총사업비 확정	2021. 1.
○ 설계공모	2021. 6. ~ 9.
○ 설계계약 및 착수	2021. 10.
○ 계획설계	2021. 10. ~ 2022. 12.
○ 계획설계 조정	2023. 1. ~ 2023. 6.
○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023. 7. ~ 9.
○ 중간설계	2023. 5. ~ 12.
○ 중간설계 보완	2024. 1. ~ 7.
○ 중간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조달청)	2024. 8. ~ 10.
○ 총사업비 조정협의(기재부)	2024. 11. ~ 2025. 1.
○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025. 2. ~ 2025. 3.
○ 건축협의(대구 동구청)	2025. 2. ~ 2025. 4.
○ 총사업비 조정협의(기재부)	2025. 4. ~ 2025. 5.
○ 실시설계 완료	2025. 6.
○ 공사업체 및 감리업체 입찰 및 계약	2025. 7. ~ 2025. 9.
○ 착공	2025. 10.
○ 준공	2027. 12.

주) 2024년 9월말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20) 기본조사설계비 6,100만원(환경영향평가 잔금) 및 실시설계비 2억 200만원(실시설계 잔금)

그런데 2024년 9월말 기준 여성가족부가 계획 중인 이 사업의 추진 일정(안)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황에 따라 협의가 길어질 수 있고,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서도 다시 조달청 적정성 검토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건축협의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달계약 일정도 최소 수준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은 2025년 연내 착공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공정별 협의 및 시공사 선정 단축 등 사업을 면밀히 관리하여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5. 새일여성인턴 사업: 고용유지율 제고 노력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9억 7,700만원(21.1%) 증액된 286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21)]

[2025년도 새일여성인턴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75,177	87,713	12,536	16.7
새일센터 지정·운영	73,468	85,292	11,824	16.1
새일여성인턴	23,642	28,619	4,977	21.1

이 사업의 대상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경력단절여성 등이고, 연계기업은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4대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유입을 촉진하고 일경험을 통한 직장적응과 정규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사업임.

[새일여성인턴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새일여성인턴: (’24년) 23,642백만원 → (’25년) 28,619백만원

- (’24년) 7,777명×3.8백만원×80% → (’25년) 7,777명×4.6백만원×80%

* (’25년) 12개월 고용유지장려금 신설(1인당 80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2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1234-311)(여성정책국)

나. 검토의견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2025년부터 12개월 고용유지장려금(80만원)을 기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1인당 지원 단가를 80만원 인상하였음.

이와 같이 기업에 일회성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경력단절여성의 장기고용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업은 현재 1인당 380만원 한도로, 인턴 연계 기업에 3개월 동안 월 80만원의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6개월이 경과되면 인턴에게 60만원, 기업에 80만원의 고용유지장려금을 1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다만 그동안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실적을 보면, 취업률이 90%대 중반이고, 6개월 고용유지율이 70%대인 것에 비해 12개월 고용유지율은 50%대 중반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음.

[새일여성인턴 사업 연계·취업 및 고용유지 현황]

(단위: 명)

연도	새일여성인턴 연계현황					인턴종료 후 취업현황				고용유지 현황	
	계획	연계	종료	연계 중	중도탈락	소계 (a)	취업 (b)	미취업	취업률 (b/a)	6개월 (비율)	12개월 (비율)
2018	6,177	7,410 (100%)	5,859 (79.1%)	1,033 (13.9%)	518 (7.0%)	5,859	5,618	241	95.9%	72.3%	56.9%
2019	6.177	7,351 (100%)	6,063 (82.5%)	809 (11%)	479 (6.5%)	6,063	5,853	210	96.5%	74.4%	57.2%
2020	6,177	6,945 (100%)	5,812 (83.7%)	628 (9.0%)	505 (7.3%)	5,812	5,658	154	97.4%	72.9%	54.7%
2021	9,777 (추경포함)	11,761 (100%)	9,611 (81.7%)	1,236 (10.5%)	914 (7.8%)	9,611	9,312	299	96.9%	75.8%	56.2%
2022	7,777	10,145 (100%)	8,298 (81.8%)	1,085 (10.7%)	762 (7.5%)	8,298	8,027	271	96.7%	75.6%	56.4%
2023	7,777	9,253 (100%)	7,202 (77.8%)	1,438 (15.6%)	613 (6.6%)	7,202	6,984	218	96.9%	-	-
2024	7,777	7,756 (99.7%)	4,708	2,606	442	4,708	4,534	174	96.3%	-	-

자료: 여성가족부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5년부터 12개월 고용유지장려금을 신설하여 새일여성인턴의 장기고용을 유도할 계획으로, 1인당 지원 단가를 80만원 인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5년 새일여성인턴 사업 지원금 지급 계획]

구분	인턴채용지원금			정규취업 후 고용유지에 따른 장려금		인턴 1인당 총 460만원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시점	+12개월 시점	
기업	80만원 × 3개월			80만원	**80만원(신설)**	400만원(+80)
개인	-			60만원	-	60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신설되는 고용유지장려금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12개월이 경과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업에 80만원의 고용유지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임.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22]이 취업 후 12개월 넘게 고용이 유지될 경우 2025년 해당 기업은 동 장려금을 지급받게 됨.

한편, 고용노동부가 2018년~2020년에 추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살펴보면,[23]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유지율이 채용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30%대에 그친 것에 비해,[24]

청년 개인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청약유지율은 60% 내외로 나타나[25] 성과가 보다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2025년 신설된 12개월 고용유지장려금과 같이 기업에 일회성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2) 즉, 인턴 연계 시점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임.

23)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

구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기간	2018년~2021년	2016년~계속
사업대상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만 15세~34세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월 75만원	2년 동안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하는 경우, 기업은 300만원, 정부는 600만원을 적립하여 만기시 적립액 1,200만원 및 이자를 청년에게 지원
지급 주기	1회차 6개월, 2회차 이후 3개월 단위	2년 간 매 6개월 단위
최대 지원기간	기업당 최대 3년	2년

2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 청년의 고용유지율

(단위: %)

연도 (채용 시점)	6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2년 6개월	3년
2018년	84.2	69.8	55.6	48.5	40.0	34.6
2019년	92.2	77.7	61.8	52.7	42.8	35.6
2020년	99.7	85.8	66.1	55.5	43.3	35.0

주1) 2024년 8월말 기준
2) 구간별 고용유지자수는 당해연도 전체 신규채용자가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는 구간까지 작성
3) '17~'21년까지 한시사업으로 '21. 5월말 신규신청 종료(채용 후 6개월 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20. 11월말 채용자까지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25)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의 청약유지율

(단위: %)

연도 (가입 시점)	6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2년 6개월	3년
2018년	91.5	80.0	70.7	67.0	66.9	65.3
2019년	89.0	78.4	71.0	67.1	65.9	64.2
2020년	91.1	80.9	72.9	69.5	61.1	58.2
2021년	89.5	76.8	67.9	64.3	-	-
2022년	90.1	78.0	69.3	66.0	-	-
2023년	87.8	76.1	68.5	-	-	-

주1) 고용유지율을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약유지율로 작성
2) 2년 6개월 이상 청약유지율은 '18～'20년에 운영된 3년형에 대해서만 산출
자료: 고용노동부

【양성평등기금】

<지 출>

6. 아동양육비 사업: 부정수급 환수결정분에 대한 징수율 제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아동양육비’**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 양육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이하 자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74억 8,600만원(3.4%)이 증액된 5,315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26)]

[2025년도 아동양육비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35,595	535,595	552,833	17,238	3.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535,552	535,552	552,790	17,238	3.2
아동양육비	514,101	514,101	531,587	17,486	3.4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아동양육비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아동양육비: (’24년) 514,101백만원 → (’25년) 531,587백만원

- 서울 29,773명×23만원×12개월×50% + 지방 222,147명×23만원×12개월×80%

* 계획인원: ’23년, ’24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감 조정(266,836 → 251,920명(△5.6%))

*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24년) 월 21만원 → (’25년) 월 23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26) 양성평등기금-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331-431)(청소년가족정책실)

나. 검토의견

아동양육비 사업은 부정수급 환수결정금액에 대한 환수 비율이 최근 3년간 계속 낮아지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부정수급 환수결정분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자로부터 이를 환수하고 있음.[27)]

그런데 연도별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부정수급 환수결정 금액은 2018년 7,700만원에서 2024년 8월말 기준 5억 5,200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환수금액은 2021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2024년 8월말 기준 환수율은 28.4%에 그치고 있음.

[연도별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환수결정 사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	계	221	721	772	969	767	660	580
	소득재산 증가	118	540	576	676	482	369	268
	인적 변동	14	35	79	104	155	191	168
	기타	89	146	117	189	130	100	144
부정수급 환수결정 금액(A)		77	369	400	563	440	502	552
환수 금액(국고+지방비)(B)		58	260	227	396	296	257	157
비율(B/A)		75.3	70.5	56.8	70.3	67.3	51.2	28.4

주 1) 2024년 8월말 기준
2) ‘소득재산 증가’는 근로·사업소득 증가, 신규재산 취득 등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초과된 경우임
3) ‘인적 변동’은 혼인관계 변동, 가구원수 변동 등의 사유임
4) ‘기타’는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환수결정 및 담당공무원이 부정수급 유형을 분류하지 않은 것을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부정수급 환수결정분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28)]

---

2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8) 다만,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통지, 독촉, 체납처분 등의 행정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23년의 부정

수급 환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23년 부정수급 환수율: '24년 2월 기준 42.8% → '24년 8월 기준 51.2%), 기준 중위소득 완화 등으로 인해 지원범위가 넓어지고, 지원실적이 꾸준히 상승 중이나, 다음과 같이 지원실적 대비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8월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A)	721	772	969	767	660	580
지원실적(B)	133,277	135,817	188,361	203,816	212,340	233,132
(A/B)	0.541%	0.568%	0.514%	0.376%	0.311%	0.249%

자료: 여성가족부